



연구보고서 2013-31-21

여성노인의 노후빈곤 현황 및 대응정책

장미혜 · 문미경 · 최인희 · 석재은 · 노혜진 · 김혜원 · 정지연 · 양아름

【책임연구자】

장미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주요저서】

여아와 여성이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방안(IV)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2(공저)

기로에 선 중산층

인간사랑, 2008(공저)

【공동연구진】

문미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인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석재은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노혜진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Post-Doc연구원

김혜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보조연구원

정지연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보조연구원

양아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보조연구원

연구보고서 2013-31-21

여성노인의 노후빈곤 현황 및 대응정책 개발

발 행 일 2013년

저 자 장 미 혜 외

발 행 인 최 병 호

발 행 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 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35(우:122-705)

전 화 대표전화: 02)380-8000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등 록 1994년 7월 1일 (제8-142호)

인 쇄 처 대명기획

가 격 8,000원

본 보고서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
용역 의뢰를 받아 수행한 연구의 결과입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연
구진의 의견이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발간사 <<

한국사회에서 저출산 현상과 맞물리면서 급격히 고령화 사회로 변화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노인의 빈곤문제는 중요한 사회적 현안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막 시작한 기초노령연금도 노후소득을 대체하기에는 절대액이 부족한 실정에서 현재의 노인세대들은 우리사회에서 빈곤층으로 전락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대표적인 집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 여성노인들은 자신들은 부모 부양을 당연한 책임과 의무로 여기고 그 역할을 다했으나, 자녀들에게는 자신들의 노후를 의지할 수 없는 세대입니다. 예전에는 부모를 부양하는 것이 당연한 시대였지만,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자신들은 노후에 자녀와 함께 살 거나 자녀가 부양해 줄 거라고 기대할 수 없다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고령화 문제 중에서도 여성 노인의 빈곤의 원인을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고 문제를 감소하기 위한 정책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연구진들은 여성노인빈곤 감소를 위한 실효성 있는 연구 성과를 도출하여, 여성노인빈곤 감소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들을 제언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구를 진행한 연구진들을 격려하며 이 연구의 성과가 정책에 잘 반영되어 고령화 문제, 그 중에서도 여성노인의 빈곤을 감소하는데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이 연구를 위해 많은 고민과 노력을 아끼지 않았던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연구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 11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최 금 속

목 차

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9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3
제3절 여성노인 빈곤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17
 제2장 젠더적 시각에서 본 공적소득보장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33
제1절 젠더적 시각에서 본 국민연금의 현황과 문제점	33
제2절 여성노인의 시각에서 본 기초노령연금의 현황과 문제점	52
제3절 젠더적 시각에서 본 노후 사회 서비스의 현황과 문제점	60
 제3장 여성노인 빈곤: 제도적 시각	71
제1절 분석개요	71
제2절 노후보장패널조사 분석 결과	79
제3절 소결 및 정책적 함의	119
 제4장 여성 노인의 빈곤: 성별과 여성 내부집단 비교	127
제1절 분석개요	127
제2절 주요 분석결과	129
제3절 소결 및 정책적 함의	147

제5장 여성노인의 빈곤실태에 대한 심층면접 결과 155

제1절 면접대상자 155

제2절 빈곤의 원인 174

제3절 경제생활 실태 186

제4절 노인의 노후준비 209

제5절 빈곤 해소를 위한 여성노인의 정책욕구 219

제6절 소결 233

제6장 여성노인의 빈곤해소를 위한 정책적 과제 241

제1절 여성노인의 관점에서 연금 개선방향 241

제2절 현행 공적 사회서비스 제도의 개선방안 250

참고문헌 259

부 록 265

표 목차

〈표 1- 1〉 여성노인 빈곤 관련 국내 주요 선행연구	23
〈표 2- 1〉 가입종별·성별 가입자 현황(2013. 7)	35
〈표 2- 2〉 성별 평균 보험료기준소득	41
〈표 2- 3〉 성별 국민연금 수급률(2012.12)	42
〈표 2- 4〉 성별, 연령별 연금수급자 현황(2013. 7)	43
〈표 2- 5〉 성별 국민연금급여액 분포(2013. 7)	45
〈표 2- 6〉 연금종류별 월평균 지급액	47
〈표 2- 7〉 연금종류별 성별 연지급액	47
〈표 2- 8〉 기초노령연금의 수급자 확대 과정	52
〈표 2- 9〉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현황	53
〈표 2-10〉 기초노령연금 가구유형별 수급 선정기준액	54
〈표 2-11〉 기초노령연금 급여액 추이	54
〈표 2-12〉 기초노령연금 재정 추이	55
〈표 2-13〉 성별 연령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현황(2012. 12)	56
〈표 2-14〉 성별 공적연금 및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및 수급률(2012. 12)	57
〈표 2-15〉 노인요양 및 건강보장사업 자격기준	62
〈표 2-16〉 2011상반기 장기요양보호신청 등급별 현황	62
〈표 2-17〉 노인복지시설 입소 자격기준	64
〈표 2-18〉 소득보장 및 여가활동 보장 자격기준	65
〈표 2-19〉 소외된 노인 서비스 자격요건	66
〈표 3- 1〉 소득의 정의	74
〈표 3- 2〉 2010년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75
〈표 3- 3〉 소득의 구성요소	77
〈표 3- 4〉 주요 변수	78
〈표 3- 5〉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81
〈표 3- 6〉 여성노인과 남성노인의 빈곤실태	84

<표 3-7>	연령대별 여성노인과 남성노인의 빈곤실태	85
<표 3-8>	소득 구성현황(가구소득)	87
<표 3-9>	소득이 있는 비율(개인소득)	90
<표 3-10>	소득구성 현황(개인소득)	92
<표 3-11>	연령대별 소득 구성현황(일반노인과 빈곤노인의 개인소득 비교)	95
<표 3-12>	공적이전소득 구성현황(개인소득)	98
<표 3-13>	공적이전소득이 있는 비율과 소득원이 있는 노인의 공적이전소득 구성현황(개인소득)	99
<표 3-14>	여성노인과 남성노인의 빈곤실태(가구주단위)	100
<표 3-15>	빈곤율 완화효과	103
<표 3-16>	연령별 빈곤율 감소효과	104
<표 3-17>	여성노인의 연령별 빈곤율 완화효과	105
<표 3-18>	빈곤갭비율 완화효과	107
<표 3-19>	연령별 빈곤갭비율 완화효과	108
<표 3-20>	여성노인의 연령별 빈곤갭비율 완화효과	109
<표 3-21>	성별 생애근로기간과 직업지위	111
<표 3-22>	빈곤가구의 성별 생애근로기간과 직업지위	112
<표 3-23>	비빈곤가구의 성별 생애근로기간과 직업지위	113
<표 3-24>	성별 생애직업	113
<표 3-25>	빈곤의 영향요인(전체 가구)	116
<표 3-26>	빈곤의 영향요인(남성)	117
<표 3-27>	빈곤의 영향요인(여성)	118
<표 4-1>	여성노인안전실태조사 측정변인	128
<표 4-2>	성별 생활비 원천	129
<표 4-3>	성별 경제적 독립성	130
<표 4-4>	성별 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	130
<표 4-5>	성별 국민연금 수혜 여부	130
<표 4-6>	성별 노후준비정도	131

〈표 4- 7〉 성별 경제적 방임 경험 유무	131
〈표 4- 8〉 여성노인 집단별 주관적 경제상황	132
〈표 4- 9〉 여성노인 집단별 소득원	134
〈표 4-10〉 여성노인 집단별 경제적 독립성	135
〈표 4-11〉 여성노인 집단별 노후준비 정도	136
〈표 4-12〉 여성노인 집단별 노후준비 충분성	137
〈표 4-13〉 여성노인 집단별 충분히 준비 못한 이유	138
〈표 4-14〉 여성노인 집단별 근로활동 유무	139
〈표 4-15〉 여성노인 집단별 일하는 이유	140
〈표 4-16〉 여성노인 집단별 노인취업알선센터 인지도	141
〈표 4-17〉 여성노인 집단별 노인인력지원기관 인지도	143
〈표 4-18〉 여성노인 집단별 국민연금 수혜 여부	144
〈표 4-19〉 여성노인 집단별 기초노령연금 수급 여부	145
〈표 4-20〉 여성노인 집단별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 여부	146
〈표 5- 1〉 심층면접 대상이 되는 빈곤여성노인의 특성	155
〈표 5- 2〉 면접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58
〈표 5- 3〉 의료급여 수급권자 구분	160
〈표 5- 4〉 수급권자가 의료기관 등을 이용한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금액	160
〈표 5- 5〉 면접대상자의 일 경험	175

부표 목차

〈부표 1〉 노인실태조사 측정변인	266
〈부표 2〉 성별 가구소득의 소득원별 유무	267
〈부표 3〉 성별 가구 총소득 및 소득항목별 금액 및 구성 비율	267
〈부표 4〉 성별 생활비 주부담자	268
〈부표 5〉 성별 노인본인소득의 소득원별 소유율	268

〈부표 6〉 성별 연간 총수입, 소득항목별 구성 금액 및 비율	269
〈부표 7〉 성별 기초생활보호대상 여부	269
〈부표 8〉 여성노인 집단별 생활비 부담자	271
〈부표 9〉 여성노인 집단별 본인 공적 연금 수입유무	272
〈부표 10〉 여성노인 집단별 본인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입유무	273
〈부표 11〉 여성노인 집단별 부동산자산 및 금융자산 유무	274
〈부표 12〉 여성노인 본인 소득액(세후):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275
〈부표 13〉 여성노인 본인 소득액(세후): 사적 이전소득, 공적연금, 기타 공적급여	276
〈부표 14〉 여성노인 본인 소득액: 기초노령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개인연금	277

그림 목차

[그림 2- 1] 한국의 현행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	33
[그림 2- 2] 성별 국민연금 가입자수 추이	36
[그림 2- 3] 성별 국민연금 가입자 비중 추이	37
[그림 2- 4] 연령별 성별 국민연금 가입자수 비교	38
[그림 2- 5] 연령별 성별 국민연금 가입자 비중(1)	39
[그림 2- 6] 연령별 국민연금 가입자의 성별 비중(2)	40
[그림 2- 7] 성별 보험료기준소득 분포 비교	41
[그림 2- 8] 연령별 성별 수급자수 비교	44
[그림 2- 9] 성별 국민연금급여액별 분포 비교	46
[그림 2-10] 성별 국민연금급여액 비교	48
[그림 2-11] 전체 18~59세 국민연금 잠재적 수급권자 및 사각지대(2013. 7)	49
[그림 2-12] 남성 18~59세 국민연금 잠재적 수급권자 및 사각지대(2013. 7)	50
[그림 2-13] 여성 18~59세 국민연금 잠재적 수급권자 및 사각지대(2013. 7)	51
[그림 2-14] 소득인정액 산출방식	53
[그림 2-15] 연령별 성별 상대적 수급비율 비교(자료: 필자가 작성)	56
[그림 2-16] 성별 공적연금 및 기초노령연금 수급률	59
[그림 2-17] 사업참여자들의 역할도(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2012)	67
[그림 3- 1] 각 소득원천의 비중	94

Abstract <<

Policies for Poverty of Elderly women

Until now, ageing and elderly poverty have come to the fore as serious issues in the Korean society. Furthermore, poverty of elderly women can be seen as graver than poverty in other societal groups. Regardless of the seriousness of the matter, poverty of elderly women has not received enough attention. Therefore, the accurate identific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poverty in elderly women is necessary. This study has as its purpose the investigation of the causes and actual conditions of elderly women poverty. This study analyzes various elderly statistical data including the National Pension Panel Survey, Survey on Living Conditions of the Elderly, and Survey on Actual Conditions of the Safety of Elderly Women. At the same time, by employing methodologies such as in-depth interviews and macroscopic statistics, the study wishes to illumine the current situation of elderly women poverty from multiple perspectives and to look into the causes of poverty. The study focuses on women aged 65 and above. It analyzes how the characteristics of the times that they were born and grew up in affects their later life. Thus, the study has the quality of a generation research. At the same time, a study on elderly women also has the quality of gender research, as it focuses on the gender differences within the elderly population.

2 여성노인의 노후빈곤 현황 및 대응정책

The results of this study propose policies and tasks to solve elderly women poverty. The national pension system needs to be reforme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elderly woman so that care labor is compensated. Additionally, there is need to set up a gender-sensitive public pension system which sets up one pension account for one person. Furthermore, the support system for low-income elderly has to be substantiated. The effectiveness of the basic old-age pension system should be reinforced as well. Moreover, improvements to public systems for social services are also necessary. By reforming the National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its benefits should apply universally to all elderly. Through businesses such as Elderly Care by the Elderly, social participation by elderly women can be increased. There is also need to publicize and support employment opportunities and policies for elderly women who are weak at gathering information. Additionally, for leisure and health, senior citizen centers may be empowered so that they provide a diverse array of leisure, health, and welfare services. By expanding elderly counseling centers, the care for neglected elderly should be strengthened. Finally, regarding housing support, housing renovation projects should be expanded to aid elderly women who are living in poor housing conditions. Housing costs support should also be reinforced for elderly households.

keyword: poverty of elderly women, a gender-sensitive public pension system, support system for low-income elderly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그 동안 한국 사회에서 고령화와 더불어 노인빈곤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었다. 또한 여성노인의 빈곤은 다른 집단의 빈곤보다 더욱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여성노인들의 빈곤은 빈곤계층 전체와 구별되는 한국사회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이들 세대만이 지닌 고유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은 충분히 주목되지 않아왔다. 그러므로 여성노인의 빈곤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여성노인 빈곤의 원인을 규명하고 그 구체적인 실상을 밝힘으로써 향후 여성노인빈곤대책을 위한 정책의 기본 자료로 활용될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이 연구는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노인실태조사, 여성노인안전실태 조사와 같은 다양한 노인통계자료를 분석하는 동시에 심층면접과 거시적 통계방식을 포함한 방법을 사용하여 다각적인 측면에서 여성노인의 빈곤 현황을 밝혀보고 빈곤의 원인과 실태를 밝혀보고자 한다. 현재 연령이 65세 이상인 여성들이 지닌 여성들이 태어나고 성장한 시대적 특성이 이들의 노후의 삶에 어떻게 반영되었는가를 분석하며, 기본적으로 세대연구의 성격을 지닌다. 동시에 여성노인에 대한 연구는 노인 내부의 성별차이에 주목하는 젠더연구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2. 주요연구 결과

첫째, 젠더적 시각에서 본 노후소득보장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4 여성노인의 노후빈곤 현황 및 대응정책

여 살펴보았다. 현재 노후소득보장정책을 통해 노인들의 소득원이 될 수 있는 제도들은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및 기초노령연금, 기초생활수급액과 개인적인 연금 등이다. 이 중 국민연금의 경우는 사각지대 규모를 남성과 여성, 성별로 구분해보면 다음과 같다. 남성집단과 여성집단의 18~59세 인구집단은 각각 1,656만명과 1,576만명으로 여성집단이 약 80만명 정도 작다. 성별 경제활동인구 비율은 남녀 각각 79.5%, 59.8%로 남성과 여성의 경제활동인구 비율 간 격차가 19.7% 포인트에 이를 정도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남성에 비해 현격히 낮다. 이에 따라 공적연금 적용 대상 규모도 남녀 각각 1,287만명, 908만명으로 387만명 정도 차이가 난다. 이와 같이 국민연금 사각지대는 남성과 여성 간에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둘째, 노후보장패널조사를 이용하여 여성노인의 빈곤실태와 원인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우선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결과를 보면, 여성노인은 남성노인보다 교육수준, 취업여부 등의 차원에서 볼 때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 특히 빈곤 여성노인은 전체 노인 중에서도 연령대가 상대적으로 높고, 교육수준이 낮으며 배우자 없이 독거하는 비율이 높고, 취업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이 인구사회학적 특성만 놓고 보더라도 빈곤 여성노인이 연령, 성별, 빈곤이라는, 배제를 야기하는 메커니즘의 중심에 놓여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빈곤 실태를 중심으로 고찰한 결과, 남성노인의 경우 40.1%의 빈곤율을 보인 반면, 여성노인은 45.9%로 더욱 높았다. 특히 여성노인의 빈곤율은 노년 중기, 즉 75세 이상 84세 이하의 시기에 가장 높았다. 또한 빈곤의 강도를 가리키는 지표인 빈곤갭 비율을 적용한 결과,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15.8%가 나타났고, 이러한 수치는 여성노인에게서 약 3.5% 포인트 정도 높았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한국사회의 여성노인이

빈곤에 처하게 될 위험 자체도 매우 높지만, 빈곤에 진입할 경우 그들이 경험하는 빈곤의 강도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성별 격차 측면에서 보자면 빈곤율보다 빈곤갭 비율이 더욱 컸는데, 이러한 결과는 여성노인이 남성노인에 비해 빈곤할 위험이 높은 것도 문제이지만, 그것보다 그들이 경험하는 빈곤의 강도가 더욱 큰 것이 보다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보여주는 바이다.

셋째, 여성노인의 내부집단별 빈곤현황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여성노인의 내부 집단별 차이를 살펴보면, 교육수준이 낮고 무배우인 여성노인일수록 경제적 상황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으로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무배우인 경우 ‘본인 스스로’ 생활비를 부담하기보다는 ‘(손)자녀 및 그 배우자’를 통해 생활비를 충당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이는 학력, 건강상태 등 인적자본요인이 빈곤지위를 결정하는 주요 변수라는 선행연구 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넷째, 여성노인의 빈곤에 대한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심층면접 결과 빈곤의 원인으로는 크게 저소득 직업을 가졌던 경우, 보증과 사업 실패, 가족의 질환 등으로 인한 빈곤, 배우자의 경제미부양, 경제부양자의 사망으로부터 오는 빈곤, 부족한 노후준비, 가난의 대물림 등이 있었다. 경제생활 실태를 살펴보면 공적 연금에 대한 의존도의 경우 모든 면접대상자들은 최저 수준으로 먹고 살수는 있지만 그 외의 경우 여유는 거의 없는 저소득 직업에 종사해왔었다. 직업 안정성과 직장 내 복지가 제공되는 정규직을 가지기 보다는 비공식적 영역에서 대부분 일하여왔고, 공식적인 영역이라도 한 달의 별이만 보장되는 열악한 상황에서 일을 한 경험이 많이 있었다. 이는 노인이 되어서의 경제적 생활을 준비하지 못하는 하나의 원인이 되었고, 노후를 대비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3. 결론 및 시사점

이 연구를 통해 제시할 수 있는 여성노인의 빈곤해소를 위한 정책적 과제는 다음과 같다. 여성노인 관점에서 연금제도를 개선하여 돌봄노동을 보상하고 성인지적 공적연금제도 체계를 구축하여 1인 1연금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저소득 노인 지원체계를 내실화하고 기초노령연금제도에 대한 실효성을 강화해야한다. 또한 공적 사회서비스 제도의 개선도 필요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개선하여 보편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하고 노노케어등의 사업을 통해 여성노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또한 정보에 취약한 여성노인에게 일자리 정책을 홍보,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여가 및 보건생활에 있어서 경로당의 기능강화를 통해 여가, 보건 복지 서비스를 다양화하고 노인전문상담센터를 확대해서 소외된 노인들의 돌봄을 강화해야한다. 마지막으로 주거생활지원에 있어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여있는 여성노인의 주거개조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저소득층 노인가구에 대한 주거비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주요용어: 여성노인빈곤, 연금제도 개선, 저소득노인 지원체계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3절 여성노인 빈곤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저출산 현상과 맞물리면서 급격히 고령화 사회로 변화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노인의 빈곤문제는 중요한 사회적 현안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노인빈곤의 문제는 빈곤상태에 있는 노인의 범위가 전체노인인구의 40%를 넘어서는¹⁾ 매우 광범위한 수준이라는 점과 절대적인 빈곤의 수준이 심각해서 하다는 두 가지 특성을 보이고 있다.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넓은 사각지대하고 급여수준도 낮은 국민연금제도는 저소득 노인 인구층의 빈곤을 해소해주기에는 역부족이다. 65세 이상 노인 국민연금 수급률에 대한 장기전망도 2015년 35.7%, 2020년 41.0%, 2030년 50.2%에 머물고 있어 보편적인 노후소득보장제도로써 한계를 보이고 있다(보건복지부, 2013).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막 시작한 기초노령연금은 노후소득을 대체하기에는 절대액이 부족한 실정에서 현재의 노인세대들은 우리사회에서 빈곤층으로 전락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대표적인 집단이라고 볼 수 있다. 2008년도에 도입되어 노인가구의 약 70%가 수혜를 받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의 1인당수급액은 1인가구 기준으로 2013년 현재 96,800원으로 생활비에 훨씬 미달하는 액수만을 지원받고 있다. 서구사회의 경우 노후 소득보장체계가 발전하면서 노인 빈곤율이 개선되고 있는데 반해서 우리나라의 노인집단의 빈

1) 전체노인의 빈곤율은 노동패널을 분석한 자료에서는(김옥금, 2007) 53%, 노후보장패널자료를 분석한 이번 연구에서는 전체 노인가중 43.5%가 빈곤층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곤율은 경제적 상황이 나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기보다는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는 특성을 보인다(여유진외, 2012).

노인빈곤의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한국사회의 현실을 보면 전통적인 부모보양과 효에 대한 가치관이 와해되고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에 관한 사회적 규범이 빠르게 변화해가고 있다. 자녀 세대들은 부부와 자녀의 핵가족을 가족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핵가족의 범위를 벗어나는 가족구성원의 부양을 짐스러워하고 있었다. 많은 노인들이 신체적으로 쇠약해지고 질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 생산 활동은커녕 일상생활을 하기에 불편한 상황에 처해 있지만, 가족으로부터 아무런 돌봄도 받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으나 이를 뒷받침 해줄 제도적 기반은 이제 도입상태에 있다. 아직 생활비에 못 미치는 지원을 받고 있거나,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최소한의 지원조차 받지 못하기 때문에 국가와 가족으로부터 이중적인 소외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다. 노후생활을 하기에 충분한 저축이나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80대 이상 여성노인의 비중은 16.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장미혜외, 2012).

이처럼 한국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노인 빈곤의 원인은 1) 노인빈곤의 원인은 개인적으로 노동시장에서의 은퇴로 인한 근로소득의 감소내지는 중단, 2) 노후의 소득감소에 대비할 수 없는 생애내에 누적되어온 자산소득이나 사적연금의 부족, 3) 건강이 허락된다고 해도 노인에게 주어진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서, 4) 가족이나 친척등으로부터의 지원의 부족, 5) 국민연금, 특수직연금, 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노령연금 등 제도적으로 지원해주는 공적이전소득액의 절대액 부족, 혹은 지급자격으로의 미달 등으로 인해 수급대상자가 되지 못하는 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노인빈곤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여성노인의 빈곤은 더욱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여성노인들의 빈곤은 빈곤계층 전체와 구별되는 한국사회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이들 세대만이 지닌 고유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은 충분히 주목되지 않아왔다. 은퇴로 인한 근로소득의 감소는 남성노인과 여성노인이 모두 함께 겪는 빈곤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여성노인들은 생애기간 지속적으로 연금수혜를 받을 수 있는 공식적인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남성들과 달리, 여성노인들은 소득이 중단된 이후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소득의 공백을 메꾸어 줄 별다른 수단 없이 노후를 보내게 된다는 점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번 연구의 목적은 연령집단을 비교하는 30~40세대와 다른 세대의 연령집단을 비교하는 코호트분석에 있다기보다는 현재연령이 65세 이상인 여성들이 지닌 여성들이 태어나고 성장한 시대적 특성이 이들의 노후의 삶에 어떻게 반영되었는가를 분석하는데 목적을 둔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세대연구의 성격을 지닌다. 동시에 여성노인에 대한 연구는 노인 내부의 성별차이에 주목하는 젠더연구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여성노인이 처한 현실을 이해하기 위해 여성노인과 남성노인의 성별차이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한 연구는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왔다.

여성노인의 경우 배우자의 은퇴나 사별이후에 빈곤상태에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Waehrer and Crystal, 1995; Knight et al., 2003). 여성노인들은 부부가 생존해있을 때는 남편의 평생소득에 의존해서 생활을 영위했으나, 평균수명이 길기 때문에 남편의 사후에도 상당기간을 혼자서 살아가게 된다. 이번 연구결과에서 남성노인의 경우 배우자와 동거하는 비율이 89.8%로서 거의 대부분의 남성 노인이 배우자와 동거하는 데 반해서, 여성 노인의 경우 46%만이 배우자와 동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독거가구의 비율은 남성노인은 7.2%인 반면, 여성노인은 30.6% 정

도로 약 4배가량 높게 나타나고 있다²⁾.

두 번째 여성노인의 빈곤의 특수성은 단순한 소득의 중단뿐만 아니라 생애사적으로 누적되어온 소득과 자산소득의 젠더 간 불평등이 중요한 이유로 작용한 결과라는 점이다. 이들이 경제활동이 가능하던 시기의 한국사회는 산업화되어가는 과도적 시기였기 때문에 여성을 위한 일자리는 제한되어 있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여성노인들이 고등교육의 수혜가 확대되기 이전에 태어나고 성장하였기 때문에 교육수준이 낮아서 이들이 일할 수 있는 직종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많은 여성노인들이 일할 수 있었던 자신의 생애기간동안 무급가족종사자로서 혹은 비공식적이거나 간헐적으로 일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노동시장경력의 단절로 인해 여성노인들은 공적연금의 수혜자격에서 배제되고 노후를 대비해서 사적으로 축적해온 연금이나 저축액도 남성노인에 비해 적다. 특히 이들은 남성 중심적인 가족관계에서 주택을 비록한 가족의 재산에 대한 처분권과 통제력의 행사에 있어서도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다른 사람이 내 돈 또는 재산 등을 허락 없이 사용하거나 빼앗아 간’ 경험을 70~79세 여성노인 중 15.37%, 80세 이상 여성노인 중 16.57%에 달하고 있고 이는 같은 연령대, 70~79세의 남성노인의 경험을 11.76%, 80세 이상 남성노인의 경험을 9.09%에 비해서 높은 수치이다(장미혜외, 2012). 이번 조사에서도 재산소득의 경우 남성노인의 26.8%가 소유하고 있지만, 여성노인에게서는 9.8%, 빈곤 여성노인에게서는 7.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건강이 허락되고 일을 할 의사가 있어도 여성노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제한되어 있는 현실 또한 여성노인의 빈곤을 가속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전반적으로 현재 한국사회 여성노인의 빈곤은 교육기회와 소득수준의

2) 2011년도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자료 재분석 결과.

세대 간 불평등, 성별불평등, 생애기간내의 소득불평등이 누적되어온 총체적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미래에 노인인구 중 교육수준이 높고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노후를 대비하는 베이비부머세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면 여성노인빈곤의 양상을 변화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노인인구의 대부분은 경제적으로 잘 준비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긴 노후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노후빈곤을 경험하고 있다. 현재 어느 때보다 빈곤상태에서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으면서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여성노인들을 위해 최저생계비 지원, 안전하고 저렴한 주거시설 제공, 가족의 무관심과 방임을 대신해 줄 돌봄 서비스의 개입과 같은 대책이 필요하다. 장기적인 정책의 수혜자가 되기에는 남아 있는 여생이 너무 짧고 처해 있는 현실이 너무 비참하기 때문이다(장미혜외, 2012). 이번 연구는 여성노인 빈곤의 원인을 규명하고 그 구체적인 실상을 밝힘으로써 향후 여성노인빈곤대책을 위한 정책의 기본 자료로 활용될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이번 연구에서는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노인실태조사, 여성노인안전실태조사와 같은 다양한 노인통계자료를 분석하는 동시에 심층면접과 거시적 통계방식을 포함한 연구방법을 동원해서 다각적인 측면에서 여성노인의 빈곤현황을 밝혀보고 빈곤의 원인과 실태를 밝혀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1장에서는 노인빈곤에 관한 선행 연구를 검토한 후에 이들 연구가 여성노인 빈곤연구에 갖는 시사점을 검토해본 뒤 현재의 한국의 여성노인 빈곤문제를 연구하는데 있어 고려해야할 점에 대해서 짚어보고

자 한다.

먼저 2장에서는 노인들의 소득원이 될 수 있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및 기초노령연금, 기초생활수급액과 개인적인 연금등 노인들의 다양한 소득원을 구분해본 뒤, 성별 국민연금의 수급자수와 수급률, 급여액을 비교해보고 국민연금의 잠재적 수급권자를 추정해봄으로써 국민연금 수급의 사각지대에 놓인 여성노인의 실태를 밝혀보고자 한다. 그 다음 국민연금과 더불어 노후공적보장제도의 또 다른 축을 구성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의 성별 수급자수와 수급률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2장에서 제도적인 수준에서 전체 남녀노인의 연금수급률의 성별격차를 알아보았다면, 3장에서는 분석단위를 개인으로 옮겨 2011년을 기준으로 조사된 제 4차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Korean Retirement and Income Study: KReIS)를 활용하여 남성노인인구의 빈곤율과 소득갭 및 빈곤갭이 얼마나 되는지를 밝혀보게 될 것이다. 2007년도에 여성노인의 빈곤율이 41.2%, 남성노인의 빈곤율이 31.2%에 나타났던 것과 대비해볼 때(석재은·임정기, 2006; 김경아 2008) 여성노인 빈곤율이 악화되고 있는가 혹은 개선되고 있는가를 추정해보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첫째, 집단 간 특성별 비교를 위하여 여성노인의 규모와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파악하고, 빈곤 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과 기술통계분석(descriptive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또한, 남성노인과의 비교를 위해 t-test와 ANOVA, 교차분석(cross tab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둘째, 노인가구 소득 및 빈곤 측정을 위하여 국민노후보장패널의 소득 중 기타소득 영역을 제외한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활용하였고, 분석기간 기준은 '작년 한해(2010년 기준)'로 설정하여 측정하였다. 빈곤 여부 판단은 연인가구소득이 그 해의 가구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하며, 더 나아가 빈곤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소득갭

비율(income gap ratio)과 빈곤갭비율(poverty gap ratio)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셋째, 공사 소득이전의 노인가구 빈곤감소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소득을 일차소득, 시장소득, 경상소득, 공적연금소득, 공적이전소득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전소득의 빈곤율 및 빈곤갭 감소효과는 각각의 이전소득을 수급하기 전 빈곤율 및 빈곤갭에서 수급한 후의 빈곤율 및 빈곤갭을 비교하여 측정하였다. 마지막으로 노인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설명하기 위하여 설정된 독립변수들은 개인특성, 가구특성, 제도적 특성으로 구분하였으며, 빈곤의 결정요인을 분석하는데 로지스틱 회귀분석(binary logistic regression model)을 활용하였다.

4장에서는 2012년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여성노인안전실태조사〉³⁾ 자료의 재분석을 통해서 남성노인들과 여성노인들이 느끼는 주관적인 생활수준, 가구 내 생활비부담자, 노후대책수준, 경제적 독립성에 대해서 알아보게 될 것이다. 그 다음 65~69세, 70~79세, 80세 이상으로 여성노인을 연령집단별로 구분해서 노년기 전기, 중기, 후기로 올수록 노후준비상태나 경제적 독립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분석하고자 한다.

4장에서 여성노인의 생애주기별 집단에 따른 경제 상태를 살펴보았다면, 5장에서는 심층면접조사 결과를 통대로 여성노인 빈곤의 실태를 보다 생생하게 파악하고자 한다. 생애사에 대한 심층면접 연구가 가지는 장

3) 여성노인안전실태조사는 2012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한 “여아와 여성이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방안(IV): 여성노인의 안전실태와 정책적 대응방안”에서 전국 규모로 수행한 조사이다. 노인실태조사와 동일하게 본 여성노인안전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여성노인과 남성노인의 경제적 상황을 비교하고, 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여성노인의 내부집단 특성에 따라 경제적 상황이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려고 한다. 여성노인안전실태조사는 전국 규모의 조사로 65세 이상 남녀노인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표집은 할당추출법으로 생활권과 인구비례를 기준으로 전국을 대도시, 중소도시, 농산어촌으로 구분하여 표집대상을 할당하였다.

점은 한 시점에서의 횡단자료로 파악할 수 없는 빈곤의 개인적 역사성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가난했기 때문 자식에게 공부를 제대로 시키지 못해서 다시 빈곤한 상태로 부모를 봉양할 수 없는 가난이 세대를 거쳐서 되물림 되는 현상이 현재의 여성노인 빈곤의 중요한 축을 이룬다. 여성노인의 생애사에 대한 심층면접을 통해서 저소득의 일자리를 전전한 생애내의 경제활동의 특성과 지속되지 않고 단절적인 일자리 경험의 속성, 자신 또는 가족의 질병과 건강상태로 인해 일할 수 없는 현재의 상태와 가족관계에서의 단절과 지원 부족 등 현재의 빈곤의 원인이 어디에서 기인한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것이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일부의 차상위 계층의 여성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심층면접을 통해서 단순한 소득원 분석을 넘어서 소비실태에 대한 분석을 일부 포함해서 보다 생생한 빈곤의 실태와 원인에 대한 파악을 하는 동시에 여성노인의 빈곤 해소를 위한 정책적 욕구가 무엇이지에 대해서도 파악하고자 한다. 심층면접 대상자는 총 32명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들 중 성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여성노인을 27명, 남성노인을 5명으로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선정 기준은 빈곤노인은 공공부조의 수급여부로 선면접 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는 19명, 차상위 계층은 11명, 기초생활급여 혹은 차상위 계층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2명이었으며, 대부분 국가의 지원금에 의존하여 생활하고 있다. 또한, 의료급여 1종 혹은 2종 수급자로 지원받고 있었으며, 많은 노인들이 자녀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면접 대상자들의 연령은 67세부터 102세까지이다. 연령별, 생애주기별 차이를 보기 위해 노인 전기(65세부터 69세), 노인 중기(70세~79세), 노인 후기(80세 이상)로 노인들을 나누었으며, 면접 대상 노인 중 대부분(17명)은 중기 단계에 분포되어 있었다. 면접대상자들의 대부분은 1인가구주(약 47%)였으며, 동거를 하고 있는 경우 많은 경우 노인들이 동거인들을 위한 돌봄 노동을

수행하고 있었다.

6장에서는 현재 노인대상으로 제공되는 정책서비스를 살펴보고 서비스 수혜에 있어 여성노인과 남성노인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에 대해서도 밝혀보고자 한다. 그 다음 보다 거시적인 맥락에서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국민연금제도가 지니고 있는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서 짚어보고자 한다.

제3절 여성노인 빈곤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1. 여성노인에 대한 이론적 연구동향

여성이 경험하는 빈곤 문제의 심각성을 지칭하는 가장 대표적인 용어는 피어스가 정의한 ‘빈곤의 여성화(feminization of poverty)’일 것이다. 빈곤이라는 사회문제가 남성과 여성에게 고르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주로 여성의 문제가 되어 가는 현상을 연구하고, 이것을 빈곤의 여성화라고 명명하면서 피어스가 근거로 삼은 현상은 세 가지였다. 첫째는 빈곤인구의 약 70%가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고, 둘째는 빈곤 가구의 절반 이상이 여성가구주로 구성된 가구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근거는 빈곤노인 중에서 약 70%가 여성노인이라는 것이다.

빈곤의 여성화 테제 이후 수많은 빈곤 연구들이 여성의 빈곤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하여 왔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여성가구주, 여성노인의 빈곤 문제가 주로 가시화되었다. 이에 본 절에서는 여성노인의 빈곤 문제를 다룬 기존 연구의 흐름을 살펴보았다. 여성노인의 빈곤에 관한 연구는 크게 노후 빈곤의 실태 및 성별 격차, 빈곤의 결정요인, 이전소득의

빈곤 감소 효과, 그리고 빈곤의 경험을 다룬 질적 연구 등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들 연구와 분석의 주요 결과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겠다.

첫 번째 연구의 흐름으로서, 빈곤실태를 다룬 많은 연구들이 노인의 빈곤과 불평등이 다른 인구집단보다 상당히 높고, 최근 들어 이 문제가 개선되기보다 오히려 악화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노인의 자살 등 또 다른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음을 지적한다(여유진 외, 2012). 특히 한국사회 노후 빈곤 문제는 서구 선진국들이 국가 주도의 노후 소득보장체계의 발달 과정에서 노인 빈곤 수준이 완화되고 있는 현상과 더욱 대조된다(Brady, 2004). 그리고 이러한 노인의 빈곤 실태를 다룬 연구에서 주목하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여성노인의 빈곤이다. 여성노인의 빈곤실태는 주로 남성노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분석이 전개되고 있는데,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여성노인은 남성노인보다 10% 포인트 정도 빈곤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홍백의, 2005; 석재은·임정기, 2007).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60세 이상 노인 개인을 대상으로 연구한 홍백의(2005)의 연구에서는 여성노인의 빈곤율이 43.3%로서, 남성노인 빈곤율 33.6%보다 약 10% 포인트 높았다. 65세 이상 노인 개인을 연구한 석재은·임정기(2007)의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여성노인의 빈곤율이 41.2%로, 남성노인 빈곤율 31.2%보다 10% 포인트 높았다. 이러한 수치는 일반적으로 OECD국가의 여성노인 빈곤율이 20%대를 넘어서지 않는다는 것을 고려해볼 때 매우 높은 수준이다.

여성노인이 경험하는 빈곤 실태와 관련된 연구는 단순한 빈곤율의 비교뿐만 아니라 소득분포, 지출현황, 사회적 배제에 관한 연구로까지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분석 결과, 소득분포 차원에서 여성노인의 평균소득은 남성노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며, 이전소득에 대한 의존

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석재은·임정기, 2007; 김경아, 2008). 더불어 소비 지출 면에서는 여성 노인의 소비수준이 남성노인보다 더 낮았고, 소비지출의 성별 격차도 증가 추세에 있었다(이소정, 2009). 한편 화폐적 차원에서의 빈곤에서 나아가 사회적 배제 개념을 적용하더라도 여성노인은 남성노인에 비해 근로, 교육, 건강, 사회활동 등 다양한 영역에서 배제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강현정, 2011; 송미영, 2008).

두 번째 흐름은 빈곤의 원인을 규명하고자 한 연구이다. 여성노인 빈곤의 원인을 논의할 때, 노년기의 특정한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결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노년기 이전부터 지속되어 온 삶의 연속인지에 관한 논쟁이 존재한다. 전자의 입장은 노년기에 발생한 특별한 사건, 즉 주로 생계 부양자 역할을 해왔던 남성 배우자의 소득활동 중단이나 사별 등으로 인해 여성노인이 빈곤에 처하게 된다고 본다(Waehrer and Crystal, 1995; Knight et al., 2003). 반면, 후자의 논의는 생애주기 관점에 기반하여 노년기 이전에 이미 노동경험의 부족과 공적 소득보장체계에서의 배제 등의 문제들이 노년기에 등장한 문제와 결합하는 과정에서 여성노인이 빈곤하게 된다고 보는 관점이다(Holden and Kuo, 1996; 박미정, 2010).

두 개의 관점을 모두 고려하여 빈곤의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분석을 시도한 연구들은 크게 빈곤의 원인을 개인적 특성, 가구 특성, 노동시장 특성, 그리고 제도적 특성을 중심으로 구성한다. 우선 개인적 특성을 중심으로 보면, 여성이라는 성별 자체는 총소득을 낮추고, 노후 빈곤을 결정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결과가 존재한다(정경희 외, 2005; 최현수, 2006; 석재은·임정기, 2007; 모지환·함철호, 2009; 석상훈, 2012; 지은정, 2012).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성별에 관계없이 노인의 빈곤위험 자체가 매우 높고, 여성노인이 가진 특성들이 다른 변수에 반영이 되는 과정에서 빈곤 여부를 결정하는 성별 그 자체의 통계적 영향력이 드러나지 않

는다는 결론을 도출한 연구들도 존재한다(홍백의, 2005; 최옥금, 2007). 성별에 이어 개인적 특성에 포함된 또 다른 요인으로는 연령, 학력, 건강 등의 측면이 있다. 연구 결과, 노인 중에서도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그리고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빈곤 위험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최현수·류연구, 2003; 정경희 외, 2005; 최옥금, 2007; 석상훈, 2012). 둘째, 가구 특성에 주로 투입되는 변수에는 가구구성, 배우자 존재 여부, 가구원수, 거주지역, 자산 수준 등이 포함된다. 분석 결과, 가구원수가 많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 자산 규모가 클수록, 그리고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빈곤 위험이 감소하였다. 셋째, 노동시장 특성은 노후 빈곤의 원인을 규명하는 두 번째 관점, 즉 생애주기 관점에 기초한 접근으로서, 노년기 이전의 노동 경력에 주목하는데, 노년기 이전의 고용형태와 직종이 임금근로자였거나 정규직인 경우, 그리고 사무직 혹은 전문직 종사자였던 경우 노후 빈곤의 가능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홍백의, 2005; 최옥금, 2007). 더불어 가구주가 정년으로 은퇴하거나, 비자발적으로 은퇴했더라도 재취업을 통해 가교 일자리에서 은퇴하는 경우 빈곤 가능성이 감소하였다(석상훈, 2012). 그러나 가구주와 배우자의 근로기간은 모두 빈곤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제도적 특성에 주목한 연구에서는 공적연금을 수급받는 경우 빈곤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석상훈, 2012). 이러한 제도적 특성은 여성노인 빈곤에 관한 국가비교 연구에서 더욱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데, 공적연금의 개별적 수급권 발달수준이 높은 경우, 그리고 공공부조 지출비중이 높은 경우 여성노인의 빈곤이 감소하였다(김수완, 2010).

세 번째 연구의 흐름은 이전소득의 빈곤감소 효과이며, 이는 노인빈곤을 다룬 연구 중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는 분야이다. 이들 연구에서는 공

적 이전소득과 사적 이전소득에 빈곤 감소에 미치는 효과의 크기를 측정한다. 측정의 방식으로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것은 급여를 수급하기 전(pre)과 수급 후(post)의 빈곤율의 차이를 비교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정책 개입 전의 상태를 관측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 개입의 효과를 과다 혹은 과소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중차이기법(difference in difference)이 활용되기도 한다. 더불어 이전소득의 빈곤감소 효과에 관한 연구는 공적 이전소득과 사적 이전소득 자체의 영향력을 보는 연구들도 존재하지만, 국민연금이나 기초노령연금 등 특정 제도를 중심으로 한 빈곤 감소 효과를 측정하기도 한다. 이전소득 영향력의 패턴을 분석한 결과 빈곤 감소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소득이 사적 이전소득에서 공적 이전소득으로 변화 중에 있는 것으로 본다. 실제 10년간의 분석 시점의 격차를 둔 김정아(2008)의 연구에서는 1996을 기준으로 사적 이전소득의 효과가 더욱 컸지만, 2006년도에는 공적 연금의 빈곤감소 효과가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소득의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분해서 살펴보면, 공적이전소득의 효과는 주로 남성노인에게서, 그리고 사적 이전소득의 효과는 여성노인에게서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김수영·이강훈, 2009). 최근에는 2008년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기초노령연금이 빈곤감소에 미치는 효과와 관련된 연구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데, 김희삼(2011)의 연구에서는 기초노령연금이 없을 경우 노인 가구의 빈곤율이 35.1%에서 39.2%로 약 4%p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한다. 이러한 결과를 성별에 따라 보다 구체화한 석상훈(2010)의 연구에서는 기초노령연금의 빈곤율 감소 효과가 8.7%로 나타났고, 빈곤갭 감소 효과는 25.7%로 나타났다. 이러한 효과는 여성보다 남성에게서 더욱 컸는데, 빈곤율의 경우 여성노인이 10.9%인 반면, 남성노인은 15.9%로 나타났고, 빈곤갭 비율 감소에 있어서는 여성노인이 25.7%, 남성노인이

34.4%로 나타났다.

여성노인의 빈곤에 관한 마지막 연구의 흐름은 질적 연구를 통해 실제 빈곤 여성노인의 삶의 경험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다(박미정, 2010; 이현주·안기덕, 2013). 이들 연구에서는 여성노인의 빈곤이 노년기라는 특정한 시점에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 전 생애에 걸쳐 유지, 강화되는 생애지속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빈곤 여성노인을 ‘여성’이라는 사회적 약자로서의 젠더와 ‘노인’이라는 연령의 위험이라는 다중위험을 가진 존재로 본다. 이러한 질적 연구를 통해 빈곤한 여성노인들이 삶의 전 생애를 거쳐 빈약한 사회자원을 극복하기 위하여 구사한 생존 전략을 보다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다.

2. 국내 선행연구 검토

국내에서는 여성 노인의 빈곤에 대해 1980년대 후반부터 관심을 가져 온 것으로 보인다. 초기의 연구 중 대표적인 연구 중 하나는 여성개발원(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여성노인의 복지 지원을 위한 기초 실태조사』이다. 이후 1990년대에는 여성노인의 빈곤에 대한 이론적인 고찰과 여성노인 빈곤의 원인에 대한 연구가 있었으며(남정림, 1992; 조병은, 1996), 여성노인의 삶의 실태와 이에 대한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정경희, 1997; 김미혜, 1998)들도 수행되었다. 2000년대부터는 여성노인 빈곤 관련 연구들이 양적으로 증가하였고, 주제도 더 다양해졌다. 빈곤 실태 파악과 정책 제안을 넘어서 사회적 배제(송미영, 2008), 사별(이미진, 이용우, 2008), 여성가구주 및 독거노인(김수완, 2010; 김희경, 이현주, 박순미, 2010; 박미정, 2010; 안기덕, 2012) 등 여성노인 빈곤에 대한 세분화된 접근들이 늘어났다. 본 연구원이 『2012년에 실시한 여아와 여

성이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방안 (IV): 여성노인의 안전실태와 정책적 대응방안』 역시 노인을 단일한 집단으로 보지 않고, 성별, 연령별 차이를 고려하여 조사하였고, 조사결과에 기반하여 정책적 제안을 담았다. 이의 연장선상에서 여성노인의 빈곤을 다차원적 측면에서 심층적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이처럼 여성의 빈곤에 관한 연구는 꾸준히 진행되어 왔으나 여성노인의 빈곤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수행된 것은 최근의 일이다. 여성노인의 빈곤에 관한 연구는 대체로 빈곤의 원인 및 특성(강병창·박병현, 2010; 김성숙, 2012; 김혜영·이은주·윤홍식, 2005; 최희경, 2005), 한국 여성가구주 노인에 대한 국제비교(김수완, 2010; 김수정, 2008)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특히 여성노인의 빈곤은 생애주기 및 사회적 시간표(social time table)의 변화 차원에서 고찰할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김영란, 2012). 이는 노년기의 경제적 상태는 노후 이전 시기의 누적된 결과, 즉 생애주기 상 누적된 경제적 취약성이 노후에 극대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표 1-1〉 여성노인 빈곤 관련 국내 주요 선행연구

연구자	연구방법	이용자료	연구주제	연구내용
여성개발원 (1989)	통계분석			여성노인의 복지 지원을 위한 기초 실태조사
남정림 (1992)	문헌 분석			여성노인의 빈곤화 원인과 정책에 관한 여권론적 접근
이혜경 최은영 (1997)	통계			한국여성빈곤의 현황과 과제
정경희 (1997)				여성노인의 삶의 질 현황과 정책과제
최선화 (1999)	질적연구			생애주기에 따른 여성노인의 빈곤 원인

24 여성노인의 노후빈곤 현황 및 대응정책

연구자	연구방법	이용자료	연구주제	연구내용
박명선 (2002)	설문조사 기술통계			여성노인의 일과 빈곤: 전 북지역을 중심으로
안진 (2003)	질적연구 통계분석			저소득층 여성노인의 일상 생활과 복지욕구: 목포 상 동지역 빈곤 여성노인들을 중심으로
최희경 (2004)	질적연구			부산지역 빈곤여성노인의 현황 및 생애사 분석과 정 책제안
최희경 (2005)	질적연구			빈곤 여성 노인의 생애와 빈곤 형성 분석
석재은, 임정기 (2007)	통계분석			여성노인과 남성노인의 소 득수준 격차 및 소득원 차 이와 결정요인
송미영 (2008)	통계분석			한국 여성노인의 빈곤: 성 인지적 사회적 배제 관점 에서
이미진, 이용우, (2008)	통계분석			사별과 여성노인의 경제적 상태에 대한 종단적 연구
김수완 (2010)	통계분석			복지국가의 여성가구주 노 인빈곤에 관한 비교 연구
김희경, 이현주, 박순미 (2010)	통계분석			여성독거노인의 삶의 질 영향요인
박미정 (2010)	질적연구	심층면접, 가정방문, 참여관찰,		국민기초생활수급 여성독 거노인의 일상생활연구
안기덕 (2012)	질적연구	심층면접		국민기초생활수급 여성독 거노인의 생애사 연구: 사 회적 배제와 행위주체성을 중심으로
장미혜 외 (2012)	질적연구 통계분석			여아와 여성이 안전한 지 역사회 환경 조성방안 (IV): 여성노인의 안전실태 와 정책적 대응방안

선행연구에 의하면 빈곤의 원인은 개인적 요인과 사회구조적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개인적 요인의 경우, 연령, 결혼상태, 가구특성(예: 가구원수, 어린자녀 유무 등), 교육수준, 취업지위 등 인적자본이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수준 등 인적자본이 많고 취업지위가 안정적일수록 빈곤위험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성숙, 2012; 김수정, 2008; 김영란, 2012; 김혜영·이은주·윤홍식, 2005). 사회구조적 요인의 경우, 미약한 노동력(work history), 노동시장에서의 주변화된 일자리, “생계부양자인 남성과 피부양자인 여성”이라는 고정된 성역할에 기반한 복지제도의 가부장성(김혜영·이은주·윤홍식, 2005, p.16; 최희경, 2012) 등이 여성의 빈곤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고령화 사회의 여성빈곤화 대책에 대해 연구한 김영란(2012)의 연구에서는 한국에서 여성빈곤 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생애주기를 고찰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노동시장 구조 및 사회안전망, 사회문화적 관념 등이 여성의 생애과정에서 각 단계마다 빈곤문제와 연결되고 있으며 이는 노년기 여성의 빈곤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따라서, 고령화시대의 여성빈곤은 생애과정 전반에 걸쳐 논의되어야 하며, 특히 생애주기별 경제활동상황을 고려한 탈빈곤 대책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지적되었다.

제10차 노동패널자료(2007)를 활용하여 가계유형별 여성가구주의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한 김성숙(2012)의 연구에서는, 고령·일인 여성가구주가계의 빈곤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은 건강상태와 취업여부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여성가구주가계가 빈곤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건강증진, 취업지원 등과 같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병창과 박병현(2010)은 국민연금노후보장패널 1-2차 자료를 활용

하여 중·고령 여성 가구주의 연령특성별(경제활동세대, 연금배제세대, 연금수급세대) 빈곤 및 저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경제활동세대와 연금배제세대의 절대빈곤율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경제활동세대’ 여성가구주의 소득불평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저자들은 ‘경제활동세대’ 여성 가구주에게는 사회적 일자리 증가와 적정 임금 보장을 위한 장치마련, 국민연금제도 최저가입기간의 완화, 가사돌봄 노동에 대한 가치인정, ‘연금수급세대’ 이후에는 공적부조제도의 현실화를 통한 최저생활보장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다양한 실증분석과 함께 여성노인의 빈곤에 대한 질적 연구도 병행되고 있는데, 최희경(2005)은 빈곤여성노인 9명을 대상으로 여성의 노년기 빈곤형성과정을 생애사적 관점에서 분석한 바 있다. 연구 결과, 여성노인의 빈곤은 노년기 이전의 빈곤이 노후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성적 빈곤의 성격을 가지며, 노년기에 경험하는 사별이나 발병 등 특정한 생애 사건들이 만성적 빈곤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저자는 여성들이 경험할 수 있는 빈곤위험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파악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지속적이고 다차원적인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저자는 중년 및 초기 노년기 여성에 대한 소득활동 지원과 안정적인 생계보장을 통해 여성노인빈곤을 완화하는 제도적 장치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한편, 룩셈부르크 소득연구자료(Luxembourg Income Study)를 이용하여 15개국의 여성가구주 노인 빈곤에 관한 비교연구를 수행한 김수완(2010)은 여성가구주 노인의 빈곤율이 높게 나타나 빈곤의 여성화 경향을 확인하였고, 공적연금의 젠더적 특성(개별적 수급권 발달정도 등)이 여성가구주 노인의 경제적 복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이에 연구자는 생애 노동기간 및 사회보험에서 젠더 불평등에 대해 적극적

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으며, 한국의 노후소득보장정책의 발전방향에서 개별적 수급권을 강화하는 노력이 핵심적인 방향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국복지패널(2005)과 LIS 자료를 이용하여 한국여성가구의 빈곤을 국가비교 관점에서 분석한 김수정(2008)의 연구에서도 한국 여성가구의 빈곤은 다른 국가들과 비교할 때 심각한 수준이며, 특히 다른 집단과 비교할 때 여성노인의 빈곤이 심각한 상태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연구자는 여성노인의 빈곤은 젊은 시절의 빈곤의 연장선에 있는 경로 의존적 빈곤이며, 남성가구의 부양 하에 숨겨진 빈곤상태에 있다가 배우자/부양자가 없어지는 경우 드러나는 특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연구에서는 한국사회의 여성빈곤의 역사적 맥락을 고려하는 세대적 특성을 규명해야 하는 이유는 이러한 여성노인의 빈곤이 한국사회의 급격한 가치관의 변화와 가족의 돌봄기능 약화에서 기인한 것이기 때문이다. 노인빈곤에 대처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가족이 노인부양을 책임지던 한국사회의 전통적 관행은 급격히 무너져왔다. 현재의 노인세대들은 한국사회가 산업화되기 이전의 농촌사회에서 태어나고 성장해왔기 때문에 자신들이 노부모를 부양해왔듯이 자식들은 자신들의 노후를 책임져 줄 것이라고 예상하여 독자적인 준비 없이 노후를 맞이해야 했다(장미혜외, 2012).

이들 여성노인의 첫 번째 세대적 특성은 여성들의 경제활동참여가 늘어나면서 가족구성원들이 가정에서 노인을 돌보기 힘든 세대에 노후를 맞이한 첫 세대라는 점이다. 현재 여성노인들은 자녀에 대한 기대가 크고 가족의 일원으로서 자신의 위치를 자리매김하는데 익숙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 가족으로부터 떨어져 혼자 살고 있다. 여성들은 남성보다 평균수명이 길기 때문에 다양한 측면에서 자녀에게 의

지하는 기간도 길다. 여성노인들은 자녀에게 기대를 많이 하는 편인데, 자녀 및 가족구성원의 행동이 자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실망하고 소외감을 느낀다. 더 나아가 이러한 의존성이 오히려 가족 관계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이수연 외, 2010).

이러한 여성노인들의 가족 중심적 경향은 연령이 높거나, 경제 여건이 좋지 않거나, 교육수준이 높지 않은 노인집단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송정선, 1996; 최성제, 1986). 집안일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경향은 여가활동에서도 드러나는데 여가활동 순위를 보면 남성은 노인정, 노인학교, 화투, 장기, 라디오 청취, 친척 및 친구 방문하기이지만. 여성노인은 집보기, 집안일, 친구 및 친척 방문, 라디오 청취, 손자녀 돌보기 순으로 나타났다(이세원, 2004).

두 번째, 여성노인들은 남성노인들과 달리 전통적으로 돌봄 제공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왔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수발을 받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많은 여성노인들은 건강이 허락하는 한 집안일을 하거나 손자녀를 돌보는 일을 지속한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을 할 수 없다’고 응답한 노인은 노년초기에는 88.75%였다가 중기로 오면 75.28%, 후기로 오면 49.19%로 떨어지고 있다. 80세 이상의 노인 중 28.4%가 혼자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다고 응답했고, 혼자서는 병원에 다닐 수 없다고 응답한 80세 이상 노인은 40.4%에 달했다(장미혜외, 2012). 이번 연구에서는 노인들이 혼자서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시설에 입소하지 못하고 가족의 돌봄없이 혼자서 생활하는 여성노인들을 대상으로 빈곤의 실태를 파악하고 빈곤의 원인에 대해서 추정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노인전체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빈곤원인 추정이나 빈곤실태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진전되어 있으나(석재은·임정기, 2006; 김경아 2008,

여유진외, 2012), 노인빈곤연구가 보다 진전되기 위해서는 남성노인과 여성노인의 성별 차이 노령전기부터 후기까지의 여러 연령 구성의 차이, 경제적인 자산상태나 건강상태, 가족과의 동거여부나 가족관계가 다른 다양한 노인집단별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제2장 젠더적 시각에서 본 공적소득보장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제1절 젠더적 시각에서 본 국민연금의 현황과 문제점

제2절 여성노인의 시각에서 본 기초노령연금의 현황과 문제점

제3절 젠더적 시각에서 본 노후 사회서비스의 현황과 문제점

2

젠더적 시각에서 본 <<공적소득보장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제1절 젠더적 시각에서 본 국민연금의 현황과 문제점

1. 노후소득보장체계 개요

한국의 현행 노후소득보장체계는 기초노령연금·국민연금·퇴직·개인연금의 다층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2-1] 한국의 현행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

3층	개인연금		
2층	특수 지역 연금 (24만명, 4%)	퇴직연금	
1층		국민연금(180만명, 30%)	
0층	기초노령연금(393만명, 70%)		
빈곤층	기초생활보장제도(38만명, 7%)		
공무원 등		민간근로자	자영자

공적연금으로서는 1988년 도입되어 1999년 도시지역가입자에 대한 적용확대를 통해 전 국민 연금화를 달성한 국민연금이 중추적 제도로 존

재하며, 2008년부터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1인 1연금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하위 70% 노령계층에게 기초노령연금이 도입, 시행되고 있다.

국민연금은 넓은 사각지대와 낮은 급여수준이 문제가 되고 있다. 가입자 2,033만명중 납부예외자 467만명(22.9%), 장기체납자 106만명(5.2%) 등으로 인하여 저소득자 중심으로 사각지대가 존재하며, 65세 이상 수급률은 30% 수준이다. 65세 이상 노인 국민연금 수급률에 대한 장기전망도 2015년 35.7%, 2020년 41.0%, 2030년 50.2%에 머물고 있어 보편적인 노후소득보장제도로써 한계가 있다(보건복지부, 2013).

보장수준의 적정성 측면에서 노령연금 평균 급여가 2012년 말 기준으로 약 31만원으로 1인 가구 최저생계비(57만원)에 못 미치고 있다. 국민연금 수급자 중 약 86%가 50만원이하로 수급하고 있다. 국민연금 수급자의 가입연수가 길지 않아 현행 국민연금의 노후 적정소득 보장제도로써의 역할은 제한적이다.

사적연금으로는 퇴직연금, 개인연금 제도가 도입되어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은 가입률이 낮으며, 대규모 사업장 근로자 및 고소득층에 집중되어 있다. 퇴직연금의 경우, 2005년 도입 이후 점차 가입이 확대되고 있으나, 전체 가입률이 전체 상용근로자 중 46% 수준으로 높지 않다. 대규모 사업장에서 주로 가입 중이며, 퇴직급여로 연금보다 일시금을 선호하는 양상이 뚜렷하다. 퇴직연금 도입률은 300인 이상 사업장의 73.3%, 300인 미만 사업장의 13.3% 수준이다. 그리고 연금 선호율은 3.2%, 일시금 선호율은 96.8%에 이르고 있다. 개인연금의 경우 1994년 도입 이후 성장 추세이나, 가입률이 낮고 고소득층에 집중되어 있다. 가입률이 21.4%로 낮은 편이며, 고소득 33.5%, 중간소득 21.3%, 저소득 7.2%로 고소득층에 집중되어 있다(보험연구원, 2012).

마지막으로 연금급여에도 불구하고 빈곤한 노령계층을 위해 공공부조 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보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소득인정액 수준이 최저생계비 미만으로 빈곤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 등으로 인해 기초생활을 보장받지 못하는 빈곤 노인이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역시 노령계층의 빈곤에 대응한 최종안전망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2. 성별 국민연금제도 가입 현황과 문제점

성별 국민연금 가입자를 살펴보면, 남성이 1,188만명, 여성이 865만명이 가입하고 있어, 가입자의 성별 구성비는 각각 57.9%와 42.1%이다. 가입종별로는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젠더 격차가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오히려 여성가입자가 남성가입자에 비해 더 많았다(표 2-1 참조).

〈표 2-1〉 가입종별·성별 가입자 현황(2013.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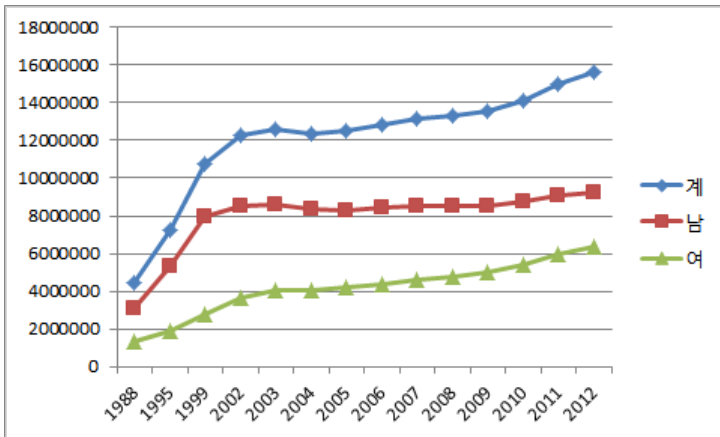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성별	계		사업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임의 가입자	임의계속 가입자
	인원	비율				
계	20,540,139	(100.0)	11,769,413	8,478,011	188,544	104,171
남자	11,883,175	(57.9)	7,178,783	4,644,831	30,278	29,283
여자	8,656,964	(42.1)	4,590,630	3,833,180	158,266	74,888

자료: 국민연금공단(2013). 국민연금 공표통계. 2013.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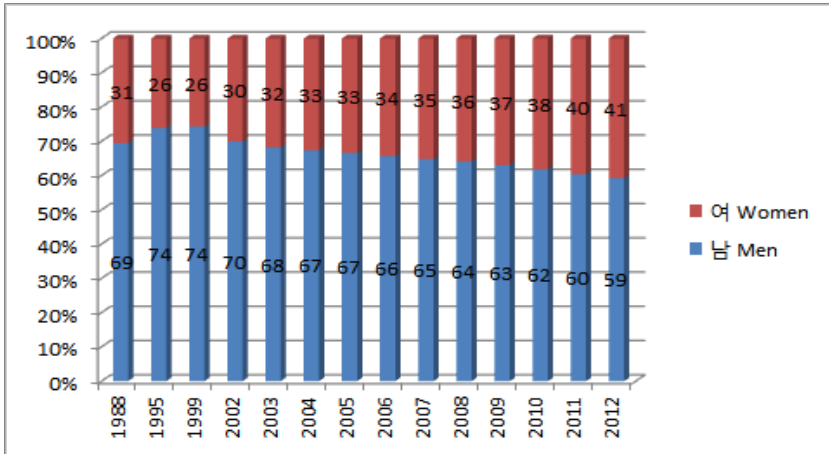
성별 국민연금 가입자수 추이를 보면, 제도초기부터 지금까지 여성가입자가 남성가입자에 비해 현저히 작은 가입자수를 보이고 있지만,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으로 올수록 가입자수에 있어 젠더격차가 감소하는 양상을 발견할 수 있다는 점이다(그림 2-2 참조).

[그림 2-2] 성별 국민연금 가입자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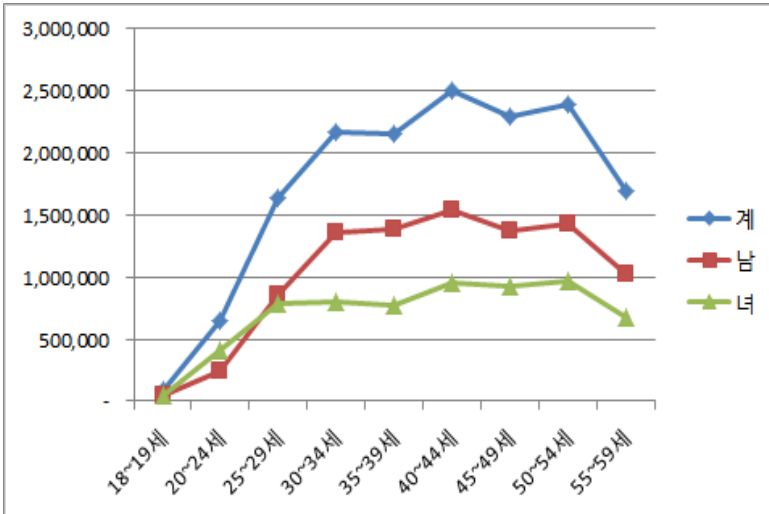
성별 국민연금 가입자 비중 추이에서도 가입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간씩 증가해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제도초기 26% 수준에서 최근 41%로 15% 포인트 가까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라 하겠다(그림 2-3 참조).

[그림 2-3] 성별 국민연금 가입자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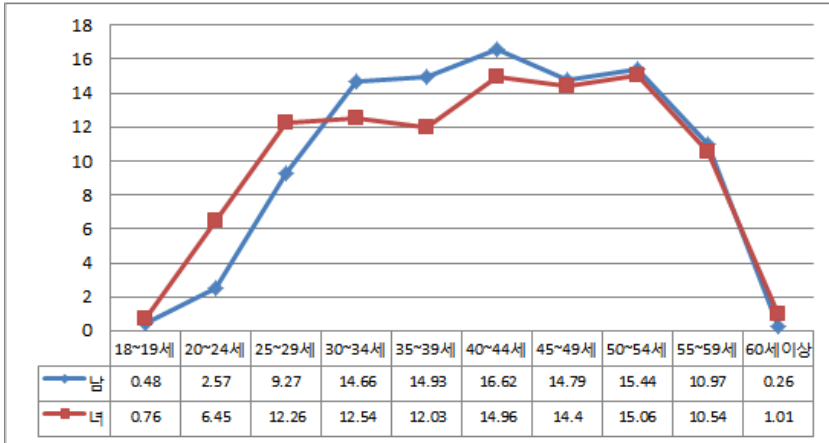
한편, 연령별 성별 국민연금 가입자수를 비교해보면, 29세 이하에서는 여성가입자가 남성가입자보다 많거나 비슷하지만 출산 및 육아기라 할 수 있는 30세 이후부터는 가입자수에서 상당한 젠더격차를 보이며 낮은 가입자수를 보이고 있으며, 육아기 이후 연령대에도 가입자수의 젠더격차가 크게 개선되는 양상을 보이지 않는다. 45세 이후에 가입자수의 젠더 격차가 약간 완화되는 모양을 보이지만, 그 완화정도는 크지 않고 가입자수에 있어 상당한 젠더격차를 유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그림 2-4 참조).

[그림 2-4] 연령별 성별 국민연금 가입자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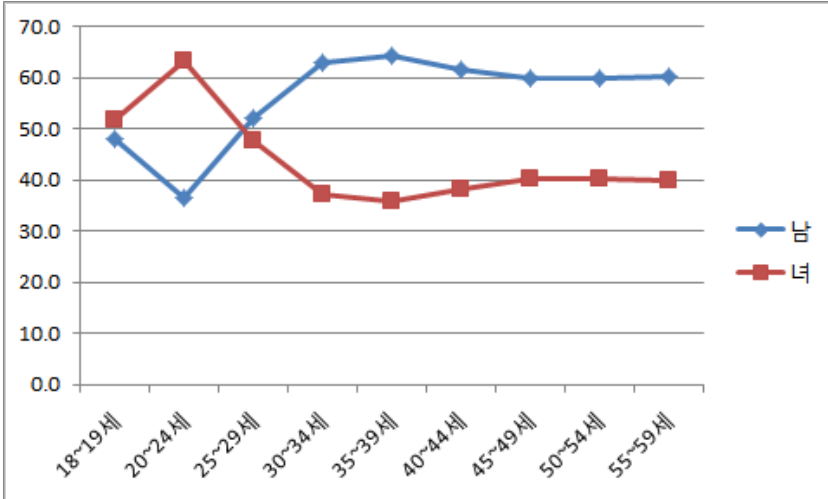
연령별 성별 국민연금 가입자 비중을 보면, 남성은 30세에서 54세까지 비교적 평탄한 분포를 보이는 반면, 여성은 경제활동의 M자형 곡선이 국민연금의 연령별 가입자 분포에도 그대로 나타나는 양상을 보인다. 여성의 경우 자녀출산 및 양육기를 지난 40세 이후부터 54세까지가 가장 많은 가입자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5 참조).

[그림 2-5] 연령별 성별 국민연금 가입자 비중(1)



이와 같은 남성과 여성 간의 연령별 국민연금 가입양상의 차이는 연령별 국민연금 가입자의 성별 비중을 보면 더욱 명확하다. 25세 이하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가입자 중 차지하는 비중이 더 크지만, 30세를 넘어서면 부터는 남성이 가입자의 비중이 확연히 커지는 양상이 명확하다. 40세 부터는 여성가입자 비중이 조금 증가하지만, 여전히 남성가입자 비중 60% 수준에 비해 낮은 40%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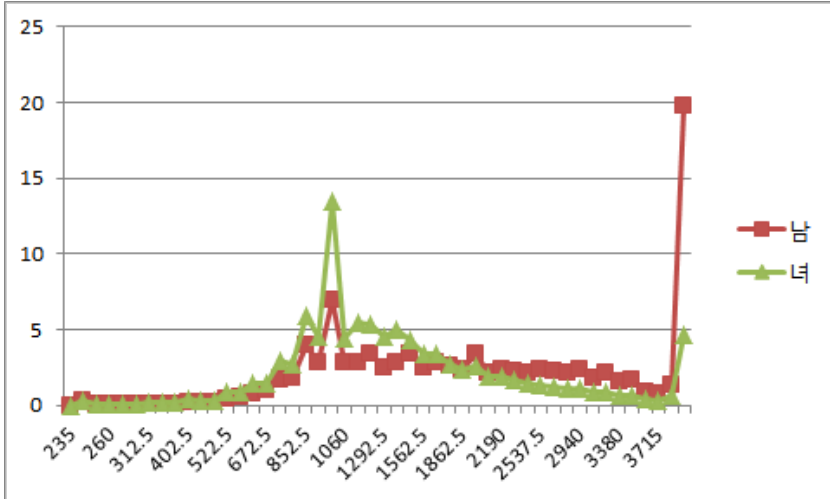
[그림 2-6] 연령별 국민연금 가입자의 성별 비중(2)



생애주기에 걸친 국민연금의 가입양상에서의 젠더격차가 국민연금 수급권 확보에서의 젠더격차를 야기하는 중요한 하나의 원인이라면, 연금에서의 젠더격차를 야기하는 다른 하나의 원인은 보험료기준소득에서의 젠더격차로 나타나는 연금급여수준의 젠더격차이다. 보험료기준소득은 단순히 보험료 부과소득기준에 그치지 않고 연금급여의 기준소득이 되기 때문에 보험료 부과기준의 젠더격차는 연금급여수준에서의 젠더격차로 연결된다.

성별 보험료 기준소득 분포를 보면, 남성의 경우 최고소득인 398만원에 남성이가입자의 20%가 집중되어 있는 반면, 여성의 경우 중위소득인 106만원 수준에 약 14%가 집중되어 있다(그림 2-7 참조).

[그림 2-7] 성별 보험료기준소득 분포 비교



실제로 성별 평균 보험료기준소득을 비교해 보면, 남성은 202만원인 데 비해 여성은 153만원으로 나타나, 남성의 평균보험료기준소득을 100으로 볼 때, 여성의 평균보험료기준소득의 상대적 지수는 69.5 수준으로 나타났다(표2-2 참조). 이와 같이 보험료기준소득에서의 젠더격차는 보험료 기여에서의 젠더격차는 물론이지만 연금급여에서의 젠더격차를 결과하게 됨으로써 여성의 저연금화 문제를 낳게 된다.

〈표 2-2〉 성별 평균 보험료기준소득

(단위: 원, %)

	계	남	녀
평균 보험료기준소득	1,931	2,206	1,533
상대적지수(남성소득=100)	87.5	100.0	69.5

주: 필자가 계산

자료: 국민연금공단(2013). 2012년 국민연금통계연보. 2013. 6.

3. 성별 국민연금제도 수급 현황과 문제점

국민연금 수급자는 2012년말 현재 184만명 수준으로, 이는 65세 이상인구 대비 30.7% 수준이다. 이를 성별 국민연금 수급자로 구분해보면, 남성은 112만명인데 비해, 여성은 71만명 수준이다. 각각 성별 65세 이상 인구 대비 수급률을 비교해 보면, 남성의 국민연금 수급률은 45.5%인데 비해 여성은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20.3% 수준이다. 즉, 남성의 국민연금 수급률이 여성의 국민연금 수급률에 2.24배 수준이다(표 2-3 참조).

〈표 2-3〉 성별 국민연금 수급률(2012.12)

(단위: 명, %)

	계	남	녀
인구	5,980,060	2,465,568	3,514,492
수급자	1,835,622	1,121,314	714,308
비율	30.70	45.5	20.3

자료: 국민연금공단(2013). 2012년 국민연금통계연보. 2013. 6.

국민연금의 수급자 현황을 보면, 2013년 7월 기준으로 남성은 203만명, 여성은 134만명 수준이다. 노령연금 수급자는 남성이 193만명인 데 비해 여성은 86만명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2.2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령연금 중에서도 남성은 여성에 비해 완전연금수급자에서 여성수급자와의 젠더격차가 더욱 크게 나타났으며, 가입기간이 짧은 특례연금수급자에서는 상대적으로 젠더격차가 작게 나타났다.

한편, 유족연금과 분할연금에서는 여성의 수급권을 배려한 제도의 설계의도와 마찬가지로 여성수급자수가 남성수급자수보다 훨씬 많았다. 유족연금은 여성수급자수가 남성수급자수의 12.5배에 이르고 있고, 분할연금도 여성수급자수가 남성수급자수의 7.4배에 이르고 있다.

〈표 2-4〉 성별, 연령별 연금수급자 현황(2013.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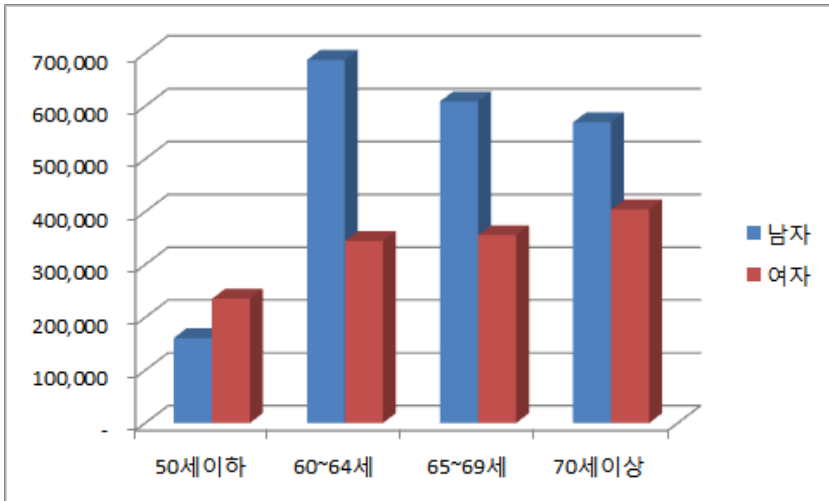
(단위: 명)

연령별 수급자		계	50세 이하	60~64세	65~69세	70세 이상	
계	계	3,364,992	396,117	1,031,613	964,173	973,089	
	남자	2,025,889	160,951	687,062	608,774	569,102	
	여자	1,339,103	235,166	344,551	355,399	403,987	
노 령	소계	계	2,792,326	150,391	937,178	871,655	833,102
		남자	1,929,306	105,919	676,615	598,785	547,987
		여자	863,020	44,472	260,563	272,870	285,115
	가입 기간 20년~	소계	123,365	887	114,578	7,894	6
		남자	113,151	887	104,883	7,375	6
		여자	10,214	0	9,695	519	0
	가입 기간 10~19	소계	704,776	683	512,939	175,926	15,228
		남자	518,562	683	358,988	146,221	12,670
		여자	186,214	0	153,951	29,705	2,558
	조기	소계	388,475	148,821	166,749	49,045	23,860
		남자	275,861	104,349	118,854	34,425	18,233
		여자	112,614	44,472	47,895	14,620	5,627
	특례	소계	1,566,381	-	137,784	635,830	792,767
		남자	1,020,616	-	93,605	410,362	516,649
		여자	545,765	-	44,179	225,468	276,118
	분할	소계	9,329	-	5,128	2,960	1,241
		남자	1,116	-	285	402	429
		여자	8,213	-	4,843	2,558	812
장애	소계	69,854	48,791	9,669	7,071	4,323	
	남자	59,432	42,485	7,855	5,734	3,358	
	여자	10,422	6,306	1,814	1,337	965	
유족	소계	502,812	196,935	84,766	85,447	135,664	
	남자	37,151	10,426	2,592	4,255	17,757	
	여자	465,661	184,388	82,174	81,192	117,907	

자료: 국민연금공단(2013). 국민연금 공표통계. 2013. 9.

국민연금의 연령별 성별 수급자수를 비교해 보면, 유족연금 수급자가 대부분인 50세 이하에서는 여성수급자수가 남성수급자수보다 오히려 많지만, 60~64세에서 남성수급자수와 여성수급자수의 격차가 가장 크며, 70세 이상에서 남성수급자수와 여성수급자수 간 격차가 가장 작다. 이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여성노인인구의 절대수가 더 많아지는 데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림 2-8] 연령별 성별 수급자수 비교



국민연금 급여수준은 제도의 역사가 아직 짧아서 가입기간이 길지 않은 관계로 대부분의 수급자가 매우 낮은 급여수준에 집중 분포되고 있다. 전체 수급자의 35.8%가 20만원 미만의 연금을 받고 있으며, 수급자의 63.0%가 30만원 미만의 연금을 받고 있다. 또한 수급자의 77.4%가 40만원 미만의 연금을 받고 있으며, 수급자의 84.9%가 50만원 미만의 연금을 받고 있다.

성별 국민연금액의 분포를 비교해보면, 남성은 28.1%가 20만원 미만의 연금을 받는데 비해, 여성은 무려 47.5%가 20만원 미만의 연금을 받고 있다. 30만원 미만의 연금을 받는 수급자 비율은 남성의 경우 51.6%인데 비해, 여성은 80.7%로 나타났으며, 40만원 미만의 연금을 받는 수급자 비율은 남성의 경우 67.7%이고, 여성은 92.4%로 나타났다(표 2-5 참조).

〈표 2-5〉 성별 국민연금급여액 분포(2013.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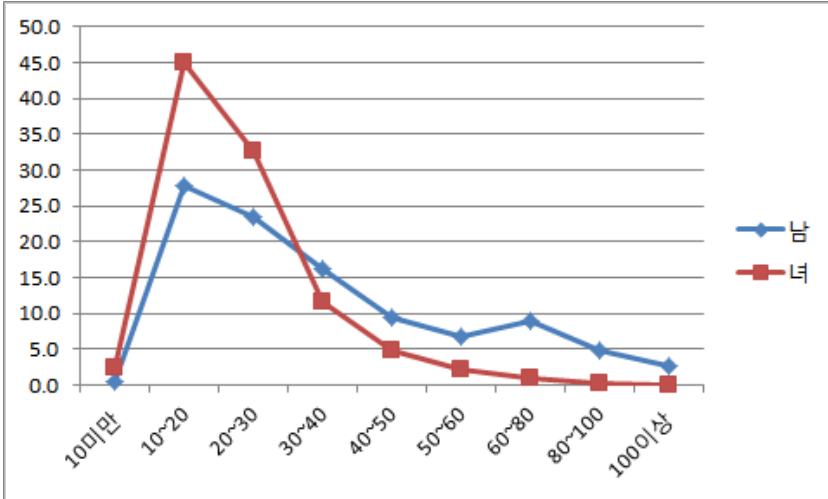
(단위: 명, %)

수급자		계	금액 (월급여, 만원)								
			10미만	10~20	20~30	30~40	40~50	50~60	60~80	80~100	100이상
계	계	3,364,992	40,665	1,165,722	914,692	483,058	253,275	162,300	193,809	99,331	52,140
	남자	2,025,889	7,872	562,049	477,063	326,352	188,362	134,346	181,045	97,154	51,646
	여자	1,339,103	32,793	603,673	437,629	156,706	64,913	27,954	12,764	2,177	494
비율	계	100.0	1.2	34.6	27.2	14.4	7.5	4.8	5.8	3.0	1.5
	남자	100.0	0.4	27.7	23.5	16.1	9.3	6.6	8.9	4.8	2.5
	여자	100.0	2.4	45.1	32.7	11.7	4.8	2.1	1.0	0.2	0.0

자료: 국민연금공단(2013). 국민연금 공표통계. 2013. 9.

성별 국민연금급여액 분포를 비교한 그림을 보면, 남성, 여성 모두 10~20만원에 가장 많은 수급자가 분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여성은 남성에 비해 30만원 미만에서 남성보다 높은 비중으로 분포하는 집중적으로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9] 성별 국민연금급여액별 분포 비교



연금종류별 국민연금 평균급여액은 노령연금의 경우 특례노령연금을 제외한 경우 32만원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특례노령연금은 20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편, 여성수급자수가 많은 유족연금은 25만원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분할연금은 16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다(표 2-6 참조).

성별 연금지급액을 보면, 노령연금의 경우 남성의 연금수준을 100이라 할 때 여성의 상대적 연금수준은 59.7 수준이었으며, 유족연금은 여성의 상대적 연금수준이 145.4 였다. 노령연금의 연금지급액을 12월로 나누어 월지급액 수준으로 비교해보면, 남성은 32만원 수준이며, 여성은 19만원 수준이다(표 2-7 참조, 그림 2-10 참조).

〈표 2-6〉 연금종류별 월평균 지급액

(단위: 원)

구분	계 (특례제외)	노령연금						
		소계 (특례제외)	20년 이상	10~19년	소득활동	조기	특례	분할
최고	1,658,690	1,658,690	1,658,690	1,639,810	1,425,960	1,385,960	950,890	650,860
평균	312,330 (407,550)	321,470 (474,010)	844,810	412,690	519,750	476,550	203,180	160,280
구분	장애연금						유족연금	
최고	소계	1급		2급		3급		
평균	1,327,510	1,327,510		1,085,860		807,460		810,240
	420,040	573,910		455,500		352,570		247,980

주: 해당월 지급자의 기본+부양가족연금월액 기준이며, 중복급여 및 동순위 조정전 금액임. 사회보장협정기간 보유자는 최고, 최저 연금액 대상에서 제외, 계 및 노령소계 평균액 산정시 분할연금 제외

자료: 국민연금공단(2013). 국민연금 공표통계. 2013. 9.

〈표 2-7〉 연금종류별 성별 연지급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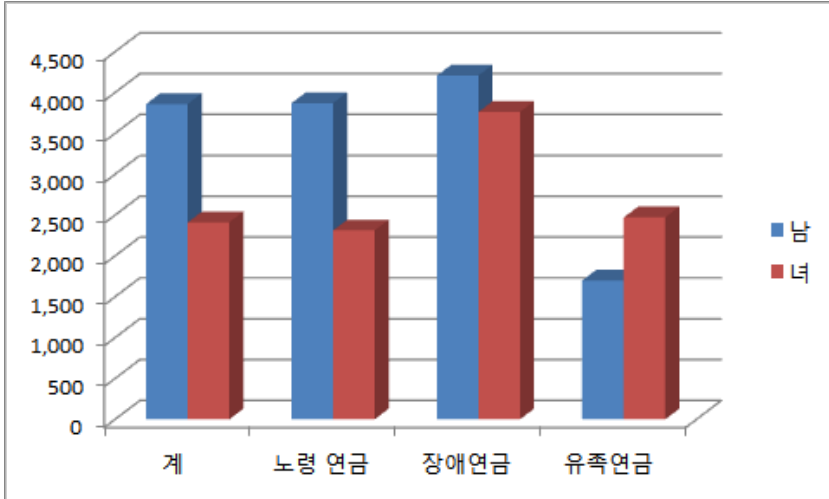
(단위: 천원)

	계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장애 일시 보상금	반환 일시금	사망 일시금
계	3,283	3,394	4,141	2,410	12,108	3,671	1,690
남	3,860	3,870	4,207	1,700	12,451	4,340	1,564
여	2,411	2,312	3,762	2,472	10,400	2,917	1,821
남성대비 여성급여 수준	62.5	59.7	89.4	145.4	83.5	67.2	116.5

주: 필자가 계산

자료: 국민연금공단(2013). 2012년 국민연금통계연보. 2013. 6.

[그림 2-10] 성별 국민연금급여액 비교



4. 성별 국민연금제도 잠재적 사각지대와 문제점

국민연금 가입가능 해당 연령인 18~59세 전체 인구 중 국민연금 잠재적 수급권자 및 사각지대를 분석하였다. 2013년 7월 기준 18~59세 총인구는 약 3천 2백만명이며, 경제활동인구는 70% 수준인 약 2천 3백만명이고, 공적연금적용대상은 약 68% 수준인 2천 2백만명이다. 국민연금 적용대상 약 2천 1백만명 중에서 약 464만명이 납부예외자이며, 약 125만명이 장기체납자이며, 보험료를 납부하며 국민연금의 잠재적 수급권자로 분류될 수 있는 경우는 18~59세 인구집단 대비 45.3%인 1,465만명이다. 여기에 공적직역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141만명을 합하면, 공적연금의 잠재적 수급권자는 약 1,606만명으로 18~59세 인구 집단 대비 48.2% 수준이다. 이는 다시 말해 공적연금의 잠재적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는 집단 규모가 18~59세 인구집단의 절반이 넘는 51.8%에 해당하는 1,625만명에 이를 정도로 광범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2-11] 전체 18~59세 국민연금 잠재적 수급권자 및 사각지대(2013. 7)

18~59세 총인구 32,316천명(100.0%)					
비경제 활동인구 9,732천명	경제활동인구 22,584천명(69.9%)				
	공적연금 비적용자 630천명	공적연금적용대상 21,954천명(67.9%)			
		국민연금 적용대상 20,540천명(63.6%)			공적특수 직역연금 1,414천명
		납부 예외자 4,639천명	소득신고자 15,902천명(49.2%)		
			장기 체납자 1,253천명	보험료 납부자 14,648천명	
30.1%	2.0%	14.4%	3.9%	45.3%	4.4%
잠재적 사각지대 16,254천명 (51.8%)				잠재적 수급권자 16,062천명 (48.2%)	

이러한 공적연금의 사각지대 규모를 남성과 여성, 성별로 구분해보면 다음과 같다. 남성집단과 여성집단의 18~59세 인구집단은 각각 1,656만명과 1,576만명으로 여성집단이 약 80만명 정도 작다. 성별 경제활동인구 비율은 남녀 각각 79.5%, 59.8%로 남성과 여성의 경제활동인구 비율 간 격차가 19.7% 포인트에 이를 정도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남성에 비해 현격히 낮다. 이에 따라 공적연금 적용대상 규모도 남녀 각각 1,287만명, 908만명으로 387만명 정도 차이가 난다.

남성의 경우 국민연금적용대상 인구 1,188만명 중 납부예외자가 254만명이고, 장기체납자가 73만명이어서 실제로 보험료를 납부하며 국민연금 잠재적 수급권자로 분류할 수 있는 경우는 862만명으로 18~59세 남성 인구 대비 52.0% 수준이다. 이에 비해 여성의 경우에는 국민연금적용대상 인구 865만명 중 납부예외자가 210만명이고, 장기체납자가 53만명이

어서 실제로 보험료를 납부하며 국민연금 잠재적 수급권자로 분류할 수 있는 경우는 603만명으로 18-59세 여성인구 대비 38.3% 수준이다.

국민연금 잠재적 수급권자에 공적직역연금 가입자를 감안하면, 남녀 각각의 잠재적 공적연금수급자 비율은 58.0%와 41.0%이다. 남성과 여성의 공적연금수급자 비율이 17% 포인트 차이를 보이는 것이며, 인구수로는 약 315만명의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인구수 차이는 결국 대부분이 경제활동인구의 격차로부터 비롯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잠재적 공적연금 수급의 사각지대는 각각 해당인구 대비 42%와 59%로 나타나, 여성이 남성에 비해 사각지대 규모가 17% 포인트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2-12] 남성 18~59세 국민연금 잠재적 수급권자 및 사각지대(2013. 7)

18~59세 남성 인구 16,559천명(100.0%)					
비경제 활동인구 3,399천명	경제활동인구 13,160천명(79.5%)				
	공적연금 비적용자 287천명	공적연금적용대상 12,873천명(77.7%)			
		국민연금 적용대상 11,883천명(71.8%)			공적특수 직역연금 990천명
		납부 예외자 2,542천명	소득신고자 9,342천명(56.4%)		
			장기 체납자 725천명	보험료 납부자 8,617천명	
20.5%	1.7%	15.3%	4.4%	52.0%	6.0%
잠재적 사각지대 6,952천명 (42.0%)				잠재적 수급권자 9,607천명 (58.0%)	

[그림 2-13] 여성 18~59세 국민연금 잠재적 수급권자 및 사각지대(2013. 7)

18~59세 남성 인구 15,757천명(100.0%)					
비경제 활동인구 6,332천명	경제활동인구 9,425천명(59.8%)				
	공적연금 비적용자 344천명	공적연금적용대상 9,081천명(57.6%)			
		국민연금 적용대상 8,657천명(54.9%)			공적특수 직역연금 424천명
		납부 예외자 2,097천명	소득신고자 6,560천명(41.6%)		
			장기 체납자 528천명	보험료 납부자 6,031천명	
40.2%	2.2%	13.3%	3.4%	38.3%	2.7%
잠재적 사각지대 9,302천명 (59.0%)				잠재적 수급권자 6,455천명 (41.0%)	

이와 같이 국민연금 사각지대는 남성과 여성 간에 큰 격차를 보이며, ‘공적연금 사각지대의 여성화’가 나타나는 이유로는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하나는 국민연금이 소득활동에 기반한 보험료 납입기간에 비례하여 수급자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경제활동참여율 및 참여의 질에 있어서 젠더 격차가 공적연금 사각지대의 여성화를 만드는 큰 기여요인이 되고 있다. 다른 하나는 국민연금의 제도규칙에서 가족돌봄에 대한 보상에 기반한 연금크레딧 인정 등 젠더화된 성별 분업구조를 연금제도의 수급권에 충분히 반영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 공적연금 사각지대의 여성화가 나타나게 된다. 또한 비슷한 맥락에서 국민연금 수급권 보장이 보험료 납입기간에 정비례하여 설계되고 거주 혹은 시민권에 기반하여 무조건적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부분이 국민연금 수급권 보장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즉 젠더화된 성별 분업구조를 국민연금 제도규칙을 통하여 완화 혹은 무화하는 장치가 없거나 미약한 것이 공적연금 사각지대의 여성화로 귀결되게 만드는 이유 중 하나이다.

제2절 여성노인의 시각에서 본 기초노령연금의 현황과 문제점

1. 기초노령연금 개요

기초노령연금은 노령계층의 소득보장을 위해 국민연금으로부터 배제되어 있는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중하위 70% 노령계층에게 국민연금가입자 평균소득의 일정율(5%~10%)을 급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2007년 4월 기초노령연금법이 제정되었으며, 2008년 7월부터 제도가 시행되었다.

기초노령연금은 2008년 1월 70세 이상 노인의 60%, 2008년 7월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의 60%, 2009년 1월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의 70%로 확대되어 적용되어 왔다.

〈표 2-8〉 기초노령연금의 수급자 확대 과정

단 계	기 간	대 상	지급인원	수급률
1단계	'08.1~6월	70세 이상 노인의 60%	194만명	61%
2단계	'08.7~12월	65세 이상 노인의 60%	290만명	57.3%
3단계	'09.1월~	65세 이상 노인의 70%	391만명	65.4%

자료: 보건복지부(2013). 2012년 기초노령연금.

기초노령연금의 수급 대상자 및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수급대상은 65세 이상 전체 노인인구 중 중하위 소득계층 70% 이다. 2012년 기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는 약 393만명 수준이다.

〈표 2-9〉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현황

65세 이상 노인수	수급자수					수급률
	계	단독 가구	부부가구			
			소계	1인 수급	2인 수급	
5,980,000	3,933,095 (100.0%)	2,067,626 (52.6%)	1,865,469 (47.4%)	338,926 (8.6%)	1,526,543 (38.8%)	65.8%

자료: 보건복지부(2013). 2012년 기초노령연금.

중하위 70% 소득계층의 기준을 설정하기 위하여, 노인가구의 소득 및 재산수준을 고려하여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인정액이 하위 70%에 해당 하는 금액을 설정하고 있다.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그림 2-14〕 소득인정액 산출방식

소득인정액= 월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소득환산액 * 월소득평가액= 소득항목별 합계 - 상시근로 소득공제 * 재산의 월소득환산액= [(일반재산-기본재산) + (금융재산- 2,000만원)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연 5%) ÷ 12 * 소득공제(만원): 근로소득 45만원 * 재산공제(만원): 금융재산 공제 : 2,000만원 주거공제 : 대도시 1억 800,만원 중소도시 6,800만원, 농어촌 5,800만원	
---	--

2012년 기준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83만원, 부부가구 132.8만원 이하 가구이다.

〈표 2-10〉 기초노령연금 가구유형별 수급 선정기준액

(단위: 만원)

구 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2년 대비
노인단독가구	40	68	70	74	78	83	5↑
노인부부가구	64	108.8	112	118.4	124.8	132.8	8↑

자료: 보건복지부(2013). 2012년 기초노령연금.

기초노령연금 급여수준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A값)의 5% 수준이다. 기초노령연금 부칙에는 2028년까지 A값의 10%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되, 구체적인 시기 및 방법은 국회 내 연금제도개선위원회 설치·논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기초노령연금법 부칙8385호 제4조의2). 한편, 배우자가 없는 단독가구와 부부가구로 구분하고, 부부가구는 다시 1인 수급가구와 2인 수급가구로 나누어, 부부가 동시에 수급하는 2인 수급가구의 경우 단독가구 급여의 2배 금액에서 20% 감액하여 지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3년 4월에서 2014년 3월까지 적용되는 급여액은 단독가구 96,800원, 부부 154,900원이다. 또한 소득인정액 초과부분 감액 지급의 경우, 단독가구는 2만원씩, 부부가구는 4만원씩 차감한다.

〈표 2-11〉 기초노령연금 급여액 추이

(단위 : 만원)

구 분	'08년~'09.3	'09.4~'10.3	'10.4~'11.3	'11.4~'12.3	'12.4~'13.3	'13.4~'14.3
A값	167	175	179	182	189	194
연금액 (부부)	8.4 (13.4)	8.8 (14)	9 (14.4)	9.1 (14.6)	9.5 (15.1)	9.7 (15.5)

자료: 보건복지부(2013). 2012년 기초노령연금.

기초연금의 재정은 전액 조세로 조달되며, 국비와 지방비가 매칭으로 지원되며. 국비의 경우 기초 지자체별 노인인구 비율과 재정여건 등을 고려, 40%~90% 범위 내에서 국고 보조금을 차등 지원한다. 지자체마다 국비와 지방비의 분담비율이 상이하지만, 평균적으로 국비와 지방비의 분담비율은 75%대 25% 수준이다. 따라서 2013년 소요예산은 4.3조원이며, 국비 부담분은 3.2조원, 지방비는 1.1조원이다.

〈표 2-12〉 기초노령연금 재정 추이

(단위 : 만원)

구 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총소요	22,094	34,106	37,110	37,904	39,725	43,125
국 비	15,908	24,659	27,202	28,223	29,636	32,072
지방비	6,186	9,447	9,908	9,681	10,089	11,053

자료: 보건복지부(2013). 2012년 기초노령연금.

2. 기초노령연금 성별 수급현황

기초노령연금은 중하위 70% 노령계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중하위 소득계층에 분포되어 있는 여성 노령층의 수급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기초노령연금의 성별 수급현황을 살펴보면, 남성 노인이 약 139만명 수급하고 있는 반면, 여성 노인은 255만명이 수급하고 있다.

수급자의 성별 분포로 보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중 남성노인이 41.2%, 여성노인이 58.8%를 차지하고 있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여성 수급률은 더욱 높아져, 80세 이상에서는 수급자 중 여성노인의 비율이 7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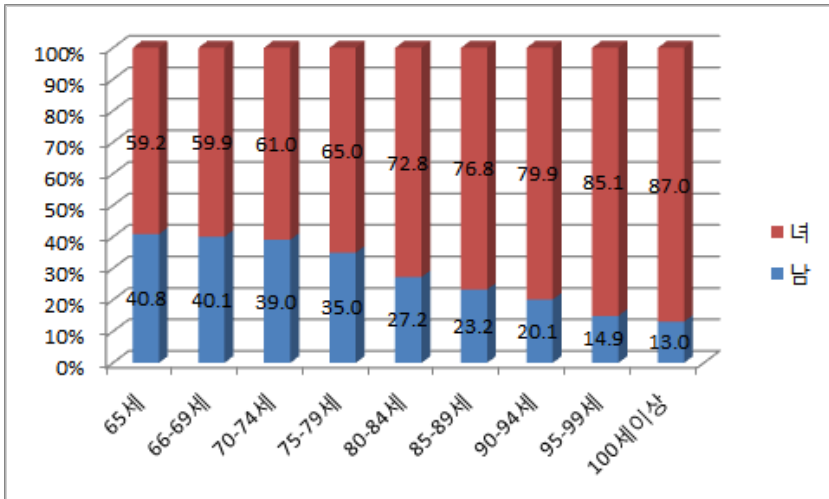
56 여성노인의 노후빈곤 현황 및 대응정책

〈표 2-13〉 성별 연령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현황(2012. 12)

	계	65세	66~69세	70~74세	75~79세
계	3,933,095	213,127	776,943	1,173,237	879,415
남	1,386,412	86,997	311,275	457,780	307,391
여	2,546,683	126,130	465,668	715,457	572,024
	80~84세	85~89세	90~94세	95~99세	100세 이상
계	523,884	253,840	91,038	18,721	2,890
남	142,538	58,948	18,314	2,792	377
여	381,346	194,892	72,724	15,929	2,513

자료: 보건복지부(2013). 2012년 기초노령연금.

[그림 2-15] 연령별 성별 상대적 수급비율 비교(자료: 필자가 작성)



3. 국민연금 및 기초노령연금의 성별 수급 현황과 문제점

기초노령연금의 도입으로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얼마나 보완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국민연금 및 공적직역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성별 수급현황 및 수급률을 분석하였다.

〈표 2-14〉 성별 공적연금 및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및 수급률(2012. 12)

	인원(명)		
	계	남	녀
전체노인인구	5,980,060	2,465,568	3,514,492
국민연금수급자	1,835,622	1,121,314	714,308
공적직역연금수급자	463,931	324,751	139,180
기초노령연금수급자	3,933,095	1,386,412	2,546,683
공적연금 및 기초노령연금 동시수급자	1,024,386	717,070	307,316
공적연금 및 기초노령연금수급자	5,208,262	2,115,407	3,092,854
	남녀 구성비(%)		
	계	남	녀
전체노인인구	100	41.2	58.8
국민연금수급자	100	61.1	38.9
공적직역연금수급자	100	70.0	30.0
기초노령연금수급자	100	35.2	64.8
공적연금 및 기초노령연금 동시수급자	100	70.0	30.0
공적연금 및 기초노령연금수급자	100	40.6	59.4
	전체 노인인구 대비 수급률(%)		
	계	남	녀
국민연금수급자	30.7	45.5	20.3
공적직역연금수급자	7.8	13.2	4.0
기초노령연금수급자	65.8	56.2	72.5
공적연금 및 기초노령연금 동시수급자	17.1	29.1	8.7
공적연금 및 기초노령연금수급자	87.1	85.8	88.0

자료: 국민연금공단(2013) 2012년 국민연금 통계연보; 보건복지부(2013) 2012년 기초노령연금; 통계청 홈페이지 kosis 추계인구.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필자가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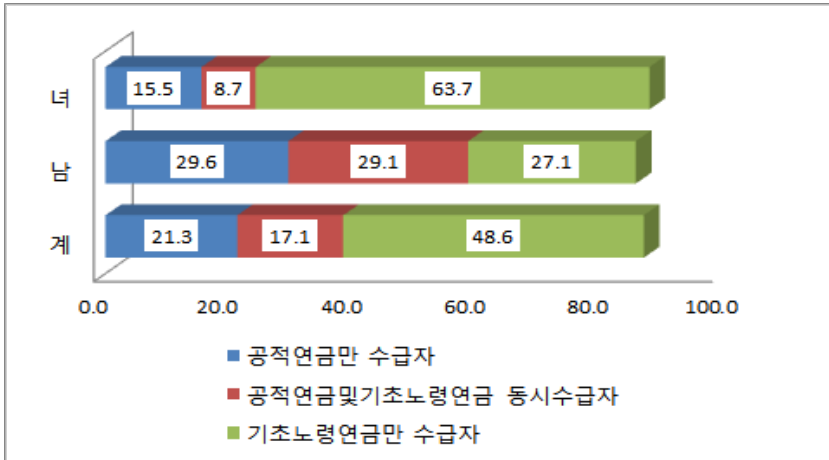
국민연금수급자 중 남성노인은 112만 1천명이며, 여성은 71만 4천명으로, 성별 수급자 구성비는 61.1% 대 38.9%이다. 반면 기초노령연금수급자 중 성별 수급자 구성비는 35.2% 대 64.8%이다.

또한 해당 성별 노인인구 대비 국민연금 수급률의 경우, 남성노인은 45.5%, 여성노인은 20.3%로 남성노인이 여성노인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국민연금 수급률을 보이고 있다. 반면 성별 노인인구 대비 기초노령연금 수급률의 경우, 남성노인은 56.2%, 여성노인은 72.5%로 여성노인이 남성노인에 비해 1.3배 높은 기초노령연금 수급률을 보였다.

이와 같이 볼 때, 각출 국민연금은 남성 친화적 연금제도이며, 무각출 기초노령연금은 여성 친화적 연금제도로 기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 성과와 밀접히 연계된 국민연금과 낮은 소득수준과 밀접히 연계된 기초노령연금의 특성상 예견된 것이었지만,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간에 성별 수급 분리를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기초노령연금과 공적연금을 동시에 받고 있는 수급자도 남성노인은 71만 7천명인데 비해, 여성노인은 30만 7천명으로 나타났다. 인구대비 공적연금 및 기초노령연금 동시 수급률을 비교해보면, 남성노인은 29.1%인데 비해 여성노인은 8.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남성노인이 동시 수급비율이 여성노인의 3배 이상으로 나타났다.

[그림 2-16] 성별 공적연금 및 기초노령연금 수급률



이와 같이 공적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동시 수급률이 높은 것은 공적 연금을 통한 세대 간 이전, 즉 자녀세대로부터의 세대 간 소득이전을 여성 노인보다 남성 노인이 더 많이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대 간 이전은 정확한 의미에서 각출에 대한 권리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각출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받는 제도의 종류에 관계없이 모든 노인이 공평하게 동일한 수준의 세대 간 이전을 받는 것이 정당하다.

그러나 남성노인은 공적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을 모두 받는 비율이 여성 노인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여성노인에 비해 남성노인에게 자녀세대로부터 더 많은 세대 간 이전이 비형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세대 간 이전의 형평성 차원에서 남성노인과 여성노인의 세대 간 이전을 공평하게 할 수 있는 연금제도 발전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여성노인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보장을 위해서는 기초노령연금 만으로는 매우 부족하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여성들이 국민연금 수급률을 높일 수 있는 정책적 지원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제3절 젠더적 시각에서 본 노후 사회 서비스의 현황과 문제점

현재 노인을 위한 사회서비스 정책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서 주관하고 있지만, 여성빈곤노인을 위한 특화된 제도는 현재로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독거노인을 위해선 ‘독거노인 지원대책’이 마련되어있는 상황이다. 복지보건부의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를 보면, 노인복지사업을 크게 1. 노인요양 및 건강보장, 2. 노후활동 및 소득보장 3. 소외된 노인보호 4. 경로효친사상 및 노인봉양의식제고, 5. 장사시설 설치 운영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에 여기서는 보건복지부의 노인정책 중 여성빈곤노인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노인요양 및 건강보장’, ‘노후활동 및 소득보장’, ‘소외된 노인보호’를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1. 노인요양 및 건강보장

노인요양 및 건강보장은 크게 ‘건강보장’과 ‘주거보장’으로 나눌 수 있다. 이중 빈곤여성노인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건강보장 부분과 주거보장 부분이다.

건강보장 부분은 노인장기요양서비스로 요약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65세 이상 노인, 노인성 질환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 중 1~3등급 판정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고,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실비부분을 부담해야하지만, 기초수급권자인 경우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서비스 급여의 경우에는 시설·재가급여 및 특별현금급여로 이루어져 있다. 재가급여의 종류로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가 있으며, 기타 재가급여인 휠체어, 전동침대 등 복지용구가 해당된다.

시설급여는 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시설급여인 노인요양시설은 2008년에 통합되었으며, 또한 노인 요양공동생활가정이 신설되었다. 특별현금급여는 장기요양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 전염병 질환자 등 특수한 경우 가족요양비를 지급한다. 장기요양보장제도는 사회보험방식을 근간으로 공적부조방식을 가미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건강보험가입자의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6.55%(2011년도 보험료 기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 + 공적부조의 적용을 받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이다.

문제는 보험의 가입은 보편주의를 따르고 있지만 요양보험의 혜택은 선별주의에 입각해있다는 것이다. 현재의 노인요양보호 체계는 신청노인을 대상으로 요양이 필요한 정도와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등급을 나눠 지원하는 방식이다. 노인들이 시설에 입소할 때 비용을 지불하는데, 이 비용을 국가가 등급에 따라 지원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노인요양보호 신청자들 중 대략 20%는 지원을 아예 받지 못하고 1등급으로 인정받는 경우는 전체 중 10% 남짓에 지나지 않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2011년의 경우 전체 151,391명 노인 중 12,723명만 1등급으로 지원받았고, 등급외에 해당되어 지원을 받지 못한 노인은 34,167명이다(2011, 장기요양보험주요통계). 특히 신청노인 여성노인인구가 전체 노인의 약 70%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여성노인들에게 있어 요양서비스가 더욱 절실한 상황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표 2-15〉 노인요양 및 건강보장사업 자격기준

사 업 명		수 혜 자		비 고
		연령기준	자격기준	
건강보장	노인장기요양보험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자	-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중등증 이상(1~3등급)의 자	※ 제도시행 : '08. 7. 1
	노인복지시설(의료)	65세 이상	- 노인성 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로서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수급자 · 기초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의 자 ※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60세 이상의 자	※ 지방이양사업 ※ 노인복지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무료·실비 및 유료시설이 노인요양시설로 통합('08.4.4)
	재가노인복지사업	65세 이상	· 장기요양급여수급자 ·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자 ※ 이용자로부터 이용비용의 전부를 수납받아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60세 이상의 자 (방문요양서비스, 주간·단기보호서비스, 방문목욕 서비스)	※ 지방이양사업
	치매상담센터 운영	60세 이상	- 치매노인과 그 가족	※ 지방이양사업
	치매조기검진사업	60세 이상	- 60세 이상의 모든 노인(저소득층에 우선권 부여)	
	치매치료관리지원사업	60세 이상	- 60세 이상, 치매환자(F00~F03, G30)	전국가구평균소득 50% 이하인 자

〈표 2-16〉 2011상반기 장기요양보호신청 등급별 현황

구 분	계	1등급	2등급	3등급	등급 외
합계	151,391	12,723	25,974	78,527	34,167
남자	44,949	4,420	7,899	23,651	8,979
여자	106,442	8,303	18,075	54,876	25,188

노인주거보장사업은 독거노인 공동생활가정 및 독거노인 모임 두레 지원, 주거개선사업 등이 있지만 이중 복지부가 주체가 되는 사업은 노인거주복지시설에 대한 것이다⁴⁾.

노인의료 복지의 경우 크게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는 것과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에 입주하는 것, 그리고 노인 전문병원에 입원하는 세 가지로 나뉘어있다. 시설 입소의 경우, 기초수급권자이거나 수급권자가 아니어도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 의무자에게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피해노인으로 입소의뢰를 받은 노인 및 긴급조치대상자 등)에 한하여 무료입소가 가능하다. 또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액 이하의 소득을 지닌 노인의 경우 실비입소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 또는 노인공동생활가정의 경우는 60세 이상의 자, 입소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인 경우에도 입소가능건강상의 문제가 없지만 가계 곤란등의 이유로 적절한 생활을 할 수 없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써 기초수급권자 등이 이에 해당한다.

노인주거보장사업 중 복지부 중요사업이 노인거주복지시설이라는 것은, 현재의 노인주거에 관한 사업이 시설 입소 중심으로 되어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최근주거개선사업이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자가주택 소유자에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자가주택이 아니거나 차상위 계층인 경우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4) 독거노인 공동생활가정 등은,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주택공사 등에서 진행하고 있는 일종의 네트워크 사업으로, 독거노인들을 서로 연계해서 자조모임을 만들어 연대를 도모하게 하거나(두레) 지역 노인정을 개조하여 휴한기 등에 공동체가족을 엮어주는 사업(공동생활가정)이다. 주거개선사업은 주거개선사업단과 민간자원봉사 및 후원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밖에 임대주택사업이 있는데 이는 노인을 위한 정책이라기보다는 기초수급권자 및 중군위안부 등 여러 소외계층을 위한 사업이다.

〈표 2-17〉 노인복지시설 입소 자격기준

사 업 명		수 혜 자		비 고
		연령기준	자격기준	
주거보장	노인복지시설 (주거)	65세 이상	-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자로서 · 기초수급권자 및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 하는 자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하 가구 노인 ※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60세 이상의 자	※ 지방이양사업 ※ 노인복지법시행 규칙 개정에 따라 무료·실비 및 유료시설이 노인요양시설로 통합(’08.4.4)

2. 노후소득 및 여가활동 보장

보건복지부의 분류의 ‘노후소득 및 여가활동’ 부분은 여러 가지 요소들이 혼재해있는데 소득보장의 경우 개안수술과 노인 일자리사업이 한데 묶여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의 경우 취업알선과 공공사업의 투입을 뜻하는데, 이때 차상위 이하 독거노인이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가점을 부여하고, (기초수급에서 탈락한 차상위 독거노인을 적극 연계)있다. 이중 공공형 노인 일자리의 경우 최장 7개월까지 일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 노인 일자리 사업이 실제 노인의 소득보전대책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노후소득 문제는 정부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부모부양에 대해 ‘부모 스스로 해결해야한다는 견해가 2010년 18.4%에서 2012년 22.3%로 증가했고,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노후생활에 대한 책임을 가족에게 전가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다(2013 고령자통계, 보건복지부). 하지만 60세 이상 취업자 월 급여수준이 전체(100.00)의 77.7 수준으로 노인일자리 질적 수준이 낮는데 반해, 고령화지수는 계속 높아지는 상황이다. 즉 현재 노인

일자리 문제는 특정 빈곤노인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대다수의 개인 모두가 직면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현재 노인 10명 중 6명이 취업을 원하는 상황이지만, 실제 65세 이상 중 30프로만이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고, 특히 여성노인의 경우 22.6%에 그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차상위 이하 노인들의 실질적 소득보전대책이 될 수 있도록 현재 일자리의 기간연장 추진 검토중이지만, 노인일자리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은 부족한 실정이다.

〈표 2-18〉 소득보장 및 여가활동 보장 자격기준

사 업 명		수 혜 자		비 고
		연령기준	자격기준	
소득 보장	노인안검진 중 개안수술대상	60세 이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노인 중 희망자 - 기타 보건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노인일자리사업	65세 이상	- 노인일자리사업 참여가 가능한 노인 ※ 사업내용 및 노동강도에 따라 일부 사업은 60세 이상도 참여가능	
노인 서비스	노인여가복지시설 - 경로당 - 노인복지관 등	65세 이상 60세 이상	- 없음	※ 지방이양사업

3. 소외된 노인보호

사회적인 관계가 미약하고 높은 보호가 필요한 독거노인에 대해서 공공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특히, 위기 및 취약가구 전체에 대해 돌봄기본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한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는 약 30만명

의 위기 및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노인돌보미가 안부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기적인 안전 확인과 정서적인 지원, 복지서비스 자원을 발굴 하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돌보미 서비스는 주 1회 직접방문 및 2~3회 전화확인과 월 2회 생활교육, 보건복지 서비스 연계 등을 제공한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의 선정기준은 주택위치, 지난주 결식 횟수와 도움이 필요한 일상 동작 수 및 사회관계 등 6개의 항목에 대해서 점수화하고, 이를 정렬하여 사업규모만큼 선정한다. 또한, 노인 돌보미는 1인당 평균 25명을 보호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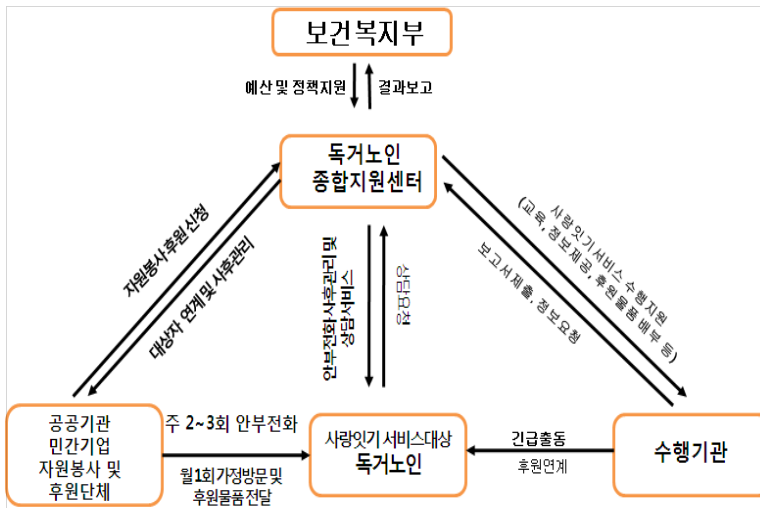
〈표 2-19〉 소외된 노인 서비스 자격요건

사 업 명		수 혜 자		비 고
		연령기준	자격기준	
소외 노인 서비스	노인돌봄서비스 - 기본서비스 - 종합서비스	65세 이상	- 실제 혼자 살고 있는 노인 - 장기요양보험등급의 A,B의 노인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	※ '10년부터 노인돌봄종합 서비스와 가사간병(노인) 서비스통합 운영
	결식우려노인 무료급식 지원	60세 이상	- 결식이 우려되는 노인	※ 지방이양사업

보건복지부는 관심필요 독거노인 10만명의 일대일 결연을 목표로 독거노인 사랑잇기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 독거노인 사랑잇기는 민·관의 자원봉사자와 콜센터 직원이 결연을 통해 독거노인에게 안부전화 및 방문을 통한 정서지원 및 후원물품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또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여, 민간 자원봉사자들이 안부전화 사후관리 및 상담서비스 할수 있게 하고, 독거노인은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에 상담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그 외 독거노인종합지원센

터에서는 상담원 교육과 활동 매뉴얼을 제작하며, 홍보 및 대외협력 관계를 통해 독거노인을 지원할 민간복지자원을 발굴하는 역할을 한다.

[그림 2-17] 사업참여자들의 역할도(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2012)



독거노인은 경제적으로 취약할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취약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있다. 따라서 이들은 경제적인 도움을 넘어 정신적인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심리적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행 시스템에서는 이들을 위한 정서적 돌봄은 한정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독거노인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한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기보다는 ‘문제상황 발생여부’를 확인하는데 그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소외노인 서비스는 문제 상황을 확인, 개입하는 것을 넘어서 이들이 지역사회와 연계될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만들어주는 것을 더욱 주력하여 심리적인 부분까지 지원하는 돌봄서비스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



제3장 여성노인 빈곤: 제도적 시각

제1절 분석개요

제2절 노후보장패널조사 분석결과

제3절 소결 및 정책적 함의

3

여성노인 빈곤: << 제도적 시각

제1절 분석개요

이 절에서는 제 4차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Korean Retirement and Income Study: KReIS)를 활용하여 남성노인인구의 빈곤율과 소득갭 및 빈곤갭이 얼마나 되는지를 밝혀보게 될 것이다. 한국여성노인의 빈곤 실태와 제도적 시각에서 빈곤의 원인을 분석한다. 본 장의 구체적인 연구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빈곤율과 빈곤갭 지표를 통해 여성노인의 빈곤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남성노인의 그것과 비교한다. 이 과정에서 여성노인가구의 총소득 및 소득원천별 구성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한다.

둘째, 소득이전이 빈곤완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소득이전이 노인빈곤 감소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공적 이전과 사적 이전이 수급되기 전(pre) 빈곤의 정도와 수급 후(post) 빈곤을 비교함으로써 측정한다.

마지막으로, 공사 소득이전이 여성노인의 빈곤에 미친 영향을 고찰하고, 이에 대한 함의를 밝히고자 한다.

1. 분석목적

본 장에서는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Korean Retirement and Income Study: KReIS)를 활용하여 여성노인의 빈곤 실태와 제도적 시각에서 빈

곤의 원인을 분석한다. 본 장의 구체적인 연구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빈곤율과 빈곤갭 지표를 통해 여성노인의 빈곤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남성노인의 그것과 비교한다. 이 과정에서 여성노인가구의 총소득 및 소득원천별 구성현황을 파악한다.

둘째, 소득이전이 빈곤완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소득이전의 노인빈곤 감소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공적 이전과 사적 이전이 제 공되기 전 빈곤의 정도와 수급 후 빈곤을 비교함으로써 측정한다.

마지막으로, 공사 소득이전이 여성노인의 빈곤에 미친 영향을 고찰하고, 이에 대한 함의를 밝히고자 한다.

2. 자료

가. 노후보장패널조사

본 연구의 분석 자료는 제4차 국민노후보장패널이다.⁵⁾ 국민노후보장 패널조사는 중고령층의 노후준비 및 노후생활을 지속적으로 파악함으로써 노후소득보장과 관련된 정책을 위한 체계적인 자료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만 50세 이상 가구원을 가진 전국 5,000여 가구와 그 가구에 속하는 만 50세 이상 개인 8,600여명을 대상으로 경제상황, 고용현황 및 퇴직, 건강, 가족관계, 노후보장 현황 등에 관한 내용을 2005년부터 격년으로 조사하고 있는 종단면조사이다. 여기에서는 2011년을 기준으로 조사된 제4차 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5) 여기에서는 국민노후보장패널 학술대회용 데이터를 활용하였는데, 이 자료는 지속적으로 클리닝 작업을 진행할 것이므로, 향후 공개되는 데이터의 버전에 따라 분석결과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3. 분석대상

본 연구에서는 연구내용에 따라 분석대상을 65세 이상 노인 개인을 단위로 설정한 분석과 65세 이상 노인가구주 가구를 단위로 한 분석이 이루어졌다. 먼저, 여성노인과 남성노인의 빈곤실태, 소득구성, 이전소득의 정도와 소득구성 등을 분석할 때에는 65세 이상 노인 개인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다. 이 때 분석에 포함된 총 사례 수는 4,000명이다.

다음으로, 소득이전의 빈곤 완화 효과 분석은 65세 이상 노인가구주 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왜냐하면, 빈곤이 가구단위로 측정되는 과정에서 공사 소득이전이 노인소득에 미치는 영향은 가구를 단위로 분석할 때 적절한 효과 측정이 가능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 때 분석에 포함된 총 사례 수는 2,405가구이다.

4. 분석방법

가. 집단간 특성별 비교

본 연구는 여성노인의 규모와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파악하고, 빈곤의 실태를 분석하기 위하여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과 기술통계분석(descriptive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또한 여성노인의 빈곤실태를 더욱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남성노인과의 비교가 이루어졌고, 이 과정에서 t-test와 ANOVA, 교차분석(cross tab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나. 노인가구 소득 및 빈곤 측정

국민노후보장패널에서는 소득을 근로소득, 금융소득, 부동산소득, 공

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기타소득으로 측정하고 있으며, 분석기간의 기준에는 '작년 한해'와 '지난 달'의 두 가지 기준이 존재한다. 여기에서는 기타소득 영역을 제외한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활용하였고, 이때분석기간의 기준은 '작년 한해(2010년 기준)'로 설정하였다. 각 소득의 구성요소는 <표 3-14>와 같다.

<표 3-1> 소득의 정의

소득원	구성내역
근로소득	근로소득
재산소득	금융소득, 부동산소득
사적이전소득	가족, 친척 또는 사회단체로부터 정기적으로 받은 보조금
공적이전소득	공적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사회보장급여

빈곤 여부 판단의 기준은 연간가구소득(경상소득 기준)이 그 해의 가구최저생계비(가구원수별 월 최저생계비를 연간으로 환산)에 미달하는지의 여부이므로 절대빈곤의 개념에 해당한다. 본 연구의 조사가 이루어진 시점이 2011년도이기 때문에 조사된 소득은 2010년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빈곤지위를 결정하는 기준으로서 2010년도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를 활용하였다(표 3-15 참조). 최종적인 빈곤 여부는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빈곤한 가구에 살고 있는 경우 빈곤노인으로 정의하였다.

〈표 3-2〉 2010년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단위: 천원)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최저생계비(월)	504	858	1,110	1,363	1,615	1,867
최저생계비(년)	6,052	10,304	13,331	16,357	19,383	22,409

주: 7인 이상 가구는 가구원 1인당 252천원(월) 추가

빈곤율은 본 연구의 자료에 포함된 65세 이상 전체 노인 중에서 빈곤한 노인의 수를 토대로 산출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빈곤율은 빈곤의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빈곤의 심도(poverty depth)를 고찰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진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빈곤의 심각성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빈곤갭 지표를 활용하였다. 빈곤갭은 빈곤선 이하에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빈곤선과 가구 소득 간의 차이를 의미하는 개념으로, 빈곤선 이하의 가구소득을 빈곤선까지 끌어올리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함으로써 빈곤정책의 방향이나 규모를 추정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김태성·손병돈, 2004: 47~48). 본 연구에서 이와 같이 빈곤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활용한 지표는 소득갭 비율(income gap ratio)과 빈곤갭비율(poverty gap ratio)로서, 소득갭비율은 총빈곤갭을 빈곤선 이하에 있는 개인의 수에 빈곤선을 곱한 액수로 나누어 산출한다.

$$IGR = \frac{\sum_{i=1}^q (z - y_i)}{qz}$$

여기서 IGR은 소득갭비율, z는 빈곤선을 나타내며, y_i 는 빈곤선 이하에 속한 개인의 소득, 그리고 q는 빈곤선 이하에 있는 개인의 수를 나타낸다.

그리고 빈곤갭비율은 총빈곤갭을 전체 개인 수에 빈곤선을 곱한 액수로 나눈 값을 의미하며, 이것은 소득갭비율에 빈곤율(q/z)을 곱한 값과 같아진다.

$$PGR = HR \times IGR$$

전술한 바와 같이, 이러한 빈곤갭 비율은 해당 집단이 경험하는 빈곤을 비율로 수치화함으로써 빈곤의 강도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장점이 있다.

다. 공사 소득이전의 노인가구 빈곤감소 효과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 및 OECD의 소득분류방식에 따라 소득을 일차소득, 시장소득, 경상소득으로 구분하였으며(여유진 2005), 각 소득의 구성요소는 <표 3-3>과 같다. 즉 일차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 시장소득은 일차소득에 사적이전소득이 포함된 것이고, 경상소득은 시장소득에 공적이전소득이 포함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특별히 노인에게 미치는 공적연금의 빈곤감소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공적이전소득 중에서 공적연금만을 별도로 추출하였고, 시장소득에 공적연금을 합산하여 이를 공적연금소득으로 명명하였다. 이전소득의 빈곤율 및 빈곤갭 감소효과는 각각의 이전소득을 수급하기 전 빈곤율 및 빈곤갭에서 수급한 후의 빈곤율 및 빈곤갭을 비교하여 측정하였다. 가령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의 빈곤율과 일차소득 빈곤율의 차이를 통해 공사 이전소득의 빈곤감소 효과를 측정할 수 있다. 또한 공적연금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의 빈곤율과 일차소득 빈곤율의 차이를 통해 공적연금이 빈곤완화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할 수 있다.

〈표 3-3〉 소득의 구성요소

소득분류	구성요소	빈곤감소효과	빈곤감소효과 측정
(1)일차소득	근로소득 + 사업 및 부업소득 + 재산소득		
(2)시장소득	일차소득 + 사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효과	$[(2)-(1)/(2)] \times 100$
(3)공적연금소득	일차소득 + 공적연금소득	공적연금소득효과	$[(3)-(1)/(3)] \times 100$
(4)공적이전소득	일차소득 + 공적이전소득	공적이전소득효과	$[(4)-(1)/(4)] \times 100$
(5)경상소득	일차소득 + 공적이전소득 + 사적이전소득	공사 소득이전효과	$[(5)-(1)/(5)] \times 100$

주: 빈곤감소 효과성 = [(이전소득 수급전 빈곤율 - 수급후 빈곤율)/수급전 빈곤율] × 100

라. 노인 빈곤 및 소득이전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설명하기 위하여 설정된 독립변수들은 앞서 고찰한 기존연구의 결과에 기초하여 개인특성, 가구특성, 제도적 특성으로 구분하였다. 우선 개인특성에는 성별과 연령, 교육수준과 장애여부, 그리고 취업여부의 변수가 포함되어 있고, 교육수준은 학력을 교육년수로 전환하여 연속변수로 투입시켰다. 다음으로 가구특성에는 배우자 여부와 가구원수, 거주지, 그리고 순자산 변수가 포함되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노인의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가구 요인 중에는 가구의 구성, 즉 독거노인인지 노인부부로 구성되어 있는지, 혹은 자녀가 함께 있는지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이에 배우자 여부와 가구원수 변수를 동시에 투입함으로써 세대 구성이 적절히 통제되도록 하였다. 더불어 자산은 변수의 속성상 분산이 매우 크기 때문에 로그로 전환하여 분석모형에 투입하였다. 마지막으로 제도적 특성에는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의 수급 여부와 수급액을 중심으로 변수를 설정하였다. 분석모형에 포함된 종속

변수와 독립변수에 대한 간략한 내용을 <표 3-4>에 정리하였다. 빈곤 및 소득이전 여부의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binary logistic regression model)을 활용하였다.

<표 3-4> 주요 변수

구분	항목	변수명	변수속성 및 단위	
종속 변수	빈곤		경상소득이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미만인 경우	
	개인 특성	성별	남성=(0)	여성=(1)
		연령	(세)	
		교육수준	교육연수 (년)	
		장애	있음=(0)	없음=(1)
		경제활동	취업=(0)	미취업=(1)
독립 변수	가구 특성	배우자	유배우=(0)	무배우가구(1)
		가구원수	(명)	
		거주지	서울=(0)	서울 외=(1)
		순자산	log 순자산	
	제도 특성	공적이전 여부	있음=(0)	없음=(1)
		사적이전 여부	있음=(0)	없음=(1)
		공적이전수준	log 공적이전액	
		사적이전수준	log 사적이전액	

제2절 노후보장패널조사 분석 결과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를 분석하는 목적은 전술한 바와 같이 여성노인의 빈곤 실태 및 원인을 살펴보기 위함이다. 본 절에서는 여성노인의 인구학적 특성, 빈곤 및 소득실태, 각 이전소득의 빈곤완화 효과, 그리고 빈곤의 영향요인 등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1.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의 분석에 활용된 사례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5>와 같다. 분석 대상을 남성과 여성, 그리고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집단인 빈곤여성을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우선 눈에 띄는 부분은 남성에 비해 여성노인의 경우 고연령대(75세 이상)에 해당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이다. 남성노인의 경우 75세 이상이 35.3%인 것에 비해 여성노인은 그 비율이 42.3%로 남성보다 7% 포인트 높은 수준이었으며, 빈곤 여성노인은 그 수치가 무려 46.9%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것은 빈곤 여성노인의 상당수가 초고령 노인임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둘째, 교육수준을 놓고 볼 때 초등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진 대상의 비율이 남성 노인의 경우 42.7%를 차지하는 반면, 여성노인은 무려 80.1%를 차지할 정도로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 수치가 빈곤 여성노인에게서는 85.3%로 매우 크게 증가한다.

셋째, 혼인상태를 중심으로 볼 때 남성노인의 경우 배우자와 동거하는 비율이 89.8%로서 거의 대부분의 남성 노인이 배우자와 동거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여성 노인의 경우 이 수치가 46%로 남성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다.

넷째, 가구형태를 중심으로 볼 때, 남성노인 중에서 독거가구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비율이 단지 7.2%인 반면, 여성노인은 이 수치가 30.6% 정도로 약 4배 가량 높다. 그리고 이러한 수치가 빈곤 여성노인에게서는 42.3%로 더욱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다섯째, 취업여부를 살펴보면, 남성노인 중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비율은 38.5%였으며, 여성노인은 23%로 남성보다 15.5% 포인트 낮은 수준이었다. 빈곤 여성노인은 이 수치가 19.6%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상황을 보면, 연소득을 기준으로 한 1인당 가구소득을 살펴본 결과, 남성노인의 연평균 가구소득은 1,154만원을 차지하고 있었고, 여성노인은 그보다 다소 낮은 수치인 1,088만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빈곤 여성노인의 경우 연평균 1인당 가구소득이 381만원으로서, 이를 통해 이들이 경험하는 빈곤의 강도가 매우 심각할 것을 유추할 수 있었다. 또한 총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을 기준으로 노인가구 전체의 순자산 평균은 17,450만원으로 나타났고, 빈곤 여성노인가구의 순자산은 8,602만원으로 전체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노인가구를 대상으로 했을 때와의 격차는 소득을 기준으로 측정했을 때보다는 다소 완화된 수준이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보면, 여성노인과 남성노인의 인구학적 특성 간에 차이가 발견되고 있으며, 특히 빈곤 여성노인은 전체 노인 중에서도 연령대가 상대적으로 높고, 교육수준이 낮으며 배우자 없이 독거하는 비율이 높고, 취업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결국 빈곤 여성노인이 연령, 성별, 빈곤이라는, 배제를 야기하는 메커니즘의 중심에 놓여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3-5〉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단위: 명, %)

구 분		전체	남성	여성	빈곤여성
지역	서울	683(17.1)	293(17.6)	390(16.7)	137(12.8)
	광역시	977(24.4)	421(25.3)	556(23.8)	278(25.9)
	도	2,340(58.5)	949(57.1)	1,391(59.5)	658(61.3)
연령	65~74	2,425(60.6)	1,076(64.7)	1,349(57.7)	570(53.1)
	75~84	1,323(33.1)	508(30.5)	815(34.9)	426(39.7)
	85+	252(6.3)	79(4.8)	173(7.4)	77(7.2)
	평균연령	73.7	73.1	74.1	74.6
교육수준	무학	1,000(25.0)	157(9.4)	843(36.1)	448(41.8)
	초등학교	1,582(39.6)	554(33.3)	1,028(44.0)	467(43.5)
	중학교	596(14.9)	345(20.7)	251(10.7)	92(8.6)
	고등학교	548(13.7)	382(23.0)	166(7.1)	56(5.2)
	대학교	229(5.8)	189(11.4)	40(1.7)	7(0.7)
	대학원	36(0.9)	30(1.8)	6(0.3)	2(0.2)
	교육년수	5.8	7.8	4.5	4.0
장애	장애있음	412(10.3)	196(11.8)	216(9.2)	97(9.0)
혼인상태	유배우	2,568(64.2)	1,494(89.8)	1,074(46.0)	482(44.9)
가구형태	노인독신	834(20.9)	119(7.2)	715(30.6)	454(42.3)
	노인부부	1,718(43.0)	981(59.0)	737(31.5)	373(34.8)
	기타	1,448(36.2)	563(33.9)	885(37.9)	246(22.9)
자녀수	평균자녀수	3.6	3.4	3.7	3.7
가구주 여부	가구주인 경우	2,405(60.1)	1,431(86.0)	974(41.7)	593(55.3)
가구원수	동거 가구원수	2.3	2.4	2.2	1.7
주택	자가	3,164(79.1)	1,401(84.2)	1,763(75.4)	732(68.2)
	전세	319(8.0)	103(6.2)	216(9.2)	112(10.4)
	월세 및 기타	517(12.9)	159(9.5)	358(15.3)	229(21.3)
취업여부	취업	1,178(29.5)	641(38.5)	537(23.0)	210(19.6)
취업형태	임금근로	352(29.9)	198(30.9)	154(28.7)	67(31.9)
	비임금근로	826(70.1)	443(69.1)	383(71.3)	143(68.1)
1인당 가구소득 (만원)	연평균 가구소득	1,154.1	1,245.7	1,088.9	381.1
순자산(만원)		17,450.5	20,458.9	15,309.7	8,062.5
1인당 순자산 (만원)		11,275.9	13,188.6	9,914.7	5,831.2
총 사례수		4,000(100.0)	1,663(41.6)	2,337(58.4)	1,073(45.9)

2. 여성노인의 빈곤 실태

본 절에서는 빈곤율과 빈곤갭 비율을 중심으로 한국사회 여성노인이 경험하는 빈곤의 실태를 살펴보았다. <표 3-6>을 중심으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전체 노인의 빈곤율은 43.5%로 나타났다. 빈곤통계연보(2012)에서는 본 연구와 같이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한 노인의 절대빈곤율을 33%로 보고하고 있다. 이와 비교해보면, 본 연구의 빈곤율은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수치로 보인다. 그러나 2006년도 가계조사를 가지고 분석한 김경아(2008)의 연구에서는 경상소득 빈곤율을 42.4%로 보고하고 있으며, 노동패널을 근거로 분석한 최옥금(2007)의 연구에서는 빈곤율을 53%로 보고하고 있다. 더불어 동일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한 석상훈(2012)의 연구에서는 경상소득 빈곤율을 38%로 분석하고 있다. 그런데 석상훈(2012)에서는 본 연구와 같이 65세 이상으로 한정하지 않고, 노후보장패널의 전체 사례, 즉 50세 이상의 인구를 대상으로 분석을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빈곤율이 더 낮게 나왔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를 성별을 중심으로 구분하여 보면, 남성노인의 경우 40.1%의 빈곤율을 보인 반면, 여성노인은 45.9%로 더욱 높은 빈곤율을 보이고 있다. 사실 이러한 성별 격차는 가구주를 분석단위로 할 경우 더욱 벌어진다. 가구주를 단위로 할 때 남성노인의 빈곤율은 41.7%이지만, 여성노인의 빈곤율은 그 수치가 무려 60.9%까지 치솟는다. 그런데 이와 같이 가구주를 단위로 할 경우 남성가구주가구의 여성배우자, 혹은 여성가구주가구의 남성배우자가 통계 속에서 사라지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개인을 단위로 측정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이 된다는 것 자체가 상당한 빈곤위험을 수반하는 생애 사건이며, 그것이 ‘여성’이라는 속성과 결합할 경우 위험이 더욱 증가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런데 이러한 빈곤율은 해당 집단 안에서 빈곤한 사람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는 데에는 용이하지만, 빈곤층이 경험하는 빈곤의 정도를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소득갭 비율과 빈곤갭 비율을 통하여 빈곤의 심도를 측정하였다. 빈곤갭 비율은 15.8%로 나타났고, 이것은 노후보장패널의 전체 사례를 대상으로 측정했을 때의 결과인 13.1%보다 다소 높은 수치이다(석상훈, 2010). 그러나 전가구를 대상으로 정상소득 기준의 빈곤갭 비율이 3%로 나타난 빈곤통계의 결과와 비교해보면, 노인가구의 빈곤갭 비율은 무려 5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김문길 외, 2012). 기존 연구에서 노인의 빈곤율은 비노인의 그것보다 3배 정도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석재은·김용하·김태완, 2003). 그런데 본 연구의 결과를 기존의 통계결과와 대입해보다면, 노인과 비노인 간의 빈곤강도의 격차는 빈곤율 격차보다 클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를 통해 노인가구가 경험하는 빈곤의 강도가 비노인가구의 그것과 비교할 때 극심하게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남성보다 여성노인에게서 빈곤갭 비율이 약 3.5% 포인트 정도 높다는 결과는 여성노인이 빈곤으로 인해 경험하게 되는 취약함의 수준이 훨씬 더 클 것임을 보여주는 바이다.

이상의 빈곤율과 빈곤갭 비율의 결과는, 한국사회의 여성노인이 빈곤에 처하게 될 위험 자체도 매우 높지만, 빈곤에 진입할 경우 그들이 경험하는 빈곤의 강도가 상당히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비노인가구와 같이 빈곤이 더 이상 소수의 집단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닌 상황에서, 그들이 경험하는 빈곤의 강도 역시 강하다는 것은, 여성노인 빈곤문제의 심각성과 조속한 개입의 필요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표 3-6〉 여성노인과 남성노인의 빈곤실태

(단위: 명, %)

	전체 (N=4,000)	남성 (N=1,663)	여성 (N=2,337)
빈곤율	1,740(43.5)	667(40.1)	1,073(45.9)
소득갭 비율	43.3	42.7	43.6
빈곤갭 비율	15.8	13.8	17.2

한편, 이러한 빈곤의 실태를 연령대를 기준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았다. 〈표 3-7〉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전체 대상의 빈곤율은 고령 2단계, 즉 75세 이상 84세 이하의 노인에게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수치가 무려 52%에 달하고 있다. 고령 2단계 노인의 빈곤율이 3단계 노인보다 높게 나타난 데에는 가구형태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측된다. 본 연구가 빈곤을 측정하는 과정에서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빈곤 지위에는 함께 살고 있는 다른 가구원의 소득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한다. 실제로 노년 전기(65~74세), 중기(75~84세) 노인의 경우 독거가구나 노인부부로 구성된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64~68%를 차지하고 있지만, 노년 후기(85세 이상)에서는 이 수치가 29%로 감소한다. 다시 말해 고령 3단계의 빈곤율이 노년 중기(75~84세)보다 낮은 데에는 소득을 벌어들이는 다른 가구원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곤의 강도 측면에서 살펴보면, 노년 후기(85세 이상)의 노인이 경험하는 빈곤의 강도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노년 중기(75~84세)에 비해 빈곤에 처할 위험 자체는 낮을 수 있지만, 빈곤하게 될 경우 그것을 경험하는 강도가 더욱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러한 빈곤율과 빈곤갭 비율이 연령대에 따라 변화하는 양상은 성별에 따라 다소 상이하게 나타난다. 우선 남성노인의 경우 노년 전기(65~74세) 시기에 빈곤율과 빈곤갭 비율이 모두 가장 낮게 나타난다. 반면 여성노인의 경우 빈곤율이 가장 높은 시기는 초고령기로 넘어가는 시기가 아니라 오히려 고령에 진입하는 시기, 즉 노년 전기(65~74세) 시기로 나타난다. 이 시기 여성노인의 빈곤율은 무려 57.7%로 나타난다.

〈표 3-7〉 연령대별 여성노인과 남성노인의 빈곤실태

(단위: 명, %)

연령대	빈곤지표	전체	남성	여성
65~74 (N=2,425)	빈곤율	939(38.7)	369(34.3)	779(57.7)
	소득갭비율	42.50	42.41	42.55
	빈곤갭 비율	13.91	12.02	15.42
75~84 (N=1,323)	빈곤율	687(51.9)	261(51.4)	426(52.3)
	소득갭비율	43.17	42.53	43.52
	빈곤갭 비율	19.54	17.75	20.66
85+ (N=252)	빈곤율	114(45.2)	37(46.8)	77(44.5)
	소득갭비율	49.33	46.14	50.97
	빈곤갭 비율	21.33	21.61	21.21

3. 여성노인의 소득 실태

본 절에서는 여성노인의 빈곤 실태가 남성노인보다 심각한 것을 보다 심층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서 여성노인의 소득수준과 소득원별 구성현황을 살펴보았다. 균등화지수를 적용한 소득을 기준으로 노인가구의 연평균소득과 소득원별 비중을 비교해보면, 〈표 3-8〉에서 제

시한 바와 같이 성별에 관계없이 노인가구의 근로소득이 전체 가구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55% 정도를 차지한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연구들과 비교할 때 근로소득의 비중이 다소 높은 편이고, 특히 여성 노인 가구에게서 더욱 그러하다. 이것은 본 연구가 가구주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것이 아니라, 모든 노인을 분석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산소득과 공적이전소득은 남성 노인 가구에게서 더욱 높은 수준인 반면, 사적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여성 노인 가구에서 더욱 높다. 이러한 결과를 절대액 차원에서 살펴보면, 남성 노인 가구에서 연간 1인이 벌어들이는 근로소득은 약 670만원으로 여성노인가구보다 70만원 정도 높다. 재산소득의 경우 남성노인가구가 약 160만원을 벌어들여 여성노인가구보다 50만원 정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이전소득은 연간 280만원 정도 발생하며, 이것은 여성 노인가구보다 약 55만원 정도 높은 수치인데, 이러한 격차는 특히 공적 연금 부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여성 노인가구가 벌어들이는 소득이 남성보다 높은 영역은 사적이전소득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한 급여이다. 사적이전소득의 경우 연간 약 16만원 정도 높은 수준이었고,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는 110만원 정도 높았다.

한편,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집단, 즉 빈곤 여성노인가구의 소득 구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집단에게서 발견되는 가장 뚜렷한 특징은 첫째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현저하게 낮다는 것이다. 빈곤 여성노인가구의 소득에서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단지 22.6%로서, 이것은 앞서 남성, 여성 노인의 경우 근로소득의 비중인 55%의 절반에 그치는 것으로서, 근로소득이 모든 소득원 중에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하였던 여타의 노인가구와 대조된다. 오히려 빈곤 여성노인가구의 소득원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소득원은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으로서, 그것은 각각 전체 가구소득의 40%, 3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

나 비중이 크다고 하여 절대액도 크다는 것은 아니다. 빈곤 여성노인가구의 공적이전소득의 경우 가구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40%였고, 이러한 수치는 남성 노인가구의 2배에 가까운 수준이지만, 오히려 절대 금액은 절반 수준에 지나지 않고 있다. 이를 종합해볼 때, 빈곤 여성노인가구의 경우 소득을 벌어들이는 과정에서 외부 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고, 그로 인하여 소득의 지속성과 안정성이 상당히 취약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여성 노인가구가 경험하는 빈곤의 심도가 언제든지 강해질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표 3-8〉 소득 구성현황(가구소득)

(단위: 천원(년), %)

	전체 (N=4,000)		남성 (N=1,663)		여성 (N=2,337)		빈곤여성 (N=1,073)	
	평균소득 (표준편차)	비중	평균소득 (표준편차)	비중	평균소득 (표준편차)	비중	평균소득 (표준편차)	비중
근로, 사업소득	6,379.4 (9,489.9)	55.3	6,791.0 (10,165.1)	54.5	6,086.6 (8,969.3)	55.9	861.2 (1,664.5)	22.6
재산소득	1,317.2 (4,518.9)	11.4	1,591.2 (5,069.0)	12.8	1,122.2 (4,072.5)	10.3	254.3 (833.5)	6.7
금융소득	354.7 (1,892.1)	3.1	387.7 (1,726.6)	3.1	331.3 (2,001.6)	3.0	81.4 (416.8)	2.1
부동산소득	962.4 (3,977.1)	8.3	1,203.5 (4,647.9)	9.7	790.9 (3,411.2)	7.3	172.9 (703.3)	4.5
사적이전소득	1,355.0 (2,245.0)	11.7	1,262.1 (2,244.1)	10.1	1,421.0 (2,243.8)	13.1	1,161.9 (1,478.0)	30.5
공적이전소득	2,489.6 (4,228.3)	21.6	2,813.1 (4,634.7)	22.6	2,259.5 (3,898.1)	20.7	1,533.4 (1,339.2)	40.2
공적연금	2,273.7 (4,183.2)	19.7	2,667.8 (4,606.8)	21.4	1,993.2 (3,830.0)	18.3	1,141.9 (947.5)	30.0
국기법	161.4 (721.1)	1.4	96.6 (534.4)	0.8	207.5 (825.7)	1.9	353.7 (1,027.1)	9.3
공적이전수당	54.4 (525.1)	0.5	48.5 (499.8)	0.4	58.6 (542.4)	0.5	37.7 (257.0)	1.0
총소득	11,541.3 (10,999.8)	100.0	12,457.5 (12,067.7)	100.0	10,889.4 (10,124.1)	100.0	3,811.0 (1,901.1)	100.0

그런데 사실 이러한 방식의 분석은 가구소득을 단위로 측정한 것이기 때문에, 소득을 벌어들인 다른 가구원에 의해 발생한 것일 수 있다. 그로 인해 보다 엄밀한 의미에서 노인의 소득과 소득원별 비중을 정확하게 측정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노후보장패널의 개인자료에서 추출한 개인소득을 토대로 동일한 분석을 수행하였고, 결과를 <표 3-9>와 <표 3-10>에 제시하였다.

우선 <표 3-9>를 중심으로 소득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노인의 85~95%가 소득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를 영역별로 보다 구체화하면, 남성노인의 40%가 근로소득이 있다고 보고한 반면, 이 수치가 여성노인에게서는 15.8%, 빈곤 여성노인에게서는 14%로 감소한다. 이러한 수치를 앞서 <표 3-8>에서 제시했던 분석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결과와 비교해보자면, 남성노인의 취업률(38.5%)과 근로소득을 가진 남성노인의 비율(40.6%)은 유사하다. 그런데 여성노인의 경우 취업률과 근로소득 여부 사이에 격차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여성노인의 취업률이 23%였던 반면 근로소득이 있는 여성노인의 비율은 15.8%에 국한되며, 빈곤 여성노인 역시 취업률이 19.6%였던 반면 근로소득이 있는 비율은 13.9%로 감소한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취업상태에 있더라도 그것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벌어들이는 일자리가 아니고, 그로 인해 빈곤탈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여성노인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바이다.

재산소득의 경우 남성노인의 26.8%가 소유하고 있지만, 여성노인에게서는 9.8%, 빈곤 여성노인에게서는 7.4%로 그 수치가 감소한다. 재산소득의 소유여부는 모든 소득원 중에서 성별 격차가 가장 크게 발생하는 영역이다. 사적이전소득의 경우 그것을 가지고 있는 비율이 남성, 여성, 빈곤여성노인 모두 40~46% 정도로서, 기존연구의 결과와 유사하며 성별 혹은 빈곤여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김희삼, 2008).

소득원별 소득 여부에 관한 분석에서 무엇보다도 눈에 띄는 것은, 가장 높은 비율의 노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소득원이 공적이전 소득이라는 것이다. 공적이전소득은 전체 노인의 75%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것은 사적이전소득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보다 1.7배 높은 수준이며, 근로소득을 가지고 있는 노인의 비율과 비교하면 무려 2.9배나 높은 수준이다. 한국의 공적 노후소득보장체계에서 2008년 도입된 기초노령연금은 일반조세를 재원으로 하고 노인의 70% 내외를 포괄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체계에서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하였다고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기초노령연금은 비록 느슨한 자산조사가 수반되기는 하지만 데모그란트(demogrant)라 해도 큰 손색이 없다. 그리고 이러한 데모그란트 성격을 가진 기초노령연금의 도입을 통해 공적이전소득에서 배제된 것으로 대표된 여성노인이 수급률 측면에서 볼 때 배제가 어느 정도 완화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공적이전소득의 수급률이 남녀 노인 모두 비약적으로 증가하기는 했지만, 성별 격차는 근로소득에 이어 여전히 높는데, 남성노인의 수급률이 여성노인보다 무려 12.2% 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이에 공적이전소득의 대표적인 항목을 중심으로 수급률을 살펴보면, 공적연금을 가지고 있는 비율이 남성의 경우 46.7%로서, 이것은 여성노인보다 무려 3배 정도 높은 수치이며, 남성노인 내부에서도 근로소득을 가지고 있는 비율보다 높았다. 그러나 여성노인의 경우 공적연금의 수급률이 16.3%에 국한되며, 빈곤 여성노인은 그 수치가 14.2%로 더욱 낮다.

소득원별 보유여부에 관한 결과를 빈곤 여성노인의 시각에서 보자면, 70%에 해당하는 빈곤 여성노인이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하고 있으며, 여성노인의 절반이 사적이전소득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소득을 제외하고는 빈곤 여성노인의 10% 내외만이 근로소득, 공적연금소득, 재

산소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여성노인의 빈곤이 실질적으로 근로소득과 공적연금소득에서의 배제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바이다.

〈표 3-9〉 소득이 있는 비율(개인소득)

(단위: 명, %)

	전체 (N=4,000)	남성 (N=1,663)	여성 (N=2,337)	빈곤여성 (N=1,073)
근로소득	1,044(26.1)	675(40.6)	369(15.8)	149(13.9)
재산소득	675(16.9)	445(26.8)	230(9.8)	79(7.4)
금융소득	419(10.5)	282(17.0)	137(5.9)	44(4.1)
부동산소득	372(9.3)	243(14.6)	129(5.5)	47(4.4)
개인연금	28(0.7)	20(1.2)	8(0.3)	2(0.2)
사적이전소득	1,747(43.7)	668(40.2)	1,079(46.2)	494(46.0)
공적이전소득	2,992(74.8)	1,362(81.9)	1,630(69.7)	821(76.5)
공적연금	1,157(28.9)	776(46.7)	381(16.3)	152(14.2)
특수직역 연금	1,979(4.9)	147(8.8)	50(2.1)	6(0.5)
국민연금	827(20.7)	559(33.6)	268(11.4)	116(10.8)
기초노령연금	2,307(57.7)	862(51.8)	1,445(61.8)	759(70.7)
총소득	3,540(88.5)	1,570(94.4)	1,970(84.3)	938(87.3)

소득원별 보유여부에 이어 〈표 3-10〉에서는 각 소득원별 평균액과 개별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았다.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한 분석과 비교해서 가장 눈에 띄는 결과는 성별 격차가 심화된다는 것이다.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 1.1이던 총소득의 성별격차는 개별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 무려 2.7배로 증가한다. 여성노인의 소득은 가구에서 개인 단위로 전환 시 무려 670여만원 감소한다. 오히려 빈곤 여성노인의 경우 가구소득에서 개별소득으로 전환 시 소득감소 폭이 약 80만원으로서, 상

대적으로 크지 않은 편인데, 이는 빈곤 여성노인이 독거가구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다른 가구원이 벌어들이는 소득의 영향을 덜 받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소득원별 비중을 보면, 근로소득이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남성 노인의 경우 약 41%를, 여성노인은 그의 절반 수준인 23% 정도로 나타났다. 빈곤 여성노인의 경우 전체여성노인 평균보다도 낮은 17%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와 같이 근로소득이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대한 성별 분석은 기존 연구의 결과와 유사하다(석재은, 임정기, 2007). 빈곤 여성노인의 소득구성에 관해서는 기존 연구에서 충분히 다루고 있지 않아 정확한 비교가 어렵지만, 빈곤 여성노인 비율이 높은 독거노인가구에서 근로소득의 비중이 10.7%였던 것과 비교해보자면, 근로소득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는 아마도 노인빈곤 완화를 위해 확대되고 있는 노인일자리 사업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측된다.

개인소득으로 전환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전체 소득 중에서 남성노인보다 여성노인에게서 더 높게 나타나는 유일한 소득원은 사적이전소득이다. 사적이전소득의 절대액은 성별이나 빈곤여부에 따라 크게 다르지 않지만, 비중 차원에서 보자면 개인소득으로 전환 시 여성 노인에게서 가장 크게 증가한 항목이다. 사적이전소득이 개인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성노인에게서 31%, 빈곤 여성노인에게서는 36%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여성 노인에게서 이와 같이 사적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것은 주지하다시피 상당히 불안정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기존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바와 같이 그것은 소득을 제공하는 대상, 주로 자녀들의 경제상황에 따라 소득 여부 혹은 소득액에 변동이 크게 발생한다. 최근 들어 사적이전소득은 이전소득 제공자, 즉 자녀의 경제적 능력 변화와 공적이전소득 확대에 따른 구축효과 등으로 인해 감소 추세에 있

는 현실이다(김경아, 2008). 무엇보다 여성노인에게서 발생하는 사적이전소득은 그것이 실질적으로 사적이전소득인지, 아니면 근로를 대가로 발생하는 숨겨진 근로소득인지 구분이 모호하다. 실제로 현실에서 많은 여성노인이 손자녀의 돌봄을 담당하고 있고, 이러한 돌봄을 대가로 사적이전소득이 주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만약 그렇다면 손자녀의 집중적인 자녀 양육기를 지난 이후에는 돌봄을 대가로 한 소득이전의 수치가 감소할 위험 또한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표 3-10〉 소득구성 현황(개인소득)

(단위: 천원, %)

	전체 (N=4,000)		남성 (N=1,663)		여성 (N=2,337)		빈곤여성 (N=1,073)	
	평균소득 (표준편차)	비중	평균소득 (표준편차)	비중	평균소득 (표준편차)	비중	평균소득 (표준편차)	비중
근로소득	2,504.7 (6,450.3)	35.1	4,692.0 (8,806.2)	41.5	948.2 (3,197.1)	22.8	513.8 (1,805.2)	16.9
재산소득	1,040.3 (4,433.0)	14.6	1,772.8 (5,660.8)	15.7	519.1 (3,192.0)	12.5	188.1 (1,948.4)	6.2
금융소득	252.4 (1,552.0)	3.5	417.4 (1,627.9)	3.7	134.9 (1,484.8)	3.2	31.4 (239.6)	1.0
부동산소득	788.0 (3,995.9)	11.1	1,355.3 (5,225.8)	12.0	384.2 (2,740.7)	9.2	156.8 (1,933.5)	5.2
개인연금	78.9 (1,203.6)	1.1	157.7 (1,738.7)	1.4	22.9 (567.1)	0.6	2.7 (64.2)	0.1
사적이전소득	1,228.7 (2513.5)	17.2	1,150.1 (2,637.6)	10.2	1,284.6 (2,420.2)	30.9	1,096.1 (1,956.4)	36.1
공적이전소득	2,276.8 (5,047.3)	31.9	3,535.4 (6,598.6)	31.3	1,381.1 (3,271.4)	33.2	1,235.0 (1,548.0)	40.7
총소득	7,129.4 (9,901.8)	100.0	11,308.1 (12,386.1)	100.0	4,155.8 (6,116.9)	100.0	3,035.7 (3,417.6)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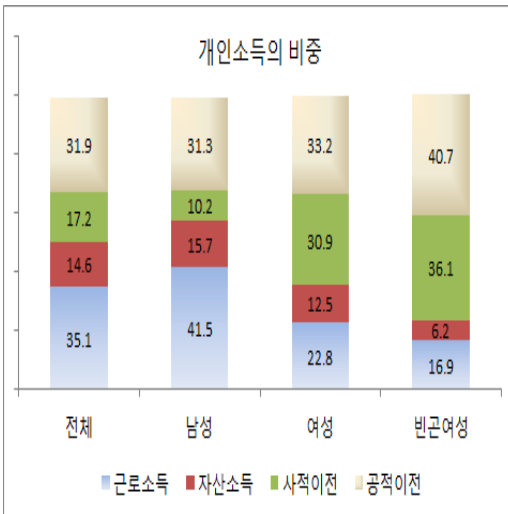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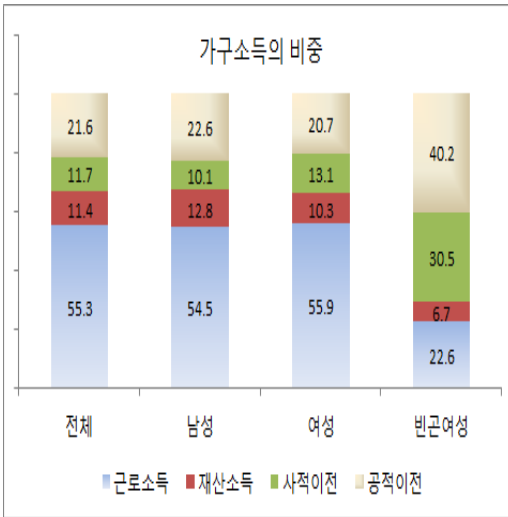
[그림 3-1]을 통해 가구소득에서 개인소득으로의 전환 시 소득구성현황의 변화를 중심으로 보자면, 개인 소득을 기준으로 남성노인은 근로소득 비중이 12% 포인트 정도 감소하는 과정에서 공적이전소득의 비중이

10% 포인트 증가한다. 가장 큰 변화를 보이는 집단은 여성노인으로서는,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30% 포인트 감소하고, 이 감소분은 사적 이전소득이 약 20% 포인트, 공적 이전소득이 10% 포인트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대체된다. 이와 같이 개인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과정에서 여성 노인에게서 발생한 상당한 소득 감소는 여성노인이 다른 가구원과의 동거가 지속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빈곤상태로 진입할 수 있는, 잠재적 빈곤집단임을 시사하는 바이다. 한편, 빈곤 여성노인의 공·사 이전소득의 비중은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했을 때 70%에서 개인 소득으로 전환할 경우 76%로 더욱 증가하여 외부 체계에 대한 소득 의존이 더욱 심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여성노인의 개인소득 현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연령대를 기준으로 소득원별 평균액과 비중을 분석하였고, 결과를 <표 3-11>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여성노인과 빈곤 여성노인 모두 연령대가 증가하면서 근로소득의 비중이 현저하게 감소한다. 여성노인의 경우 노년 전기(65~69세)서 30% 수준을 유지하던 근로소득의 비중은 고령 2단계에 접어들면서 10% 이내로 줄어든다. 근로소득이 감소하는 과정에서 사적이전소득과 공적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현저하게 증가하는데, 특히 노년 후기(80세 이상)에 있는 빈곤 여성노인의 경우 공적 이전소득의 비중이 무려 60%에 달하고 있다. 그리고 빈곤 여부에 관계없이 여성노인의 경우 75세가 넘어서면서 이전소득에 대한 의존도가 전체 소득의 80%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적 이전소득의 경우 총소득 대비 비중으로 측정하면 연령이 증가하면서 지속적으로 금액이 커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액 차원에서 보자면 고령 2단계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다가 다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패턴은 선행연구의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으로서, 이는 초고령

기에 접어들면서 자녀와 다시 동거하는 형태를 취하는 과정에서 사적 이전소득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김희삼, 2008).

[그림 3-1] 각 소득원천의 비중



〈표 3-11〉 연령대별 소득 구성현황(일반노인과 빈곤노인의 개인소득 비교)

(단위: 천원, %)

	여성노인 (N=2,337)		65~74 (N=1,349)		75~84 (N=815)		85+ (N=173)	
	평균소득 (표준편차)	비중	평균소득 (표준편차)	비중	평균소득 (표준편차)	비중	평균소득 (표준편차)	비중
근로소득	948.2 (3,197.1)	22.8	1,406.2 (3,918.2)	31.2	372.3 (1,729.8)	9.6	89.0 (616.5)	3.3
재산소득	519.1 (3,192.0)	12.5	591.9 (3,322.5)	13.1	501.2 (3,299.8)	12.9	35.5 (229.0)	1.3
금융소득	134.9 (1,484.8)	3.2	146.7 (1,776.5)	3.3	143.4 (1,046.8)	3.7	1.7 (18.6)	0.1
부동산소득	384.2 (2,740.7)	9.2	445.1 (2,757.3)	9.9	357.8 (2,986.9)	9.2	33.8 (228.5)	1.3
개인연금	22.9 (567.1)	0.6	39.6 (746.1)	0.9	0 (0)	0.0	0 (0)	0.0
사적이전소득	1,284.6 (2,420.2)	30.9	1,170.86 (2,246.3)	26.0	1,477.8 (2,626.3)	38.0	1,260.5 (2,661.7)	47.1
공적이전소득	1,381.1 (3,271.4)	33.2	1,299.61 (3,057.1)	28.8	1,535.0 (3,811.3)	39.5	1,290.9 (1,785.3)	48.2
총소득	4,155.8 (6,116.9)	100.0	4,508.3 (6,554.4)	100.0	3,886.4 (5,759.3)	100.0	2,676.0 (3,312.9)	100.0
	빈곤 여성노인 (N=2,337)		65~74 (N=570)		75~84 (N=426)		85+ (N=77)	
	평균소득 (표준편차)	비중	평균소득 (표준편차)	비중	평균소득 (표준편차)	비중	평균소득 (표준편차)	비중
근로소득	513.8 (1,805.2)	16.9	786.5 (2,286.4)	25.8	236.0 (993.8)	7.6	31.1 (273.5)	1.2
재산소득	188.1 (1,948.4)	6.2	138.8 (713.5)	4.6	274.2 (2,976.6)	8.8	76.6 (339.0)	3.0
금융소득	31.4 (239.6)	1.0	42.3 (294.8)	1.4	22.1 (167.2)	0.7	0.7 (0.5)	0.0
부동산소득	156.8 (1,933.5)	5.2	96.5 (646.7)	3.2	252.0 (2,972.1)	8.1	75.9 (339.1)	2.9
개인연금	2.7 (64.2)	0.1	425.0 (88.1)	13.9	0 (0)	0.0	0 (0)	0.0
사적이전소득	1,096.1 (1,956.4)	36.1	970.6 (1,807.5)	31.8	1,297.7 (2,018.4)	41.9	909.1 (2,522.9)	35.2
공적이전소득	1,235.0 (1,548.0)	40.7	1,148.5 (1,598.3)	37.7	1,291.2 (1,418.7)	41.7	1,563.3 (1,798.4)	60.6
총소득	3,035.7 (3,417.6)	100.0	3,049.7 (3,223.6)	100.0	3,099.1 (3,750.2)	100.0	2,580.3 (2,840.3)	100.0

빈곤 여성노인의 개인소득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소득원은 공적이전소득으로서, 이것은 개인 총소득 중에서 무려 40%에 달하고 있다. 노인의 소득실태를 다룬 기존의 많은 연구에서 일관되게 제시한 결론 중 하나가 여성노인의 경우 사적 이전소득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고, 공적 이전소득의 비중이 낮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여성노인의 소득구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경력단절과 그로 인한 공적 연금에서의 배제를 지적하고 있다. 기존 연구의 결과와 상이하게 여성노인 및 빈곤 여성노인의 소득구성에서 공적 이전소득의 비중이 가장 크게 나타난 데에는 개인의 근로 이력과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제공되는 기초 노령연금의 실시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빈곤여성노인 및 여성노인의 소득분포에서 공적이전소득의 비중이 가장 크다는 것을 통해 노후보장체계가 가족에게서 국가로 성공적으로 이동했다는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 이러한 결과는 오히려 월 10만원도 채 되지 않는 기초 노령연금의 지급으로 여성노인의 소득분포를 변화시킬 정도로 여성노인의 소득이 수준이 상당히 낮다는 것을 입증시켜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노인의 소득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공적이전소득의 실태를 보다 면밀히 고찰하기 위하여 공적이전소득의 금액과 구성현황을 분석하였다. <표 3-12>에 제시한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노인집단의 공적 이전소득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특수직역 연금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연간 926만원으로서 전체 공적 이전소득 금액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특수직역 연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등 특수 직업인을 대상으로 한 연금이기 때문에 보편적인 연금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에 공적 이전소득 역시 각 소득원별로 소득보유 여부를 분석하였고, 이에 대한 분석 결과를 <표 3-13>에 제시하였다. 더불어 급여 수급을 받고 있는 집단만

을 별도로 추출하여 평균 수급액을 산출하였다.

〈표 3-12〉와 〈표 3-13〉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남성노인의 경우 공적 이전소득의 80%가 특수직역 연금과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체계를 통해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공적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비율은 전체 남성노인의 약 42% 정도로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남성노인의 소득이 연금제도를 통해 상당 부분 보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여성노인의 경우 공적이전소득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기초노령연금으로서, 이것은 연간 600만원 수준으로서 전체 공적이전 소득의 44.5%를 차지한다. 그 다음으로 특수직역 연금, 국민연금 순으로 나타났다.

공적이전소득의 구성요소를 빈곤 여성노인을 중심으로 보자면, 기초노령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57%로 앞서 남성과 여성을 놓고 볼 때와 비교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더불어 빈곤 여성노인 중에서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비율도 70%로 매우 높은 편이다. 이를 통해 볼 때 기존의 공적 연금체계를 통해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는 현세대 노인의 빈곤문제를 개선한다는 기초노령연금의 목적 자체는 어느 정도 부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분석 결과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국민연금을 수급하는 여성노인의 비율이 11% 수준에 국한된 상황에서 기초노령연금이 부재했을 경우 거의 모든 여성노인이 국가의 공적 소득보장에서 배제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보자면 기초노령연금은 빈곤에 더욱 취약한 집단으로서의 여성노인에게 보다 친화적인 제도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기초노령연금을 통해 수급받는 급여액이 연평균 99만원으로서 한 달에 10만원도 채 되지 않는 수준이라는 것은, 제도의 효과가 현세대 노인이 경험하는 빈곤의 정도를 매우 제한적으로 감소시키는데 그칠 뿐, 빈곤 탈피를 가능하게 하거나 혹은 빈곤인구 자체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임을 예측하게 한다.

한편, 노인들이 수급하는 공적 이전소득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은 특수직역 연금이다. 특수직역 연금은 평균액으로 산출할 경우 공적이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지만, 수급하는 대상은 전체 노인의 5%에 국한될 뿐이다. 특히 여성 노인 중에서는 불과 2%만이 특수직역 연금을 수급하며, 이러한 수치는 빈곤여성노인을 대상으로 할 경우 0.6%로 추락한다. 뿐만 아니라 특수직역 연금은 급여액의 성별격차가 가장 큰 소득원이기도 하다. 평균소득액을 기준으로 할 때 남성노인이 받는 특수직역 연금의 수급액은 여성노인의 5.2배이며, 빈곤 여성노인의 61배에 육박한다. 이를 통해 볼 때 특수직역 연금이 노인의 소득상실에 대비해서 소득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부분은 소수 5%의 노인에게만 제한적으로 해당되는 논의이며, 오히려 노인의 공적 이전소득에서 불평등을 유발하는 측면이 크다고 볼 수 있다.

〈표 3-12〉 공적이전소득 구성현황(개인소득)

(단위: 천원, %)

	전체 (N=4,000)		남성 (N=1,663)		여성 (N=2,337)		빈곤여성 (N=1,073)	
	평균소득 (표준편차)	비중	평균소득 (표준편차)	비중	평균소득 (표준편차)	비중	평균소득 (표준편차)	비중
특수직역연금	926.4 (4,825.1)	40.7	1,754.6 (6,480.9)	49.6	337.0 (3,022.7)	24.4	28.5	2.3
국민연금	548.2 (1,600.4)	24.1	1,008.2 (2,206.9)	28.5	220.9 (813.5)	16.0	213.6	17.3
기타연금	97.5 (875.0)	4.3	162.0 (1,053.4)	4.6	51.6 (718.5)	3.7	18.1	1.5
기초노령연금	565.3 (539.4)	24.8	495.8 (530.4)	14.0	614.9 (540.5)	44.5	702.8	56.9
제수당	23.6 (267.5)	1.0	26.7 (275.7)	0.8	21.4 (261.6)	1.5	23.3	1.9
기타	59.1 (505.0)	2.6	39.3 (402.8)	1.1	73.2 (566.3)	5.3	133.0	10.8
총액	2,276.8 (5,047.3)	100.0	3,535.4 (6,598.6)	100.0	1,381.1 (3,271.4)	100.0	1,234.9	100.0

주: 특수직역 연금에는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연금이 포함되어 있고, 기타 연금에는 산재보험, 보훈연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제수당에는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아동양육수당, 노인장기요양보험 특별현금급여, 장애인연금이 포함됨.

〈표 3-13〉 공적이전소득이 있는 비율과 소득원이 있는 노인의 공적이전소득 구성현황 (개인소득)

(단위: 천원, %)

	전체 (N=4,000)		남성 (N=1,663)		여성 (N=2,337)		빈곤여성 (N=1,073)	
	평균소득 (표준편차)	보유율	평균소득 (표준편차)	보유율	평균소득 (표준편차)	보유율	평균소득 (표준편차)	보유율
특수직역 연금	18,810.1 (11,700.4)	4.9	19,850.0 (10,792.2)	8.8	15,752.8 (13,703.1)	2.1	5,110.0 (5,267.2)	0.6
국민 연금	2,651.5 (2,610.9)	20.7	2,999.4 (2,919.4)	33.6	1,579.3 (96.4)	11.5	1,976.1 (1,555.4)	10.8
기타 연금	3,713.0 (3,985.8)	2.6	3,026.4 (3,491.3)	5.4	7,532.1 (4,503.8)	0.7	4,860.0 (5,188.7)	0.4
기초 노령 연금	981.5 (310.9)	57.6	956.4 (319.3)	51.8	996.4 (304.8)	61.7	993.5 (284.5)	70.7
제수당	1,510.7 (173.2)	1.9	1,441.6 (240.2)	2.2	1,588.6 (251.1)	1.7	1,194.3 (1,478.6)	2.0
기타	2,463.1 (2,180.0)	2.4	1,866.5 (2,102.6)	2.2	2,805.4 (2,166.3)	2.6	3,171.5 (2,040.4)	4.2
총액	3,095.5 (5,666.0)	74.8	4,427.2 (7,112.1)	81.9	1,999.7 (3,776.4)	69.7	1,623.9 (1,587.2)	76.5

주: 특수직역 연금에는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연금이 포함되어 있고, 기타 연금에는 산재보험, 보훈연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제수당에는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아동양육수당, 노인장기요양보험 특별연금급여, 장애인연금이 포함됨.

4. 이전소득의 빈곤감소 효과

전술한 바와 같이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은 노인의 소득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비중은 여성노인에게서, 그리고 빈곤 여성노인에게서 더욱 크다. 이에 본 절에서는 사적이전소득과 공적이전소득이 빈곤을 완화하는 효과를 빈곤율과 빈곤갭 비율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 때 빈곤이 가구 단위로 측정되기 때문에

소득이전의 빈곤 완화 효과는 개인 단위보다 가구를 단위로 분석할 때 적절한 효과 측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았고, 이에 본 절의 분석대상은 65세 이상의 노인가구주이다.

가구를 단위로 할 때 전체 사례수는 2,405명이고, 그 중에서 여성노인은 974명, 남성노인은 1,431명이다. <표 3-14>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가구주 단위 측정에서 여성노인의 빈곤 실태는 개인을 단위로 할 때보다 더욱 악화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빈곤율은 무려 60%를 육박하고 있으며, 빈곤갭 비율 역시 25%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성별 빈곤격차 측면에서 보자면 빈곤율보다 빈곤갭 비율이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결과는 여성노인이 남성노인에 비해 빈곤할 위험이 높은 것도 문제이지만, 그것보다 그들이 경험하는 빈곤의 강도가 더욱 큰 것이 보다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보여주는 바이다.

<표 3-14> 여성노인과 남성노인의 빈곤실태(가구주단위)

(단위: 명, %)

	전체(N=2,405)	남성(N=1,431)	여성(N=974)
빈곤율	1,190(49.5)	597(41.7)	593(60.9)
소득갭 비율	43.51	43.39	43.62
빈곤갭 비율	19.27	15.13	25.35

가. 빈곤율 감소 효과

우선 빈곤율을 중심으로 공사 이전소득이 빈곤 감소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고 <표 3-15>에 결과를 제시하였다. 빈곤 감소 효과의 측정은 각각의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이전소득 전 소득을 기초로 한 빈곤율에서

이전 후, 즉 경상소득 빈곤율을 차감한 수치를 이전 전 빈곤율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일차소득 빈곤율은 무려 71.7%에 달하고 있다. 공사 이전소득을 포함한 경상소득 빈곤율이 49.5%로 감소하면서 이전소득의 빈곤감소 효과는 31%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사적 이전소득의 빈곤감소효과는 17.4%, 공적 이전소득의 빈곤감소효과는 23.0%로 공적이전소득의 빈곤감소효과가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 한국 사회에서 사적 이전소득의 빈곤 감소효과가 공적 이전소득의 그것보다 더욱 크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었다(김교성, 2002; 김진욱, 2004; 홍경준, 2002; 김희삼, 2008; 김수영·이강훈, 2009). 이러한 연구들을 고려한다면 공적 이전소득의 빈곤 감소효과가 사적 이전소득을 앞선 본 연구의 결과는 다소 생소하다. 그런데 2005년과 2009년을 기준으로 이전소득의 빈곤감소 효과를 분석한 연구를 살펴보면, 2009년에 공적이전소득의 효과가 사적이전소득을 넘어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여유진 외, 2012).

이러한 결과를 성별을 중심으로 보면, 이전소득의 빈곤감소효과는 남성노인이 34%, 여성노인이 27%로 여성보다 남성노인에게서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과 남성 모두 사적 이전소득보다 공적 이전소득의 빈곤감소 효과가 더욱 컸는데 남성노인의 경우 26%, 여성노인은 20%로 나타났다. 한편,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 효과의 격차가 남성노인에게서는 9% 포인트인 반면, 여성노인의 경우 공적 그 격차가 2.3% 포인트로 좁혀졌다.

노후보장패널의 가구자료에서는 공적이전소득을 공적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사회보장급여(고용보험, 산재보험, 장애수당 및 장애자보호수당, 노인장기요양보험, 특별현금 급여 등)로 구분하여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공적연금 변수 안에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보훈연금, 그리고 기초노령연금을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노후소

득보장제도인 공적연금이나 기초노령연금의 빈곤 감소 효과를 각각 분석하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노후보장패널의 개인자료에 있는 공적 이전소득의 각 항목 가운데 특수직역연금과 국민연금, 그리고 기초노령연금만을 별도로 추출하여 가구자료에 병합(merge)하였고, 이를 통해 공적이전소득의 대표적인 제도들의 빈곤감소효과를 분석할 수 있었다.

공적이전소득의 각 제도별 빈곤감소효과를 보면, 기초노령연금을 제외한 공적연금(특수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의 빈곤감소 효과는 12.4%였고,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의 빈곤감소효과는 1.8%였다. 2개의 연금으로 구성된 공적연금 중에서 국민연금만을 추출하여 빈곤 감소효과를 살펴본 결과 6.3%로 나타났고, 기초노령연금의 빈곤율 감소효과는 7.6%로서 국민연금의 효과보다 더욱 컸다. 이러한 기초노령연금의 빈곤 감소 효과는 기존 연구와도 유사하게 나타났다(석상훈, 2010).

이러한 결과를 다시 성별을 중심으로 보면, 공적연금의 빈곤감소효과는 남성노인의 경우 18.1%로서 공적 이전소득 효과의 기여도 중에서 무려 7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노인의 경우 공적연금의 빈곤감소효과가 6.0%로 급감하며, 이것은 공적 이전소득의 효과의 기여도에서 30%를 차지할 뿐이다. 여성노인의 빈곤감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이전소득은 기초노령연금으로서, 이것은 빈곤감소에 9.2%의 효과를 미치고 있으며, 여성노인의 공적 이전소득 효과 중에서 약 47%를 차지할 정도로 영향력이 크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보건대, 남성노인의 빈곤감소에는 국민연금이 더욱 큰 영향을 미치지만, 여성노인에게는 기초노령연금의 효과가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5〉 빈곤율 완화효과

(단위: %)

	전체 (N=2,405)		남성 (N=1,431)		여성 (N=974)	
	빈곤율	빈곤 감소	빈곤율	빈곤 감소	빈곤율	빈곤 감소
일차소득	1,725(71.7)		910(63.6)		815(83.7)	
사적이전 수급 전	1,440(59.9)	17.4	718(50.2)	16.9	722(74.1)	17.8
공적이전 수급 전	1,547(64.3)	23.0	805(56.3)	25.9	742(76.2)	20.1
공적연금 수급 전	1341(56.5)	12.4	717(50.9)	18.1	624(64.8)	6.0
국민연금 수급 전	1260(52.8)	6.3	655(46.1)	9.5	605(62.6)	2.7
기초노령연금 수급 전	1274(53.6)	7.6	631(44.4)	6.1	643(67.1)	9.2
국기법 수급 전	1,212(50.4)	1.8	604(42.2)	1.2	608(62.4)	2.4
경상소득	1,190(49.5)	31.0	597(41.7)	34.4	593(60.9)	27.2

한편, 이러한 결과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표 3-16〉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후기 노년기로 가면서 이전소득의 빈곤감소가 33%에서 26%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65~74세의 연령대에는 공적이전소득의 빈곤감소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후기(85+)로 가면서 공적이전소득의 효과보다 사적 이전소득의 빈곤감소 효과가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85세 이상의 노인 집단에서 빈곤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공적 이전소득으로는 기초노령연금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6〉 연령별 빈곤율 감소효과

(단위: %)

	전체 (N=2,405)		65~74 (N=1,452)		75~84 (N=831)		85+ (N=122)	
일차소득	1,725 (71.7)		892 (61.4)		719 (86.5)		114 (93.4)	
사적이전 수급 전	1,440 (59.9)	17.4	719 (49.5)	17.4	616 (74.1)	16.9	105 (86.1)	20.0
공적이전 수급 전	1,547 (64.3)	23.0	802 (55.2)	25.9	645 (77.6)	20.6	100 (82.0)	16.0
공적연금 수급 전	1341 (56.5)	12.4	689 (48.4)	15.5	565 (68.4)	9.9	87 (71.9)	4.2
국민연금 수급 전	1260 (52.8)	6.3	648 (45.1)	9.3	529 (63.7)	3.3	84 (68.9)	0.0
기초노령연금 수급 전	1274 (53.6)	7.6	639 (44.3)	7.7	548 (66.7)	7.6	87 (75.0)	8.1
국기법 수급 전	1,212 (50.4)	1.8	606 (41.7)	1.9	521 (62.7)	1.8	85 (69.7)	1.1
경상소득	1,190 (49.5)	31.0	594 (40.9)	33.4	512 (61.6)	28.8	84 (68.9)	26.2

〈표 3-17〉에서처럼, 연령대별 이전소득의 빈곤감소 효과를 여성노인에게만 국한하여 분석한 결과를 보면,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했을 때와 비교하여 모든 연령대에서 균등하게 이전소득의 빈곤감소 효과가 4% 포인트 가량 낮다. 〈표 3-16〉에서의 패턴 변화와 동일하게 여성 노인 집단에서도 노년 전기(65~74세)에서 후기(85세 이상)로 이동하면서 공적 이전소득보다 사적 이전소득이 빈곤 감소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노인의 경우 노년 후기(85세 이상)에서 발견되는 기초노령연금의 빈곤 감소효과는 12.7%로서, 공적이전소득 효과의 기여도 중 78%를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표 3-17〉 여성노인의 연령별 빈곤율 완화효과

(단위: %)

	여성 (N=974)		65~74 (N=510)		75~84 (N=398)		85+ (N=66)	
일차소득	815 (83.7)		381 (74.7)		368 (92.5)		66 (100.0)	
사적이전 수급 전	722 (74.1)	17.8	322 (63.1)	17.6	336 (84.4)	17.5	64 (97.0)	20.3
공적이전 수급 전	742 (76.2)	20.1	341 (66.9)	22.3	340 (85.4)	18.5	61 (92.4)	16.3
공적연금 수급 전	624 (64.8)	6.0	283 (56.4)	7.8	290 (73.2)	4.9	51 (78.5)	1.5
국민연금 수급 전	605 (62.6)	2.7	274 (54.3)	4.2	281 (70.8)	1.7	51 (78.5)	1.5
기초노령연금 수급 전	643 (67.1)	9.2	290 (57.3)	9.2	299 (76.5)	9.0	54 (88.5)	12.7
국기법 수급 전	608 (62.4)	2.4	272 (53.3)	2.4	284 (71.4)	2.5	52 (78.8)	1.9
경상소득	593 (60.9)	27.2	265 (52.0)	30.4	277(69.6)	24.8	51 (77.3)	22.7

나. 빈곤갭 감소 효과

본 연구에서는 빈곤율 감소 효과에 이어 각각의 이전소득이 빈곤의 심도, 즉 빈곤갭 비율의 감소에 미치는 효과를 함께 분석하였다. 〈표 3-18〉에 제시한 바와 같이 빈곤율 감소효과와 비교할 때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빈곤갭 비율로 측정할 경우 이전소득이 빈곤감소에 미치는 효과의 크기가 증가한다는 것이다. 빈곤율을 기초로 했을 때 공·사이전 소득의 빈곤감소 효과가 31%였던 반면, 빈곤갭 비율로 측정할 때 이 수치는 64%로 무려 2배 가량 증가한다. 더불어 빈곤율로 측정할 시 남성노인의 빈곤감소 효과의 크기가 여성노인보다 7% 포인트 정도 높았던 반면, 빈곤갭 비율

로 측정된 결과 성별에 따른 격차가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

이전소득이 빈곤갭 비율 감소에 미친 효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적 이전소득의 경우 여성노인의 빈곤을 44% 낮추는 효과를 가지고 있고, 남성노인의 빈곤은 38%를 낮춘다. 사적이전소득의 빈곤감소 효과의 성별 격차는 빈곤율보다 빈곤갭 비율로 측정할 때 더욱 커지는데, 이것은 앞서 <표 3-10>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여성노인에게 제공되는 사적이전소득의 금액 자체가 상대적으로 더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공적 이전소득의 빈곤갭 비율 감소 효과는 빈곤율과 마찬가지로 남성노인이 여성 노인보다 5% 포인트 정도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공적 연금 효과에서 나타난 성별 격차(ratio)는 감소하였다. 빈곤갭 비율로 측정할 때 눈에 띄는 또 다른 점은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의 효과가 크게 증가한다는 것이다. 빈곤율로 측정할 시 빈곤감소 효과가 1~2% 수준에 그쳤던 반면 빈곤갭 비율로 측정된 결과 이 수치는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할 때 14%, 여성노인에게서는 18%까지 증가한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자체가 빈곤한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기초노령연금의 효과 역시 눈에 띄는 부분이다. 단일 제도로서 기초노령연금은 노인의 빈곤율 감소에 상당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 이것을 빈곤갭 비율로 측정할 경우 24%까지 증가한다. 이러한 수치는 기존 연구의 결과와 유사한 수준이며, 기초노령연금이 노인의 빈곤율 감소보다 빈곤갭 감소에 효과를 보이고 있다는 것 역시 동일하다(석상훈, 2010). 이를 토대로, 여성노인이 경험하는 빈곤 강도의 감소에 사적이전소득과 공적이전소득이 거의 유사하게 영향을 미치고, 공적이전소득 중에서는 기초노령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의 효과가 가장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18〉 빈곤갭비율 완화효과

(단위: %)

	전체 (N=2,405)		남성 (N=1,431)		여성 (N=974)	
일차소득	53.73		42.95		69.57	
사적이전 수급 전	32.91	41.4	24.62	38.5	45.10	43.8
공적이전 수급 전	37.09	48.0	30.41	50.2	45.90	44.8
공적연금 수급 전	24.04	19.8	20.58	26.5	29.11	12.9
국민연금 수급 전	21.71	11.2	17.83	15.1	27.41	7.5
기초노령연금 수급 전	23.93	19.5	18.73	19.3	31.57	19.7
국기법 수급 전	22.47	14.2	16.56	8.6	31.15	18.6
경상소득	19.27	64.1	15.13	64.8	25.35	63.6

빈곤갭 비율의 감소에 미치는 효과를 연령대를 기준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표 3-19), 사적이전소득의 효과가 가장 큰 연령대는 75~84세 노인으로서, 감소 효과가 45%에 달하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노인의 사적 이전소득의 수준이 75세 즈음에 방점을 찍는다는 결과와 상응하는 부분이다(김희삼, 2008). 또한 공적이전소득의 빈곤갭 비율 감소 효과가 가장 큰 연령대는 노년 전기, 즉 65세 이상 74세 이하의 집단으로 나타났다. 공적이전소득의 하위 항목 중에서 빈곤갭 비율 감소 효과의 크기 역시 연령대에 따라 다소 상이했는데, 노년 전기(65~74세)의 노인에게서는 특수직역 연금이나 국민연금으로 구성된 공적연금의 효과가 가장 컸고, 노년 중기(75~84세)에서는 기초노령연금의 효과가 가장 컸으며, 마지막으로 노년 후기(85세 이상)의 노인에게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의 빈곤 감소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9〉 연령별 빈곤갭비율 완화효과

(단위: %)

	전체 (N=2,405)		65~74 (N=1,452)		75~84 (N=831)		85+ (N=122)	
일차소득	53.73		42.12		69.16		86.77	
사적이전 수급 전	32.91	41.4	24.71	38.0	43.71	45.1	56.90	40.1
공적이전 수급 전	37.09	48.0	29.83	48.6	46.11	48.0	62.04	45.0
공적연금 수급 전	24.04	19.8	20.18	24.1	28.97	17.2	36.27	6.0
국민연금 수급 전	21.71	11.2	18.35	16.5	25.80	7.0	36.27	6.0
기초노령연금 수급 전	23.93	19.5	18.49	17.1	31.21	23.1	39.08	12.7
국기법 수급 전	22.47	14.2	17.23	11.1	28.37	15.4	44.61	23.5
경상소득	19.27	64.1	15.32	63.6	23.99	65.3	34.11	60.7

한편, 연령대별 이전소득의 빈곤갭 비율 감소효과를 여성노인에게 국한하여 다시 분석하면(표 3-20), 사적이전소득의 빈곤 감소 효과가 65~74세에서는 여성노인에게서 높지만, 85세 이상으로 이동하면서 전체 노인보다 효과의 크기가 낮았다. 75~84세의 경우 공적이전소득보다 사적이전소득의 빈곤감소효과가 소폭이지만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의 빈곤감소효과는 전체 노인뿐만 아니라 여성노인에게서도 연령이 증가할수록 그 크기가 증가하였다. 다만, 기초노령연금의 경우 85세 이상 여성노인에게서 그 효과가 단지 5.6%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85세 이상으로 이동하면서 공적 이전소득의 빈곤갭 비율 감소효과가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한 결과와 비교할 때 여성노인의 감소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표 3-20〉 여성노인의 연령별 빈곤감비율 완화효과

(단위: %)

	여성 (N=974)		65~74 (N=510)		75~84 (N=398)		85+ (N=66)	
일차소득	69.57		56.45		82.23		94.58	
사적이전 수급 전	45.10	43.8	35.02	42.6	54.75	46.1	64.80	37.2
공적이전 수급 전	45.90	44.8	38.34	47.6	54.18	45.5	69.17	41.2
공적연금 수급 전	29.11	12.9	24.70	18.6	32.70	9.7	41.51	2.0
국민연금 수급 전	27.41	7.5	23.19	13.3	30.73	3.9	41.51	2.0
기초노령 연금 수급 전	31.57	19.7	25.22	20.3	37.81	21.9	43.08	5.6
국기법 수급 전	31.15	18.6	23.48	14.4	37.41	21.1	52.63	22.7
경상소득	25.35	63.6	20.10	64.4	29.52	64.1	40.68	57.0

5. 여성노인의 공식적 노후소득보장제도 배제와 직업력

앞 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성노인의 경우 빈곤을 감소시키는 과정에서 사적 이전소득과 공적 이전소득 효과의 크기가 유사하며, 공적 이전소득의 효과가 국민연금이나 특수직역 연금보다는 기초노령연금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통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노인의 공적 이전소득이 생애 근로이력에 의해 발생하다기 보다는 기초노령연금과 같은 보편적 급여, 혹은 빈곤을 조건으로 한 급여를 통해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여성노인이 공적 연금체계로부터 배제되는 맥락으로서 여성노인의 직업력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여성노인의 직업력은 노후보장패널의 직업력 자료를 활용하여 구체적으로 생애 근로기간과 종사상의 지위, 그리고 직업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직업력 자료에서는 현

재 일자리 직전까지의 일자리 개수와 근로기간, 종사상 지위, 산업과 직업 등을 조사 결과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 일자리를 포함하여 각 사례의 생애에서 가장 길게 근무한 일자리를 기준으로 생애 주된 일자리를 설정하여 직업관련 변수를 생성하였다.

우선 <표 3-21>에 제시한 바와 같이 생애 주된 일자리에 근거한 근로기간을 중심으로 보면, 남성노인의 근로기간이 여성노인보다 현저하게 길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성별에 따른 근로기간의 격차는 2년에 지나지 않았다. 생애 주된 일자리를 중심으로 남성노인의 평균 근로기간이 27년으로 나타났고, 여성노인은 25년이었다. 그렇다면 여성노인이 약 25년간 노동시장에서 주로 어떤 지위를 가지고 일을 하였는가? <표 3-21>를 보면, 남성과 대비되는 여성노인 직업력에서 종사상의 지위 상의 뚜렷한 특징은 자영업이나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율이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상당히 높다는 것이다. 그로 인하여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만, 급여가 전혀 없거나 혹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기간만 축적되었을 것이라는 예측을 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뿐만 아니라 임금근로자였더라도 임시·일용직의 지위로서 근로한 비율이 17%이고, 상용직 근로의 비율이 11%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앞 절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여성노인의 11%만이 공적이전소득을 수급하고 있다는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표 3-21〉 성별 생애근로기간과 직업지위

(단위: 년, 명, %)

	전체 (N=4,000)	남성 (N=1,663)	여성 (N=2,337)
근로기간	26.3(16.8)	27.3(14.2)	25.5(18.6)
상용직 임금근로	808(20.2)	556(33.4)	252(10.8)
임시일용직 임금근로	621(15.5)	219(13.2)	402(17.2)
고용주	192(4.8)	144(8.7)	48(2.1)
자영업	1,130(28.3)	661(39.7)	469(20.1)
무급가족종사자	854(21.4)	29(1.7)	825(35.3)
결측	395(9.9)	54(3.2)	341(14.6)

〈표 3-21〉에서 제시한 결과를 빈곤가구와 비빈곤가구로 구분하여 다시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표 3-2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빈곤 여성노인의 경우 생애 근로기간은 오히려 평균 여성노인보다 길게 나타났으며, 마찬가지로 자영업과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빈곤 남성노인의 경우 상용직 임금근로의 비율이 감소하는 과정에서 자영업의 비율이 증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한 결과는 여성노인의 빈곤 원인을 설명하는 기존의 방식에 의문을 제기하게끔 한다. 일반적으로 여성노인의 빈곤의 원인을 설명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방식은 노년기의 특정한 사건, 즉 배우자의 사망이나 장애 등으로 인해 빈곤하게 된다는 설명이고, 두 번째는 노년기 이전 생활의 연속으로 노후 빈곤을 경험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그리고 이 때 후자의 경우를 설명하는 맥락으로서 가부장제를 중심으로 구조화된 사회 내에서 여성들이 일생을 통해 겪어 온 노동 경험의 부족 문제, 낮은 임금, 낮은 연금각출료 등이 지적되어 왔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빈곤 여성노인은 생애 근로 경험이 없거나 근로기간이 짧기 때문에 빈곤한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 다시 말하면, 여성노인은 생애 기간에 걸쳐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빈곤한 것이 아니라, 임금을 충분히 벌어들일 수 있는 일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빈곤하다고 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것은, 남성노인의 경우 빈곤 여부에 따라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종사상의 지위의 분포가 상이하게 나타나지만, 여성노인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빈곤하든 그렇지 않든 여성노인의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차지하는 종사상의 지위 분포는 ‘주로 무급가족종사자이거나 자영업자’라는 유사한 속성을 공유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현재대 여성노인의 경우 그들 개인의 근로이력이 노후 빈곤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22〉 빈곤가구의 성별 생애근로기간과 직업지위

(단위: 년, 명, %)

	전체	남성	여성
근로기간	26.9(17.5)	28.0(15.4)	26.1(18.8)
상용직 임금근로	273(15.7)	163(24.4)	110(10.3)
임시일용직 임금근로	324(18.6)	115(17.2)	209(19.5)
고용주	74(4.3)	55(8.2)	19(1.8)
자영업	524(30.1)	304(45.6)	220(20.5)
무급가족종사자	402(23.1)	11(1.6)	391(36.4)
결측	143(8.2)	19(2.8)	124(11.6)

〈표 3-23〉 비빈곤가구의 성별 생애근로기간과 직업지위

(단위: 년, 명, %)

	전체	남성	여성
근로기간	25.9(16.1)	26.9(13.4)	24.9(18.3)
상용직 임금근로	535(23.7)	393(39.5)	142(11.2)
임시일용직 임금근로	297(13.1)	104(10.4)	193(15.3)
고용주	118(5.2)	89(8.9)	29(2.3)
자영업	606(26.8)	357(35.8)	249(19.7)
무급가족종사자	452(20.0)	18(1.8)	434(34.3)
결측	252(11.2)	35(3.5)	217(17.2)

더불어 〈표 3-24〉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생애 주된 일자리를 기준으로 한 직업 분포를 분석한 결과, 남성노인의 경우 농어업(30.1%), 기능직(19.8%), 전문관리직(12.9%)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성은 농어업(39.2%), 판매서비스(19.5%), 단순노무직(16.4%) 순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순서는 빈곤 여성노인에게서도 동일했다.

〈표 3-24〉 성별 생애직업

(단위: 명, %)

	전체	남성	여성	빈곤여성
분류불가	61(1.5)	38(2.3)	23(1.0)	12(1.1)
전문관리	270(6.8)	215(12.9)	55(2.4)	12(1.1)
사무직	167(4.2)	133(8.0)	34(1.5)	14(1.3)
판매서비스	653(16.3)	197(11.8)	456(19.5)	199(18.5)
농어업	1,416(35.4)	500(30.1)	916(39.2)	450(41.9)
기능직	493(12.3)	329(19.8)	164(7.0)	79(7.4)
단순노무	591(14.8)	208(12.5)	383(16.4)	204(19.0)
군인	24(0.6)	24(1.4)	0(0.0)	0(0.0)
결측	325(8.1)	19(1.1)	306(13.1)	103(9.6)

6. 빈곤의 결정요인

본 절에서는 <표 3-25>에서 <표 3-27>까지 개인적 특성, 가구 특성, 그리고 제도적 특성을 중심으로 노후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분석의 최종단위는 가구주이며, 분석에 포함된 총 사례수는 2,405명이다. 우선 개인적 특성을 중심으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성별 자체는 노후 빈곤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성노인은 남성노인과 비교해볼 때 빈곤율이나 빈곤갭 차원에서 모두 취약한 상황이었고, 기존 연구들에서도 여성노인의 빈곤위험이 남성노인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최현수, 2006; 석재은, 임정기, 2007; 배성우·손지아·박순미, 2008; 모지환·함철호, 2009; 석상훈, 2012). 본 연구에서 성별의 유의도가 사라진 배경에는 실질적으로 가구소득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소득 이전 관련 변수들이 모형에 투입되어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아마도 소득 이전뿐만 아니라 교육수준이나 경제활동 등 빈곤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이미 성별에 따른 상이한 속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성별 자체의 유의도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외의 개인적 특성으로서 연령이 증가할수록, 그리고 경제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 노인의 빈곤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노인의 빈곤위험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 여부는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할 때에는 빈곤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남성노인을 대상으로 할 때에는 장애가 없는 경우 빈곤위험이 감소하였다.

다음으로 가구 특성을 중심으로 빈곤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살펴보면, 배우자가 있는 경우,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그리고 순자산이 많을수록 빈곤위험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공사 이전소득이 빈곤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전체 노

인을 대상으로 할 경우 공적이전소득의 보유 자체(모델 1)는 빈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사적이전소득이 없는 경우 빈곤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적 이전소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의 빈곤감소 효과가 남성노인에게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이를 통해 여성노인의 경우 사적 이전소득이 소득의 구성요소 측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빈곤 여부를 결정하는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이전소득의 존재 차원으로만 보자면, 노후 소득보장 체계가 가족에서 국가로 아직 온전하게 이동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공적이전소득의 여부를 공적연금과 기초연금 여부로 세분화하여 다시 분석한 결과(모델 2)를 살펴보면, 특수직역 연금이나 국민연금 등과 같이 공적연금이 없는 경우에 빈곤위험이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기존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석상훈, 2012). 반면, 기초연금이 없는 경우에는 빈곤위험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해석상의 주의를 요하는데, 회귀분석의 결과와 같이 기초노령연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빈곤의 위험을 높였다기보다는,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집단에 제공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모델 3과 4에서는 공사 이전소득의 보유 차원에서 나아가 실질적인 수급액 수준의 영향력을 분석하였고, 이를 위하여 공사 이전소득액의 로그전환 변수를 모형에 투입하였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공적 이전소득과 사적 이전소득 모두 수급액이 증가할수록 빈곤위험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것은 남녀 노인모두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에 공적 이전소득액을 다시 공적연금과 기초연금액으로 세분화하여 분석하였고, 분석결과 공적연금 수급액이 증가할수록 빈곤위험이 감소하였지만, 기초연금 수급액의 수준은 빈곤 지위의 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5〉 빈곤의 영향요인(전체 가구)

	model1		model2		model3		model4	
	계수	SE	계수	SE	계수	SE	계수	SE
성별	.194	.169	.117	.171	-.066	.240	.108	.645
연령	.041 ***	.010	.021 *	.010	.045 ***	.014	.049	.042
교육수준	-.084 ***	.014	-.075 ***	.014	-.051 *	.021	-.003	.050
장애(있음)	-.161	.178	-.191	.180	-.396	.279	-.138	.677
경제활동(취업)	1.108 ***	.111	1.123 ***	.113	1.756 ***	.175	2.033 ***	.432
배우자(없음)	-.719 ***	.176	-.774 ***	.177	-1.008 ***	.255	-1.445 *	.717
가구원수	-.322 ***	.066	-.353 ***	.067	-.431 ***	.111	-.440	.281
거주지(서울)	-.013	.148	-.044	.150	.138	.245	.586	.764
순자산	-.367 ***	.043	-.329 ***	.043	-.357 ***	.063	-.144	.155
공적이전(있음)	-.048	.162						
사적이전(있음)	.270 *	.108	.362 ***	.111				
공적연금(있음)			.628 ***	.113				
기초연금(있음)			-.385 ***	.112				
공적이전액					-.795 ***	.107		
사적이전액					-.755 ***	.081	-.756 ***	.185
공적연금액							-1.184 ***	.323
기초연금액							.711 +	.424
Constant	1.794 *	.900	2.577 **	.911	13.069 ***	1.763	7.176	5.276
X^2	412.338		458.591		359.102		64.255	
-2LL	2364.369		2318.117		1183.253		222.285	
Nagelkerke R^2	.248		.273		.373		.352	

*p<.05, **p<.01, ***p<.001

주: 괄호안의 표기가 기준 속성임

〈표 3-26〉 빈곤의 영향요인(남성)

	model1		model2		model3		model4	
	계수	SE	계수	SE	계수	SE	계수	SE
연령	.055 ***	.013	.030 *	.013	.078 ***	.019	.103 *	.051
교육수준	-.111 ***	.019	-.099 ***	.020	-.085 **	.029	.051	.063
장애(있음)	-.205	.223	-.260	.227	-.655 +	.339	.460	.800
경제활동(취업)	1.200 ***	.144	1.214 ***	.146	1.805 ***	.226	1.664 ***	.484
배우자(없음)	-.784 **	.250	-.919 ***	.253	-1.254 ***	.369	-1.689 +	1.006
가구원수	-.396 ***	.089	-.443 ***	.092	-.520 ***	.149	-.377	.298
거주지(서울)	.000	.192	-.043	.196	-.082	.321	.683	.930
순자산	-.389 ***	.060	-.336 ***	.061	-.303 ***	.090	-.132	.188
공적이전(있음)	.039	.217						
사적이전(있음)	.166	.139	.276 +	.143				
공적연금(있음)			.673 ***	.142				
기초연금(있음)			-.474 ***	.147				
공적이전액					-.694 ***	.136		
사적이전액					-.668 ***	.104	-.603 **	.216
공적연금액							-.958 **	.358
기초연금액							.115	.498
Constant	1.400	1.188	2.451 *	1.213	9.265 ***	2.244	3.732	6.147
X^2	250.561		286.777		203.604		35.883	
-2LL	1361.735		1325.519		655.273		165.260	
Nagelkerke R^2	.257		.289		.372		.287	

* $p < .05$, ** $p < .01$, *** $p < .001$

주: 괄호안의 표기가 기준 속성임

〈표 3-27〉 빈곤의 영향요인(여성)

	model1		model2		model3		model4	
	계수	SE	계수	SE	계수	SE	계수	SE
연령	.022	.015	.011	.015	.002	.022	-.072	.112
교육수준	-.047 *	.021	-.044 *	.021	-.008	.031	-.162	.124
장애(있음)	-.067	.301	-.056	.299	.032	.473	-2.000	1.569
경제활동(취업)	1.049 ***	.182	1.068 ***	.183	1.946 ***	.300	4.881	1.783
배우자(없음)	-.629 *	.249	-.618 *	.250	-.782 *	.357	-1.797 **	2.147
가구원수	-.239 *	.099	-.258 **	.100	-.332 +	.173	-.920	1.448
거주지(서울)	-.090	.239	-.115	.241	.236	.406	.956	1.995
순자산	-.335 ***	.062	-.329 ***	.062	-.429 ***	.093	-.167	.356
공적이전(있음)	-.245	.247						
사적이전(있음)	.480 **	.178	.537 **	.181				
공적연금(있음)			.520 **	.193				
기초연금(있음)			-.214	.175				
공적이전액					-1.053 ***	.185		
사적이전액					-.982 ***	.139	-1.813 **	.589
공적연금액							-1.925 *	.909
기초연금액							2.950 *	1.244
Constant	2.572 +	1.389	2.941 *	1.391	19.504 ***	3.015	14.661	13.306
X^2	118.658		126.743		154.678		42.542	
-2LL	985.282		977.197		511.604		42.373	
Nagelkerke R^2	.182		.193		.363		.666	

*p<.05, **p<.01, ***p<.001
주: 괄호안의 표기가 기준 속성임

제3절 소결 및 정책적 함의

본 장에서는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4차 자료(2011년)를 활용하여 빈곤 여성노인의 특성을 파악하고 소득 수준 및 소득원별 구성의 실태를 파악하였으며, 성별에 따른 노후 빈곤 실태를 분석하였다. 또한 공사 이전 소득이 빈곤 감소에 미치는 효과의 크기와 빈곤지위 결정 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첫 번째 연구목적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결과를 보면, 여성노인은 남성노인보다 교육수준, 취업여부 등의 차원에서 볼 때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 특히 빈곤 여성노인은 전체 노인 중에서도 연령대가 상대적으로 높고, 교육수준이 낮으며 배우자 없이 독거하는 비율이 높고, 취업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이 인구사회학적 특성만 놓고 보더라도 빈곤 여성노인이 연령, 성별, 빈곤이라는, 배제를 야기하는 메커니즘의 중심에 놓여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둘째, 빈곤 실태를 중심으로 고찰한 결과, 남성노인의 경우 40.1%의 빈곤율을 보인 반면, 여성노인은 45.9%로 더욱 높았다. 특히 여성노인의 빈곤율은 노년 중기, 즉 75세 이상 84세 이하의 시기에 가장 높았다. 또한 빈곤의 강도를 가리키는 지표인 빈곤갭 비율을 적용한 결과,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15.8%가 나타났고, 이러한 수치는 여성노인에게서 약 3.5% 포인트 정도 높았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한국사회의 여성노인이 빈곤에 처하게 될 위험 자체도 매우 높지만, 빈곤에 진입할 경우 그들이 경험하는 빈곤의 강도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성별 격차 측면에서 보자면 빈곤율보다 빈곤갭 비율이 더욱 컸는데, 이러한 결과는 여성노인이 남성노인에 비해 빈곤할 위험이 높은 것

도 문제이지만, 그것보다 그들이 경험하는 빈곤의 강도가 더욱 큰 것이 보다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보여주는 바이다.

셋째, 개인 소득을 기준으로 남성, 여성, 그리고 빈곤 여성노인의 소득 원별 보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 남성노인의 40%가 근로소득이 있는 반면, 이 수치가 여성노인에게서는 15.8%, 빈곤 여성노인에게서는 14%로 감소하였다. 특히 공적이전소득은 전체 노인 중에서 무려 75%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것은 사적 이전소득 보유율의 1.7배에 달하는 수치였다. 이와 같이 노인의 공적 이전소득 보유율을 높인 데에는 기초노령연금의 도입이 중요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며, 데모그란트 성격을 가진 기초노령연금의 도입을 통해 공적이전소득에서 배제된 것으로 대표된 여성노인이 수급률(take up rate) 측면에서 볼 때 배제가 어느 정도 완화된 것처럼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수직역 연금과 국민연금으로 구성된 공적연금의 보유율은 여성노인보다 남성노인에게서 3배나 높았다.

특히 이러한 소득원별 보유를 빈곤 여성노인을 중심으로 봤을 때, 70%에 해당하는 빈곤 여성노인이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하고 있으며, 여성노인의 절반이 사적이전소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소득을 제외하고는 빈곤 여성노인의 10% 내외만이 근로소득, 공적연금소득, 재산소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노인의 빈곤이 실질적으로 근로소득과 공적연금에서의 배제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바이다.

넷째, 소득원별 수준과 비중을 중심으로 볼 때, 개인소득을 기준으로 총소득의 성별격차는 남성노인이 여성노인보다 2.7배 높았다. 전체 소득원 중에서 남성노인보다 여성노인에게서 더 높은 유일한 소득원은 사적이전소득이었고, 사적이전소득이 개인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성

노인에게서 31%, 빈곤 여성노인에게서는 36%였다.

한편, 빈곤 여성노인의 개인소득에서 가장 비중이 큰 것은 공적이전소득으로서, 이것은 개인 총소득 중에서 무려 40%를 차지하고 있었고, 이러한 결과의 배경에는 2008년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기초노령연금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러한 결과는 오히려 월 10만원도 채 되지 않는 기초노령연금의 지급으로 여성노인의 소득 분포를 변화시킬 정도로 여성노인의 소득이 수준이 상당히 낮다는 것을 입증시켜주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공적 이전소득의 구성현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성노인은 공적 이전소득의 80%가 특수직역 연금과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체계가 차지하고 있는 반면, 여성노인의 경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기초노령연금으로 총소득의 57%를 차지하고 있었다.

공적 이전소득과 사적 이전소득의 수준과 비중을 종합해보건대, 빈곤 여성노인의 공사 이전소득의 비중은 76%로서, 외부 체계에 대한 소득 의존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령 3단계에 있는 빈곤 여성노인의 경우 공적 이전소득의 비중이 무려 60%에 달하고 있으며, 빈곤 여부에 관계없이 여성노인의 경우 75세가 넘어서면서 이전소득에 대한 의존도가 전체 소득의 80%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연구목적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이전소득의 빈곤 감소 효과는 빈곤율과 빈곤갭 비율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전체적인 이전소득의 빈곤감소 효과는 31%였고, 사적 이전소득보다 공적 이전소득의 효과가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노인의 경우 공적이전의 빈곤율 감소효과가 26%로서, 이것은 사적 이전소득의 효과보다 9% 포인트 높은 수준이었다. 여성 노인의 공적 이전 빈곤율 감소효과는 20%이고, 사적 이전소득과의 격차는 2% 포인트에 불과했다.

이를 통해 남성 노인은 빈곤의 감소가 주로 공적 이전을 통해 이루어지는 반면, 여성 노인의 경우 사적 이전소득과 공적 이전소득이 유사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적 이전소득을 대표적인 제도를 중심으로 구체화한 결과, 남성노인의 경우 공적 이전소득 효과의 기여도 중에서 공적연금의 빈곤감소 효과가 공적 이전소득의 기여도에서 30%를 차지하는데 그쳤다. 한편, 빈곤갭 비율에 근거하여 측정한 결과, 공사 이전소득의 빈곤 감소 효과가 64%로, 빈곤을 측정보다 2배 가량 증가한다.

둘째, 회귀분석을 통하여 노인의 빈곤을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교육수준이 높고 경제활동을 할 경우, 그리고 배우자가 있고, 가구원수와 순자산이 많을수록 빈곤위험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소득의 영향력은 보유 여부와 소득액 수준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는데, 우선 보유 여부 측면에서 보자면 남성노인의 경우 공적 이전소득과 사적 이전소득의 존재가 모두 빈곤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반면, 여성노인의 경우 공적 이전소득 존재의 영향력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사적 이전소득의 보유는 빈곤 가능성을 유의미하게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공적 이전소득의 보유를 공적연금과 기초노령연금으로 구분하여 분석할 경우 남녀 노인 모두 공적연금의 보유가 빈곤 가능성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실질적인 수급액이 빈곤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공적 이전소득과 사적 이전소득 모두 수급액이 증가할수록 남녀 동일하게 빈곤위험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본 장에서는 여성노인의 공식적 노후 소득보장제도 배제의 맥락으로서 생애 주된 일자리를 중심으로 직업력을 분석하였다. 남성노인의 근로기간이 여성노인보다 현저하게 길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성별에 따른 근로기간의 격차는 2년에 지나지 않았고, 빈곤 여성노인의 경우 비

빈곤 여성보다 더 길어서, 생애 평균 근로 기간이 26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여성 노인의 빈곤을 설명할 때 거론되는 대표적인 원인인 여성의 비경제활동, 짧은 근로 경험 등의 설명방식에 문제를 제기하게 만든다. 여성노인은 생애 기간에 걸쳐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빈곤한 것이 아니라, 임금을 충분히 벌어들일 수 있는 일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빈곤하다고 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로부터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를 도출해 낼 수 있다.

첫째, 노후 빈곤을 분석한 기존의 연구들과 다르게 본 연구는 기초노령연금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수행된 조사 자료를 토대로 분석을 수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여성노인의 공적 이전소득 체계로의 편입이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공적 이전체제로의 편입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제도 기초노령연금임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볼 때, 기초노령연금이 현세대 노인의 공적 이전제도 사각지대 해소라는 목적은 일정 부분 달성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연금의 실질적인 수급액 수준이 높지 않고, 빈곤 감소 효과가 빈곤율보다 빈곤갭 비율에서 더욱 크다는 것은 기초노령연금의 효과성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따라서 빈곤을 감소를 증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보다 적극적인 수급자 포괄전략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공적연금의 존재는 그 자체로 빈곤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 노인의 경우 기초노령연금이 도입으로 인해 공적 이전소득의 수급률이 증가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공적 연금체계에서 상당수 배제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여성의 노후빈곤을 예방하기 위한 방편으로 여성, 공적 연금체계로의 편입, 그리고 이를 위한 경력단절의 최소화는 지금까지 여성 노인의 빈곤과 관련하여 매우 일반적인 설명

방식이었다. 그런데 생애 주된 일자리를 중심으로 빈곤 여성노인의 생애 평균 근로기간이 26년이라고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단순히 여성의 경력 단절의 최소화 그 자체가 여성 노인의 빈곤 감소를 위한 충분한 전략이 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무급가족 종사자 혹은 자영업자나 임시 일용직 임금 근로자와 같이 공적 연금체계에서 배제된 상태에서 경력을 지속시키는 것은 여성 빈곤을 완화하기 위한 제한적인 전략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의 경력단절 최소화를 위한 전략은 공적 연금체계의 편입 전략과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제4장 여성노인의 빈곤: 성별과 여성 내부집단 비교

제1절 분석 개요

제2절 주요 분석결과

제3절 소결 및 정책적 함의

4

여성 노인의 빈곤: << 성별과 여성 내부집단 비교

제1절 분석개요

1. 분석 목적

본 장에서는 2012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한 “여아와 여성이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방안(IV): 여성노인의 안전실태와 정책적 대응 방안(이하, 여성노인안전실태조사)”에서 수집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여성노인의 빈곤현황을 파악한다. 2012년에 실시한 여성노인안전실태조사는 여성노인의 경제상황에 관한 풍부한 자료를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성노인의 경제상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예: 소득보장 제도, 취업지원 사업 등)에 대한 인지도 및 이용경험 변수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본 장의 구체적인 분석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노인과 남성노인의 경제적 상황(현재 경제상황 및 노후준비에 대한 주관적 평가 등)을 비교한다.

둘째, 여성노인의 경제적 상황 및 주요 소득보장 정책, 취업지원 정책에 대한 인지도 및 이용현황이 여성노인의 내부집단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 이에 대한 함의를 밝히고자 한다.

2. 자료 및 분석방법: 여성노인안전실태조사

여성노인안전실태조사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2012년에 수행한

전국 규모의 조사로, 여성노인의 가족관계, 건강 및 기능상태, 경제상황(경제수준, 경제활동), 주거상황 및 삶의 질 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해 65세 이상 남녀노인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표집은 할당추출법으로 생활권과 인구비례를 기준으로 전국을 대도시, 중소도시, 농산어촌으로 구분하여 표집대상을 할당하였다.

분석에는 가계 경제상황, 주 수입원, 노후준비 수준, 경제적인 독립도 수준, 소득활동, 구직활동 등 경제상황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였다. 분석은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분석, χ^2 검증을 실시하였고, 여성노인 내부 집단별 차이는 연령, 교육수준, 배우자 유무, 건강상태에 따라 경제상황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표 4-1〉 여성노인안전실태조사 측정변인

구분	변수명	변수 설명
경제수준	가계 경제 상황	응답자가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자신의 경제 형편
	주 수입원	생활비 부담 방법
	노후대책 수준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 정도
	경제적인 독립도 수준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생활영위 가능 여부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여부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 여부
	국민연금 수급여부	국민연금 수급여부
경제활동	소득활동	수입이 있는 일을 하고 있는지 여부
	구직활동	구직활동 경험 여부
경제적 방임	경제적 방임 경험 여부	가족/보호자가 생계유지가 어려운데도 도와주지 않은 경험 유무
소득보장, 취업관련 정책 인지도 및 활용여부	기초노령연금제도	기초노령연금제도에 대한 인지도 및 이용여부
	노인취업알선센터/고령자인재은행	노인취업알선센터에 대한 인지도 및 이용여부
	노인인력지원기관	노인인력지원기관에 대한 인지도 및 이용여부

제2절 주요 분석결과

1. 노후 경제상황에 대한 성별차이

먼저 성별 생활비 원천을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주된 생활비 원천이 ‘근로활동’(29.2%), ‘사적 이전’(20.6%), ‘본인 및 배우자의 공적연금’(18.5%), ‘일반적금 및 예금’(17.8%) 순으로 나타난 반면 여성노인의 경우 ‘사적이전’(38.6%)의 비율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본인 및 배우자의 공적연금’(19.5%), ‘일반적금 및 예금’(13.9%) 순으로 나타났다.

〈표 4-2〉 성별 생활비 원천

(단위: %, 명)

구분	일반 적금 및 예금	주식 이나 채권 수익	부동산 관련 수익 (임대료 등)	근로 활동	개인 연금	사적 보험 (개인 연금 제외)	퇴직금 (퇴직 연금)	자식 및 친척에게 서 받는 생활비 및 용돈 (자녀와 동거할 경우 자녀의 소득)	본인 및 배우자의 공적연금 (국민 연금 및 특수 연금)	배우자 의 소득	기타	합계(n)	x2(df)
전체	15.5	0.1	2.8	19.6	2.4	0.3	2.5	31.3	19.1	5.6	1.1	100 (2000)	157.01(10) ^{***}
남성	17.8	0.0	3.2	29.2	2.8	0.1	4.0	20.6	18.5	3.4	0.2	100 (815)	
여성	13.9	0.1	2.4	12.9	2.1	0.3	1.4	38.6	19.5	7.1	1.6	100 (1185)	

주: *p<.05, **p<.01, ***p<.001

경제적 독립성 역시 성별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는데, 남성노인의 50.9%가 경제적으로 독립적이라고 응답한 반면 여성노인은 전체 응답자의 26.8%만이 경제적으로 독립적이라고 응답했다.

〈표 4-3〉 성별 경제적 독립성

(단위: %, 명)

구분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지 않다	합계(n)	$\chi^2(df)$
전체	36.6	63.4	100(2000)	
남성	50.9	49.1	100(815)	121.56(1)***
여성	26.8	73.2	100(1185)	

주: * $p < .05$, ** $p < .01$, *** $p < .001$

한편, 공공부조인 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에서는 남성노인에 비해 여성노인의 수급 비율이 높았고, 사회보험인 국민연금의 경우 남성노인의 수급률이 여성노인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남성소득자 중심으로 설계된 소득보장 정책의 영향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4-4〉 성별 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

(단위: %, 명)

구분	수급	비수급	합계(n)	$\chi^2(df)$
전체	6.2	93.9	100(2000)	
남성	4.9	95.1	100(815)	3.68(1)
여성	7.0	93.0	100(1185)	

주: * $p < .05$, ** $p < .01$, *** $p < .001$

〈표 4-5〉 성별 국민연금 수혜 여부

(단위: %, 명)

구분	수혜	비수혜	합계(n)	$\chi^2(df)$
전체	19.2	80.9	100(2000)	
남성	25.5	74.5	100(815)	36.07(1)***
여성	14.8	85.2	100(1185)	

주: * $p < .05$, ** $p < .01$, *** $p < .001$

성별 노후 준비정도에 대해 살펴본 결과, 여성노인은 남성노인에 비해 ‘전혀 준비되지 않았다’와 ‘별로 준비되지 않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표 4-6〉 성별 노후준비정도

(단위: %, 명)

구분	매우 많이 준비됐다	어느 정도 준비됐다	별로 준비되지 않았다	전혀 준비되지 않았다	합계(n)	x ² (df)
전체	1.6	27.9	47.0	23.6	100(2000)	71.57(3)***
남성	2.8	36.3	43.1	17.8	100(815)	
여성	0.8	22.1	49.6	27.5	100(1185)	

주: *p<.05, **p<.01, ***p<.001

마지막으로 경제적 방임 경험 여부를 살펴보았는데, 가족/보호자가 생계유지가 어려운데도 도와주지 않은 경험을 했다는 응답 전체 응답자 중 1.6%로 극히 소수였고, 이에 대한 성별 차이도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2011년 노인실태조사〉에서 가족이나 보호자가 찾아오지 않거나 생활비를 주지 않았다는 응답이 2.5%로 조사된 것보다 다소 낮은 수치이다.

〈표 4-7〉 성별 경제적 방임 경험 유무

(단위: %, 명)

구분	있음	없음	합계(n)	x ² (df)
전체	1.6	98.5	100(2000)	.76(1)
남성	1.8	98.2	100(815)	
여성	1.4	98.6	100(1185)	

2. 노후 경제생활과 여성노인의 내부다양성: 경제상황, 경제적 독립성 및 노후 준비 정도, 정책인지도를 중심으로

가. 경제상황

주관적 경제상황의 경우, 여성노인의 연령대가 후기노인일수록,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무배우인 경우,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매우 어려운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조사되었다. 또한, 국민연금을 수혜하고 있는 여성노인이 비수급 여성노인에 비해 주관적 경제상황을 ‘넉넉한 편’, ‘매우 넉넉한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를 공적 이전소득이 빈곤 감소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낸다는 3장의 분석결과와 연계할 경우 공적 이전소득이 노년기 경제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4-8〉 여성노인 집단별 주관적 경제상황

(단위: %, 명)

구분	매우 어려운 편	어려운 편	넉넉한 편	매우 넉넉한 편	합계(n)	$\chi^2(df)$
전체	9.9	58.6	31.1	0.4	100(1185)	
연령						
65~69세	5.6	58.1	35.8	0.6	100(341)	23.19(6)**
70~79세	9.5	59.5	30.4	0.5	100(578)	
80세 이상	16.2	57.5	26.3	0.0	100(266)	
학력						
초졸 이하	11.8	60.3	27.6	0.2	100(930)	53.76(6)***
중졸	3.4	58.3	37.7	0.6	100(175)	
고졸 이상	1.3	40.0	56.3	2.5	100(80)	

구분	매우 어려운 편	어려운 편	넉넉한 편	매우 넉넉한 편	합계(n)	$\chi^2(df)$
혼인상태						
유배우	3.1	54.2	42.3	0.4	100(459)	89.28(6)***
사별	13.9	61.7	24.1	0.3	100(713)	
기타	30.8	46.2	15.4	7.7	100(13)	
건강상태						
나쁜 편	18.5	65.6	15.9	0.0	100(302)	92.22(6)***
보통	8.4	62.0	29.2	0.4	100(489)	
좋은 편	5.1	49.2	44.9	0.8	100(394)	
국민연금수혜						
수혜	5.1	45.7	48.6	0.6	100(175)	30.91(3)***
비수혜	10.7	60.9	28.0	0.4	100(1010)	

주: * $p < .05$, ** $p < .01$, *** $p < .001$

나. 소득구성원

소득원의 경우, 여성노인의 연령대가 후기노인일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무배우인 경우,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자녀나 친척으로부터 받는 생활비가 주된 원천이라는 응답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도 지적되었듯 사적이전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노인빈곤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공적 이전체계의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4-9〉 여성노인 집단별 소득원

구분	일반적금 및 예금	주식이나 채권수익	부동산 관련 수익 (임대료 등)	근로활동 개인연금	사적보험 (개인연금 제외)	퇴직금 (퇴직연금)	자식/친척 에게 받는 생활비 및 용돈 (자녀 동거 시 자녀의 소득)	본인 및 배우자의 공적연금 (국민연금 및 특수연금)	배우자의 소득	기타	합계(n)
전 체	13.9	0.1	2.4	12.9	2.1	1.4	38.6	19.5	7.1	1.6	100(1185)
연령											
65~69세	12.6	0.0	4.4	21.7	1.8	1.5	24.3	16.4	16.4	0.3	100(341)
70~79세	16.3	0.2	1.6	11.9	2.2	1.7	40.1	19.4	4.5	1.7	100(578)
80세 이상	10.5	0.0	1.9	3.8	2.3	0.8	53.4	23.7	0.8	3.0	100(266)
학력											
초졸 이하	12.8	0.1	1.9	11.9	2.0	1.3	42.6	20.1	5.2	1.9	100(930)
중졸	14.9	0.0	3.4	16.6	2.3	1.7	30.3	17.7	11.4	0.6	100(175)
고졸 이상	25.0	0.0	6.3	16.3	2.5	2.5	10.0	16.3	20.0	0.0	100(80)
혼인상태											
유배우	16.8	0.0	3.3	13.7	1.7	3.3	25.5	17.0	18.3	0.4	100(459)
사별	12.2	0.1	2.0	12.3	2.4	0.3	47.0	20.8	0.0	2.4	100(713)
기타	7.7	0.0	0.0	15.4	0.0	0.0	38.5	38.5	0.0	0.0	100(13)
기초생활보장											
수급	6.0	0.0	1.2	1.2	0.0	0.0	16.9	47.0	4.8	22.9	100(83)
비수급	14.5	0.1	2.5	13.8	2.3	1.5	40.2	17.4	7.3	0.0	100(1102)

(단위: %, 명)

다. 경제적 독립성 및 노후 준비 정도

여성노인의 경제적 독립성의 경우, 연령대가 후기노인일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무배우인 경우,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경제적 독립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을 수혜하고 있는 여성노인의 경우 비수혜 여성노인에 비해 경제적 독립성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조사되었다.

〈표 4-10〉 여성노인 집단별 경제적 독립성

(단위: %, 명)

구분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지 않다	합계(n)	$\chi^2(df)$
전 체	26.8	73.2	100(1185)	
연령				
65~69세	39.9	60.1	100(341)	52.30(2)***
70~79세	24.7	75.3	100(578)	
80세 이상	14.3	85.7	100(266)	
학력				
초졸 이하	22.2	77.8	100(930)	52.90(2)***
중졸	38.9	61.1	100(175)	
고졸 이상	53.8	46.3	100(80)	
혼인상태				
유배우	40.5	59.5	100(459)	72.69(2)***
사별	18.0	82.0	100(713)	
기타	23.1	76.9	100(13)	
건강상태				
나쁜 편	15.6	84.4	100(302)	68.19(2)***
보통	21.9	78.1	100(489)	
좋은 편	41.4	58.6	100(394)	
국민연금수혜				
수혜	50.9	49.1	100(175)	60.89(1)***
비수혜	22.6	77.4	100(1010)	

주: * $p < .05$, ** $p < .01$, *** $p < .001$

노후준비 정도에서도 내부 집단별 격차가 나타나, 여성노인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무배우인 경우, 건강상태가 바쁠수록 ‘전혀 준비되지 않았다’는 응답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국민연금을 수혜하는 여성노인이 비수혜노인에 비하여 ‘노후 준비가 됐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조사되었다.

〈표 4-11〉 여성노인 집단별 노후준비 정도

(단위: %, 명)

구분	매우 많이 준비됐다	어느 정도 준비됐다	별로 준비되지 않았다	전혀 준비되지 않았다	합계(n)	$\chi^2(df)$
전 체	0.8	22.1	49.6	27.5	100(1185)	
연령						
65~69세	1.2	30.8	48.7	19.4	100(341)	44.14(6)***
70~79세	0.9	20.2	51.9	27.0	100(578)	
80세 이상	0.0	15.0	45.9	39.1	100(266)	
학력						
초졸 이하	0.5	18.2	49.5	31.8	100(930)	64.70(6)***
중졸	1.1	34.9	51.4	12.6	100(175)	
고졸 이상	2.5	40.0	47.5	10.0	100(80)	
혼인상태						
유배우	1.1	34.2	52.1	12.6	100(459)	122.61(6)***
사별	0.4	14.7	47.8	37.0	100(713)	
기타	7.7	0.0	61.5	30.8	100(13)	
건강상태						
나쁜 편	0.3	8.3	42.7	48.7	100(302)	144.02(6)***
보통	0.4	19.6	57.7	22.3	100(489)	
좋은 편	1.5	35.8	44.9	17.8	100(394)	
국민연금수혜						
수혜	1.1	42.3	42.3	14.3	100(175)	53.48(3)***
비수혜	0.7	18.6	50.9	29.8	100(1010)	

주: * $p < .05$, ** $p < .01$, *** $p < .001$

노후준비 충분성 역시, 여성노인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무배우인 경우,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충분하지 않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국민연금을 수혜하는 여성노인이 비수혜 여성노인에 비해 충분히 노후준비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표 4-12〉 여성노인 집단별 노후준비 충분성

(단위: %, 명)

구분	충분하다	충분하지 않다	합계(n)	$\chi^2(df)$
전 체	20.9	79.1	100(1185)	
연령				
65~69세	26.7	73.3	100(341)	10.26(2)**
70~79세	19.4	80.6	100(578)	
80세 이상	16.9	83.1	100(266)	
학력				
초졸 이하	18.0	82.0	100(930)	25.37(2)***
중졸	29.1	70.9	100(175)	
고졸 이상	37.5	62.5	100(80)	
혼인상태				
유배우	31.2	68.8	100(459)	47.35(2)***
사별	14.4	85.6	100(713)	
기타	15.4	84.6	100(13)	
건강상태				
나쁜 편	9.3	90.7	100(302)	61.35(2)***
보통	18.4	81.6	100(489)	
좋은 편	33.0	67.0	100(394)	
국민연금수혜				
수혜	39.4	60.6	100(175)	42.47(1)***
비수혜	17.7	82.3	100(1010)	

주: * $p < .05$, ** $p < .01$, *** $p < .001$

한편, 노후 준비가 충분하지 못했던 주된 이유의 경우, 여성노인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가 비수급자에 비해 ‘소득이 낮아서 노후준비를 할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응답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4-13〉 여성노인 집단별 충분히 준비 못한 이유

(단위: %, 명)

구분	소득이 낮아서 노후준비를 할 여유가 없(었)기 때문	생활비, 교육비, 의료비 등 더 시급하게 돈 쓸 데가 많(었)기 때문에	노후를 대비한다는 생각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	기타	합계(n)	$\chi^2(df)$
전 체	48.3	38.4	13.1	0.1	100(937)	
연령						
65~69세	44.4	42.4	13.2	0.0	100(250)	7.31(6)
70~79세	50.6	37.3	12.0	0.0	100(466)	
80세 이상	48.0	36.2	15.4	.5	100(221)	
학력						
초졸 이하	48.9	38.3	12.7	0.1	100(763)	2.94(6)
중졸	48.4	38.7	12.9	0.0	100(124)	
고졸 이상	40.0	40.0	20.0	0.0	100(50)	
혼인상태						
유배우	46.5	39.9	13.6	0.0	100(316)	4.21(6)
사별	48.9	37.9	13.1	0.2	100(610)	
기타	72.7	27.3	0.0	0.0	100(11)	
건강상태						
나쁜 편	51.1	33.6	15.3	0.0	100(274)	9.05(6)
보통	49.4	37.6	12.8	0.3	100(399)	
좋은 편	43.9	44.7	11.4	0.0	100(264)	
기초생활보장						
수급	68.4	22.8	7.6	1.3	100(79)	25.51***
비수급	46.5	39.9	13.6	0.0	100(858)	

주: * $p < .05$, ** $p < .01$, *** $p < .001$

현재 근로활동 유무는 여성노인의 연령이 초기노인일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가 비수급자에 비해 근로활동을 하고 있다는 응답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4-14〉 여성노인 집단별 근로활동 유무

(단위: %, 명)

구분	그렇다	아니다	합계(n)	$\chi^2(df)$
전 체	20.3	79.7	100(1185)	
연령				
65~69세	34.3	65.7	100(341)	75.75(2)***
70~79세	18.7	81.3	100(578)	
80세 이상	6.0	94.0	100(266)	
학력				
초졸 이하	19.5	80.5	100(930)	6.32(2)*
중졸	20.0	80.0	100(175)	
고졸 이상	31.3	68.8	100(80)	
혼인상태				
유배우	23.5	76.5	100(459)	4.90(2)
사별	18.2	81.8	100(713)	
기타	23.1	76.9	100(13)	
건강상태				
나쁜 편	11.3	88.7	100(302)	40.70(2)***
보통	18.0	82.0	100(489)	
좋은 편	30.2	69.8	100(394)	
기초생활보장				
수급	25.7	74.3	100(175)	.36(1)
비수급	19.4	80.6	100(1010)	

주: * $p < .05$, ** $p < .01$, *** $p < .001$

한편, 현재 일하고 있는 여성노인의 경우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주된 이유가 내부 집단별로 차이가 나타나, 교육수준이 낮고, 무배우인 여성노인의 경우 ‘생계유지를 위해’ 일하고 있다는 응답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4-15〉 여성노인 집단별 일하는 이유

구분	개인의 능력을 활용하기 위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노후생활을 위해 좀 더 저축 하려고	사회에 공헌하기 위해	생계유지를 위해	여가시간을 활용하기 위해	자기발전을 위해	기타	(단위: %, 명)
									합계(n)
전 체	7.5	7.5	8.7	0.4	70.5	3.7	0.8	0.8	100(241)
연령									
65~69세	6.8	4.3	7.7	0.9	78.6	0.9	0.0	0.9	100(117)
70~79세	8.3	9.3	10.2	0.0	63.0	6.5	1.9	0.9	100(108)
80세 이상	6.3	18.8	6.3	0.0	62.5	6.3	0.0	0.0	100(16)
학력									
초졸 이하	7.7	6.1	8.8	0.0	71.8	3.9	1.1	0.6	100(181)
중졸	8.6	14.3	5.7	0.0	65.7	5.7	0.0	0.0	100(35)
고졸 이상	4.0	8.0	12.0	4.0	68.0	0.0	0.0	4.0	100(25)
혼인상태									
유배우	9.3	6.5	8.3	0.9	68.5	4.6	0.0	1.9	100(108)
사별	6.2	8.5	9.2	0.0	71.5	3.1	1.5	0.0	100(130)
기타	0.0	0.0	0.0	0.0	100.0	0.0	0.0	0.0	100(241)
건강상태									
나쁜 편	0.0	5.9	8.8	0.0	79.4	5.9	0.0	0.0	100(34)
보통	8.0	8.0	6.8	0.0	71.6	2.3	1.1	2.3	100(119)
좋은 편	9.2	7.6	10.1	0.8	67.2	4.2	0.8	0.0	100(241)

라. 관련 정책 인지도 및 이용 현황

다음에는 노후 소득보장 및 경제활동과 관련된 주요 정책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여부를 살펴본다.

1) 정책 인지도

노후 소득보장 및 경제활동과 관련된 주요 정책에 대한 인지도 및 이용 현황은 〈2011년 노인실태조사〉 등 기존 연구에서 충분히 분석되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정책 인지도를 살펴 보았다. 노인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구인·구직상담, 직업훈련, 취업알선, 고용지도 등 다양한 취업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노인취업알선센터/고령자인재은행에 대한 여성노인의 인지도는 12.6%로 낮은 수준이었다. 특히, 여성노인의 연령이 고령일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혼인상태가 사별인 경우 유배우에 비해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16〉 여성노인 집단별 노인취업알선센터 인지도

(단위: %, 명)

구분	모른다	들어봤다	합계(n)	$\chi^2(df)$
전 체	87.4	12.6	100(1185)	
연령				
65~69세	80.9	19.1	100(341)	19.33(2)***
70~79세	89.3	10.7	100(578)	
80세 이상	91.7	8.3	100(266)	
학력				
초졸 이하	89.2	10.8	100(930)	16.59(2)***
중졸	83.4	16.6	100(175)	
고졸 이상	75.0	25.0	100(80)	

구분	모른다	들어봤다	합계(n)	$\chi^2(df)$
혼인상태				
유배우	84.1	15.9	100(459)	12.52(2)**
사별	89.9	10.1	100(713)	
기타	69.2	30.8	100(13)	
건강상태				
나쁜 편	89.7	10.3	100(302)	14.51(2)***
보통	90.2	9.8	100(489)	
좋은 편	82.2	17.8	100(394)	
기초생활보장				
수급	88.0	12.0	100(83)	.022(1)
비수급	87.4	12.6	100(1102)	

주: * $p < .05$, ** $p < .01$, *** $p < .001$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노인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제공하는 시니어클럽(구, 지역사회시니어클럽)에 대한 인지도 역시 전체 여성노인의 14.0%만이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여, 고령여성의 근로활동을 지원하는 기관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내부 집단에 대한 인지도 차이는 노인취업알선센터/고령자인재은행과 유사하게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기관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17〉 여성노인 집단별 노인인력지원기관 인지도

(단위: %, 명)

구분	모른다	들어봤다	합계(n)	$\chi^2(df)$
전 체	86.0	14.0	100(1185)	
연령				
65~69세	83.0	17.0	100(341)	3.40(2)
70~79세	86.7	13.3	100(578)	
80세 이상	88.3	11.7	100(266)	
학력				
초졸 이하	87.3	12.7	100(930)	6.82(2)*
중졸	82.3	17.7	100(175)	
고졸 이상	78.8	21.3	100(80)	
혼인상태				
유배우	85.2	14.8	100(459)	1.41(2)
사별	86.7	13.3	100(713)	
기타	76.9	23.1	100(13)	
건강상태				
나쁜 편	89.7	10.3	100(302)	10.91(2)**
보통	87.3	12.7	100(489)	
좋은 편	81.5	18.5	100(394)	
기초생활보장				
수급	84.3	15.7	100(83)	.20(1)
비수급	86.1	13.9	100(1102)	

주: * $p < .05$, ** $p < .01$, *** $p < .001$

2) 정책 이용 현황

정책 이용 현황⁶⁾은 국민연금제도, 기초노령연금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노후소득보장제도인 국민연금제도의 경우에는 전체 여성응답자의 14.8%가 현재 국

6) 취업지원 관련 프로그램의 경우 이용자수가 매우 적어 본문에 제시하지 않았음

민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여성노인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연령대가 초기노인일수록, 유배우인 경우,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급여를 받고 있다는 응답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4-18〉 여성노인 집단별 국민연금 수혜 여부

(단위: %, 명)

구분	수혜	비수혜	합계(n)	$\chi^2(df)$
전 체	14.8	85.2	100(1185)	
연령				
65~69세	24.0	76.0	100(341)	40.48(2)***
70~79세	13.3	86.7	100(578)	
80세 이상	6.0	94.0	100(266)	
학력				
초졸 이하	11.8	88.2	100(930)	36.00(2)***
중졸	21.7	78.3	100(175)	
고졸 이상	33.8	66.3	100(80)	
혼인상태				
유배우	21.4	78.6	100(459)	25.88(2)***
사별	10.7	89.3	100(713)	
기타	7.7	92.3	100(13)	
건강상태				
나쁜 편	11.9	88.1	100(302)	4.38(2)
보통	14.3	85.7	100(489)	
좋은 편	17.5	82.5	100(394)	

주: * $p < .05$, ** $p < .01$, *** $p < .001$

한편, 국민연금제도 가입이 어려운 저소득층 노인 및 기초생활보장 대상 노인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공적 부조식 연금인 기초노령연금의 경우에는 전체 여성노인 응답자의 59.3%가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여성노인 집단별 기초노령연금 수령 여부를 살펴보면, 전체 여성응답자의 59.3%가 기초노령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특히, 여성노인이 고령일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일수록 기초노령연금을 수령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조사되었다.

〈표 4-19〉 여성노인 집단별 기초노령연금 수급 여부

(단위: %, 명)

구분	비수급	수급	합계(n)	x ² (df)
전 체	40.7	59.3	100(344)	
연령				
65~69세	59.3	40.7	100(113)	26.68(2)***
70~79세	34.7	65.3	100(170)	
80세 이상	23.0	77.0	100(61)	
학력				
초졸 이하	35.5	64.5	100(265)	14.07(2)***
중졸	54.0	46.0	100(50)	
고졸 이상	65.5	34.5	100(29)	
혼인상태				
유배우	54.2	45.8	100(142)	20.10(1)
사별	30.5	69.5	100(197)	
기타	60.0	40.0	100(5)	
건강상태				
나쁜 편	36.0	64.0	100(89)	1.36(2)
보통	40.8	59.2	100(125)	
좋은 편	43.8	56.2	100(130)	
기초생활보장				
수급	17.9	82.1	100(28)	6.59(1)*
비수급	42.7	57.3	100(316)	

주: *p<.05, **p<.01, ***p<.001

마지막으로,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되는 공적 부조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본 조사에서는 전체 여성노인

응답자의 7%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를 수급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은 여성노인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무배우인 경우,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수급하고 있다는 응답의 비율이 높았다.

〈표 4-20〉 여성노인 집단별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 여부

(단위: %, 명)

구분	수급	비수급	합계(n)	x ² (df)
전 체	7.0	93.0	100(1185)	
연령				
65~69세	3.2	96.8	100(341)	12.87(2)**
70~79세	7.6	92.4	100(578)	
80세 이상	10.5	89.5	100(266)	
학력				
초졸 이하	7.4	92.6	100(930)	1.25(2)
중졸	5.1	94.9	100(175)	
고졸 이상	6.3	93.8	100(80)	
혼인상태				
유배우	2.6	97.4	100(459)	31.12(2)***
사별	9.4	90.6	100(713)	
기타	30.8	69.2	100(13)	
건강상태				
나쁜 편	9.6	90.4	100(302)	7.74(2)*
보통	7.6	92.4	100(489)	
좋은 편	4.3	95.7	100(394)	

주: *p<.05, **p<.01, ***p<.001

제3절 소결 및 정책적 함의

1. 노후 경제상황에 대한 성별 차이

가. 남녀노인의 경제적 안정성

본 장에서는 2012년 여성노인안전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여성노인의 경제상태를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 남성노인과 여성노인의 경제적 상황은 총소득액, 소득원 구성, 경제적 독립성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존재했다. 구체적으로 남성노인이 여성노인에 비해 총소득액이 많았고, 경제적 독립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또한, 생활비 주부담자가 ‘자신’이라는 응답이 남성노인에게서는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지만, 여성노인의 경우 17.4%에 그쳤다.

나. 남녀노인의 소득원 구성 현황

소득원 구성에 있어서도 남성노인은 여성노인과 비교할 때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이 주요 소득 구성원으로 나타난 반면, 여성노인의 경우 사적 이전소득이 주요한 소득 구성원으로 나타났다⁷⁾. 특히, 남성노인은 ‘공적 연금’을 수급하고 있다는 응답이 높게 조사된 반면, 여성노인은 공공부조의 성격을 갖는 ‘기초노령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를 수급하고 있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대부분의 복지국가에서 남성은 사회보험에, 여성은 공공부조에 주로 포괄되는 이중 복지 현상(dual welfare)이 나타난다는 Sainsbury(1993)의 주장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7) 부록의 〈2011 노인실태조사〉 자료 분석결과 참조

2. 여성노인 내부 집단별 노후 경제상황

가. 경제상황

여성노인의 내부 집단별 차이를 살펴보면, 교육수준이 낮고 무배우인 여성노인일수록 경제적 상황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으로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무배우인 경우 ‘본인 스스로’ 생활비를 부담하기보다는 ‘(손)자녀 및 그 배우자’를 통해 생활비를 충당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이는 학력, 건강상태 등 인적자본요인이 빈곤지위를 결정하는 주요 변수라는 선행연구 결과(김성숙, 2012)를 지지하는 것이다.

나. 소득구성원

소득구성원의 경우에도 교육수준, 배우자 유무, 최장기간 종사한 직종의 종사상 지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는데⁸⁾, 교육수준이 높고, 최장기간 종사한 직종의 종사상 지위가 ‘상용근로자’인 경우 본인의 공적 연금 수입이 있다고 응답이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공공부조인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의 경우,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무배우인 경우 수급하고 있다는 응답의 비율이 높게 조사되었다.

다. 경제적 독립성 및 노후 준비 정도

경제적 독립성 및 노후 준비정도의 경우에는 여성노인의 연령대가 후기노인일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무배우인 경우, 건강상태가 나쁠수

8) 부록의 〈2011 노인실태조사〉 자료 분석결과 참조

록 ‘경제적 독립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와 ‘노후준비가 별로/전혀 준비되지 않았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여성노인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노후준비가 충분하지 못했던 주된 이유가 ‘소득이 낮아서 노후준비를 할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조사된 바, 저소득 여성이 노후에도 빈곤하게 생활하게 되는 ‘빈곤의 덫’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성이 재확인 되었다. 또한, 교육수준이 낮고, 무배인 여성노인 중 다수가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으며, 주된 이유가 ‘생계유지를 위해’로 나타난 점을 고려하여, 저소득 여성노인의 안정된 소득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일자리 정책 확대 등 정책적 관심이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라. 관련 정책 인지도 및 이용 현황

마지막으로 관련 정책 인지도 및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인지도 및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낮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노인의 연령이 고령일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역설적인 것은 여성 노인 중 이 집단이 소득보장 및 근로지원에 대한 욕구가 크다는 점이다. 따라서, 노인 취업과 관련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홍보 확산 및 접근성 강화를 통해 노인 취업과 관련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야 할 것이다.

3. 정책제언

□ 남성부양자 중심의 현행 사회보험제도 개편

본 연구에서 여성노인은 소득원별 소득비중에 있어 근로소득이나 공적 이전소득의 비중이 낮고 사적 이전소득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대부분의 현 세대 여성노인은 경제활동 참여기회가 제한적이었고 전통적인 가족돌봄노동에 종사해왔다. 이로 인해 소득활동과 사회보험 납입 활동이 제한적이어서 현재의 노후소득 보장체계에 있어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남성부양자모델 및 남성가구주의 경제활동을 전제로 설계된 현행 사회보험제도의 개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제도에서 여성노동 특성(예: 시간제 혹은 전일제 고용, 고용지속패턴, 임금수준 등)의 반영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 노년기 이전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 및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 인정

이와 함께, 여성노인은 가족돌봄노동을 이유로 결혼 후 경제활동에서 이탈하는 경우가 많아, 적절한 연금납부 및 재산축적에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여성노인의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노년기 이전에 경제활동을 계속 유지하여 소득을 축적하고 개별 연금수급권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공공부조 프로그램이나 유족연금 등 공적 지원체계가 여성노인의 빈곤을 일정수준 완화시키는데는 기여할 수 있지만 이러한 소득원만으로는 노년기 여성노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전히 극복할 수 없다는 점에서(Burkhauser, Duncan, & Hauser, 1994) 노년기 이전 경제활동 참여를 통한 연금체계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경력단절을 최소화하고, 여성의 노동시장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여성들이 경력단절을 경험하게 되는 주된 원인이 가족 내 보호활동과 가사노동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자녀양육, 노인돌봄 등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는 사회적인 돌봄시스템 구축이 병행되어야 하며(김혜영 외, 2005),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 인정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 저소득층 여성노인 대상 취업지원 및 연계서비스 강화

마지막으로 소득보장 및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하여 고령여성의 취업지원 서비스 접근성 및 일자리 연계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상당수의 저소득층 여성노인이 생계를 위해 일자리를 찾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정책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률이 매우 낮은 상황이므로, 이들을 위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 여성노인을 위한 ‘괜찮은 일자리’ 창출에 대한 고민도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제5장 여성노인의 빈곤실태에 대한 심층면접 결과

제1절 면접대상자

제2절 빈곤의 원인

제3절 경제생활 실태

제4절 노인의 노후준비

제5절 빈곤 해소를 위한 여성노인의 정책욕구

제6절 소결

5

여성노인의 빈곤실태에 대한 << 심층면접 결과

제1절 면접대상자

1. 면접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노인의 빈곤이 다른 연령층의 빈곤과 가장 큰 차이점을 지니는 부분은 건강상태의 악화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심층면접대상이 되는 집단은 시설에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기 위한 법적자격요건인 1~3등급의 장기요양대상자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상태에서 생활하지만 가족과 함께 동거하지 않으면서 빈곤상태의 여성노인이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자격요건이 안되어서 수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노인들이 일부 포함된 이들 집단은 <표 5-1>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가족의 돌봄과 제도적인 지원으로부터 모두 방치되어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표 5-1> 심층면접 대상이 되는 빈곤여성노인의 특성

노인의 의존도		경제적 자립도	
		낮음 <-----> 높음	
신체적 자립도	낮음 ^	유형 A - 거동이 불편하여 타인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이 불가능 - 의료적 지원 필요 - 노인장기요양보험 - 노인요양시설입소	유형 B - 거동이 불편하여 타인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이 불가능 - 의료서비스 제공받음: 민간의료시설 +자택(자녀나 간병인의 돌봄)
	높음 v		

노인의 의존도		경제적 자립도	
		낮음 <-----> 높음	
V 높음		- 자택에서 생활가능하나 일상생활에 대한 수발필요 - 자녀와 독립된 채 혼자 살고 있음. - 전부는 아니지만,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임.	- 자택에서 생활가능하나 일상생활에 대한 수발필요 - 자녀나 다른 가족과 함께 살고 있음. - 혼자서 생활할 수 있는 경제적 자립도는 떨어지지만 가족과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최저생활이하로 떨어지지는 않음
		유형 C - 도움없이 일상생활 가능 - 기초생활수급을 받지 못하지만 가족의 지원이나 독립적인 소득이 없거나 부족 - 일할 의사가 있으나 기회가 없어서 일할 수 없음. - 일하고자 하는 욕구 높음.	유형 D - 도움없이 일상생활 가능 - 자녀의 경제적 지원을 받거나 노후 생활이 가능한 개인자산을 가지고 있음. - 여가나 자원봉사에 대한 욕구 높음

심층면접은 빈곤노인 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여성노인이 겪는 빈곤에 초점을 맞추며, 성별 차이를 확인해보기 위해 심층면접은 여성노인 27명과 남성노인 5명, 총 32명으로 실시되었다. 면접 대상자들의 간략한 특징은 <표 5-1>에 정리되어있다.

먼저 빈곤노인은 공공부조의 수급여부로 선정하였다. 면접대상자 중 19명은 기초생활 수급자이며, 11명은 차상위 계층, 기초생활급여 수급이나 차상위 계층에 해당되지 않는 면접대상자는 2명이었다. 이 중 사적 연금(사례 13)이나 국민연금을 받는 면접대상자(사례 22, 사례 30)는 총 3명뿐이었고,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 국가의 지원금에 의존하여 생활하고 있었다.

수입의 다른 출처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면접대상자들은 국

가의 지원금이 어느 정도, 얼마나 제공되느냐에 따라 생활이 좌우되는 양상을 보였다. 국가의 지원은 사례 25, 사례 30, 사례 31, 사례 32를 제외한 28명의 면접대상자(약 88%)가 거의 전적으로 의존할 정도로 큰 도움이 되었지만, 이에 속하는 대부분의 면접대상자들이 국가의 지원금이 여전히 생활을 운영하기에는 부족한 금액이라고 대답하였다. 차상위나 기초수급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례 31, 32 면접대상자들의 경우에도 파지수거나 공공근로를 통해 돈을 벌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여전히 매우 적은 금액이었다. 또한 가족의 지원이나 노후를 대비한 자산도 없어 기초생활급여 수급자들보다 더 월수입이 적은 빈곤한 면접대상자들이었다.

국가의 지원금 이외의 소득은 본인이 직접 경제활동을 하거나, 자녀의 도움을 받아 발생하였다. 직접 경제활동을 하여 번 수입이 생활비의 주된 출처인 노인은 전체 면접대상자 중 1 명(사례 25)으로, 가게를 운영하여 나오는 소득으로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으나, 벌이는 기초생활급여보다 낮다고 한다. 공적 연금을 받으면서 경제생활을 하는 노인들은 압도적으로 박스 수거를 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를 통해 반찬거리를 사는데 보태거나, 생활비에 보태기도 하였다. 또한 노인공공근로를 하거나, 품삯을 받는 노인도 많았다. 하지만 이러한 일은 정기적인 소득이 들어오는 일이 아니라, 일거리가 있을 때, 일을 하는 만큼 버는 돈으로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 빈곤의 버팀목이 되어주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표 5-2〉 면접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번	성별	연령	빈곤 형태	거주 형태	지역	가족관계	경제 활동	수입원	건강
1	여	72	기초	동거	도시	남편(사망)	없음	수급	나쁨
2-a	여	80	기초	동거	도시	남편(사망), 3남	없음	수급	나쁨
2-b	여	71	해당없음	동거	도시	호적상 자녀 4명	없음	수급	나쁨
3	여	68	기초	동거	도시	남편, 1남 2녀	없음	수급	나쁨
4	여	83	기초	동거	도시	남편(사망), 1남 1녀	없음	수급	나쁨
5	여	90	기초	동거	도시	남편(사망), 1남	없음	수급	양호
6	여	68	기초	동거	도시	남편(사망), 1남 2녀, 손자손녀	없음	수급	나쁨
7	여	77	기초	동거	농촌	남편(사망), 1남 2녀	있음	수급 품앗이	나쁨
8	남	78	기초	동거	농촌	남편, 5남매	없음	수급	나쁨
9	여	83	기초	독거	도시	남편(사망)	없음	수급	양호
10	여	67	기초	독거	도시	없음	없음	수급	나쁨
11	여	74	기초	독거	도시	남편(사망), 2남 1녀	없음	수급	나쁨
12	여	69	기초	독거	도시	남편(사망)	없음	수급	나쁨
13	여	85	기초	독거	도시	없음	없음	수급	나쁨
14	여	81	기초	독거	도시	남편(사망), 3남 2녀	없음	수급	나쁨
15	여	89	기초	독거	농촌	남편(사망), 1남 1녀	없음	수급	양호
16	여	75	기초	독거	농촌	남편(사망), 7남매	없음	수급	양호
17	여	78	차상위	동거	도시	남편(사망), 2남 4녀	있음	수급 파지수거	나쁨
18	여	77	차상위	동거	도시	남편(사망), 3남 2녀	있음	수급 공공근로	나쁨
19	여	70	차상위	동거	도시	남편(사망) 딸2, 아들2, 손자손녀	있음	수급 파지수거	나쁨
20	여	79	차상위	동거	농촌	남편(사망), 1남 2녀	있음	수급 가계수입	나쁨

연번	성별	연령	빈곤 형태	거주 형태	지역	가족관계	경제 활동	수입원	건강
21	여	78	차상위	동거	농촌	남편(사망), 1남 1녀	없음	수급	나쁨
22	여	73	차상위	독거	도시	남편(사망), 2남 1녀	없음	수급	나쁨
23	여	79	차상위	독거	도시	남편(사망), 2남 2녀	있음	수급 파지수거	나쁨
24	여	80	차상위	독거	도시	남편(사망), 2남 1녀	있음	수급 파지수거	나쁨
25	여	78	차상위	독거	농촌	남편(사망), 2남 1녀	있음	수급 가계운영	나쁨
26	여	82	차상위	독거	농촌	남편(사망), 4남 1녀	없음	수급	나쁨
27	남	102	기초	동거	도시	1남	없음	수급	양호
28	남	77	기초	독거	도시	없음	없음	수급	양호
29	남	67	기초	독거	농촌	4 남매	없음	수급	나쁨
30	남	65	차상위	동거	도시	2남 4녀	있음	수급 통역	다소 양호
31	여	76	해당없음	동거	도시	남편, 3녀	있음	수급 파지수거	나쁨
32	여	74	해당없음	독거	도시	남편(사망), 3남	있음	수급 공공근로 파지수거	나쁨

의료 급여 역시 병원을 찾을 일이 많은 노인들의 생계에 큰 도움이 되고 있었다. 대부분의 면접대상자들은 의료급여 1종, 혹은 2종 수급권자로 의료비 지원을 받고 있었다(의료급여 지원유형은 <표 5-3> 참고).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가 의료기관 등을 이용하였을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이 거의 들지 않으며, 2종의 경우에도 1차 병원 본인부담금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표 5-4 참고), 노인들의 생활비 지출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었다(보건복지부, 2013).

〈표 5-3〉 의료급여 수급권자 구분

구분	세부항목
1종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근로무능력가구, 107개 희귀난치성환자가 속한 가구, 시설수급자
	행려환자
	타법적용자: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아동(18세 미만), 국가유공자,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2종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의료급여법」 제3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 3조의 규정에 의하여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구분

출처: 정경희 외, 2012.

〈표 5-4〉 수급권자가 의료기관 등을 이용한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금액

구분		1차(의원)	2차 (병원 종합병원)	3차 (지정병원)	약국	PET 등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없음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5%
2종	입원	10%	10%	10%	-	10%
	외래	1,000원	15%	15%	500원	15%

주: *상기 본인부담금은 급여청구분에 대한 것이며, 비급여 청구분은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함.
출처: 정경희 외, 2012.

자녀의 지원의 경우, 많은 노인들이 자녀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면접 대상자 중 4명(사례 10, 14, 15, 23)이 간헐적으로 지원을 받고, 4명(사례 9, 21, 22, 26)이 정기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을 제외하면, 노인들은 자녀들을 오히려 도와주어야하거나, 자녀들도 어렵게 생활하고 있어 도움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경우가 많았다. 즉 면접대상자들에게서 가난이 대물림되는 현상을 뚜렷이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특히

많은 부분 부양의무를 가족에게 돌리는 우리나라의 문화, 정책적 특성 상 이들이 매우 빈곤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음을 드러낸다.

면접 대상자의 연령은 67세부터 최고령은 102세였으며, 노인들 내에서도 연령별, 생애주기 별 차이를 보기 위해 노인전기(65세부터 69세), 노인 중기(70세~79세), 노인 후기(80세 이상)의 노인들로 나누었다. 특히 사례 27 면접대상자는 102세로, 매우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면접 수행이 가능했을 뿐만 아니라 정정한 모습을 보였다. 면접 대상 노인 중 대부분(17명)은 중기 단계에 분포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에는 후기(10명), 전기 단계(5명)에 속하였다. 2011년 자료를 바탕으로 측정한 우리나라 여성의 평균수명이 84.45세(남성 77.65세)임을 고려해 볼 때(통계청, 2012), 대부분의 면접대상자가 노인 중기 단계에 분포한 것은 이러한 추세가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동거인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면접대상 노인이 1인가구주(면접대상자 32명 중 15명, 약 47%)로, 일상생활을 혼자 영위하고 있었다. 이러한 독거노인들은 전구 같이, 장보기 등 일상생활 수행에 필요한 노동을 도와주거나 대신해줄 사람이 필요한 경우가 많았다. 동거인이 있는 노인들은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가 3 사례, 손자와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가 1 사례, 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가 2 사례, 자매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가 2 사례, 손자나 손녀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가 5 사례, 조카와 살고 있는 경우가 2 사례였다. 손녀와 아들이 잠시 머물다 가는 경우도 2 사례 있었다. 주목할 만 한 점은 동거인이 있는 면접대상자들의 사례에서 이들의 동거인이 노인들을 위한 돌봄 노동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경우 노인들이 동거인들을 위한 돌봄 노동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면접 대상 노인들 모두가 건강상의 문제를 안고 재정적 문제에서도 매우 힘든 상황이었지만, 이들은 정신적 환자인 아들을 돌보거나,

소년소녀 가장인 청소년 손자녀를 기르고, 치매에 걸린 아내를 간호하는 등 돌봄 노동을 수행하기보다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는 적절한 정책적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돌봄 노동을 수행하는 면접대상자들은 돌봄 노동의 수행에서 오는 부담으로 인해 빈곤의 이중 부담(무슨 뜻인지)을 떠안고 있을 수 있으며, 빈곤이 악화될 수도 있는 조건에 처해있음을 의미한다.

2. 면접대상자별 개요

개별 면접 대상자들에 대한 간략한 특징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사례1은 72세 여성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이며, 남편과 사별하고 현재는 기억 장애가 있는 동생과 함께 살고 있다. 건강이 좋지 않지만 기초수급 1종이라 의료비를 지원받으며, 병원에 가야할 때 비용부담으로 가지 못한 적은 없다. 하지만 국가에서 주는 보조금(기초생계비 약 38만원, 노령연금 약 9만원, 총 약 46만원)이 수입의 전부이며, 그 중 월세 30만원을 내고 나면 남는 돈이 없어 생활비를 조금이라도 더 받으면 살아가는 데 힘이 덜 들것 같다고 느낀다. 결혼은 하였지만 자녀가 없어 자녀나 친척으로부터 경제적인 지원을 받기 힘들며, 좀 더 나이가 들어 몸이 힘들어져도 돌보아줄 사람이 없다.

사례 2는 함께 사는 언니(80세), 동생(71세)을 인터뷰하였으며, 이들은 아직 장가를 가지 않은 조카와 함께 살고 있다. 둘의 보조금을 합해(60만원 정도) 생활하지만, 약값이 많이 들어 생활이 여전히 어렵다. 언니는 기초생활수급 1종이라 의료비가 대부분 지원이 되며 기초생계비와 노령연금도 받지만, 동생은 친자식은 아니지만 호적에 올라와있는 자식들과 사위의 소득으로 인해 기초생계비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노령연금만 받

고 있다. 이로 인해 둘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다. 동생은 의료비가 많이 들지만 지원을 많이 받지 못하기 때문에, 병원에 가고 싶어도 경제적인 부담으로 가지 못하거나 약을 먹지 않기도 한다. 예를 들어 동생이 먹는 당뇨약은 보험처리가 되지 않아 3주치가 약 4만 8천원 정도로 이들의 생계에 부담이 크다.

사례 3은 68세 여성으로 평소 남편과 손자와 함께 살고 있으나, 남편은 현재 입원중이다. 국가의 지원금이 수입의 전부이며, 기초생계비와 할머니, 할아버지의 노령연금을 합하면 60만원 정도를 매달 수령받는다. 이 중 할아버지의 입원비로 드는 비용이 매달 20만원이며 월세로 15만원씩이 빠져나가서 남는 돈으로 생활을 한다. 현재 사례 3은 손자를 돌보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퇴원하시면 할아버지까지 돌봐야해서 돌봄 노동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사례 4는 83세로 현재 동생과 함께 살고 있다. 고향은 김천이나 8살 때 중국 만주로 넘어가 그곳에서 농사를 지으며 평생을 살았다. 한국으로 간 아들을 찾아 십년 전 쯤 한국에 왔으나, 아들을 찾지 못하고 한국에 정착하였다. 국가에서 받는 보조금이 생활비의 전부라, 매우 모자라지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기초수급 1종이라 의료비 혜택을 받지만, 면접 당시 이에 대해 잘 몰라서 병원을 잘 이용하지 않고 있었다. 동거중인 동생의 자녀들도 경제적으로 지원해주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사례 5는 90세 여성으로 현재 50세인 장애가 있는 손자와 함께 살고 있다. 역시 기초생활급여와 노령연금이 수입의 전부이며, 이 중 방세가 20만원, 수도세와 전기세 등이 10만원이 들기 때문에, 얼마 되지 않는 남는 돈으로 손자와 함께 살아간다. 젊었을 때 집을 장만한 것이 있었지만 남편이 술과 놀음을 하느라 팔아 현재는 남은 것이 없다. 손자가 있지만, 장애로 인해 부양을 해주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더 나이가 들면 양

로원에 갈 생각을 하고 있다.

사례 6은 68세로 현재 중학생인 손자와, 고등학생인 손녀를 돌보며 함께 살고 있다. 남편이 남편나이 43세에 교통사고로 갑자기 사망하였는데, 당시 남편은 전화국 공무원이었으며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의 사고로 경제적 타격이 컸다. 이후 수원에서 갈비집을 경영하였으나, 이를 정리한 이후로 파출부 등의 일을 하며 생활하였다. 현재는 손자녀와 본인 앞으로 나오는 국가의 보조금이 수입의 전부이다. 손자 손녀의 교육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으며, '모든 걸 쏟아 부었기 때문에' 손자손녀가 노후를 돌보아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사례 7은 77세로 현재 정신병에 걸린 아들과 함께 살고 있다. 매달 기초생활급여가 약 50만원 정도 나오며, 일당 5만원 정도 받는 품앗이를 간헐적으로 하여 수입을 충당하고 있다. 아들이 정신병 약을 계속 먹어야 할 뿐만 아니라, 담배를 많이 피고, 간식도 먹어서 아들에게 들어가는 지출이 많다. 또한 아들이 매우 폭력적이어서 아들을 통제하기가 매우 어렵다. 본인이 사망하면 아들은 돌보아줄 사람이 없어 양로원으로 보낼 생각 중이다.

사례 8은 78세 남성으로 현재 치매에 걸린 아내를 돌보며 함께 살고 있다. 이들의 수입 역시 기초생활급여가 전부이며, 남편은 이후에도 이것이 유일한 소득원일 것이라고 보고 있다. 자녀들이 다섯이지만, 모두 형편이 어렵고 '가난이 대물림'되어 경제적인 도움을 받기가 어렵다. 남편이 통원, 식사 준비 등 할머니의 돌봄 노동뿐만 아니라 가사노동도 수행하고 있다. 남편의 소망은 국가로부터 조금 더 경제적인 지원을 받아서 아내를 위한 한약을 짓거나, 종합검진 등을 해보는 것이다.

사례 9는 83세 여성으로 인터뷰에서는 독거라고 밝혔지만, 복지관 측에 따르면 실제로는 손녀딸과 함께 거주한다고 한다. 사례 9는 다른 면접

대상자들과는 달리 공적연금(기초/노령)뿐만 아니라 가족의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어서, 경제적인 면에서 조금 더 여유로워 보였다. 사별한 남편과의 사이에 자식은 없었지만, 조카딸을 어릴 때부터 거두어 키우고 시집까지 보내었다. 조카딸이 경제활동을 시작한 이후로 매달 25만원이나 35만원 정도의 용돈을 주고, 집세, 전기세, 수도세 등을 내 주는 등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었다. 건강이 더 나빠졌을 때도 조카딸이 돌보아주기로 약속하였다.

사례 10은 67세 여성으로 현재 혼자 살고 있다. 기초생활급여가 수입의 전부이며, 오래전 남편과 사별하고 자식도 없다. 그래서 물질적, 정신적인 지원을 해 줄 가까운 가족이 없으며, 병원에 입원하면 조카딸이 간헐적으로 용돈을 주고 가곤 한다. 젊었을 때는 식모살이를 50년 정도 하였으며, 이렇게 저축한 돈과 전세금으로 노후자금을 하려고 하였으나, 남편과 시동생이 이 돈을 가져가버려서 현재 재산은 없다. 현재 주택청약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주택공사에서 전세 주택을 분양받아 살고 있어, 방세의 부담이 덜 한 것이 지출에 큰 도움이 된다. 나이가 더 들어 혼자 살 수 없게 되면 요양원에 들어갈 생각을 하고 있다.

사례 11은 73세로 현재 원래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지만, 남편의 주식투자가 실패해 집, 차 몇 대, 사업 등 벌여놓은 자산과 돈을 모두 잃었다. 이후 남편이 술만 마시다 사망하였다. 현재 방 두 칸 연립주택에 전세로 살고 있는데, 예전에 시동생이 함께 살 때 시동생 퇴직금으로 구했다고 한다. 남편이 아플 때 요양사 자격증을 취득했고, 이를 통해 경제활동을 하려고 해보았으나, 기초생활급여에서 버는 돈만큼 제해진다는 소식을 듣고 일하는 것을 포기했다. 아들 한 명이 살아있지만 자신의 자녀들을 기르기도 힘들기 때문에 이후 돌보아주기 힘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사례 12는 69세 여성으로 현재 혼자 전세인 지하방에서 살고 있다. 전라도에서 살았지만, 어릴 때 집이 가난하여 부모님이 따라가라고 하여 강원도로 시집을 와서 남편이 폐병 환자임을 알았다. 아들 한 명, 딸 한 명을 낳고 살면서도 강원도로 자신을 보낸 부모가 원망스러웠고, 땅이 없어 화전을 일구며 생계를 이어갔다. 혼자 리어카를 끌고 다니며 재활용품을 모아 7천만원을 모았으나, 돈을 빌려준 사람이 사고사를 당하여 돈을 잃었다. 아들과 딸이 있지만 딸은 남편과의 관계가 화목하지 못하여 힘들어하고, 아들도 자신의 생계가 어렵기 때문에 이후 ‘죽으면 죽었지’ 자식들이 돌보아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사례 13은 85세 여성으로 현재 혼자 쪽방촌에 살고 있다. 스무 살 때 남편과 결혼하였는데, 당시 남편은 이미 유부남이라 결혼 신고도 하지 못하고 별거를 하였으며, 슬하에 자식도 없었고 식모살이를 계속 하였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정신대로 끌려갔다는 경험이 있는데, 당시 학생 60명 중에 50명이 끌려갈 정도로 많은 학생들이 차출되었다. 현재 수입은 기초 생계급여, 노령연금, 정신대 위로금 등으로 한 달에 45만원에서 50만원 가량이며, 습관이 매우 알뜰하여 이 돈으로도 ‘실컷’ 산다고 한다. 정부에서 노인들에게 잘 해준다고 고맙다는 말을 인터뷰 중에 많이 하였다. 여가시간에는 노인정에서 고스톱을 치며, 요가, 침 맞기, 안마, 노래 부르기 등 노인정을 통해 활발한 여가활동을 하고 있다. 식모살이 시절 든 사적 연금으로 인해 사망 시까지 일 년에 백 만원씩 연금을 받고 있다.

사례 14는 81세 여성으로 현재 시골에서 방이 두 칸인 본인이 소유한 집에 살고 있다. 남편은 6.25전쟁에 참전한 이후 결혼을 하였는데, 남편이 전쟁 휴유증으로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여 가정 경제를 부양하지 못하였다. 본인이 농사, 장사, 보파리 장수 등의 일을 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길렀고, 큰 아들이 한 달에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 용돈을 주었지만 지금

은 몇 달째 받지 못하고 있다. 나이가 더 들면 큰 딸이 모시겠다고 말을 하였으나, 이에 대해 면접대상자가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있다. 한 달 수입이 약 15만원(노령, 기초)으로 관리비 등을 제하면 거의 남는 돈이 없어, 나머지 생활비는 여유돈이 생길 때마다 상황에 맞게 살아간다. 돈이 없을 때에는 먹지 못하여 영양실조에 걸리기도 하였다.

사례 15는 89세 여성으로 현재 시골에서 마당이 넓고 방이 한 칸인 자에서 혼자 살고 있다. 남편은 사별했고, 자녀들이 있지만 정기적으로 경제적인 도움을 주지는 못하고 명절 때 약 20만원 정도 용돈을 주기도 한다. 나이가 더 들었을 때 자녀들이 돌보아줄 것이라고 기대하지 못하며, 나이가 들면 ‘죽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남편은 생전에 공무원이었으나, 당시에는 연금 체계가 없었기 때문에 남편으로 인해 받고 있는 연금은 없다. 현재 수입은 기초생활급여와 노령연금을 합하여 35만원 정도 되며, 이를 통해 매달의 생활비를 해결한다.

사례16은 75세 여성으로 시골에서 혼자 살고 있다. 남편은 6년 전쯤 사별하였고, 자녀가 7명 있으나 경제적으로 도와주지는 않고 있다. 한 달 수입은 국가에서 지원받는 기초생활급여, 노령연금으로 약 30만원에서 35만원 정도 되며, 이 돈으로 생활을 하고 있다. 남편이 생전에 농사, ‘노동일(일용직)’을 하였으나, 가정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였다. 또한 남편이 중풍에 걸려 10년 동안 큰 아들이 간호하며 크게 고생하기도 하였다. 현재는 일상생활 수행에서 많은 불편함을 느껴, 병원을 오갈 때, 침을 놓을 때, 지붕 수리할 때 등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인터뷰를 해서 삶의 어떤 변화도 없을 것이라고 느끼고 인터뷰 내내 부정적 태도를 많이 보였다.

사례 17은 78세로 현재 쪽방촌에 전세로 살고 있고, 작은 아들이 가끔씩 오가지만 거의 홀로 살고 있다. 수입원은 매달 나오는 노령연금 9만원

이 전부이며, 아들 둘과 딸 넷이 있지만 경제적으로 지원해주지도 않고, 연락도 거의 오지 않아 섭섭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 이웃들이 주는 박스를 팔아서 하루에 100원, 200원 정도 벌어 생활비에 보태거나 ‘커피라도 한 잔 빼먹는’ 데 쓴다. 나중에 나이가 더 들어서는 ‘젊은 사람들(복지사들)’이 도와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사례18은 77세로 주택공사 주택에서 전세로 살고 있으며, 현재는 손녀딸이 잠시 같이 거주하고 있다. 사별한 배우자가 국가 유공자이기 때문에 배우자가 받는 연금의 절반을 매달 받고 있으며, 노령연금까지 합하여 약 50만원 정도를 국가에서 지급받는다. 또 공공근로를 통해 매달 20만원 정도의 수입이 있어 한 달에 약 70만원의 수입이 있다. 하지만 약값으로 한 달에 약 30만원 정도가 지출되며, 전세금을 빌린 대출이자를 일년에 약 80만원 정도를 납부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다. 젊어서 노점상을 하며 3남 2녀를 키워 교육시켰으나, 자녀들 중에 정기적으로 경제적으로 도와주는 자녀는 없다. 명절 때나 생일 때 10만원 정도 용돈을 주곤 하고, 며느리 한 명은 키토산 등의 건강식품을 가끔 보내기도 한다.

사례19는 70세 여성으로 소년소녀가장인 손자와 손녀와 함께 주택공사 전세 주택에서 살고 있다. 수입은 약 100만원 정도로 자신 앞으로 나오는 노령연금과 나머지는 손자와 손녀 앞으로 나오는 국가 지원금으로 살고 있다. 또한 저녁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 파지를 주워 한 달에 15만원 가량의 돈을 벌고 있다. 손자손녀의 안전을 우려해 이때 집의 문을 잠궈 놓고 나간다. 원래 기초생활급여를 수령받고 있었으나, 연락이 없어 장가를 간 줄도 몰랐던 아들이 장가를 갔고, 그 며느리의 소득으로 인해 기초생활급여 수령이 중단되었다. 정밀회사를 다녀 받게 된 퇴직금과 국민연금이 있었지만, 아들이 교통사고를 내어 자신 명의의 이 돈들이 차압당하여 노후를 대비하여 모아두었던 돈들을 잃기도 했다. 연락도 잘 하지

않고 도움이 되지 않는 자식들 때문에 서러운 감정을 느끼고 있다.

사례 20은 79세 여성으로 현재 잠시 거주하고 있는 손녀와 함께 가게가 딸린 방 한 칸의 집에서 살고 있다. 옷가게의 수입을 통해 생활비를 마련하는데, 이는 얼마 되지 않는다. 다른 수입은 국가에서 받는 노령연금이 있다. 남편이 경찰이었으나, 당시에는 연금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남편으로 인해 받는 연금도 없으며, 자녀에게 금전적으로 지원받지도 못하고 있다. 남편이 중간에 경찰을 그만두어 생계가 곤란하였으며, 본인이 보파리 장사를 해서 생계를 이어갔으나, 자식들을 초등학교 까지만에 교육시키지 못하였다.

사례 21은 78세 여성으로 현재 이혼한 아들과 함께 살고 있다. 집은 자기이지만, 국가 소유의 땅에 지은 집이다. 아들이 재혼하기를 바라지만, 일은 하지 않고 술만 먹고 ‘미친 것’처럼 지내니 속이 ‘문드러’진다. 차상위 계층으로 선정되었으며 노령연금을 받고 있다. 병원을 자주 가지 않는데, 병원을 가면 돈을 많이 낸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수술의 경우 돈을 많이 내지만, 일반 진료의 경우에는 의료비가 지원됨에도 이를 잘 모르고 있었다. 딸이 용돈을 20만원 정도 주거나 세탁기, 병원비 등을 지원해주고 있다. 자신도 글을 읽을 줄 모르며, 자식들도 공부를 별로 시키지 못하였다.

사례 22는 73세로 현재 홀로 방 2칸이 있는 임대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 기초생활급여를 받지는 못하지만 노령연금, 국민연금을 합하여 20만원 정도를 매달 받고 있고, 딸이 매달 20만원을 지원해준다. 총 40만원 정도의 수입이 있지만 관리비와 아파트 임대료 등으로 30만원 정도의 지출이 있어 생활비가 여전히 부족하다. 슬하에 2남 1녀가 있지만 자신이 공부를 제대로 시키지 못하여, 자녀들도 힘들게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로 인해 자녀들도 자신을 도와줄 수 없는 것 같으며 마음이 아파한다.

나이가 더 들면 딸이나 아들에게 기대기가 부담스러워 요양원으로 가고 생각중이다.

사례 23은 79세 여성으로 홀로 전셋집에서 살고 있다. 슬하에 2남 2녀를 두었지만, 아들들은 사정이 어렵고, 딸들이 병원에 가는 것을 돕거나 경제적으로 지원해주고 있다. 남편과 자녀들이 매우 어릴 때 사별하여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연탄이 100장이 든 리어카를 끌고 다니거나, 쭉과 나물을 캐어 파는 등 ‘안 해 본 일’ 없이 많은 일들을 해가며 자녀들을 키웠다. 큰 딸은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고, 작은 딸은 이후 큰 집으로 이사를 가면 자신을 돌보겠다고 말했을 정도로, 다른 면접 대상자들보다는 자녀들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편이었다.

사례 24는 84세 여성으로 현재 보증금 650만원, 월세 35만원인 방에서 혼자 살고 있다. 남편은 놀음을 하다 싸움을 하게 되었는데, 그 때 계단에서 떨어져 9년동안 투병생활을 하다 사십 대에 사망했다. 혼자서 2남 1녀를 기르기 위해 건물 청소를 오랫동안 하였으며, 그 때 받은 퇴직금 등을 모아 현재 방의 보증금을 마련했다. 지금은 동네에 박스를 주워 한 달에 10만원 정도의 수입이 있으며, 노령연금 9만원과 동사무소에서 매달 주는 20만원을 합하여 40만원 정도의 월수입이 있다. 이는 방세에 비해 적은 돈이기 때문에 생활이 여전히 어렵다. 나이가 더 들면 요양원에 갈 생각이다. 아들과 함께 살아보았지만 갑갑했고, 며느리는 모셔줄 것 같지 않아서이다. 또 다른 아들은 건강이 매우 안좋은데 하루에 10만원인 주사를 매일 맞아야하는데 돈이 없어서 주사를 못 맞고 있어서 걱정하고 있다.

사례 25는 78세로 현재 가게를 운영하며 생활비를 벌지만, 그 돈이 기초생활급여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다. 이를 신청해보려고 생각은 해보았지만, 자식들도 도와주지 않고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신청해보

지 않았다. 국가에서는 노령연금 9만원, 장애수당 3만원을 매달 받고 있다. 젊을 때는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대학까지 보내느라 바빠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 연금을 들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고 한다. 남편은 방앗간을 했고, 자신은 농사를 짓고 살림을 하였는데, 남편은 3년 전쯤에 사별하였다. 조금 더 나이가 들어 거동이 불편해지면 아들이 요양원에 자신을 보낼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들과 함께 살고 싶지만 며느리들이 원치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사례 26은 81세 여성으로 혼자 살고 있으며, 4남 1녀를 두었다. 자식들이 모두 빈곤하지만 전기세, 수도세는 아들이 대신 내준다고 한다. 가끔씩 15만원 정도 생활비를 지원해주기도 하지만 이도 일정하게 받지는 못한다. 국가로부터는 노령연금 9만원, 장애 수당 3만원을 받고 있다. 따라서 정기적인 수입이 한 달에 국가 지원금 12만원 정도인데 의료비로 12만원 정도 지출할 때도 있어서 생활비가 여전히 모자라다. 비싼 약들이 많고, 물리치로나 침을 맞을 때는 의료비 지원이 적기 때문이다. 젊었을 때는 남편과 논밭을 일구며 살았으며, 남편이 보증을 잘 못 서서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한다. 대부분의 면접 대상자들처럼 당장의 생계가 급해서 노후 준비를 하지 못했다.

사례 27은 102세 남성으로 면접대상자 중 최고령이었으며, 88세인 아내와 함께 전세 집에서 살고 있다.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울 정도로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요양 3급을 받았으며, 요양사가 평일 오전에 와서 반찬을 해주거나 청소, 전화 받기 등의 일상생활을 도와주고 있었다. 많은 면접대상자들이 가사노동이 불가능함을 호소했지만, 이에 대해 제도적으로 도움을 받고 있는 면접대상자는 사례 27이 유일하였다. 기초생활급여, 노령연금을 받아 한 달에 50만원 정도의 수입이 있으며, 슬하에 아들이 있지만, 도와줄 형편이 되지 못한다. 황해도에서 내려왔으며, 북한에 있을

때는 농사를 지었으나, 남한에서는 미군부대에서 오래 일했으며, 고물 장사를 하기도 했다.

사례 28은 78세 남성으로 보증금 없이 월세 20만원을 내는 쪽방에 홀로 살고 있다. 기초생활급여로 한 달에 23만원 정도를 받으며, 노령연금은 다른 혜택들이 제해될 것을 우려해 받고 있지 않다고 한다. 오랫동안 구두담이를 했다. 몸이 더 불편해졌을 때 돌봐줄 사람은 없으며, '생활하다보면 몸이 아파서 죽으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례 29는 67세 남성으로 남의 땅에 아버지와 함께 지은 흙집에서 살고 있다. 면사무소에 주는 약 49만원이 한 달 수입의 전부라고 한다. 초등학교를 3학년 정도까지만 다니고 나무를 베어 오며, 제재소에서 일하기도 하고, 일용직, 목수, 공장 청소 등 많은 일을 하였다. 아내와는 이혼하였으며, 자녀는 4명이 있지만, 자녀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하자 아내가 모두 데리고 갔고 지금은 뿔뿔이 흩어져서 연락이 없다고 한다. 목수 일을 할 때 회사에서 연금을 들어줬어야하는데, 그것을 몰랐다고 한다. 앞으로도 생활비는 정부에서 받는 돈이 전부일 것이며, 그것이 끊어지면 '죽는다'고 생각한다.

사례 30은 남성으로 월세 13만원 쪽방에 혼자 살고 있다. 차상위 계층이지만, 면접 대상자 중 가장 높은 교육수준인 대학 졸업자였고, 인적자본도 높아서 현재 보석, 의류 관련 무역 회사들을 상대로 일본어, 중국어, 영어 통역을 하는 일을 해주고 있다고 한다. 통역 수입은 많을 때는 2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되지만, 아예 벌지 못할 때도 있다. 차상위 계층으로 약 40만원 정도의 기초수급을 받고 있으며, 60만원 정도의 국민연금도 받고 있다. 월 생활비는 약 120만원에서 130만원 정도가 드는데, 이도 '최저생계비'라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다.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지만 IMF 때 퇴직하였으며, 이후 자신이 보증을 잘 못 서 경제적으로 큰 타격

을 받자 그 충격으로 아내가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 슬하에 2남 4녀가 있지만 ‘자식들은 자식 인생이고, 부모는 부모’라고 생각하며, 자녀들의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지는 않다. 아들은 우리나라 명문대 의대를 졸업하여 현재 호주에서 의사이다. 퇴직금과 연금이 있었지만, 다 정리하여 자식들 결혼자금으로 쓰고 나니 남는 건 ‘몸통아리 하나’였다. 신앙이 깊으며, 여유 시간에는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를 공부할 정도로 배움을 지속하고 있다. 인터뷰 동안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서도 많이 언급했으며, 다른 면접대상자들보다 정치나 문화생활에도 관심이 많아 보였다.

사례 31은 76세 여성으로 슬하에 3녀를 두고 있으며, 현재 동갑인 남편과 함께 살고 있다. 국가로부터 본인과 남편 앞으로 나오는 노령연금을 수령하고 있으며, 나머지 부족한 돈은 부부가 함께 파지 수거를 통해 벌고 있다. 젊어서는 식당에서 일을 했고, 파출부 일을 하기도 했다. 장애 3종이지만 의료비 혜택은 ‘구멍만큼’ 있고, 의료비 부담이 크다고 한다.

사례 32는 74세 여성으로 손자와 함께 월세 집에 살고 있다. 기초생활 급여나 차상위 대상자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국가로부터는 노령연금만 수령하고 있으며, 공공근로를 통해 월 20만원, 파지 수거를 통해 약 10만원을 벌어서 총 40만원 정도의 수입이 있다. 아들이 셋이지만 경제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형편이 되지 못하여 고등학교 2학년인 손자까지 맡아서 돌보고 있다. 3년 전 남편과 사별했는데, 남편은 일용직이나 경비원 일을 했었다고 한다. 생활형편이 매우 어려워 보이나, 국가로부터 받는 지원이 거의 없으며, 손자 앞으로 나오는 지원도 없어 보였다.

제2절 빈곤의 원인

1. 저소득 직업

한 명의 면접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면접대상자들은 최저 수준으로 먹고 살수는 있지만 그 외의 여유는 거의 없는 저소득 직업에 종사해왔다. 남편이 있는 여성노인들도 살림만 한 경우는 없었고, 모두 경제활동을 한 경험이 있었다. 특히 이 중 대부분의 여성 노인이 경제의 주부양자였거나, 남편과 거의 동등한 비중으로 경제를 담당하고 있었다. <표 5-5>에서 볼 수 있듯, 농촌의 사는 노인들의 경우 농사를 지은 경우가 많았고, 도시에서 살았던 노인들은 건물 청소, 보따리 장사, 식모살이, 파출부, 노점상 등 비정규직의 일을 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정규직이었던 면접대상자는 대기업을 다니다 은퇴한 사례 30 남성과 사례 19 여성이 유일했다. 이는 현세대 노인들이 정규직의 일자리가 매우 드문 시기에 활발한 경제활동을 했으며, 그 당시는 경제개발이 시작되기 이전이거나 초입 단계의 시기로 일자리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면접대상자들은 직업 안정성과 직장 내 복지가 제공되는 정규직을 가지기 보다는 비공식적 영역에서 대부분 일하여왔고, 공식적인 영역이라도 한 달의 별이만 보장되는 열악한 상황에서 일을 한 경험이 있었다. 이는 노인이 되어서의 경제적 생활을 준비하지 못하는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

〈표 5-5〉 면접대상자의 일 경험

연번	일 경험	연번	일 경험	연번	일 경험
1	식모, 식당, 가사도우미	12	화전 농사, 공공근로, 재활용품 수집	23	쭈, 나물 캐기, 연탄 리어카 끌기 등 다수
2	농장 일	13	식모살이	24	건물 청소
3	식모살이, 가사 도우미	14	농사, 장사, 보따리장수	25	농사, 가게 운영
4	농사, 청소	15	식당 운영	26	논밭일
5	장사, 식모살이	16	농사, 식모살이	27	농사, 미군부대, 고물장사
6	갈비집 운영, 파출부	17	농사	28	구두닦이
7	농사, 공장	18	노점상	29	나무 베기, 제재소, 일용직, 목수, 공장 청소
8	장사, 모텔업	19	정밀회사	30	대기업(태광)
9	농사, 골프장, 청소, 식모살이 등 다수	20	보따리 장사, 옷가게 운영	31	식당일, 파출부
10	식모살이 50년	21	자갈 깨는 일 16년	32	공장일 외 다수
11	남편이 주식투자를 실패하기 전까지 함께 가게 운영	22	식당, 건물 청소		

식모살이를 계속했죠. 50대까지 계속했지요. 한 50년 하고 내밥먹는데 십 몇 년 된 거니깐. 그때 거기서는 연금이나 퇴직금 같은 건 안 받았어요. 옛 날에는 어렵게 사니까요. 그 집에 키워가지고 시집보내준다고 하면 보내고, 보내고 그런 식으로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못 받았어요. (사례 10, 67, 여)

나도 몰라요. 그냥 그렇게 살아요. 나도 젊어서 파출부 다녀서 벌어서 아픈 게 약 먹고 류마티스 관절 있지, 중풍 왔지, 약 먹고. (사례 31, 76, 여)

노점상 같은 거. 큰 장사 이런 거 안 하고. 가게를 갖고 크게 해본 것도 없고 그냥 노점상 이렇게 용돈정도. 그래서 우리 어르신이 농민도 아니지 공무원도 아니지, 하고는 싶는데 그 양반도 그런 것도 없어서 남편이 능력이 없으 니깐. (사례 18, 77, 여)

농사지었지. 둘이 같이. 나는 일꾼이었어. 남 농사지 뭐. 일 안한 게 없어. 밭도 메고 논도 매고. (사례 26, 81, 여)

제도권에 속하지 못한 일의 성격상 공식적으로 정해진 정년에 맞춰 은퇴를 하기보다, 일을 더 이상 하기 힘들어졌을 때 경제활동을 종결한 노인들이 많았다. 많은 면접대상자들이 건강상의 이유로 일을 그만두었다고 답했다. 그들이 해왔던 일은 정신적인 노동이기보다 육체적 노동을 수반한 일이었고, 건강의 악화는 일을 지속할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다. 육체노동의 성격이 강한 일들로 인해 건강의 악화가 더 가속화된 것으로 보이는 면접대상자들도 있었다.

아파서 그만 뒀어요. 많이 아파서 걸어 다니기가 힘들고. 파출부 일 다니면서 추운데 찬물로 청소하고 기름때 벗기고 어떤 집에서는 잘 살아도 점심도 안주고 바퀴벌레가 손가락만 한 게 기어다는데 찬 밥 먹고 남긴 것을 그런 놈을 먹으래요. 냉장고에 반찬이 많이 있어도 쉬어 터진 놈 먹으래요. 밥도 굶고 그랬어요. (사례 31, 76, 여)

아니, 구해가지고 내가 일을 할 수가 있어야지. 그 목수를 그만두고 공장에 청소를 다녔어. 근데 도저히 못하겠더라고, 다리도 아프고. 걸음을 걸을 수가 없어. 여기서 신정로, 거기까지 가는데 7번을 쉬었어. 그래서 도저히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그냥 나왔지. (사례 29, 67, 남)

나? 그냥 하다가 아파서 못했지. (사례 3, 68, 여성)

2. 보증과 사업 실패

보증과 사업 실패로 빈곤해진 면접대상자들도 있었다. 사례 19와 25 면접대상자는 가족의 보증을 섰다 잘못되어 이후 지속적으로 빈곤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아들의 사업을 경제적으로 지원해주

고 보증을 서 주어 빈곤해진 면접대상자도 있었다. 사례 8 면접대상자는 이로 인해 노후대책이었던 집을 잃고 현재는 치매 아내를 돌보며 전셋집에서 살고 있었다.

퇴직금하고 연금하고. 우리 아들, 솔민이 아빠가 차를 사서 보험도 안내고 사고를 냈나 봐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그래서 내 봉급은 차압이 안 들어오고 국민연금하고 퇴직금하고 차압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한 푼도 못 찾아 썼어.

남들 돈 벌 때 나도 돈 벌었는데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내가 노후대책하려고 돈을 벌었는데 자식하나를 잘못 놓아서. 자식만 놔서 버리고, 저지랄로 안 들어오니. 애 100일 때 나가서 안 들어와요. 누가 나 아들 물어보면 없다 그래요. (사례 19, 70, 여)

시동생이 지하 스포츠 센터를 한다고, 그리고 형이 나이가 먹었으니깐 형이 용돈이라도 얼마씩 준다고 하더라, 근데 부도가 나가지고 그래서 훌쩍 다 넘어가서 지금 논이고 밭이고 아무것도 없어요. 집만 있고 집도 아들 앞으로 해놔놓아요. (사례 25, 78, 여)

네. 남편이랑 같이 장사를 했는데 집도 있고 다 있고 그랬는데 우리 큰 아들이 사업하다가 다 말아 먹었어요. 집을 잡혀가지고. 자기도 거지 되고 우리도 거지 되어 버린 거죠. 여기 그때 우리 아들이 임대아파트를 한 12년 됐지. 그때 해놔었어요. 왔다 갔다 하다가 그걸 믿고 내려 온 거죠. 8년 됐어요, 내려 온지가. 2005년도 왔어요. 그러다가 남의 집 빌려 살게 됐지. (사례 8, 78, 남)

3. 가족의 질환

가족의 질환으로 인해 빈곤해지거나, 빈곤을 벗어날 수 없게 된 면접대상자들도 있었다. 사례 32 면접대상자는 가족의 경제적 상황에 큰 부담이 되는 의료비 지출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워’졌고, 사례 20 면접대상자

는 경찰인 남편의 봉급으로 어렵게 생계를 꾸려가던 상황에서 남편이 경찰을 그만두고, 병원에 입원도 하게 되어 빚을 ‘잔뜩’ 질만큼 경제적으로 더 곤궁해졌다. 그 때부터 장사를 시작하여 지금까지 삼십 년째 옷가게를 운영하고 있지만, 생활은 여전히 어렵다.

남편 때문에 돈이 많이 나갔어요. 어려워진 이유가 남편 때문에 거의. 언제 죽을까. 18만원 병원비 내가 사람들 써도 돈을 내야하고, 내가 수발을 들었어요. 원장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도 접수를 해야 하는데 우리 아들이 다른 선생한테 했잖아, 근데 잘 해줬어요. 근데 중앙병원은 틀려 또. 너무 안 해줘. 그렇게 요양원을 한번 갔다가 병이 나서 병원 생활, 강남 성모 병원에 있다가 중앙병원에 가서 집에 모셨지요. 아프면 119불렀다가 병원 갔다가 집에 오고. (사례32, 74, 여)

할아버지 살아 계실 때요? 할아버지는 여기 돈 하나 없이 몸만 여기서 경찰로 있었어요. 경찰로 있다가 어떻게 경찰도 성격에 안 맞는지 자꾸 그만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만두고, 옛날에 경찰은요 보리쌀 두말인가 서말하고, 월급이 1,500원인가 나오고 그때 15,000원인가 1,500인가, 그때 그렇게 나오고 진짜 살기 힘들었어요. 지금은 그렇게 주면 못 살걸요, 지금은. 그렇게 하고 살다 살다 뭐가 아니꼬운 일이 있었는지 그만두고 나와 버렸어요. 그러고는 그냥 여태까지 거지마냥 살았어요, 그냥.

이제 할아버지가 그렇게 그만두고서 어떻게 놀다가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서 있었어요. 병원에 가서 있으니까 빚을 잔뜩 졌죠. 그러니까 빚을 많이 지니까 못 살겠더라고요. 그냥 가만히 들어앉았었죠, 살 길이 없어서.

(장사 한 게) 할아버지가 아플 때부터 30년이에요. 아이고 힘들어요. 살기 힘들어요. 이렇게 세상을. 세상에 낳았다가 세상을 이렇게 살고 가는 게 이게 뭐하는 거야. 장사해서 애들 다 가르치지도 못 했어요, 다. (사례 20, 79, 여)

4. 배우자의 경제 미부양

생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남편이 경제적 부양을 하지 않아, 홀로 별이를 해서 살아온 면접대상자들이 많았다. 홀로 벌어 남편과 여러 명의 자식까지 부양해야했기 때문에 가난은 지속적으로 깊어져야할 부담이 되었다. 사례3 면접대상자 역시 남편이 평생 별이가 없어 홀로 식모살이, 가사 도우미 등의 일을 하며 1남 2녀를 키웠고, 현재는 손자와 입원한 남편의 돌봄 노동도 수행 중이다. 사례 14 면접대상자는 남편이 전쟁에 참전한 이후로, 그 후유증으로 일을 하지 않아 평생 혼자 농사를 돕거나, 장사, 보따리 장사 등을 통해 생계를 영위하며 3남 2녀를 키웠다.

아이고, 말도 마셔. 이날 평생을 그렇게 살았으니깐. 내가 일해서 살았지. 남의 집에 가서 살고 남의 일도 해주고 그랬지. (사례 3, 68, 여성)

애들을 먹여 살릴라고 보따리장수를 한거지. 그때 생각하기를 저런 사람을 믿고 살다가는 애들을 굶겨 죽이겠다. 그래서 내가 장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사례 14, 81, 여)

특히 사례14 면접대상자는 남편이 정신병에 걸린 사람인지도 모르고 결혼을 하였다. 시집을 갔더니 남편은 전쟁 후유증으로 정신병에 걸려 집 밖을 돌아다니기만 하고 ‘술로 사는’ 사람으로, 가정경제에 보탬을 주지 않았다. 부모가 결혼을 하라고 하는 곳으로 갔더니 혼자 가정의 경제를 책임져야하는 상황이었다.

내가 19이고 그이는 25살이고 그런데 나는 4남매 막내로 커서 방안에서만 컸어요. 아무것도 모르지. 그렇게 결혼을 했는데 그이는 군대 갔다가 제대를 했다는데 비쩍 말랐어, 새까맣게. 그런 사람이라 부모가 해줘서 보지도 않고 그냥 날 받아가서 결혼을 한 거라고,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그랬더니 자다가도 뛰어나가고.

무섭다고 그래요. 이상하다, 이상하다. 그 전쟁을 하는데 폭탄 속에서, 백운산에서 전투를 했데요. 그 사람이 폭탄 속에서 살아났으니 온전하겠어요? 그래도 내가 무엇을 알았으면 병원에 데리고 가서 저걸 했을 텐데. 술을 먹어야 잊어버린 데요. 그래서 술로만 사는 거야. 그게 원통해서, 그런데 애들이 크면서 21살에 우리 아들을 낳고 둘째를 딸을 낳고 했는데 애들이 커서 학교 다닐 때 단발머리 하고 들어오면 귀신 들어온다고 쫓아나가요 때려잡는다고. 딸한테. 그리고 생전 돌아다니고 집이 밥을 먹거나 말거나 벌어다 주는 것도 없고. (사례 14, 81, 여)

이처럼 남편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결혼을 하여 홀로 경제부양을 하게 된 다른 면접대상자들도 있었다. 이로 인해 이들의 경제적 부담은 더 가중되었다. 사례 13 면접대상자는 남편에 대해 잘 모르고 결혼해보니 남편은 유부남이었다. 그래서 얼마 후 별거하여 식모살이를 하며 홀로 살아왔고, 자식도 없어 지금도 쪽방에서 기초생활급여를 받으며 어렵게 살고 있다. 사례 21 면접대상자 역시 결혼을 한 이후 자신이 재취로 들어왔다는 것을 알았고, 남편은 술만 마시다 집안의 재산을 다 ‘털어먹었다’. 이처럼 빈곤한 상황에서 홀로 벌어 가족을 부양해야하는 상황은 이들을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

결혼해서 실패하고 4,5년 살다가 여태 혼자 살았어요. 모르고 갔더니 마누라가 딸을 3이나 낳은 사람이더라고. 거기서 이혼하고 혼인신고도 안하고 그리고 남자가 죽었어. 죽고 없으니깐 이 날 평생 내가 60년을 여기서 산거야. 연애를 한번 해봤어야 하는데 연애도 한번 못한 거야, 병신이. (사례 13, 85, 여)

나는 열일곱에 했어. (웃음) 열일곱에 시집오니까 재취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떡해, 그냥 꼼짝도 못하고 살았지. 그냥 노인네 여보였었지, 13살 차였어. 아유, 엄마가 그 집 마당에 가서 죽으라고 그리 야단이 날줄 몰랐어. 그러니 어떡해. 어디로가 지금 같으면 어디로든 갔을 거야 병신이라 어디로 갈 줄을 몰랐어. 그냥 다갔어. 아들, 딸 남매밖에 안 낳았어.

응. 그냥 그전에 영감이 술이나 먹다 다 털어먹고, 거지돼서 여기로 왔어, 청주서 살다가. 이불보파리 하나 들고, 아주 다 털어먹고. 여기 온지가 32살에 왔으니 50년이 넘었어요. (사례 21, 78, 여)

5. 경제부양자의 사망

경제부양을 하던 남편이 사망하여, 빈곤해진 여성노인들도 있었다. 남편이 돈을 벌어오고, 아내는 살림을 해왔지만 갑자기 남편이 사망하여 아내가 홀로 경제적 책임의 전면에 나서게 되는 상황이 되었다. 사례 2는 남편이 평생 별이가 있을 줄 알았지만, 예상치 못하게 남편이 사망하여 빈곤해졌다. 사례 23 면접대상자는 젊을 때 남편이 죽고 안 해본 일 없이 돈을 벌어 자식을 키웠다. 두 면접대상자 모두 생계는 이을 수 있었지만, 빈곤한 상태는 면하기 어려웠다.

아이고, 무조건 돈 번 것이 평생 별 줄 알고. 돈도 잘 벌고 돌아가시는 바람에 돈도 못 벌고 구들장 신세마냥. 갑자기 쓰러져서 돌아가시니깐. 어디 아픈지도 모르고 금방 점심 잘 먹고 금방 쓰러져서 돌아가셨어. 허망하데. 점심 잘 잡숴고, 아픈 사람은 밥도 못 먹잖아요. 근데 밥도 잘 잡숴고 드러누워서 그냥 가버리니깐 너무 허망하더라고. (사례 2-a, 80, 여)

그래서 벌어서 먹이려고 산에 가서 썩도 뜯고, 나물도 뜯고, 누가 연탄 리어카도 끌라고 해서 그것도 끌어보고 나는 안 해본 것 없어요. 그러니깐 산에 가서 썩도 뜯고 새벽에 첫 새벽에 일어나서 애들이 밥 먹고 학교가면 나는 들로 나가서 해가 가물가물하면 들어가고, 어떤 때는 늦게 들어가는 때는 애들이 기다리고 우리 막내는 울고 앉아있고, 엄마 어디 갔다 와 그러고. 아이고, 나 혼자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다행이야. (사례 23, 79, 여)

6. 부족한 노후준비

면접대상자들은 대부분 노후준비를 하지 못했다고 대답했다. ‘먹고 살기에 바빠’ 노후준비를 할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 많은 면접대상자들에게 당장의 생활 이외의 문제는 부차적인 것들이었다. 어떤 방법으로 노후 준비를 할지에 대해 생각해볼 여유도, 준비할 수 있는 경제적 여력도 되지 않았다.

먹고 살기가 바쁜데 저금을 하고 어떻게 하겠어요 (사례 28, 77, 남)

그때는 돈을 벌수도 없고, 뭐 적금 같은 거 할 돈이 안 돼, 먹고 살거나 바쁘고. 남한테 꺾어서 살고 그랬는데. (사례 29, 67, 남)

아무것도 안 했어요. 누가 보험 들으라고 하지도 않고, 한 달에 조금씩 나오는 거 가지고 적금 들라고 했는데 적금도 안 되더라고, 돈이 없어서. 남아야 저금을 하지. 젊었을 때도 중국에서는 그런 것도 없고, 여기 와서 저금 못 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사례 4, 83, 여)

아무것도 못했어요. 괜히 그냥 그때 만해도 젊은 마음에 부산 가서 하면 거기도 가고 또 제주도 좋으니깐 가보자고 해서 허영된 마음이 있어서 돌아다니느라 돈을 벌어놓은 것이 없지. (사례 1, 72, 여)

아니요. 여유가 안돼서 그런 거지. 경비 생활해서 얼마 되겠어요? 안 돼요. (사례32, 74, 여)

노후준비 하려고 했으나 이를 소진한 면접대상자들도 있었다. 노후준비를 했다고 답한 대부분의 면접대상자들의 노후대책은 집과 관련된 자산이었다. 집을 마련했지만 큰 아들의 사업이 망하여 이를 잃게 된 사례 8 면접대상자, 저금과 전세자금이 있었지만 시동생과 남편이 이를 소진해

버린 사례 10 면접대상자는 현재 별다른 노후대책이 없이 노후를 맞게 됨으로서, 기초생활급여에 크게 의존하여 생활하고 있다.

그나마 집을 샀는데. 옛날에 9,000만원인가 빌라 20평짜리 샀는데 얼마 살지도 못하고 넘어 가버렸죠. 그것만 있었어도 지금 그게 3억 이상 값을 텐데. 그냥 넘어가버렸으니깐 끝난 거지. 경매 처분 되어 버렸어요. (사례 8, 78, 남)

젊어서 이제 노후대비해서 뭐 좀 경제적으로 준비는 했는데 그래 돈 하나도 없어요. 다 가져 가버리고. 시동생이랑 할아버지가 싹 다 가져갔지요. 저금한 거랑, 전세 값이랑 싹 가지고 날라버렸죠. (사례 10, 67, 여)

노후대책이 ‘남편’이었는데, 남편이 사망하게 된 경우도 있었다. 사례 2 면접대상자는 남편의 별이에 생계와 노후대책을 모두 의존하고 있었는데, 남편과 갑작스럽게 사별하게 되었다. 면접대상자 모두 자신을 독립적으로 건사할 만큼의 경제적 준비를 해놓은 사람이 없었다. 적은 금액의 연금을 들거나 자기 소유의 집이 있는 노인들도 있었지만 이들 모두 국가의 경제적 지원에 더 크게 의존하고 있었다.

노후대책은 할아버지였는데 돌아가시니깐 노후대책을 할 수 가 있겠어요? 죽는 사람도 있는데 너 나 먹을 것 해 놓고 가라 할 수 가 있어요? (웃음) (사례 2-a, 80, 여)

7. 가난의 대물림

면접대상자들 중 가난이 자녀들에게 대물림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느끼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들은 특히 가난이 대물림되는 요인으로 교육에 대해 많이 언급하였다. 자신이 자녀들을 교육시키지 못하여 자녀

들도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느끼고 이에 대해 어리석었다고 생각하거나 죄책감을 느끼기도 하였다. 생계를 위해서 아이들도 일을 해야 했거나, 자신이 돈을 버느라 아이들 공부에는 신경쓰지 못한 경우들도 많았다.

그 대신에 애들도 공부시간에 공부를 해야 하는데 공부를 결석을 시켜가면서 같이 일을 했었어야 했어요. 제가 생각하니깐 그렇게 어리석었어요. (사례 12, 69, 여)

애들 키우는데, 공부도 못 시키고. 그래서 저희들 사는 것도 힘들지. 공부도 못 시켰으니깐. 공부라도 잘 시켰으면 그래도 저희들 밥벌어먹고 살면서 엄마를 좀 도와 줄 텐데. 너무 힘 들으니깐 도와주지도 못하고 마음이... (사례 22, 73, 여)

내가 젊었을 때 무슨 일정한 직업이 없어서 자식들도 제대로 잘 교육도 못 시키고 그러니깐 제가 그렇게 하질 못했기 때문에 가르치지를 못해서 애들도 고통을 받고 있지요. (사례 27, 102, 남)

올라와서 살다가 애들을 못 가르쳤어요. 식당일 하다가 힘들어서 밥도 못 먹고 살았어. (사례31, 76, 여)

이로 인해 사례 6 면접대상자는 손자손녀들만큼은 교육을 잘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손자가 5세, 손녀가 13개월 때부터 맡아서 키우고 있는 사례 6 면접대상자는 하던 일을 그만두고 손자손녀의 공부에 신경을 쓸 정도로 교육에 열성적이다. 하던 파출부 일을 그만두고 현재는 기초연금과 파지수거를 하며 낮 시간에는 손자손녀의 교육에 ‘철두철미’하게 신경을 쓰고 있다. 파지수거는 부족한 생활비를 보태기 위해 하는데 아이들이 공부하는 시간을 피해 밤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 손자손녀가 잠든 시간에 일주일에 다섯 번 정도 하고 있다.

구해 봤어요, 새벽일로. 애들 때문에. 내 자녀가 셋이잖아요 그때는 남편도 없고 해서 일을 해야 하는데 아침 6시에 나가서 밤 10시나 11시에 들어오는데, 그러면 애들이 공부를 하는지 마는지 모르잖아요. 밥만 먹이면 지들이 크는 줄 알았어요. 고등학교 나오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손자들은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키우는지 몰라요. 어려서부터 그냥 하다못해 애들이 거짓말을 절대 못하게 고사리 같은 손을 때리고 그래서 지금은 너무 정직해. 그래서 애들한테 투자를 했어요. 바르게 키우게 하기위해서, 광현이 어렸을 때는 선교원에 맡겨놓고 파출부를 다녔어요. 근데 초등학교 들어가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수급자 돼서 먹고 살면서 애들한테 신경을 쓰고 그랬어요. 그래서 애들이 바르게 자라고 공부도 잘하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애들 농사를 지은 거예요.

그렇죠, 어렵죠. 근데 우리 광현이 같은 경우는 공부를 좀 하니깐 학원을 좀 보내야 하잖아요. 안보내면 안되더라고 초등학교 때는 방과 후 하고 해서 조금씩 보내다가 지금은 너무 힘들어서 그러니까 안보내고 그러는데 전에는 잘했어요. 근데 중학교 올라가니까 안 되더라고. 그래서 학원을 하나 다녀요. (사례6, 68, 여)

내가 저녁에 10시에 나가서 새벽 3시에 나가서 박스 주우러 다녀요. 애기들 자면 문 살짝 잠가 놓고. 생활비 안 나와요. 반찬값, 찬값. 그래도 노는 것 보다는 낫자나요. 그럼 한 달에 15만 원 정도.

면접대상자들이 자녀들을 많이 교육시키지 못하였지만, 자신들도 많이 교육받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면접대상자들은 대부분 학교에 다닌 경험이 없거나, 초등학교를 중퇴, 졸업한 학력수준이었다. 그래서 사례 21 면접대상자는 자녀들이 자신에게 교육을 시켜주지 않은 것에 대해 원망해도, 자신은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다. 남편이 사망한 상태에서 아이들 교육까지 신경을 쓰기 힘들었고, 생계를 잇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이다. 다른 것은 신경도 못쓸 만큼 가난했던 상황이었다. 면접대상자 본인 역시 교육을 별로 받지 못했으나, 자신은 부모가 시켜도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망할 사람이 없다고 답했다. 면접대상자들

의 빈곤은 그들의 노후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빈곤에 까지 대물림되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제가 53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 내가 지금까지 애들 키우면서 공부도 못시키고 우리 애들이 큰일 났지. 자식 두 명 낳은 것을 제대로 못 가르쳐서 아주 딸도 아들도 제대로 못 가르쳤다고 다텔이지. 하지만 어떡해요, 먹고 사는 게 우선이었는데.

(자녀들) 공부를 못 시켰다고 원망을 해도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글자도 몰라요. 내가 공부를 안 해서. 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시켰어도 내가 안다녔으니 누구를 원망해. (사례 21, 78, 여)

제3절 경제생활 실태

1. 공적 연금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

가. 공적 연금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경우

인터뷰 대상이었던 많은 노인들은 공적 연금이 수입의 전부인 사례가 많았다. 총 32명의 면접 대상자 중 13명이 공적연금이 수입의 전부였다. 파지 수거나 간헐적으로 자녀들에게 적은 금액의 용돈을 받는 노인들을 포함하면, 공적 연금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면접대상자의 수는 더 늘어난다. 더구나 이들 노인들은 부수적인 경제활동을 하기에 몸이 불편하고, 써주는 곳도 없으며, 가족도 지원해줄 수 없는 상황이라 공적 연금 외에는 대안이 없는 상황이었다. 이들은 기초생활급여를 수령하고 있거나 노령연금, 또 장애 수당을 받기도 하였다. 공적 연금 중 기초생활급여와 노령연금을 모두 받으면 한 달에 약 50만원으로, 이를 수령하는 노인들이

국가에서 현금급여로 가장 많은 지원을 받는 편에 속하였다. 차상위 지원 대상자인 노인들은 노령연금만 수령 받거나, 장애 수당을 받아서 약 9만원에서 12만원을 받고 있었다.

생활비는 전부다 국가에서 받는 게 다지. 기초, 노령보험 합해서 45만원. 양식을 타오면 45만원 아니면 안 되고. (사례 4, 83, 여)

국가 보조 나오는 게 12만원. 모자란 건 애들이 보태주지. 약은 먹어야 되고, 두 달씩. 어떨 때는 먹고 싶은 게 있어도 그냥 참고 그러지. 이렇게 그냥 사는 거야. (사례 26, 81, 여)

생활비는 정부에서 나오는 거 하는데, 그거 끊어지는 죽는 거야. 그걸로 살아야, 그거 끊어져 버리면 죽는다고. (사례 29, 67, 남)

이러한 공적 연금은 생활에 충분하지 않아 ‘고기한번 못 사먹고, 과일 하나 못사먹’으면서도, 이에 맞춰서 살 수 밖에 없는 형편이었다. 2013년 현재 우리나라의 1인 가족 최저생계비는 572,168원이며, 기초생활보장비는 매달 468,453원씩 지급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3). 하지만 많은 노인들이 이를 지급받더라도 월세, 수도 및 전기세 등을 제하고 나면 남는 돈이 매우 적었다. 집세 등을 내고 나면 남는 돈이 거의 없어 잘 먹지 못하여 영양실조에 걸리기도 했던 면접 대상자도 있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 선정되면 의료비가 지원되는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현재의 현금 급여는 이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생활을 영위하기에는 부족한 금액이었다. 하지만 노인들은 이에 맞추어 살기 위해 먹을 것, 입을 것을 아껴가며 살고 정말로 최소한의 필요를 맞추며 살고 있었다.

내가 고기한번 못 사먹고, 과일하나 못 사먹고 먹고, 절약하니깐 좀 살지요. 싶은 것도 사먹고 고기도 사먹고 하면 그 돈 가지고 되나요? 안되지 내가 엄청 아끼니깐 살지 조금이라도 풍족하게 쓰려면 그것 가지고는 안돼요. (사례 4, 83, 여)

그것(생활비) 가지고 딱 맞춰서 지내요. 아껴서 살아야지요. 근데 마음만 그렇지 다른 수익이 없으니깐, 그것만 가지고 살려니 조금 힘이 들죠. (사례 27, 102, 남)

생활비도 그저 되는 데로 하는 거지. 그냥 사다먹지도 못하고 애들이 사오면 먹고 안 사오면 말고 영양실조를 걸렸었는데 내가. (사례 14, 81, 여)

나. 공적연금에 의존하며 경제활동도 하는 경우

많은 노인들이 부족한 생활비를 벌기 위해 박스 수거나 품앗이품, 공공근로 등의 노동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가만히 있는 것보다 일하는 것이 더 나아서’ 지속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노인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생계를 잇기 위한 절박함에서 비롯하여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버는 돈은 일을 하는 시간과 노력에 따라 많이 달랐는데, 박스 수거로 7천만원이라는 거액을 모은 면접대상자가 있었던 반면, 한 달에 만 원 정도의 푼 돈을 벌어 커피를 빼먹거나 반찬거리를 사는데 보태는 경우도 있었다. 한 면접대상자는 소년소녀 가장인 손자, 손녀들을 키우며 부족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밤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 정기적으로 박스를 수거하고 다녔으며, 손자손녀들의 안전을 우려해 문을 잠궈 놓고 일을 나가곤 했다.

한번은 리어카를 끌도 다니면서 그것을 주워서 7000(만원) 정도 모았어요. (중략) 근데 그 아줌마더러 나 방하나 한 칸 얻을 수 없어? 하고 그러니깐 방

연을 돈 있어? 그래서, 그것이 화근이 되가지고 돈을 꺾렸어요. (사례 12, 69, 여)

내일까지 있으면 있어요. 한 집서 산 사람들이 나한테 주고 집 왔다 갔다 하면 있다고 주는 사람들도 있고 하면 가져다가 팔아, 고물상에. 이거 하면 한 달에 한 1, 2만원? 그래서 조금씩 하면은 커피라도 여기서 한 잔 빼먹고. (사례 17, 78, 여)

내가 저녁에 10시에 나가서 새벽 3시에 나가서 박스 주우러 다녀요. 애기들 자면 문 싹 잠가 놓고. 그럼 큰 애(고등학교 3학년)가 있으니깐. 생활비 안 나와요. 반찬값, 찬값. 그래도 노는 것 보다는 낫자나요. 많이 주우면 7천 원씩 받고, 못하면 오천 원, 삼천 원도 받고. 그럼 한 달에 15만 원 정도. (사례 19, 70, 여)

하지만 노인들이 하는 일은 정규적인 일이라기보다 혼자서 하는 부업 성격의 일이며, 일의 종류도 매우 제한적이었다. 노인들은 건강 상의 문제로 고된 노동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저학력인 노인들이 많아 할 수 있는 일들이 한정되어 있었다. 특히 박스 수거는 기술이 없고, 써주는 곳이 없는 노인들이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일 중 하나이기 때문에 몸이 아파도, 주변에서 달가워하지 않아도 이를 지속하고 있는 노인들이 많았다. 면접대상 노인 32명 중 약 34%인 11명이 여전히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고, 그 중 파지 수거를 하고 있는 노인들은 6명으로 면접대상자들의 경제활동 수입의 절반 이상이 파지 수거를 통해 이루어졌다.

조금씩 주워서 아프니깐 더는 못하죠. 조금 털 아프니깐 후년에는 아주 못 걸을 것 같아. 작년까지는 조금씩 벌었어요. 근데 올해는 통 못 주워. 가다가 보이면 줍고 아는 사람이 주면 하고, 누가 밑에 사는 사람들이 넣어놓고 가는 사람들도 있고 위에 사는 사람들이 머가 있으면 꼭 나한테 주고 그놈만 팔아도 200원도 받고 500원도 받고. (사례 19, 78, 여)

두시간정도 일 하시는 거면 내 맘은 맞는데 몸뚱이가 안 따라주지. 그 양반들 힘들어서 그러는데 나는 못 듣는 것처럼 하고 멍청이처럼 하고. 그래서 요즘은 조금 오지 말라고 미운소리해도 와서 그런지 조금 덜하네. 매일 나가야지요. 오늘 아침에도 장안에 가서 박스는 하나도 없고 쓰레기만 있더라고. 그래도 쓰레기라도 주워야해. 그러니깐 부장님이 쓰레기 주웠다고 허리 구부리고 다니니깐 그것이 보기 싫은 것 같아. 보기 싫어서 그러는 것 같아. 할머니, 또 왔어? (사례 23, 79, 여)

한 달에 한 돈 십만 원 될라나? 모자르는 방세도 내고 세금도 내야 하니깐 그거(파지 수거)를 안 할 수가 없어. 근데 내가 그거를 하니까 아파요. 구르마를 끌어다가 하니깐. (사례 24, 80, 여)

한 푼이라도 버는 게 낫자나요. 그래서 아파도 돌아다니고. (사례 31, 76, 여)

특히 농촌에 사는 노인들 중에는 품을 팔아 돈을 버는 사례들도 있었다. 밭일을 매주거나, 하여 하루에 5만원 정도의 수입을 올리곤 하였다. 도시 지역에 사는 노인들이 박스 수거를 많이 한 반면, 농촌에서는 인구 밀도가 적어 수익이 될 만큼 박스를 수집하기 어렵고, 같은 양을 모으기에 시간도 많이 걸린다. 품앗이는 몸이 아프더라도, 농촌에 사는 노인들이 오랫동안 해오고 익숙한 일이기 때문에 노년에도 여전히 지속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품값을 5만원 줘. 여자들은 데려다 일시키면. 그래도 부르면 한 푼이라도 벌려고 가잖아. 그런 일이라도 있으면 좋은데 그런 것도 없잖아. 없어가지고 하면 또 놀고, 나오는 길로 안 쓰려고 하면 일 없으면 또 써야지 어떻게 안 써. 반찬사다가 먹어야지 하니깐. (사례 2, 77, 여)

공공근로를 그래서 그 당시 5월 달에 신청을 했는데, 5월 달에서부터 하게 됐는데 무릎이 말을 안 들어서 양쪽 무릎 다 안 들으니깐. 그래서 기를 쓰고 하지요 5월 달서부터 해서 8월 16일이면 끝나요.

이거 끝나면 재신청을 해야 하는데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네. 사람이 너무 많데요. 나이도 너무 많고 해서. (중략) 못 해 먹었지요. 죽겠지요. 그래도 어떻게 끝까지 한다고 했는데 그럭저럭 살아요. (사례 18, 77, 여)

대부분의 면접대상자들이 기술보다는 노동력이 필요한 박스 및 파지 수거, 공공근로 등의 일을 하고 있었던 반면, 사례 30은 유일하게 인적 자본을 바탕으로 한 일을 하고 있었다. 그는 차상위 계층이며 기초수급으로 40만원 정도를 받고 있었는데, 더불어 통역을 하는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다. 다른 노인들의 경제활동을 통한 별이가 약 5만원에서 10만원 가량 이 대부분이었던 반면, 사례 1은 일어, 중국어, 영어 통역하며 많을 때는 200만원에서 300만원을 번다고 대답했다. 면접대상자들 대부분이 학교를 다니지 못했거나 국민학교를 중퇴하거나 졸업한 반면, 사례 30은 유일하게 대학을 졸업하였다. 또한 그는 자신의 언어능력이 노후대책의 하나라고 생각함으로써, 면접대상자 중 유일하게 자신의 인적자본을 미래의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원천으로 보았다. 생활비도 다른 노인들보다 훨씬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었는데 많은 노인들이 50만원을 오가는 범위에서 지출하고 있던 반면, 사례 30은 자신의 ‘최저생계비’가 120만원에서 130만원 정도라고 대답하였다. 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2010년을 기준으로 노인 1인의 월평균 소비지출이 141.3만원임을 감안하면(정경희 외, 2012), 사례 30의 수입이나 생활비는 빈곤가구에 가깝다기보다 노인 1인 가구 평균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었다. 하지만 사례 30 역시 주거환경은 좋지 않은 편이었는데, 그를 인터뷰한 곳은 쪽방촌이었다. 그는 현재 월세 13만원인 쪽방에 살고 있으며, 장성하여 결혼한 자녀들이 있지만 자녀들로부터 경제적 지원은 받지 못하고 있다. 젊은 시절 대기업에 다니며 받았던 퇴직금과 연금을 모두 정리해 자녀들 결혼에 쓰고 나니, 남는 것이 ‘몸뚱아리 하나’였다.

지금 일본하고 대립관계이기 때문에 무역 컨펌하는 주얼리 쪽 통역이나 의류, 패션 쪽으로 그 사람들 영어나 일본어 중국어 통역해주고 생활을 하지. 이 나이 먹어서 회사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건 없지.

(한달 생활비는) 합쳐서 쌀사먹고, 반찬 사먹고, 교회 다니고, 봉사하고, 뭐 여러 가지 하면 대개 120~130만 원 정도, 아주 최저 생계비.

다 받아서(퇴직금과 연금) 막내딸까지 결혼 다 정리하고 나니까 남는건 내 몸뚱아리 하나. 아니, 자식들이 잘되면 그게 부모로서는 항시 보람이니깐. 나는 아직 그래도 평균 수명에 비하면 젊으니까 얼마든지 내가 움직이면 뭐 할 수 있으니까. (사례 30, 65, 남)

다. 공적 연금에 의존하며 다른 연금도 수령하는 경우

공적 연금의 지원이 겹치거나, 중복되는 지원의 경우 둘 중 하나가 삭감되는 경우도 있었다. 사례 25의 경우 의료급여 1종으로 의료비 지원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는 차상위 계층으로 선정된 것뿐만 아니라 국가 유공자인 사별한 남편으로 인해 받게 되는 것이다. 즉 두 가지 경로의 복지 지원으로 인해 의료비 지원이 겹쳐서 실제로는 한 가지 복지 지원만 받는 것과 비슷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큰 수술 등은 여전히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의료급여 1종으로서 받을 수 있는 혜택 외에 다른 의료 관련 혜택은 받지 못하고 있다. 남편의 국가유공자 연금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국가 유공자로 인한 ‘혜택을 받는 것도 없다’라고 대답하였다. 면사무소에서 월 49만원 정도의 지원을 받는다고 대답한 사례 29 면접대상자는 노령연금을 수령할 경우 노령연금만큼 면사무소의 지원금이 삭감되기 때문에 노령연금은 신청하지 않았다고 했다.

(차상위 혜택 받는 것은) 없어요. 남편이 국가유공자니깐 그게 다 1종으로 됐어요. 근데 돌아가시니깐 그게 나한테로 돌아오더라고요 그것밖에 된 게 없고. 근데 의료혜택 받는 거는 차상위하고 유공자하고 겹쳐요. 유공자 혜택 받는 것도 없어요. (사례 25, 78, 여)

노령연금은 내가 신청을 안했어. 그거 신청을 하면 거기 돈 나오는 거에서 돈이 까져서, 날짜를 다른 데로 옮기더라고. (사례 29, 67, 남)

대부분의 연금 대상자들은 노후 대비를 하지 못하였지만, 두 명의 면접 대상자가 국민연금을 들었으며, 사례 13 면접대상자는 면접대상자 중 유일하게 사적 연금을 수령하고 있었다. 사례 13 면접대상자는 현재 쪽방에 살고 있으며 젊은 시절 오랫동안 식모살이를 하며 노후를 대비해서 사적 연금을 들어 놓았다고 한다. 하지만 이 연금이 생활에 큰 보탬이 되기에 는 금액이 적어 여전히 기초생활 수급비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사적 연금이 사망 시까지 매년 100만원 정도 나와서 한 달에 8~9만원 정도의 보탬이 되지만, 기초생활급여는 매월 45~50만원 정도를 받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면접대상자들은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하였고, 국가의 지원금이나 자녀로부터 받는 생활비 등 대부분의 경우 이전소득을 통해 당장의 생활비를 마련하고 있었다.

젊었을 때 노후대비해서 하나 해 놓은 거 하나가 죽을 때까지 일 년에 백만원. 노후대책 들었지 젊어서 그거 하나 들으라고 해서 식모살이 하면서 들은 거야. 몇 년이나 들었는지 모르겠네. 그게 만기가 돼서 백만 원씩 타는 건데. (사례 13, 85, 여)

라. 배우자 사후 배우자의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여성 면접대상자들 중 남편이 남긴 자산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여성노인은 없었지만, 남편의 연금이나 의료급여를 승계하고 있는 경우는 두 사

례(사례 18, 사례 25)가 있었다. 사례 18은 차상위 계층으로 사별한 배우자의 유공자 연금의 절반인 약 50만원이 조금 안되는 금액을 매월 수령 중이라고 한다. 사례 18 면접대상자의 남편은 직업군인으로 6.25 전쟁에 참전하였으며, 제대 후에도 가족을 위해 황무지를 개간하는 등 열심히 일했다고 한다.

학도병은 아니고 군인을 제대로 갔는데 고지에서 싸웠어 싸워서 다쳤어. 그래서 유공자가 된 건데. 그 계급이 있는 사람들은 많이씩 타더라고, 근데 계급이 없어서. 하산가 일병인가 뭐시긴가 해서 제대해서 백만 원 안쪽으로 타지 해마다 조금씩 올라 조금씩. (사례 18, 77, 여)

하지만 사례 18 면접대상자가 국가 유공자 연금을 수령한지는 오래되지 않았다. 남편이 제대증을 잃어버렸고, 이를 다시 발급받으려면 호적이 드러나는데 이를 남편이 꺼렸기 때문이다. 본 어머니에게서 낳지 않은 자식이라는 사실을 밝히기 창피하여, 남편은 제대증 신청을 하지 않으려했고, 사례 18 면접대상자도 국가유공자 신청절차에 대해 잘 몰랐기 때문에 젊은 시절에는 지원을 받지 못했다. 그러다 면접대상자가 74세 때 남편의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려고 했지만 입증이 되지 않다가, 우여곡절 끝에 구강 사진을 찍어 참전용사로 인정받았다고 한다. 이후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아 이제는 할머니가 할아버지 앞으로 나오는 연금을 수령받는데, 이는 생계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하지만 이를 훨씬 이전에 신청했으면 아이들의 학비나 연금 등 여러 방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었던 상황이었을 것이라며 아쉬워했다.

불쌍해. 그 연금을 젊어서부터 탔으면 애들 학비도 좀 혜택을 받았을 텐데, 제대증을 잃어버려가지고요. 그래가지고 (국가 유공자 연금을) 받은 지 얼마 안돼요. 70넘어서. 젊어서부터 내가 그거 반납하자고 하니깐 안하더라고.

창피한 말이지만 우리할아버지가 발급하려면 가정이 다 밝혀지잖아요. 제 대증을 재발급을 신청을 안 하더라고. 그때는 나는 그런 이유를 몰랐는데 본 어머니한테서 안 낳았어. 그러니깐 서류상으로 창피했던가봐. 그래서 영 제대증을 신청하자고 해도, 나도 무식하지 영감도 배운 것 없지 하니깐, 남의 엄마 밑에서 컸으니깐 설을 받고 컸지요.

그게 어떻게 해서 74살 때던가? 우리 동네 사람이 어떻게 우연이 동네사람 인데 이 이야기가 나와서, 보훈병원이 머래요? 하니깐 유공자들 가는 데라고 그러더라고. 그럼 어떻게 해서 간데요? 6.25때 나가서 싸운 사람들 참전 한데 그렇게 연금이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아저씨를 붙들고 파고들고 해서 이유를 알아서, 수원에 가서 담당이 있다고 해서 그 아저씨 말만 듣고 수원을 찾았어. 나도 어지간하지. 여자하고는 별나 우리 아저씨는 일체 그런 말 듣고도.

그래가지고 저거 보훈병원 알아가지고 다니면서 이래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합격이 안 되고 끝까지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 정 그러면 구강을 한번 찍어보라고 그러더라고 아들이 그래서 구강이 뭐라냐? 의사보고 입 안 잇몸을 찍어보라고 그래서, 아들이 그렇게 말하니깐 아들말대로 찍었는데 그래서 합격이 된 거야. 처음에 유공자가 된 것은 아니고 참전했다고만 해서 그때 5만원씩을 주더라고 한 달에.

일 년 동안 딱 조사를 해서 유공자가 되면 일 년에 오만원준 것을 몇 십만원으로 일 년 치를 준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목돈이 백 몇 십만 원인가 몇 백만 원 들어왔어. 그래서 그때부터 70만원 70몇 만원 그렇게 하고 2만원씩 오르고. 돌아가실 때는 그래도 백만 원이 못 되고 90얼만가 타가지고. (사례 18, 77, 여)

하지만 남편이 국가유공자라도 받고 있는 지원이 면접대상자마다 달랐다. 사례 18 면접대상자는 매월 남편의 국가유공자 연금을 받고, 보훈병원을 이용할 수 있지만, 의료 지원은 거의 되지 않았다. 반면, 사례 25 면접대상자는 남편이 국가유공자이지만 연금 지원은 받고 있지 않았으며, 의료급여(1종)를 지원받고 있었다.

사례 18 면접대상자는 의료급여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남편이 국가 유공자이기 때문에 보훈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지만, 일반 병원을 이용할 때는 돈을 내야해서 한 달에 의료비로 약 30만원 정도를 지출한다고 한다.

의료혜택을 나라에서 안줄 것 같은데, 왜냐면 보훈병원에서 한 것도 나라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혜택을 60%를 받아도 한 30만원 나가는데. 당뇨야 주지, 인슐린에 대한 부속품, 또 혈당 부속품 뭐 돈이 이것저것 이상하게 들어요. (사례 18, 77, 여)

반면 사례 25 면접대상자는 남편이 국가 유공자이기 때문에 병원을 이용할 때 비용문제로 걱정을 하는 경우가 적어졌지만, 연금은 수령하고 있지 않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12만원에서 13만원 정도의 지원금을 받았지만, 남편 사후에는 이도 수령받지 않고 있다고 한다.

그전에 할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12만원인가 13만원 나오는 것 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할아버지랑 나랑 병원 다니는 거 혜택 받고 큰 수술하는 것은 돈 많이 내요. 다리 수술했는데.

약값은 안 들어가요. 그런데 국가 유공자 1종이 되어있어서 돈이 안 들어가요. 이제 병원가고 싶을 때 돈 문제 때문에 안가고 싶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옛날에 내가 어떤 병원을 다녔는데 물리치료를 받는데 어떤 남자가 할머니는 돈을 안내니깐 이 병원 저 병원 돌아다닌다고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 (사례 25, 78, 여)

2. 경제활동 수입에 대한 의존도

가. 생계를 위해 경제활동을 하지만 수입이 거의 없는 경우

생계를 위해 경제활동을 하고 있어 기초수급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수입이 기초수급액 보다도 적은 경우는 복지 사각지대라고 볼 수 있다. 이들은 오래 전부터 하던 가게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수익이 점차 떨어져 지금에 이르게 된 경우가 많다. 처분 시점을 놓쳤거나, 복지 지원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이다. 수익이 나지 않는 가게이지만 처분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다. 고령의 나이 탓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가게를 처분한다고 해도 당장 기초생활보호 대상자가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생계유지를 위한 경제활동을 그만 둘 수가 없다.

아래 사례 25와 사례 20 면접대상자는 모두 십 년이 넘게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지만, 현재 수익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사례 25 면접대상자는 13년째 마을 슈퍼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농촌에도 대형마트가 들어서면서 작은 슈퍼를 이용하는 사람이 크게 줄어, 하루 평균 매출이 십만원, 순이익이 만원 남짓에 불과한 실정이다. 기초수급을 받는 것보다 가게 수입이 더 적어보였으며, 노령연금과 장애인 수당으로 합하여 12만원 정도를 받고 있다. 죽은 남편이 국가 유공자였으나 유족 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자녀들이 따로 알아봐주지도 않고 본인 스스로도 알아볼 방법을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근데 가게를 안 한다고 해서 나한테 돈을 얼마 준다는 보장이 없지. 당장 먹고 살 수가 없는걸. 쌀 사먹자니깐. 뭐가 있어 농사거리가 있어?

글쎄 그렇게(기초수급을 받게) 된다면 안할지도 모르지. 귀찮으니깐, 귀찮을 때가 12번도 들어가 남이 보기에는 놀면서 하는 것 같지만 힘들어요. 젊은 사람이 해야지, 늙은이들은 힘들어. (사례 25, 78, 여)

한 개도 안 팔려요. 못 파는 날이 많아요, 개시 못하는 날이. 어떻게 하다 하나 파는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생각이 많아요, 못하겠네요. 그만 두려고 해요. 했으니까 조금씩 그냥 하고 있는데, 이게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도움이 뭐야. 그거 팔아가지고 가져다 쓰는 것도 안 되는걸. (사례 20, 79, 여)

나. 경제활동을 할 의지가 있지만 하지 못함

노인의 경우 생활비를 자식들의 도움과 국가 지원금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자녀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거나, 손자손녀를 대신 키우고 있는 경우 정기적으로 생활비가 나오는 것은 국가보조금 뿐이다. 하지만 보조금으로는 본인의 의료비도 감당하기 부족한 실정이다. 손자손녀를 키우고 있는 경우 지출은 더욱 커진다. 때문에 경제활동을 필요로 하지만, 나이가 많아 일자리를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학교를 제대로 나오지 않았거나, 젊은 시절 사회생활을 해 본 적이 없어 공공근로나 식당 일자리 이외에 구할 수 있는 일자리가 많지 않다. 교육/경험 부족은 자신감을 크게 저해하는 요인으로, 노인들은 일을 할 수 없다고 미리 체념을 하기도 한다.

제가 배운 게 없어서 직장이라고는... 다른데서는 할 일이 없어요. 제가 용기가 없어서 그런데 머라도 떼다 놓고 앉아서 팔기도 하면 될 텐데 그걸 못했어요. (사례 12, 69, 여)

사례 4 면접대상자는 어릴 적 만주로 이주했다가 10년 전 한국으로 돌아왔다. 아들이 한국에 있지만 찾을 수가 없다. 생활하는데 있어 교회를 가장 크게 의지하고 있다. 청소 일을 했으나, 나이가 들어 자리를 잃었다.

일을 했지, 돈 좀 벌려고. 근데 머리 하얗다고 안 시켜줘요. 일을 못하고 동생 조카 집에서 한 반년을 같이 살다가 내가 수급자가 되고 따로 나왔지요. 집 하나 얻어가지고 그래서 나온 게 이렇게 사는 거지. (사례 4, 83, 여)

또한 사례 4 면접대상자는 손자와 손녀를 키우고 있어 돈이 더 필요하지만, 일자리를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별한 기술이 없어 식당 일 정도 밖에 할 수 없는데, 식당의 경우 중국 동포나 젊은 사람들이 많다.

식당은 어려워요. 식당은 안 써줘. 나이가 70이 다 된 사람을 누가 써줘요. 계속 한 자리에 다녔던 사람은 모르는데 이렇게 신참은 안돼요. (사례 4, 83, 여)

다. 기초수급 수령으로 인해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현행 기초수급제도는 소득이 있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거나 지원액이 깎인다. 그래서 일을 해서 버는 액수가 수급액에 비교해 적을 경우,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이득이다. 수급액이 넉넉하지 않아 추가 예산이 필요한 사람도 일을 하지 못하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아예 일을 할 계획을 포기해 버리는 일이 발생한다.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지. 기초연금 때문에. 기초수급 받아도 그런 거 해도 된다, 조금한 일이라도 해도 된다 하면 하고 싶지. (사례 5, 90, 여)

왜 그러냐 하면은 내가 일을 하면은 그 돈이 똑같이 나가요. 다 깎아주니깐. 내가 돈 받을 만큼 다 깎아주니깐. 그냥 여기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지 복지관에. (사례 10, 67, 여)

일은 젊은 사람 뿐 아니라 노인에게도 중요하다. 일을 할 수 있을만큼 건강한 노인들에게 일은 생활의 활력이 되기도 하는데, 일을 하기 위해 새로운 지식을 배우는 과정을 통해 사회와 접촉할 수 있고, 정신과 육체적 활동을 촉진해 보다 젊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많은 노인들이 일을 하면 수급 지원이 줄어든다는 점 때문에 일 자체를 포기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사례 11 면접대상자는 몸이 불편한 남편을 돌보기 위해 요양사 자격증을 따려고 공부했다. 가족 중 몸이 불편한 사람이 있는 경우 돌보는 사람이 요양사 자격증을 따면 재가요양보호사의 자격으로 하루 1시간의 수가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때문에 기초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장기 요양환자가 있는 많은 가구에서 재가요양보호사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면접대상자는 재가요양보호사 수가 때문에 기초수급이 제한되는 것을 우려해 요양사 자격증 공부를 스스로 포기했다.

할 수 있는 일이 머 있겠어? 다 늙어가지고 사는 날까지 살다 가는 거지. 취업을 안 해준대요. 그리고 수급자는 안 된대요. 내가 하도 저기해서 할아버지도 편찮으시고 그래서 요양사 자격증을 따려고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한 몇 일했는데 동사무소 가서 물어보니깐 한 40만원을, 이게 정부 저기라 지워버린대요. 그것을 가까지 것 지워버리니 차라리 안한다고 하지마라, 안 했어요. 포기해버렸어, 요양사. 자격증 따놓으면 할아버지도 편찮으시고 하니깐 또 급할 때는 써먹으려고 했는데, 열심히 했는데 안 된다니깐.

40만원씩 제하면 그까지 것 얼마나 남겠어, 고생만 하지. 그래서 안했어요. 수급자는 그렇대요. 수급자는 다 제한대요. 머 고생만 했지, 그래서

포기해 버렸어. 나보고 거기서 나이 많아도 열심히 하고 칭찬해주더라고, 선생님이. 근데 안하겠다고 포기해 버렸어. (사례 11, 73, 여)

이날까지는 봉사라도 시켜주면 한 2시간정도 할 수 있지 않을 수 있을까 싶은데 수급자는 안 시킨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다른데서는 할 일이 없어요. (사례 12, 69, 여)

3. 가족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

가. 가족에게 경제적 지원을 받는 경우

면접대상자 중에 가족이나 친척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는 사례는 8 사례였다. 가족으로부터 명절이나 병원에 입원했을 때 등 특별한 경우에 간헐적으로 용돈을 받는 면접대상자들이 3명 있었으며(사례 10, 14, 15), 매월 정기적으로 용돈을 받거나 가스세와 수도세 등을 대신 내주는 경우가 5 사례(사례 9, 21, 22, 23, 26)가 있었다. 대부분의 노인들은 가족에게 경제적 도움을 기대할 수 없을 만큼, 가족 역시 빈곤하였다.

1) 가족의 경제적 지원에 의존도가 높은 경우

가족에게 정기적으로 경제적인 지원을 받는 면접대상자들은 가족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높은 편이었다. 가족으로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용돈을 받거나 가스세와 수도세 등을 대신 내주는 경우가 5 사례(사례 9, 21, 22, 23, 26)가 있었다. 이 중 대부분은 자녀들도 경제적 형편이 좋지 못한 상황에서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로 인해 자녀에게 의지하는 것 자체에 대해 미안함을 크게 느끼거나, 삶에 대한 비관하기도 하였다.

나도 딸보고 너 보기도 죄송스럽다. 용돈도 달라고 하는 것도 입이 안 벌어 지는데 이야기도 못하겠다. 엄마 많이는 못 줘, 조금씩 줄게. 딸이 20만원 씩 주는데 9만원 찾고 해서 그걸로 쓰는 거지.(사례 21, 78, 여)

애들도 못 살아. 못살아서. 그냥 가끔 아들이 용돈 좀 주고. 근데 자기들도 곤란해서, 엄마 이담에는 못 주겠어, 이려고. 아이고, 내가 젊어서 못해 준 게 후회된다고 그러고. (사례 26, 81, 여)

가족의 지원은 지원의 정도나 횟수 측면에서 크게 달랐다. 매달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원받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전기세를 대신 내주거나, 먹을 쌀을 지원받는 경우도 있었다.

근데 들어가는 돈, 생활비 진짜 뭐 생활 제대로 하려면 몇 십 만원 씩 들어가자나요. 쌀 같은 것도 이제 시골에서 동생이 주고, 준걸로 먹다가 모자라면 팔아먹고. 이런 식으로 하니깐 먹고 사는 거지. 그냥 일일이 다. (사례 22, 73, 여)

아들이 전기세 같은 건 내주지. 정 그렇다면 15만 원 정도 주고, 그렇지 않으면 안주고. 근데 어떻게, 죽었으면 좋은데. 그냥 하루하루 사는데 벌써 겨우 돌아와, 안 죽고.(사례 26, 81, 여)

직접 비용을 내주거나 현물을 통한 지원을 하는 경우 면대면 접촉이 이뤄지기 때문에 물질적, 정서적 돌봄이 동반되는 것으로 보인다. 병원비를 자녀가 대신 내주는 경우, 자녀가 병원과 약국으로 부모를 모시고 가야하며,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기 위해선 평소에 생활 전반을 살피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병원비는) 몰라요. 우리 큰딸이 데리고 다니면서 하니깐. (사례 23, 79, 여)

그래서 아주 걱정이예요, 기름이 많이 들어가서. 작년 겨울에는 사위가 와서 많이 넣어줬어. 그래서 살았어. 착하지. (사례 21, 78, 여)

가족의 지원에 의존하는 경우라도 국가보조나 국민연금은 노인들의 생활비에서 큰 부분을 차지했다. 국가보조나 국민연금이 가족지원금 규모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모든 면접대상자들이 가족이 생활비를 지원하더라도 생활비가 넉넉하지 않다고 호소했다. 자녀 역시 생활 사정이 넉넉하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여서 지원 금액 자체가 10~20만원 사이에 불과한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 가족의 경제적 지원에 의존도가 낮은 경우

간헐적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는 가족의 경제적 지원에 대한 의존도가 낮았다. 사례 10, 14, 15 면접대상자 등은 가족으로부터 명절이나 병원에 입원했을 때 등 특별한 경우에 간헐적으로 용돈을 받고 있었다. 생활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가족의 간헐적인 도움은 보탬이 되지만, 이러한 수입은 언제 생기고 끊길지 모르기 때문에 생계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병원입원하고 수술하고 있으면 동생네 작은딸이 가끔 십만원 갖다 주고 그러니깐 제가 수술을 많이 했어요. 조금씩 생활 저거 하니깐 삼성에 다니고 하니깐 올 시간도 없고 하니깐 주말 병원에 입원해서는 수술을 하도 많이 했으니깐 그때 와서 조금 갖다 주고 갖다 주고 그랬죠. 그 외에는 갖다 줄 사람도 없어요. (사례 10, 67, 여)

다른 사람은 모르고 큰아들이 5만원도 주다 10만원도 주다 그래요. 그러는데 근데 몇 달 됐어요, 주는 것도. 그렇게 해서 내가 고생을 했어요. (사례 14, 81, 여)

명절 때 한 번씩 와요. 한 20만원씩 주더라고요. (사례 15, 89, 여)

나. 가족에게 경제적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

1) 가족들이 빈곤하여 지원해줄 수 없는 경우

자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대다수 면접대상자들은 자녀 역시 빈곤하거나, 수급자인 경우가 많았다. 부모가 기초생활보호 대상자로 수급을 받기 위해선 자녀가 부모를 부양할 능력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비정규 일용직으로 별이가 적거나, 한창 자녀들을 키우는 중이라 생활에 여력이 없는 상황이 많았다. 자녀들이 부모를 돕고 싶은 마음은 크지만, 위약에 상황이 여의치 않아 ‘못’ 돕고 있다고 답변이 많았다.

우리애가 서울에 하나 있는데 그 아이도 수급자에, 나라에서 전세 하는 것도 보니까 얼마데? 한 5천만 원. 전셋돈. 국토 관리청에서. 공사에서 돈 뭐 그걸로 생활해요. 그렇게 어렵게 살아요. 내년엔 대학교 들어갈 애 아들 하나가 하나 있는데 노가다 하면서. 굉장히 어렵게 살아요. 수급자예요, 수급자. (사례 8, 78, 남)

용돈을 날 줄게 어디 있어. 오히려 내가 안 됐어서 계집애 내가 만원도 주고, 그거 불쌍하니깐. 그것들도 나 도와줄 돈이 어디 있어요. 생활비가 그냥 정부에서 받는 걸로만 다 그냥 충당하고. (사례11, 78, 여)

딸 셋 있는데 막둥이 딸은 서방이 돈을 안 벌어 주니깐 딸 하나 낳아서 초등학교 6학년 때 이혼했어. 생활비도 십 원도 못 받고 이혼해서 살고, 둘째 딸은 부평에서 사는데 사위가 카센터해서 돈은 괜찮게 버는데 매일 술 먹고 계집질 해가지고 췌장암에 걸려서 수술해서 똥주머니 차고 살아 지금. 전이 돼서 또 수술하고.

그러니깐 도와줄 놈도 없고 힘들어. 내가 다니면서 많이 울어요.(울음) 중풍 온지가 오래 돼서 먹을 것 마음대로 못 먹고 이렇게 살다가 중풍 온지가 9년이 돼서 제대로 못 다녀. (사례 31, 76, 여)

그거 하는데 그 일도 있을 때는 저녁까지 한 9시까지 하는데 없을 때는 못해요. 놀아요. 형편이 그래요. 그래서 (아들이) 수급자가 된 거예요. 도움은 못 주죠. 내가 주면 됐지, 못 주죠. (사례 12, 69, 여)

그렇지 특별히 아직까지 집을 가지고 사는 애들도 없고. 자기네 집에 사면 이렇게 하겠어요? 며느리도 울먹울먹해, 내가 이런 일 한다니깐. 죄송하다고 하는데 걱정하지 말라고 했는데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도 현실적으로 물질적으로 도와줄 형편이 안 돼. 물질적으로 나를 좀 이렇게 해주지 못하니깐. (사례18, 77, 여)

자녀들도 사정이 좋지 않으니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 원망을 하진 않지만, 몸이 아플 경우 자녀에게조차 의지할 수 없는 현실에 답답함을 느끼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결국 의지할 것은 나라에서 나오는 보조금 뿐인데, 보조금으로 생활비는 충당할 수 있으나 의료비가 감당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 걱정으로 남는다.

(나이가 더 들면 도와줄 사람이) 없지요, 그럴 때는. 애들이 못 살자나요. 오는 애가 없어요. 이렇게 아파도. 마포에 사는 애가 하나 있는데 자기가 정부 혜택을 보면서. 나머지는 연락도 없고. 딸이 하나 여기 하나 있는데 딸은 필요도 없어요.

자식이 도와주는 것도 돈이 없어서 직계가족 먹이다가 여유가 있어서 부모를 도와주는 건데. 안 그럼 수급자가 될 수가 없어요. 은행 조회 다 하잖아요. 그럼 우리 아들이 한 달에 2백만 원, 3백만 원 번다고 치자. 부모를 도와줄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애들은 그런 능력이 없잖아요. 있어도 정부에서 다 조회를 하잖아요. 안되니깐 우리가 수급자 1종으로 있는 거예요.

(계속 수급 밖에) 없지요. 그래도 그냥 사는 거지요. 굶어 죽기 밖에 더 하겠어요? 살다가 이렇게 살겠지. 일을 못 할망정 주는 돈으로 해야지요. 아프지만 않으면 되는데 아픈 게 문제지요. (사례8, 78, 남)

부모로서 자녀들이 빈곤하게 생활하는 것에 마음 아파하고 있었으며, 가난을 대물림했다는 책임감, 죄의식을 느끼기도 했다. 당시에는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사는 것이 힘들어 교육에 신경쓰지 못했다는 점은 많은 면접대상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한 문제로, 그 결과 자녀들도 고생하게 됐다는 회한을 내비치는 면접대상자가 많았다.

애들 다 키우지도 못하고 가르치지도 못했어요. 우리는 워낙 가난을 대물림 했어요. 아버지 때부터. 못 살아가지고 애들까지도 못 살고 다 제가 죄인이 되어 버린 거죠. (사례8, 78, 남)

그 대신에 애들도 공부시간에 공부를 해야 하는데 공부를 결석을 시키가면서 같이 일을 했었어야 했어요. 제가 생각하니깐 그렇게 어리석었어요. (사례 12, 69)

2) 가족들이 형편은 되지만 지원해주지 않는 경우

자녀가 여유가 있어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도 존재하였다. 자녀가 대기업에 다니다가 명예퇴직을 하게 된 경우에도 요즘 사정이 어려워서 그런 것이라고 이해를 하는 모습을 보였다. 노점상을 하며 3남 2녀를 길렀으나 자녀들이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주지 않는 상황에 대해 아쉬워하면서도 크게 원망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우리 큰 아들은 서울대 무역관광과 공학과인가 나와서 아시아나 항공에 그거 일본 가서 외국어 일 년 배워서 일본에서 아시아나 항공... 파견가서 있다가 거기서 이제 잘 지냈는데, 그래봤자 자기네는 살아도 나한테 돈 부쳐주고 혜택주는 것은 없어. (사례 18, 77, 여)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형제자매들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는 면접대상자들은 없었다. 면접대상자들은 형제들과는 거의 연락을 하지 않거나,

서운한 감정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았다. 사례 19 면접대상자에게는 경제적인 도움을 요청했으나 거절을 당한 기억이 상처로 남아있으며, 자신의 빈곤한 상황 때문에 형제들을 찾지 않는다. 사례 12 면접대상자는 형제들이 자신을 대화수준이 맞아 이상하게 본다고 여긴다.

형제한테 안 찾아가요. 왜 안 찾아 가냐면, 내가 가면 돈 얻으러 온줄 알고 반갑게 받아주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절 안가요 형제 집은...동생이 한번 전화 와서 집에 와 그러면 내가 부자로 살면 가마, 지금은 내가 너희 집 갈 능력이 안 된다, 내가 그러지. 형제들도 다 잘 살아야 되고.

내가 형제들한테 돈 500씩만 빌려 달라 그랬더니 딱 거절하더라고, 그래서 형제도 안 찾아요.

제가 형제 집을 안 찾아요. 동생이 한번 전화 와서 집에 와 그러면 내가 부자로 살면 가마, 지금은 내가 너희 집 갈 능력이 안 된다, 내가 그러지. 형제들도 다 잘 살아야 되고. (사례19, 70, 여)

(형제들과) 어울리면, 내가 마음이라도 내가 저기하겠는데 내가 이렇게 판소리하고 정신이 안 맞아 가지고, 그래서 이상하게 보고, 그래서 또 누구하고 대화를 해야 하는데 그 생각이 빨리 안 나면 대화를 못 하잖아요.

형제들은 있는데, 지적 자제(부잣집)니깐 다 안 찾아 봐요. 그러니깐 나도 안 찾아보고 싶고. (사례 12, 69, 여)

나는요, 우리 형제간들은 먹을 만큼 잘 살아요. 근데 형제한테 안 찾아가요. 왜 안 찾아 가냐면, 내가 가면 돈 얻으러 온줄 알고 반갑게 받아주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절 안가요 형제 집은. 반갑게 받아주면 형제라서 받아주나 할 텐데, 내색이 안 좋더라고요. 그 뒤로는 형제들 안 찾아요. 형제가 있다는 것만 내가 기록을 하고 살지, 형제 집 가서 밥한 끼 얻어먹을 때뿐이고, 언니 언제가 그러면 금방 갈련다 그러고 와요.

제가 형제 집을 안 찾아요. 동생이 한번 전화 와서 집에 와 그러면 내가 부자로 살면 가마, 지금은 내가 너희 집 갈 능력이 안 된다, 내가 그러지. 형제들도 다 잘 살아야 되고. (사례19, 70, 여)

못 봐. 이래가지고 한 번도 못 봤어. (사례 26, 81, 여)

지금 형제지간도 뭐 없어, 돈 없으면. (사례 29, 67, 남)

형제들은 있지만 자기만 살라고 하지 형제가 무슨 필요 있어요. (사례 11, 74, 여)

3) 도와주지 않는 가족들에게 섭섭해 하는 경우

어려움에 처한 부모를 돌보지 않는 자식들에 대해 섭섭함을 표시하는 면접대상자들도 있었다. 면접대상자들이 자식들에게 섭섭함을 느끼는 이유는 물질적인 곤궁함뿐만 아니라 심리적 배신감이 컸다. 어렵게 고생을 하며 자식들을 키워놓았는데, 부모가 늙어 도움이 필요한 때에 외면하는 것을 배신이라고 받아들이기도 했다.

아래 사례16 면접대상자는 일곱 자녀들에 대한 섭섭함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면접대상자는 건강이 매우 나빠 여러 차례 큰 수술을 받았다. 자식들이 병원비는 내주었으나 입원해 있는 동안에도 특별히 병간호에는 신경을 쓰지 않았고, 병문안도 드물었다. 자녀들이 자신을 ‘배반’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내가 병원에 있다가 한 달 있다가 왔어요. 그때는 자식들이 왔다 갔어요. 병원비를 걷어서 냈거든요. (자식들이) 근데 그러고 퇴원하고 나서는 연락도 없더라고.

필요도 없어 난. 나 여기서 죽으면 그만이야. 제사도 안 지내는데 뭐 하러, 오며 머 하러 가며. 이렇게 하니깐 나를 아주 배반 하는 거지.

본래 허리가 아파서 일을 못했고, 저는 정밀 회사 다녔었어요. 좋은 회사 다녔는데 나이가 45살 되니깐 딱 끊어버리더라고요. 눈이 안 보인다고. 보너스를 많이 주더라고요. 우리가 일을 많이 하면. 그렇게 해서 애들을 가르쳤는데 애들은 몰라주더라고요. 그니깐 저는 회사 다닐 때 중국집에서 자장면이 먹고 싶어도 못 먹어 봤어요, 애들 키우려고. 근데 자식들이 그거를 모르고 엄마를. 저도 이제 찾지도 않아요. 나 죽으면 동사무소에서 장례는 치러 줄 거고. 그렇게 잘리니깐 공공근로를 했어요, 할아버지 아프니깐. (사례 16, 75, 여)

제4절 노인의 노후준비

1. 가족이 돌보아주기를 기대하는 경우

가. 자녀가 돌보아주기를 기대

대다수의 면접자들(23명, 약 72%)은 지금보다 건강이 더 나빠져서 혼자서 생활하기 힘들어져도 자신을 돌보아줄 사람이 없다고 대답하였다. 자녀들 역시 형편이 좋지 않고, 자녀들과 생활하는 것이 불편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었다. 면접대상자들 중 5명(약 16%)만이 가족이나 친척이 자신을 돌보아 줄 것이라는 기대를 하였다. 이들 중에는 자녀들이 직접 부모를 돌보겠다고 말을 한 경우도 있었지만, 자녀가 약속하지는 않았지만 부모가 아프데 내버려두기야 하겠냐는 추측에서 돌봄을 기대하는 경우도 있었다. 과거 고생하여 자녀를 키운 것에 대한 당연한 보은이라고 생각하거나, 자녀가 돌봐주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기댈 곳이 없다는 현실적인 이유에서 자녀가 돌보아주기를 기대하는 경우도 있었다.

내가 자기들을 어떻게 길렀는데. 머리에 바구니 얹고 어깨에는 망태 짐 들고 그래서 그만치 길러서 지금 생각해보면 참 용해, 어떻게 그렇게 했나. 그러니깐 내가 골병만 남았어.(사례 23, 79, 여)

그렇다고 날 내버리겠어요? 내가 좀 아파 죽었으면 영 병으로 집어넣겠지 생각해요. (사례 19, 70, 여)

아들이 안 해주면 나는 못해요.(사례 21, 78, 여)

대다수 면접대상자들의 경우 아들보다는 딸에 의지하는 경우가 많았다. 아들이 자신을 모실 것이라고 답한 면접대상자는 없었다. 아들이 있는 경우에도 자신을 모시는 것은 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했다. 아들보다 딸에게 의지하는 이유로는 아들들이 연락이 닿지 않거나, 딸이 혼자 살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제시됐다.

아들 둘이 있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딸이라도 해주겠지 누가 안 해주겠어요? 딸 둘은 있으니깐.(사례 19, 70, 여)

딸이 혼자 사니깐 딸이.(사례 14, 81, 여)

큰딸이 해 주겠지. 저거들 밥 먹고 나 이렇게, 엄마 힘들게 하지 말고 우리가 있자나. 우리의지하고 믿고 그래. 자꾸 신경 쓰지 말고 신경 쓰면 엄마가 더 병이 더 악화된다고 그러고 해요. (사례 23, 79, 여)

자녀가 자신을 돌봐줄 것을 원하지만, 실제로 자녀의 보살핌을 받을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불안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사례 25 면접대상자는 지금은 혼자 살만 하지만 시간이 흐른 뒤에는 아들가족과 함께 살았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아들이 여럿 있는데도 요양원에 간 이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시하기도 한다. 하지만 며느리가 병든 시모를 모실 것인지에 대해서는 자신하지 못한다.

(아들이랑) 계속 한테 살았으면 좋겠는데 지금 시어머니가 병들어서 같이 살려는 며느리가 어디 있어요. 요양원이 있고 이 동네도 아줌마가 86살인가? 그러는데 요양원에 간지 꽤 됐어. 아들들도 셋인가 넷이나 있는데, 지금은 혼자 사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아들들하고 사는 사람들 별로야. 아들들하고 살라고 하면 다 싫다고 해. (사례 25, 78, 여)

딸과 함께 살고 싶지만, 손자로 인해 고민하고 있는 면접대상자도 있었다. 사례 23 면접대상자는 큰 딸과 함께 살고 있었지만, 손자가 자신에게 자상하게 다가오지 않아서 걱정하고 있었다. 또한 작은 딸도 자신을 모시겠다고 말하지만, 지하의 작은 방에 살고 있는 작은 딸의 형편에 기대기도 부담스러워하는 듯 보였다. 손자가 불편한 큰 딸의 집과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작은 딸의 집 중 어느 곳에서 살아야할지 고민하고 있었다.

그런데 작은딸도 그렇고 조금 넓은 데로 가서 엄마 모신다고 하니깐 지금은 같이 살수도 없고, 지하라 방이 조그마해.... 어디 가서 내가 얹혀 살 것인가, 다른 거야 뭐.

그때 큰 딸네 집으로 갔지요. 올 데 갈 데가 없으니깐. 거기 살다가 이사했는데 이거는 정리하고 자기네로 와 그래요, 우리 큰딸이. 그런데 그거는 아들만 둘 낳아서 그런데 등치도 크고 둘 다 그런데 우리 큰 손자가 자상하지를 않아요. 사람을 보면 사람들 땅겨서 말도 하고 그러면 좋은데. 거기가 지하라, 어디서 얻어먹으면 먹었지 거기서 살지는 못해요. 내가 그 성격을 맞추려고 하면 내가 말라 죽지.

그럼 우리 딸도 그래. 엄마 우리 집으로 와야 하는데, 애들이 여자가 아니라 남자애들이라 성질이 그래. 어떻게 해야 할까, 저 울고 나울고 저번날도 둘이 앉아서. (사례 23, 79, 여)

나. 손자손녀가 돌보아주기를 기대

손자손녀를 키우는 경우, 자녀 대신 손자손녀에게 보살핌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를 하기도 했다. 손자손녀가 자라 직장을 갖게 되면 자신을 부양할 것이라고 여겼다. 사례 6과 사례 19 면접대상자는 홀로 손자손녀를 기르고 있다. 특히 사례 6 면접대상자는 손자가 5살 때, 손녀가 13개월 때부터 맡아 현재 고등학생, 중학생인 손자손녀를 적극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있다. 자신을 보살펴주는 할머니에게 손자손녀가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기대감의 근거가 되기도 했다.

광현이 보현이가요. 제대로 된 직장을 잡으면 끝나요. 개네 들이 도와주는 거지. (사례6, 68, 여)

애들이 할머니 죽지 말고 오래 살아요. 내가 강남에 모시고 가서 살 거니깐 걱정 없이 살아요. (사례 19, 70, 여)

하지만 동시에 자신을 부양하는 것이 손자손녀의 의무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모순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사례 6 면접대상자는 자신이 10년이 넘게 ‘전력을 다해’ 손자녀를 키워왔지만, 손자녀에게 의지하고 바라지는 않는다고 대답했다. 지금 현재는 자신은 의무를 다하는 것일 뿐이며, 그러기 위해서 건강해야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후 손자녀가 자신을 돌보기를 원하지 않으면 그것은 손자녀의 자유의지라고 대답하였다.

모르겠어요. 나는 내가 10몇 년 동안 전력을 기울였잖아요. 내 자식이라고 해도 의지하고 바라는 게 없어. 왜냐면 어리니깐 내가 아파서도 안 되고 내가 건강해야 되고 내가 없으면 어떻게 되요? 안 되잖아. 우선은 모든 애들한테 걸고 있는 거예요. (사례6, 68, 여)

애들이 바르게만 자라면 되는 거예요. 애들을 잘 못 키워놔요면 할 말이 없잖아요...의무를 하는 것뿐이지만 커서는 자유 의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애들이 싫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거지. 난 복잡한거지. 싫다는데 어떻게 해요, 그것들. (사례6, 68, 여)

다. 형제가 돌보아주기를 기대

자녀나 손자손녀에게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의지할 수 없는 경우, 형제에 의한 돌봄을 기대해볼 수도 있다. 하지만 형제의 경우 자신이 키운 자녀나 손자손녀와는 달리 막연하게 보살핌을 기대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다. 따라서 도움을 줄 수 있는 형제의 재정 상황, 의지, 그 동안의 관계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한다. 사례 28은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살았으며, 자녀도 없다. 현재도 쪽방에서 혼자 살고 있는데 이후 나이가 더 들면 형제들이 도와주기로 약속을 했다고 하였다.

동생하고 누님들하고. 조금 더 나이 들어도 특별한 대책은 없어요. (사례 28, 78, 남)

2. 가족이 돌보아주기를 기대하지 않는 경우

가. 자녀가 없는 경우

자녀가 없어 보살핌을 기대할 곳이 없는 경우도 있었다. 사례13 면접대상자는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것을 모르고 결혼을 하였는데,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별거를 시작하였고, 이후로 계속 혼자서 살았기 때문에 슬하에 자녀가 없었다. 오십년 동안 식모살이를 하며 생계를 이어왔고, 현재는 식모살이를 하며 노후대비를 하기

위해 일 년에 백 만원씩 나오는 사적 연금과 기초생활급여에 더 의존하여 살고 있다. 나이가 더 들어도 돌보아 줄 사람이 없으며, 남에게 신세지지 않고 '곱게' 임종하기를 바라고 있다.

모르고 갔더니 마누라가 딸을 3이나 낳은 사람이더라고. 거기서 이혼하고 혼인신고도 안하고 그리고 남자가 죽었어. 죽고 없으니깐 이 날 평생 내가 60년을 여기서 산거야. 연애를 한번 해봤어야 하는데 연애도 한번 못한 거야, 병신이. (사례 13, 85, 여)

가족이 있어야 도와주지요. 나 혼자 이것 가지고 실컷 살아요. (사례 13, 85, 여)

걱정될 것도 없고 욕심도 안 부리고 이제 내 몸 하나만 갈 때 곱게 이제 남한테 신세안지고 가기만 바라고 있어. (사례 13, 85, 여)

돌봐줄 사람도 없지요. 이제 작년 4월6일에 병원에 들어가서 11날 수술하고 25날 퇴원했거든요. 나왔더니 구청에서 아픈 것을 알고 보냈어요, 사람을. 이야기하라는데 내가 정신이 있나 없나 체크를 하는 거예요. 내가 뭐 주민등록번호도 다 읽을 줄 알지 내 생일도 알지 알고 하니깐 돌봐줄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웃음) 근데 어떻게 거짓말을 하겠어요. (사례 13, 85, 여)

나. 자녀가 연락을 자주 하지 않는 경우

자녀와의 관계는 부양에 대한 기대감에 큰 영향을 미친다. 막연하게라도 자녀가 키워준 보답을 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는 면접대상자들의 경우 자녀와 전화통화를 하거나 왕래를 하는 등 지속적인 접촉이 있다. 이와는 달리 부양에 대한 기대를 하지 않는 사례들의 경우 자녀와의 왕래 및 접촉이 거의 끊어져 있는 상태인데, 이 때문에 부양에 대한 기대를

접은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자녀와 연락을 하고 지내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대부분 답변을 했으나 자녀와 접촉이 끊어지게 된 이유를 밝히는 것에는 불편함을 표시했으며, 직접적인 답변을 회피했다.

전화가 와서 어디가 아프냐고 물어보던지 눈이 많이 와서 어떻냐고라도 물어보던지 그런 것도 없는데. 몰라 나는 안하니깐 하지도 않고 오지도 않고. 자기자식 가르치지 누가 친정엄마 돌보겠어요? (사례 17, 78, 여)

폐가 아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저희만 잘 살면 돼. 이게 아들이랑 손자예요. (사례15, 89, 여)

자녀들과 왕래가 끊어지게 되는 과정에는 자녀의 가정불화도 영향을 미쳤다. 사례 24 면접대상자는 아들이 재혼을 하고 처가살이를 하게 되면서 연락이 어려워진 경우다. 고부갈등으로 며느리와는 연락을 하지 않고, 아들만 가끔 연락을 한다. 며느리가 친정어머니를 모시는데 반해, 아들은 자신을 돌보지 못하는 상황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아들이 이혼을 하지 않았으면 자신을 모시고 살았을 것이라 여긴다.

그 며느리가 있었으면... 이렇게 고생도 안하고 살았을 텐데.

그럼요 전화도 안 해요, 지금. 우리 아들이 이혼하고 재취했거든. 전화도 안 해. 생전가도 우리 며느리 전화 안와요. 우리 아들이나 조금 오지 우리 아들도 두 남매가 죽었으니 그러지. 생전 처갓집에 가서 그러지 지금은 후회하나 봐요 나 혼자 있으니까. 이제 사흘에 한번은 전화해요. (사례 24, 80, 여)

다. 자녀들의 부양부담을 원치 않는 경우

자녀가 있어도 보살핌을 거부하는 면담대상자도 있었다. 자녀에게 기대기 싫어하는 주된 이유는 자녀들도 삶을 꾸려나가기 힘들기 때문이다.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크지만, 경제 상황 이외에도 자녀의 가정불화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사례 3 면접대상자는 아들이 이혼하고 일을 하러 나가 연락이 없으며 현재는 아들의 자식인 손자도 맡아 돌보고 있다. 하지만 자녀들의 생계도 어렵고, 자녀들에게 부담이 되기는 싫어 노후에 자녀들이 돌보아줄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아들은) 가서 몰라. 연락이 없어. 지 애미년(며느리)이 가버렸는데 무슨 아들 보러 와요. 내가 이혼을 시켰어.

못해 자기들 살아야지. 부담주기 싫어. (사례3, 68, 여)

3. 국가보조의 요양원에 갈 것을 기대하는 경우

많은 면접대상자들의 노후 계획은 요양원이나 양로원이었다. 돌보아줄 사람이 없어서 이러한 시설에 가야할 것 같다고 말한 면접대상자들도 있었고(사례 2, 4, 10, 26), 며느리가 돌보아주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여 여생을 시설에서 보낼 것이라고 생각하는 면접대상자도들도 있었다(사례 24, 25). 자녀나 손자가 돌보아줄 형편이 되지 못하니 시설에 가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례도 있었다(사례 5, 18).

이렇게 받다가 어디 요양원에나 가던지 해야지, 어떻게 하겠어. 누가 나를 할 사람이 없어. 동생도 나이도 많은데 나를 할 수 있나요. 몸도 안 좋은데 있는 날까지라도 몸만 성하면 좋은데 몸도 아프고. (사례 2, 80, 여)

나는 앞으로의 계획은 어느 누가 그렇게 할 사람도 없고, 동생들은 모두 다 모르지만도 내 신체는 드러눕게 되면 요양원에 가야지. 돌봐줄 사람이 없거든요. 그 지경이 되면 거기로 가야지 다른 방법은 없지요. (사례 4, 83, 여)

요양원가야죠. (사례 10, 67, 여)

없어. 그냥 저기 요양원에 가야지. 소용없어. (사례 26, 81, 여)

그때는 요양원 같은 데나 가겠지. 지금 며느리가 돌봐 주려고 하겠어요? (사례 24, 80, 여)

(아들이랑) 계속 한데 살았으면 좋겠는데 지금 시어머니가 병들어서 같이 살려는 며느리가 어디 있어요. 모르지. 아들도 지네 엄마 저 어디다가 집 어넣을 테지. 저 요양원에다가. (사례 25, 78, 여)

내가 못 걸어 다닐 때는 양로원으로 가야지. 손자가 혼자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깐. (사례 5, 90, 여)

몸이 아프고 거동 못하고 그러면 양로원이라도 보내겠지. 내가 자식들 생각은 말은 그렇게 해, 자식이 5남매나 되는데 양로원을 보내냐고 하는데 내가 봐도 내가 거처할 곳이 딸이고 아들이고 없으니깐 내가 양로원에나 가겠지 그것도 5남매가 조금씩 걸어서 해야 되니깐.
(사례 18, 77, 여)

부부가 함께 살지만, 제도상의 문제로 다른 시설에 갈 생각을 하고 있는 사례도 있었다. 사례 27 면접대상자는 요양 3등급으로 지금이라도 당장 요양원을 이용할 수 있지만, 아내가 있어 집에서 함께 살고 있다. 하지만 생활이 너무 불편하여 양로원에 자리가 나서 아내가 그곳에 갈 수 있게 되면, 자신은 국가의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요양원에 가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 사례는 노인 개인을 기반으로 복지제도를 구성하는 것과 더불어, 부부 단위의 제도적 배려도 고려해야함을 보여준다.

지금 내 집사람이 여력이 되면 난 지금이라도 (요양원에) 갈 수 있으니깐 가는데 나는 요양원 이런 데로 가고 싶어요.

집사람을 두고 그냥 갈 수도 없고. 집사람이나 나나 다 마찬가지예요.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게 걱정이에요

내 생각으로 집사람을 먼저 인도의 집이라고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노인들 부양하는 양로원 그거 비슷한 단체에 노인네들 한 열댓 명, 이십 명 정도 될까, 이렇게 보호하고 있지요. 거기에 먼저 집사람을 보내고 난 나대로 갈까 하고 있는데 거기가 자리가 나질 않아. 자리가 없어가지고 못 들어가고 있어요. 그거는 남자는 안 돼요. 여자만 되지.(사례 27, 102, 남)

4. 특별한 대비책이 없는 경우

면접대상자들은 지금도 미래를 위한 대비책을 갖고 있지 못하다. 파지를 좁는 등의 일을 통해 약간을 돈을 벌고 있지만, 이도 부족한 생활비에 보태어 쓰고 나면 남는 돈이 없다. 지금이라도 보험을 들고 싶어도 나이가 많고, 지병이 있어 가입을 할 수 있는 곳이 없다.

무슨 대책? 아무것도 없어 그거 방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깐 내가 힘이 들어 하지. 그렇지 않으면 남한테 빚을 얻어야 하는데 누가 줘? (사례 24, 80, 여)

그리고 보험 같은 거를 들으려고 해도 혈압이 높고 하니깐 안 들어 주더라고. 나이 들어가지고 들으려고 하니깐. 조금한 병 있어도 안 들어 줘. (사례 25, 78, 여)

뭐가 대책이 있어요. 사는 데로 살다가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그렇죠. (사례 11, 81, 여)

5. 미래에 대해 비관하는 경우

면접 대상자들 중에는 미래에 대해 긍정적이고 희망적으로 보기보다는 체념적이거나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었다. 거동이 불편할 정도로 몸이 아프며, 돌보아줄 사람도 없고,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에서 면접대상자들 중에는 ‘죽는 날만 바라보거나’, ‘빨리 죽기를 원한다’고 답한 경우도 있었다. 실제 생각보다 말을 더 강하게 하는 경우가 있음을 생각해 보더라도, 이들 면접대상자들이 현재 상황을 매우 비관적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아프면 죽는 거라고 생각해요, 나는. (사례15, 89, 여)

돌봐주긴 누가 돌봐줘 나를. 죽는 거야 이렇게 살다가. (사례 29, 67, 남)

없어요. 누가 도와주겠어요. 자식도 지 앞도 못 가리고 힘들어서 그런데 누가 나를 도와주겠어요.

아들도 자기도 힘드니깐. 그냥 죽는 날만 바라보는 거죠.

그렇게 살다가 가는 거지. 이제 무슨 희망이 있겠어. (사례 11, 74, 여)

걱정해봤자 소용도 없고 빨리 죽는 거 밖에 생각이 안나요. 빨리 죽었으면 하는 바람밖에 없어요. 금방 잊어버리고 생각도 안 나고. (사례 31, 76, 여)

제5절 빈곤 해소를 위한 여성노인의 정책욕구

면접 결과 빈곤한 여성 노인들이 경험하는 주된 어려움들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바로 ‘경제적 어려움’이었다. 그 동안 종사했던 직업도 그만

두기 때문에 고정적인 수입원이 없고, 노후준비나 자녀의 도움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라면 경제력의 부재에서 오는 어려움은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노후에 맞는 경제적 빈곤은 건강문제 및 사회적 관계의 축소로 이어져 소외감 등의 다른 문제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앞에서 살펴 본 것처럼 인터뷰에 응한 노인들의 대부분은 소액의 공적 연금(기초생활수급과 노령연금)에 의존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았다. 또한 상당수의 노인 자녀들 또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다. 주기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가족으로부터 받는 노인은 매우 적었으며 명절 때나 한번 씩 소액을 지원받는 노인들도 적었다.

인터뷰 대상자들 중에는 미리 노후의 경제적 부분을 체계적으로 혹은 적극적으로 준비해 왔거나 현재 경제적으로 노후준비가 잘 된 사례는 드물었다. 대부분이 공적연금에 의존하여 생활하고 있었다. 공적연금은 노령연금과 기초생계수급 그리고 국민연금으로 나누어 인터뷰한 결과, 노령연금과 기초생계수급에 대한 지원은 인터뷰에 응한 대부분의 노인들이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노인은 거의 없었다. 노인들이 받고 있는 노령연금의 액수는 8~9만원, 기초생계수급액은 30~40만 원대가 다수였고 50~60만 원 이상을 받는 노인도 있었다. 노인 대부분은 홀로 생활하는 독거노인들로 정부로부터 받는 지원금 대부분이 병원비와 집세, 공과금(전기세, 수도세 등)과 생활비로 지출되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여성노인들은 남편이 함께 사는 동안에도 생계에 대한 책임을 분담하는 경우가 많았다. 젊은 시절부터 가정의 부수적인 수입원으로서 역할을 해오다가 남편과 사별한 후에는 생계의 주수입원으로서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러한 여성노인들이 택한 일들 대부분은 노후가 보장될 수 있는 연금이 나오는 직장을 다니기 보다는 장사나

식당 일을 통해 생계를 유지해 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과 사별한 후 경제적 부분에서 삶에 큰 변화나 타격이 크게 나타난 여성노인도 극소수 있었으나 대부분은 그렇지 않았으며 결혼 후부터 현재까지 고단한 삶을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족으로부터의 경제적 지원도 없고 공적연금도 그리 넉넉지 않은 상황에서 노인들의 스스로 자구책을 만들어야 한다. 결국 몸이 따라주는 한 경제적 활동을 통해 생활에 보탬이 되는 소득을 창출하고자 노력하지만, 나이가 나이인 만큼 건강이 허락지 않고, 건강이 허락되면 연령이 많아 취업이 쉽지 않은 상태였다. 그나마 할 수 있는 일은 거리에 나가 박스를 줍거나 집에서 할 수 있는 소일거리 정도로 생활에 큰 보탬이 되는 않는 일이었다. 결국 노후대책이나 가족의 지원 없는 노인들의 삶은 공적 연금에 크게 의존한, 경제적 빈곤 속에서 살고 있었다.

특히 기초수급자는 경제적 생활력이 있는 아들이 있는 경우 제외 대상이 된다. 때문에 노령연금과 기초생활수급액에 의존하여 생활하고 있는 노인들의 자녀 또한 경제적으로 누군가를 지원할 여력이 대부분 없었다. 현대사회에서 자녀들의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가 예전 같지 않다고 이야기하지만, 본 사례에서 나타난 결과는 부양의무의 약화에서 노인들이 경제적 지원이 어려운 경우보다는 자녀들 또한 절대적 빈곤 그룹에 속하기 때문에 부모에 대한 지원여력이 없는 것이 훨씬 컸다.

현재 여성노인들은 자신들이 지냈던 과거와 여러 가지 달라진 가치관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과거에는 부모 부양을 당연한 자녀의 의무로 받아들이고, 이는 노후대책의 일환이었다. 과거의 경험과 기억을 갖고 있는 노인세대는 여전히 자신의 자녀들이 그들의 노후를 책임져 줄 것을 기대할 수 있겠다. 그러나 젊은 세대가 갖는 부모 부양에 대한 가치관은 많이 바뀌었다. 노인들에 대한 대책은 이제 자녀의 몫에서 국가의 몫

로 전이되는 과정에 있고 그 과정 위에 놓여 있는 노인들은 불안하기만 하다.

1. 금전적 지원에 대한 욕구

면접 대상 노인들 중 단 한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생활비가 매우 부족하다고 답했다. 특히 많은 노인들이 자녀나 친척들 역시 빈곤하여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으며, 국가에서 조금 더 금전적 지원을 받기를 원했다. 부족한 금액으로 생활할 때 주거비 지출이 가장 우선이 되고, 식비 등의 나머지 필수적 욕구들은 지출의 후순위로 밀려나는 경우가 많았다. 적절한 영양 섭취가 노인들에게 매우 중요함에도, 이들은 금전적인 제약으로 인해 ‘된장 하나, 간장 하나’로 밥을 먹거나, 앞 서 예로 든 것처럼 잘 먹지 못하여 영양실조에 걸리기도 하였다. 기초생활급여를 받더라도 의식주 중 하나인 기본적인 식생활도 제대로 영위하기에 힘든 상황인 노인들이 많았던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금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대답한 노인들이 많았다.

여유돈 있으면 나는, 젊어서부터 소원이 그래요. 나 같은 사람한테는 왜 안 주나 돈이 있으면 쓰고 싶은데 어디다가 쓰냐면 내가 조금이라도 나 먹고 내가 쓰고 살려고 없으면 한도 없지만 저렴하게 먹고 여유가 남는다면 소녀 가장들, 그거 보면 눈물이 나요. 근데 마음뿐이지, 그게 되요? 나도 지원 좀 해 줬으면 하는데. (사례18, 77, 여)

돈이나 좀 올려줬으면 좋겠다고. 반찬 같은 건, 가지 같은 거, 호박 같은 거 따다가 주고, 여름에는 그렇게 사는데. 겨울에는 힘들어. (사례 29, 67, 남)

아이고, 못살아서 죽겠지. 누가 10만원 보태줬으면 내가 살아나가는데 힘이 덜 들겠어. (사례 1, 72, 여)

생활비가 조금 넉넉해지면 좋겠다. 한 달에 딱 50만원만 줘도 내가 생활이 안돌아가겠다. 내가 처음 수급 됐을 때는 29만원 이렇게 주더니 지금은 조금 올라가서 40만원이 됐으니깐. 매일 40만원 42, 43만원 많이 줄때는 45만원 난방비 나올 때는 내가 난방을 안틀고 아끼니깐 조금 남고 그렇지요. 그러게 동사무소 난방비가 많이 나올까봐 난방을 못 트는 때가 많아요. (사례 4, 83, 여)

노인들이 금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느끼게 하는 다른 실질적인 이유는 의료비에 지출하기 위함이었다. 일반인들에게 의료비 지출은 간헐적이고 비중이 적은 지출일 수도 있지만, 노인들에게 의료비는 일상적이고 지출 규모가 큰 항목 중 하나이다. 면접 대상 노인들은 모두 앓고 있는 질환이나 병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병원에 다니고 있었다. 의료급여를 받게 될 때에는 일반 병원에서 의료비 부담이 급격히 줄어들지만, 여전히 수술이나 특정 약들은 의료비 지원을 적게 받거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가 많다. 또한 노인들이 많이 다니는 한의원도 의료비 혜택을 많이 받지 못하는 곳 중 하나이다.

마지막으로는 돈이나 조금. (웃음) 미안한 말 같지만 지금 돈보다 조금만 더 보태 줬으면 좋겠어요. 집 사람 때문에 골치가 아파요. 한약이라도 한 번 사 먹여 봤으면 좋겠어요. 밥을 안 먹으니깐 약이라도 한번 줬으면 좋겠고요. 검사도 종합검진이라도 한 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픈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니깐 못해봤어요. 위내시경하고 초음파 한번 해보니깐 간 검사 해봤는데, 이 밑으로 아프고 다리도 아파 그러니깐 머리도 아파하거든요. 돈이 있으면 종합검진을 한번 해 보고 싶어요. 정부에서 보험 혜택이라고 정해놓은 게 있으니깐 그거 가지고는 검사를 못하죠. 그런 거 해봤으면 소원이 없겠어요. 그것뿐이에요. 먹는 거는 반찬 없이도 먹을 수가 있어요. 그것도 지금 우리는 나이가 먹으니깐 조금 몸보신을 해야 하는데, 그거는 꿈에도 생각도 못 하지요. 돈이 있어야 몸보신이다 뭐다 하면 그거는 생각을 안 해요. 병원에 가고 종합검진이라도 받아가지고 거기에 관한 약도 써보고 싶긴 한데. 입원이라도 해서 집사람이 몸이 좀 그러니깐 진정시키고 싶고 그게 소망이죠. 그 외에는 없어요. (사례 8, 78, 남)

2. 주거 지원에 대한 욕구

주거는 노인들을 가장 걱정하게 하는 요소이자, 국가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었다. 노인들은 주거를 둘러싸고 경험하는 욕구들은 크게 주거비 지원, 수리 지원, 공급 지원의 세 가지로 나뉜다. 먼저 많은 노인들이 집 안에 수리할 부분들이 많지만, 혼자서 하지 못하거나 일손이 부족해 방치한 채로 생활하고 있었다. 일반인들이 스스로 쉽게 할 수 있는 전구 같이 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오랫동안 불이 없이 사는 노인들도 있었고, 집에 비가 새지만 고치지 못하여 그대로 둔 채 살아가는 노인도 있었다. 지붕에 고양이가 걸터다니는 소리에 밤잠을 설치는 경우도 있었다. 집 안의 수리들을 도와줄 인력이 없어 노인들은 지속적으로 불편하게 살아가고 있었다.

나는 이거 집이나 안 샀으면 좋겠어요. 말도 못해 청 테이프 씌운 거. (사례 16, 75, 여)

나는 바라는 것은 없어. 천장에 고양이를 까서 왔다 갔다 거려서 잠을 못 자. 새끼를 낳아서 아주 죽겠어. 아유, 힘들어서 막내 사위가 왔다가 고양이가 들락날락 거려서 쥐약을 냈어요. 앞에다가 놓고 뒤에 밭에다가 놓고. 근데 그거 먹고 몇 마리가 죽었나봐. 그래서 우선은 탈해. 오늘 아침에도 (약을) 냈는데 그것도 먹은 놈은 죽고, 안 먹은 놈은 돌아다니고 그래. 저 집이 빈 집이라서 고양이가 왔다갔다 거려서 죽겠어. (사례 7, 77, 여)

집이 지하라 아주 천장이 썩어서 난리고 바닥이 곰팡이가 퍼서 저쪽으로 이사를 가요. 9월 14일 날 가려나 모르겠는데, 누가 깨끗하게 장판이나 깔아줬으면 좋겠는데. 장판은 비에 젖었을 때만 비싸니깐 싼 것을 깔았는데 장판이 안 좋더라고. 구청이나 가서 이야기 해볼까 하는데 내가 못 걸어 다니니깐. 나는 유모차 가지고 다니니깐. (사례 17, 78, 여)

주거 비용 역시 면접대상 노인들이 주거 지원 욕구 중 하나였다. ‘생활비가 아니라 방세가 문제’였다. 노인들 중에는 월세가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전세 대출이자를 일 년동안 80만원을 부담하고 있는 사례도 있었다. 쪽방촌에 사는 노인도 월세를 13만원에서 30만원 정도나 부담하다 보니, 노인들 중에는 생활비보다 방세가 생활을 불편하게 하는 더 큰 제약이라고 느끼는 경우도 있었다. 주거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은 노인들은 이자 부담을 심하게 느끼는 경우도 있었다.

생활비가 문제가 아니고 방세가 문제예요. 방세가 35만원. 거기에 전기세, 수도세, 도시가스 요금. 그리고 방이 지하라 아주 축축해요. 하도 비가 와서 그러니깐 내가 동네 사람이 신문도 주고 옷도 주고 하면 고물상가서 팔아서 용돈으로 쓰는 거지. 방세는 구청에서 20만원 주는데 그것도 뭐 해오라고 하데요. 해오라는 것도 많아. 통장에 나오는 돈은 모자라. 20만원하고 노령연금 나오고 해도 통장에 모자라. (사례 24, 80, 여)

제일 걱정 되는 게 집 같은 거 이런 거 이자 남의 돈으로 사니깐 이게 불안해요. 이나마도 집 주인이 올려달라고 하면 어쩌나. 이게 그나마 용자로 하는 건데. 근데 횡수가 만 3년이 넘었거든요 주인이 좋으니깐 내가 좋다고 있지만. (사례18, 77, 여)

새로운 거처를 마련하는 것을 바라는 노인들도 있었다. 몇몇 노인들은 오래된 집이나 지하방, 쪽방에서 살고 있었고, 거처가 위생적이지 않거나 오래되어 지속적인 수리를 요하는 곳이기도 하였다. 노인들은 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았으며, 더 나은 주거 환경은 이들의 생활의 질을 개선해 줄 수 있는 중요한 욕구 중 하나였다.

바빠도 국가가 조금 주는 거라도 이거라도 감사하게 생각하지 아무 말도 안하고 주는 대로 먹고 살아요. 어디 가서 보채보지 않았고, 집이나 좀 얻어 보려고 몇 번이나 신고해도 안 되고. (사례 4, 83, 여)

난 집이나 조금 방 한 칸이나 제대로 저기한 거 그것이 소원이예요. (사례 12, 69, 여)

주거비가, 여기 방이 관이나 마찬가지로요. 이제 규모에 따라서 틀린데, 내 방은 13만원이고, 종로나 영등포나 서울역이나 이런데 보다는 싸요. 그렇다고 해서 부담 없는 건 아니지. 어쨌든 협소해도 내 마음이 중요한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사니까, 우리는 맨 4층 꼭대기니까 계단도 위험하고, 이번에 복지관에 관장님이 특별히 이야기해서 계단 손잡이 만들고, 그걸 제가 신청을 했어요. (사례 30, 나이미상, 남)

3. 의료 지원 욕구

현재 우리나라에서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들은 일반 병원을 이용할 때 의료비를 상당부분 지원받는다 (표 4-3 참고). 하지만 병원비나 약값을 내는 부담이 매우 줄었음에도, 여전히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의료항목들이 많다. 특히 수술의 경우에는 지원이 거의 되지 않으며, 이로 인해 노인들이 수술해야할 심각한 상태를 금전적 부담의 이유로 방치하거나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싼 약들을 먹어야하는 노인들도 있었다.

글쎄요. 저는 생활이 조금 넉넉해지면 다리수술을 조금 하고 싶어요. 제일 생활비가 넉넉하면 내가 오래 살아야 하기 때문에 수술 좀 하고 싶어. 해서 내 다리를 나아야지. 한 400만원 든다더라고. 두 다리 다 하는데. (사례 19, 70, 여)

정형외과를 갔어요. 가니깐 찢어가지고 보더니 뼈가 놀러가지고 능글능글합니다. 그니깐 수술을 해야겠다고 주사도 안 놓고 침도 안 놓고. 그 원장은 가서 보호자를 데려오세요. 수술을 해야 하니까요. 나보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누구하나 따라 가야 쓰겠다 돈이나 있으면 직원들만 하면 더 돈도 없

고 하면 더 못 쓴다고 하니깐 쓰지도 못해요. 아프니깐 한의원에서 날마다 물리치료 하고 침 맞으면 더 아파요. (사례 18, 78, 여)

다른 것보다 병원비가 많이 들어가요. (사례 27, 102, 남)

의료비 지원뿐만 아니라 병원 통원에도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이 있었다. 움직이기가 힘든 노인들은 병원에 가는 것부터가 쉽지 않았다. 거동이 불편해 유모차를 끌고 다니거나, 병원에 가는 것이 힘들어 직접 침을 놓고 있을 정도였다. 장애인 등급을 받았을 경우에는 국가에서 보조하는 장애인 택시를 이용할 수 있지만 이 서비스 역시 일정한 비용이 든다. 자기 부담으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노인들이 빈곤하기 때문에 택시를 이용할 만한 경제적 여력도 되지 않는다고 느낀다.

내가 침을 쏘아요. 병원 가는 것도 힘들어요. 여기 와서 차를 타야하는데. 여기 이장님도 힘든데. 내 자식도 그러는데 왜 남한테 부탁을 해요. 그러니깐 이야기 할 것도 없어요. (사례16, 75, 여)

4. 가사 지원 욕구

노인들 중에는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들이 쉽게 할 수 있는 가사활동도 노인들에게는 힘에 부칠 때가 많다. 그래서 면접대상자들은 등을 달거나, 빨래, 요리 등을 도와줄 사람을 필요로 하고 있었다. 요양 3급인 사례 27 면접대상자의 경우에는 요양사들이 집을 방문하여 반찬, 청소 등 가사 일을 도와주고 있었지만, 다른 면접대상자들 중에는 이처럼 집을 방문하여 가사를 도와주는 복지 서비스를 받고 있는 면접대상자들이 없었다.

(면사무소나 읍사무소에서) 안 해주는데 어떻게 해. 여기 등도 달아줬음 좋겠고 쌀도 줬으면 좋겠고. (사례 14, 81, 여)

옆집 할머니는 많이 아프니깐 수급자라 와서 빨래도 해주고 밥도 해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수급자가 아니라 그런 것도 없고. (사례 31, 76, 여)

그건 제가 요양등급 3등급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요양사님이 매일와요. 8시 반에 왔다가 12시 반에 가요. 그 양반이 와가지고 시장 봐다가 반찬도 해서 주고 가고 해서 지내죠. (사례 27, 102, 남)

5. 생활용품 지원 욕구

생활용품을 나라에서 지원해주면 좋겠다고 대답한 면접대상자들도 있었다. 사례 18 면접대상자는 사별한 남편의 유공자 연금을 받고 있고, 현재 차상위 계층이다. 현재 공공근로를 통해 월 20만원 정도의 소득을 벌고 있으며, 노령연금과 남편의 연금을 받고 있지만 여전히 생활비가 부족하다. 복지관에서 선풍기도 받고, 겨울에는 이불도 받는 등 가끔 도움은 받고 있지만, 생활용품을 사는 데 하나하나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국가에서 더 지원해주었으면 좋겠다고 대답했다.

나는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어, 조금이라도. 나라에서 나 같은 사람 협조 좀 해줄 수 있는 건데. 한 가지 유공자라는 명예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이 드는데. 그래도 그 맘은 잠깐이고 나보다 조금 더 어려운 사람도 있는데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요. 받을 수 만 있으면 조금만 더 어떻게 머라도 좀. 하나 하나 다 돈이 들어가니깐.

선풍기도 복지관에서 준거예요. 차상위가 돼서 작년여름에 준건가. 겨울이면 이불도 나와요. 그런 거 솔솔히 도움은 받아. 그런데 매달 주는 것도 아니고 금년에는 아무것도 안주고 넘어가네. 도시락 주고 그래서 그런 건지. (사례 18, 77, 여)

6. 복지혜택 지원 욕구

빈곤한 노인들은 국가의 보조금에 의존하는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에 국가의 보조금 지급액수는 이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면접 대상자 중 차상위 계층 노인들은 많은 경우 기초생활급여에 미치지 못하는 생활비를 받거나 벌고 있기도 하였다. 면접대상자 노인들이 차상위 계층으로 선정된 이유는 고정적인 소득이 있는 자녀가 있거나, 전세나 자기 소유의 집이 있어서였다. 하지만 이들은 기초생활수급 노인들보다 생활이 더 낫지 않거나 빈곤한 경우가 많았는데, 자녀가 여유가 있더라도 경제적으로 지원해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또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가처분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들의 생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었다. 이로 인해 차상위 계층 노인이라도 기초생활급여 대상 노인들에 비해 살림살이가 더 낫지 않은 경우가 많았고, 이들 중에는 생활비 지원이 더 많이 되는 기초수급자가 되고 싶어 하는 경우도 있었다.

기초수급 나오면 그거는 이제 좀 생활이 되잖아요. 그니까 그런 거 좀 조금 봐주세요. (사례 20, 79, 여)

기초생계급여 대상에 선정되지 못한 이유는 다양하지만, 면접 대상자들 중에는 자녀나 며느리, 사위의 소득으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현재 기초생활급여 선정 기준에 의하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만 기초생활급여를 수령할 수 있기 때문이다(보건복지부, 2013). 즉 부양의무자가 기준 이상의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부양능력이 있다고 간주하고, 부양비도 지급하고 있다고 간주한다. 이를 '간주부양

비'라고 부르는데, 실제로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시민단체나 학계에서 많은 비판을 받아왔으며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

간주부양비를 지급받지 못하나 기초생활수급자에 선정되지 못한 면접대상자들의 사연은 다양했다. 친자식이 아니지만 호적에 올라와있어서 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하거나(사례 2-b), 연락이 닿지 않아 장기간 줄도 몰랐던 아들과 아들 며느리의 소득으로 기초수급이 끊기고 의료비 지원도 받지 못한다고 대답했다(사례 19). 며느리가 아들과 이혼하고 재혼하여 연락조차 오지 않는데도, 전 며느리 때문에 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한다고 대답한 면접대상자도 있었다(사례 24). 이런 사례들은 부양의무자의 기준이 명시적인 관계만을 고려하고 실질적인 연락의 횟수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이에 대해 불만이 있다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생활비) 5월 달에 신청은 했었어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그것이 왜 안 되니깐 하니깐 내가 낳은 자식이 아니고 우리 딸이 커서 출생신고를 내 앞으로 했어요, 작은 각시가 낳은 애들 4명을. 나는 애들 4명을 무슨 박사 학위 사위를 봤는데 얼굴도 못 봤어요. 왜냐면 나를 보게 하면 엄마가 둘이라고 알게 할 까봐 그걸 감추려고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런데 사위 성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그랬는데 기초수급자 해 놓고 보니깐 떼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은 먹고 월급은 얼마나 타는지, 사위가. 사위 월급이 600에서 700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낳지도 않은 키우지도 않은 애들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해요. 평생에 도움이 안 되는 것은 젊어서 작은 각시를 얻어서 그 많은 자식을 낳을 때까지 그 고생을 하고 살았는데, 늙어서 국가에서 보조도 못 받고 혼자 살아야 한다는 것, 그것이 가장 서글프고 외로워요 지금도. (사례 2-b, 78, 여)

할아버지 장애인 2급인데 장애인 수급도 나오고. 근데 어디 아들이 결혼해서 산다고, 며느리가 돈을 번다고 내가 찢려 버렸어요. 근데 저는 아들이 장

가를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거든요? 아버지 초상 때도 안 오고. 아무 연락이 없으니까 저는, 근데 동사무소는 다 알더라고요.

그래서 구청에 가서 그랬어요. 병원에는 다니게 해 달라. 나는 아들, 며느리도 알지도 못한다. 나는 어떻게 사냐. 병원도 못 다니고 그런데 안 된대요. 써서 내라고 해서 썼는데 며느리 월급이 있어서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며느리 얼굴도 안보고 우리 아들이 군대 나오고 제대하고 나서 싸움하고 나가서는 안 들어와요. (사례 19, 70, 여)

(아들고 이혼한 며느리 소유의) 그 학원이 있어서 못 받는 거죠. 며느리가 전화 한번 안하고 나 여기 사는지도 모를 거야. 전화번호도 바꿨어. 내가 전화 할 까봐. (사례 24, 80, 여)

실제로 연락이 닿더라도 부양비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사례는 더 많았다. 사위가 손자가 차를 살 때 보증을 서 주어서 기초수급이 종결된 사례 17, 자식의 소득으로 인해 기초수급 받지 못하지만, 유공자 남편의 아내인 자신을 나라가 돌보아 주어야한다고 생각하는 사례 14, 아들이 실제로 벌지 않는 소득으로 인해 기초 수급이 종결된 사례 22 면접대상자도 있었다. 기초수급을 받기 위해 사례 5 면접대상자는 아들과 떨어져서 살기도 하였다. 이처럼 실질적으로 가족의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함에도 받고 있다고 부양비를 받고 있다고 간주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에 대해 많은 면접 대상자들이 억울함과 불만을 호소했다.

전에는 기초수급 받았지. 몇 년 받았었는데 사위 놈이 돈이 있다고 딱 띠어 가버렸어. 사위가 아들놈이 차를 사줬으니깐 보증을 서줬지. 보증을 사위 앞으로 해줬더니 사위가 돈이 많다고 그 염병할 것이. 근데 머심아 들이 넷이 돼서 대학교 가지 고등학교 가지. 대뜸 동사무소나 가서 내가 그랬더니깐 사위 놈이 무슨 상관있어서 나한테 그러냐고. (사례 17, 78, 여)

그러면 정부에서 그걸 군대 가서 다쳐서 그런 폭탄 속에서 살아났으니 정부에서 봐줘야 사는 거지. 정부에서는 유가족 그런 거 들추면서. 당대 마누란

데 혼자 고생을 해도 아무것도 아닌 것은 뭐예요. 돈 많고 이런 사람은 자식들은 군대 안보내도 될 것 아니예요, 그렇게 말을 할 것 같으면. 나라에 바쳐가지고 다친 것은 나라에서 돌봐줘야지 자식들이 별어먹고 사는 거에 왜 비교를 해요. 안 그래요? (사례 14, 81, 여)

수급자라도 되면 좋은데. 우리 아들이 지금 회사 다니다가 머를 한다고 나와 가지고는 그게 일이 안되는데 어느 회사로 월급이 책정이 됐데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수급자가 안 된 거예요. 생활비도 하나도 집에도 못 갖다 주고 생활비 안 가져 다 준다고 집에서도 난리를 치고 그러는데, 그것 때문에 수급자가 안 된 거예요. 개 때문에, 딸도 그렇고. (사례 22, 73, 여)

집 팔고 부산에 내려가서 장사하고 살다가 올라와서 남의 집에서도 살다가, 아들 며느리 세상 뜨고 나서는 아들이 병들어서 수술하고, 그리고 나서는 아들은 아들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떨어져 나왔지. 기초 받아서 살려고. 아들이랑 있으면 기초 안 해주니깐. (사례 5, 80, 여)

7. 복지에 대한 고마움

복지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한 면접대상자들도 있었다. 사례 13 면접대상자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일본 정신대에 차출되었고, 그곳에서 프로펠러를 만드는 일 등을 하다 광복 후 우리나라로 돌아왔다. 정신대 위로금과 국민연금 등으로 월 35만원 정도를 국가에서 수령하고 있는데, 방세를 내고 나면 6,7만원 정도로 생활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고맙게 잘해준다’며 고마워했다. 사례 4 면접대상자는 고향은 김천이나 중국 만주에서 살다가 십년 전 한국에 와서 정착하였는데, 국가에서 기초생활급여도 받고, 교회에서 잘해줘서 고마워하였다.

그래도 정부에서 너무너무 잘 해 주니깐 도움도 받고 하니깐.

그렇지 우리가 그걸로 갔으니깐. 아침에는 주먹밥 하나씩, 점심 저녁은 빵 한 조각 주고. 그렇게 살다가 졸업도 못하고 했지. 거기서 그랬게 하다가 비

행기가 뜨면 10리길로 산 속으로 갔다가 비행기가 해지가 되면 오고했다가 8월15일에 해방 되가지고 군산서 10월 달에 학부형들이 우리들 먹을 것 하고 배타고 왔어요. 왔는데 와보니깐 일본사람들을 못 가게 해서 붙들어 매 놔터라고 어린학생들 오면 졸업장 주고 가라. 그래서 10월 달에 와서 졸업장도 받고 일본 놈들 보내고 그랬더라고.

그래서 이날 평생 우리야 머 거시기(정신대) 안가서 괜찮겠거니 했더니 엇 그제께 3,4년 전에 여기 이승만 대통령 형님이 오셨더라고 연설하러. 하고 싶은 말 있음 하라고 해서 했지. 그랬더니 그 양반이 명함을 주시면서 서울 오라고 하더라고 거기서 구청에서 이렇게 해서 저기로 가서 나오라고 해서 돈이 조금 나왔어요. 거기서도(정신대위로금) 10만원 피고 여기서도(국민연금) 8만원 피고 그래서 35만원 나오는데 이거 25만원 집세 내야하고, 공과금내야하고 그러니깐 6,7만원씩 그거 가지고 생활해요. 근데 정부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고맙게 잘 해주잖아요.

대통령이 고맙게 집 없는 사람 또 9만 4천 원씩 나왔는데 17만원으로 올려 준데. 그제 얼마나 고마운지. (사례 13, 85, 여)

아이, 서운하기는 뭐가 서운하게 해요. (사례 15, 89, 여)

(중국은 기초 수급 같은 것이) 없었어요. 없는데 지금 있다고 하더라고. 내가 나오고 나서 생겼다고 그러더라고 내가 나오기 전까지는 아무런 그런 게 없었어요. 아무것도 못 받아 봤어. 근데 여기 오니깐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내가 교회를 20년째 다니는데 너무 고마워서 참 말할 수 없을 만큼 고마워. 이렇게 해주기라도 하니깐, 너무 고마워요. (사례 4, 83, 여성)

제6절 소결

심층면접 결과 빈곤의 원인으로는 크게 저소득 직업을 가졌던 경우, 보증과 사업 실패, 가족의 질환 등으로 인한 빈곤, 배우자의 경제미부양, 경제부양자의 사망으로부터 오는 빈곤, 부족한 노후준비, 가난의 대물림 등

이 있었다.

경제생활 실태를 살펴보면 공적 연금에 대한 의존도의 경우 모든 면접 대상자들은 최저 수준으로 먹고 살수는 있지만 그 외의 경우 여유는 거의 없는 저소득 직업에 종사해왔었다. 직업 안정성과 직장 내 복지가 제공되는 정규직을 가지기 보다는 비공식적 영역에서 대부분 일하여왔고, 공식적인 영역이라도 한 달의 별이만 보장되는 열악한 상황에서 일을 한 경험 이 많이 있었다. 이는 노인이 되어서의 경제적 생활을 준비하지 못하는 하나의 원인이 되었고, 노후를 대비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또한 노인들이 하는 일은 정규적인 일이라기보다 혼자서 하는 부업 성격의 일이며, 일의 종류도 매우 제한적이었다. 노인들은 건강 상의 문제로 고된 노동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저학력인 노인들이 많아 할 수 있는 일들이 한정되어 있었다. 특히 박스 수거는 기술이 없고, 써주는 곳이 없는 노인들이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일 중 하나이기 때문에 몸이 아파도, 주변에서 달가워하지 않아도 이를 지속하고 있는 노인들이 많았다.

공적 연금의 지원이 겹치거나, 중복되는 지원의 경우 둘 중 하나가 삭감되는 경우도 있었다. 예를 들어 두 가지 경로의 복지지원으로 인해 의료비 지원이 겹쳐서 실제로는 한 가지 복지 지원만 받는 것과 비슷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큰 수술 등은 여전히 본인이 부담해야하며, 의료급여 1종으로서 받을 수 있는 혜택 외에 다른 의료 관련 혜택은 받지 못하고 있었다.

배우자 사후 배우자의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 사례의 수는 극히 드물었으며, 신청절차 등을 몰라 혜택을 이번부터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대상자마다 제공되는 혜택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 수입에 대한 의존도의 경우를 살펴보면 생계를 위해 경제활동을 하고 있어 기초수급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수입이 기초수급액 보다

도 적은 경우가 많아 복지 사각지대라고 볼 수 있다. 경제활동을 할 의지가 있지만 못하는 경우는 보조금으로는 본인의 의료비도 감당하기 부족한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로, 손자손녀를 키우고 있는 경우 지출은 더욱 커졌다. 때문에 경제활동을 필요로 하지만, 나이가 많아 일자리를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를 제대로 나오지 않았거나, 젊은 시절 사회생활을 해 본 적이 없어 공공근로나 실당 일자리 이외에 구할 수 있는 일자리가 많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경험 부족은 자신감을 크게 저해하는 요인으로, 노인들은 일을 할 수 없다고 미리 체념하기도 하였다. 수급액이 넉넉하지 않아 추가 예산이 필요한 사람도 일을 하지 못하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아예 일을 할 계획을 포기해 버리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을 할 수 있을 만큼 건강한 노인들에게 일은 생활의 활력이 되기도 하는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지식을 배우는 과정을 통해 사회와 접촉할 수 있고, 정신과 육체적 활동을 촉진해 보다 젊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 가능해지지만 많은 노인들이 일을 하면 수급 지원이 줄어든다는 점 때문에 일 자체를 포기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가족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노인들은 가족에게 경제적 도움을 기대할 수 없을 만큼, 가족 역시 빈곤하였다. 가족에게 경제적 지원을 받는 경우 정기적으로 경제적인 지원을 받는 면접대상자들은 가족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높은 편이었다. 대부분은 자녀들도 경제적 형편이 좋지 못한 상황에서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로 인해 자녀에게 의지하는 것 자체에 대해 미안함을 크게 느끼거나, 삶에 대한 비관하기도 하였다. 가족의 지원에 의존하는 경우라도 국가보조나 국민연금은 노인들의 생활비에서 큰 부분을 차지했다. 국가보조나 국민연금이 가족지원금 규모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

았다. 가족의 경제적 지원이 낮은 경우는 생활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가족의 간헐적인 도움은 보탬이 되지만, 이러한 수입은 언제 생기고 끊길지 모르기 때문에 생계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가족의 경제적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는 자녀들이 부모를 돕고 싶은 마음은 크지만, 워낙에 상황이 여의치 않아 못 돕고 경우가 많았다.

노인의 노후준비를 묻는 질문에는 자녀가 돌보아주기를 기대하는 경우와 손자손녀가 돌보아주기를 기대하는 경우, 형제가 돌보아 주기를 기대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가족이 돌보아주기를 기대하지 않는 경우 자녀가 없는 경우, 자녀가 연락을 자주 하지 않는 경우, 자녀들의 부양부담을 원치않는 경우가 있었으며, 국가보조의 요양원에 갈 것을 기대하는 경우, 많은 면접대상자들의 노후 계획은 요양원이나 양로원이었다. 돌보아줄 사람이 없어서 이러한 시설에 가야할 것 같다고 말한 면접대상자들도 있었고, 노인 개인을 기반으로 복지제도를 구성하는 것과 더불어, 부부 단위의 제도적 배려도 고려해야한다고 주장하는 면접자도 있었다. 특별한 대비책이 없는 대부분의 노인들은 미래를 위한 대비책을 갖고 있지 못했다. 파지를 चु는 등의 일을 통해 약간 돈을 벌고 있지만 생활비에 보태면 남는 돈이 없었다. 보험을 들고 싶어도 나이가 많고, 지병이 있어 가입을 할 수 있는 곳이 없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면접대상자 노인 중 일부분은 미래에 대해 긍정적이고 희망적으로 보기보다는 체념적이거나 부정적으로 보고 있었다.

빈곤해소를 위한 여성노인의 정책욕구를 살펴보면, 기초생활급여를 받더라도 의식주 중 하나인 기본적인 식생활도 제대로 영위하기에 힘든 상황인 노인들이 많았던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금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대답한 노인들이 많았다. 면접 대상 노인들 중 단 한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생활비가 매우 부족하다고 답했다. 주거는 노인들을 가장 걱정하

게 하는 요소이자, 국가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었다. 노인들은 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았으며, 더 나은 주거 환경은 이들의 생활의 질을 개선해 줄 수 있는 중요한 욕구 중 하나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들은 일반 병원을 이용할 때 의료비를 상당부분 지원받는다. 하지만 병원비나 약값을 내는 부담이 매우 줄었음에도, 여전히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의료항목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료비 지원뿐만 아니라 병원 통원에도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이 있었다. 움직이기가 힘든 노인들은 병원에 가는 것부터가 쉽지 않았다. 노인들 중에는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들이 쉽게 할 수 있는 가사활동도 노인들에게는 힘에 부칠 때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가사지원 욕구를 나타냈다. 또한 생활용품을 사는 데 하나하나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국가차원에서의 지원을 바라기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차상위 계층 노인이라도 기초생활급여 대상 노인들에 비해 살림살이가 더 낫지 않은 경우가 많았고, 이들 중에는 생활비 지원이 더 많이 되는 기초수급자가 되고 싶어 하는 경우도 있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에 대해 많은 면접 대상자들이 억울함과 불만을 호소했다.



제6장 여성노인의 빈곤해소를 위한 정책적 과제

제1절 여성노인의 관점에서 연금 개선방향
제2절 현행 공적 사회서비스 제도의 개선방안

6

여성노인의 빈곤해소를 << 위한 정책적 과제

제1절 여성노인의 관점에서 연금 개선방향⁹⁾

1. 연금제도 개선방향

가. 기초연금의 도입방안

한국 사회는 젠더레짐의 측면에서 남성생계부양자 모델로부터 이탈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인 소득자 모델로의 급격한 이동은 관찰되지 않는다. 맞벌이 가구가 홀벌이 가구보다 증가하며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25% 정도의 격차를 보이며 여전히 50%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출산 및 양육의 시기에 경제활동참가율이 폭 낮아지는 M자형 여성생애주기 노동공급 곡선도 여전하다. 경제사회적으로 압축적 발전을 거듭해 온 한국은 이인소득자 모델로 가기 보다는 보편적 소득자-양육자 모델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실질적인 기업문화와 노동현장의 현실에서 일-가정 양립의 실현은 아직 요원해 보이지만, 적어도 국가정책의 아젠다와 정책초점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것에 두어지고 있다. 한국은 국민1인당소득 2만불을 넘어서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요조건인 일정수준의 경제발전을 달성하였고, 탈산업화 및 서비스경제로의 급속한 이동

9) 이 부분은 석재은(2012) “한국의 연금개혁과 젠더레짐의 궤적: 젠더통합 전략을 통한 젠더평등을 향하여” 한국여성학 28(3): 95-144.에서 발췌 인용하였음.

이 관찰되는 등 후기산업사회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후기산업사회의 삶의 방식은 일과 가정의 균형이 강조된다는 점에서 보편적 소득자-양육자 젠더레짐은 한국 사회에 필요한 사회조직원리가 될 전망이다.

보편적인 소득자-양육자 모델은 남녀 관계없이 모든 개인이 소득자이면서 돌봄제공자로서 역할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는 ‘노동시장’에서 남녀 모두 유급노동자로 일하면서 동시에 ‘가정’에서는 남녀가 함께 돌봄을 담당하는 진정한 젠더평등을 이루는 젠더통합 모델이다. 노동시장에서 뿐만 아니라 가정 내에서의 젠더평등이 보장된다. 더욱이 국가의 연금정책은 한 개인이 노동과 돌봄을 어떠한 비중으로 혼합하더라도 연금권 보장이 가능하도록 노동과 돌봄의 기여에 관계없이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연금체제를 갖추고 있다.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국가 연금정책을 통하여 노동-돌봄의 혼합 비중을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는 점에서 인간의 자유를 한층 확대한 전향적 모델이라 할 수 있다. 이인 소득자 모델과 같이 반드시 노동을 해야만 한다고 강조하지 않으며, 성별 분리 모델과 같이 여성과 남성이 성별로 역할을 분리하여 분담하지 않는다. 오히려 한 개인의 생애과정속에서 노동과 돌봄 간 비중의 혼합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다. 생애과정의 어떤 시기에는 전적으로 돌봄만 수행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시기에는 유급노동만을 전적으로 수행할 수도 있으며, 또 다른 시기에는 부분노동과 부분돌봄의 혼합과 같이 노동과 돌봄을 동시에 혼합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개인의 유연한 선택을 가능하게 해준다.

이와 같은 보편적 소득자-양육자 젠더레짐과 가장 잘 부합되는 연금체계의 핵심요소는 연금을 통해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것이다(Bambrick, 2007). 기본소득은 정치공동체에 의해 자산조사나 근로요구 없이 국가의 모든 일원인 개인단위로 지급되는 현금이다. 노령계층에 대한 기초소득

보장을 위한 기초연금도 기본소득 구상의 연장선상에 있다(Van Parlis, 2004). 적절한 사회경제적 보장은 실재적인 자유의 핵심적 기반이다(Standing, 2009). Offe(1997)는 기본소득의 제공 근거는 천부적 시민권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완전고용과 결부되지 않은 경제적 시민권 확립이 필요하다. 사람들은 천성적으로 생존권을 갖고 태어났으므로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소득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생존권은 그가 노동자로서 사회에 유익한 노동을 했기 때문이 아니고, 시민이라는 이유만으로 얻어야 할 권리이다. 이와 같이 불안정한 고용의 시대에 근본적인 사고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복지정책의 지향점이 변화되어야 한다(Offe, 1997)”. 또한 반 팔리스(2004)는 기본소득의 높은 예산을 우려하는 지적에 대해서도 “전통적인 최저소득보장과 기본소득보장의 예산상의 비용은 의미가 매우 다르다. 이전(transfer)은 순지출이 아니며 구매력의 재할당(reallocations of purchasing power)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자산조사의 높은 행정비용을 고려하면, 모두에게 주는 것이 가난한 사람에게만 주는 것보다 더 비싸지 않고 더 저렴하다”고 반박하고 있다(Van Parlis, 2004).

무엇보다 누구나 보편적으로 1인 1연금의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연금정책은 아직 사회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보편적 소득자-양육자 젠더레짐으로의 이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보편적 연금권 보장을 통해 소득자-양육자의 혼합을 자유선택할 수 있는 물질기반의 제공이 사람들의 삶을 조직하는 의사결과 행동방식을 변화시키고, 사회조직을 변화시킬 수 있다. 기본소득 연금정책을 통해 보편적 소득자-양육자 젠더레짐으로의 이동을 촉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노동시장 상황의 측면에서, 한국은 평균 고용율(63%)이 OECD 국가에 비해 낮은 편이며, 자영업 비율(30%)이 매우 높은 경제활동참여행태로

특징된다. 비경제활동인구가 높은 편이며, 특히 여성의 유급노동시장 참여율(50%)이 낮다. 둘째, 한국의 가정내 성별 역할분담은 여전히 여성이 유급노동 여부와 관계없이 주로 돌봄과 가사일의 책임을 맡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통계청, 2011), 출산양육을 기점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중단이 뚜렷한 특징을 보인다. 가사분담 및 자녀돌봄 공동책임 의식은 높아지고 있으나 실행의 측면에서는 여전히 후진적이다(통계청, 2011). 이와 같은 한국의 노동시장-가정의 현실은 보편적 소득자-양육자 젠더레짐과 거리가 먼 것이 사실이다.

연금정책에 있어서도 노동시장 및 가정에서 보편적 소득자-양육자 젠더레짐이 관철되지 않는 현실에서 여성의 연금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보다 전향적인 젠더통합적 전략이 필요하다. 예컨대, 한국의 낮은 고용률 및 높은 자영업 비중의 특징을 고려할 때, 연금권 보장을 위해서는 고용에 밀접히 연계되지 않고도 연금수급권 확보가 가능한 노후소득보장층의 마련이 이미 보편적 소득자-양육자 젠더레짐이 관철되는 사회에서보다 더욱 긴요하다. 또한 한국은 OECD 국가들에 비해 높은 학력 및 군대기간 등으로 인생주기에서 실질적인 근로단계 진입 연령이 매우 높다. 이로 인해 통상적으로 연금가입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으므로 연금급여수준이 낮을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한국의 현실적인 노동시장 여건과 고용가능한 기간을 고려한 상황에서 기본수준 혹은 적정수준의 노후소득보장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연금제도를 재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가장 중요한 연금제도 재설계 포인트는 첫째, 고용여부와 관계없이 보장되는 층의 마련이며, 둘째, 연금급여율의 설정시 선진국보다 짧은 연금가입기간을 고려한 실질적 연금급여율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한편, 한국의 연금정책의 현실로 돌아와서 보면, 한국은 보편적 소득자-양육자 젠더레짐의 물적기반이 될 수 있는 강력한 젠더통합적 전략의 수

단으로서 기본소득의 구상을 실현할 수 있는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이미 도입되어 있다는 점이 큰 강점이다. 즉, 젠더통합적 연금체계의 핵심인 기본연금 보장의 실현이 가능한 제도적 토대를 갖고 있다고 평가된다. 물론 현재 한국은 기초노령연금의 발전경로와 관련한 이점이 광범하게 존재하고, 기초노령연금의 급여수준이 기본소득 보장의 측면에서는 매우 미흡하다는 점은 더 고민이 필요한 지점이다.

현재 기초연금 도입과 관련하여 많은 논란이 존재한다. 보편적인 기초연금의 필요성, 국민연금의 세대간 독립재정제도로의 발전전망, 세대 간 이전의 형평성을 동시에 고려한 기초연금 도입방안의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보편적 기초연금의 전제는 세대 간 이전의 형평성을 고려하기 위해 국민연금에서 세대 간 이전부분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국민연금의 보험료를 대폭 인상하여 국민연금을 세대 간 이전이 배제된 세대 간 재정독립적 제도로 만들기 어렵다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한국 연금제도 발전의 경로의존성¹⁰⁾을 현실적으로 인정하는 전제하에, 모든 노인이 적용받는 제도의 종류와 관계없이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에서 이루어지는 세대 간 이전의 총합 크기를 동일하게 맞추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즉, 서로 다른 제도에서(국민연금, 기초연금) 각각 미래 세대 부담으로 조달되는 ‘세대 간 이전 기능’의 부분을 함께 고려하여 하나의 ‘실질적(기능적) 기초연금’으로 간주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석재은, 2013).

10) 경로의존성은 제도발전에 있어서 과거의 선택에 따라 현시점의 선택이 제한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비록 어떤 국가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제도발전 모형이 있다 하더라도 그 국가가 가지고 있었던 제도적 유산으로 인하여 현시점의 선택이 제약을 받게 되어, 과거의 제도적 유산과 바람직한 제도발전 모형 간에 상당한 질적 차이가 있는 경우 그 국가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제도발전 모형을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의미이다.

나. 국민연금 수급률 제고를 위한 돌봄노동에 대한 보상

급격한 인구고령화 속에서 세대간 형평성 때문에 기초연금만으로는 노후에 안정적 소득 확보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노후의 안정적인 소득보장은 남녀 모두 시민권에 입각한 보편적 기초연금과 함께 소득비례연금이 그 역할을 담당한다. 이 때 젠더의 고유한 차이로 인해 노동시장 참여에 있어 불리함을 갖고 있는 여성친화적 연금정책의 조치는 여전히 중요하다. 따라서 연금개혁 전략에 있어서 젠더차이에 입각하여 무급 돌봄노동을 하는 여성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Myles, 2002). 여성은 소득기간이 짧고 수명은 길어, 자녀양육 등 돌봄에 대한 충분한 보장이거나 제도적 배려가 없다면 소득이나 기여와 급여를 연계시키는 개혁은 여성에게 불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의 연금제도에서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2008년 도입된 출산크레딧은 둘째자녀를 출산한 경우부터 12개월, 셋째자녀부터 1명당 18개월을 더한 개월수를 인정하되, 최대 50개월 한도에서 출산크레딧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적용되고 있다. 또한 출산크레딧의 실질적 적용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노령연금수급권 취득한 때(가입기간 추산산입에 따라 노령연금수급권 취득가능한 경우 포함)에만 이루어진다. 따라서 노령연금수급 최소가입요건 120개월을 충족한 경우이거나, 자녀 두명인 경우는 108개월 이상, 3명은 90개월 이상, 4명은 72개월 이상, 5명 이상은 70개월 이상 가입한 경우에만 혜택 가능하므로 실질적 수급자가 제한적이며, 여성의 수급권 제고(사각지대 해소) 효과가 미미하다.

선진국의 경우, 출산 뿐 아니라 양육에 대한 연금크레딧 인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출산 및 양육크레딧은 각출경력 관계없이 인정하는 경우 대

부분이다. 또한 양육과 근로활동 병행시는 추가 연금소득 인정 혹은 추가 가입기간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다. 급여수준도 선진국의 경우 1자녀당 2~3년 인정이 대부분이다.

현행 출산크레딧은 여성의 무급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통하여 여성의 연금권을 보장하겠다는 목적보다는 출산을 장려하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목적이 더 우선된 법내용이다. 따라서 출산크레딧을 고유한 젠더 차이에 입각한 여성의 출산에 대해 사회적으로 보상하고 출산으로 인해 여성의 연금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출산크레딧 제도가 다음과 같이 개혁되어야 한다. 출산크레딧을 양육크레딧과 합쳐서 제도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연금가입여부 관계없이 출산 및 양육을 한 모든 가족(주로 여성)을 대상으로 하도록 하며, 출산 및 양육크레딧 대상이 되면 가입자로 등록, 자격관리를 하도록 한다. 첫째자녀부터 적용토록 하며, 1자녀당 2년의 연금크레딧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출산 및 양육크레딧의 확대는 전근대적이고 비가시적이며 비공식적으로 가려져있는 가족영역을 근대화하고, 가시적 영역으로 공식화하여, 무급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제도화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단, 돌봄 연금크레딧이 여성을 돌봄노동 담지자로 고착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일과 가정의 양립, 일 또는 가정의 실질적 선택권 보장이 필요하다. 연금크레딧의 확대는 여성의 연금수급권 제고를 통한 여성노후빈곤을 해소에 기여하고, 연금의 세대간 부양의 의미를 고려할 때, 미래세대 아동 출산 및 양육에 대한 사회연대적 부담을 의미하기도 한다.

다음으로, 1997년 도입된 분할연금은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혼인기간에 축적된 연금권에 대해 균분하여 부부 간에 권리를 갖도록 하고 있다. 도입당시 여성이 재혼하는 경우 분할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되

었던 것은 2007년 법개정으로 수정되어 재혼한 경우에도 분할연금 수급권이 인정되고 있다. 분할연금 실질적 수급권은 배우자의 노령연금수급권이 발생했을 때 발생한다. 따라서 배우자가 조기 사망 및 수급기간요건 미충족으로 노령연금수급자격을 획득하지 못하였을 경우 분할연금 수급권은 적용되지 못한다. 연금재정에 중립성을 유지하고자 노령연금수급권의 발생시점에서 분할연금 수급권이 발생하도록 설계한 것은 여성의 독립적 연금수급권 지원에 미흡하다. 선진국에서도 분할연금의 급여분할 시점은 급여수급시점이 아니라 이혼시점 혹은 혼인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분할 관리하고 있다. 혼인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급여를 분리하는 것은 행정낭비가 될 수 있으므로, 분할연금 사유가 발생한 이혼 시점에서 혼인기간 동안의 연금권을 분할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개선책일 수 있을 것이다.

다. 성인지적(gender-sensitive) 공적 연금제도 체계 구축

우리나라의 노후소득 보장체계는 기본적으로 소득활동과 기여금 납부를 전제로 급여가 제공되기 때문에 경제활동 참여 기회가 매우 제한적이고, 전통적인 가족돌봄자(무급 가족종사자) 역할을 해왔던 대부분의 여성노인이 현행 노후소득 보장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에서도 소득원별 소득비중에 있어 여성노인은 근로소득이나 공적 이전소득의 비중이 낮고 사적 이전소득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노인들의 주된 소득원인 사적 이전소득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연금과 달리 간헐적으로 지급되거나 자녀의 경제사정 등에 의해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원시연, 2011) 안정적인 노후 소득원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남성부양자모델 및 남성가구주의 경제활동을 전제로 설계된

현행 사회보험제도의 개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제도에서 여성노동 특성(예: 시간제 혹은 전일제 고용, 고용지속패턴, 임금수준 등)의 반영, 돌봄노동의 가치 인정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라. 1인 1연금 체계 구축

노후 경제상태는 생애주기상 노동경험 등이 축적된 결과이므로 궁극적으로는 여성이 노년기 이전에 경제활동을 통해 소득을 창출하고 개별적 연금수급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공공부조 프로그램이나 유족연금 등 공적 지원체계가 여성노인의 빈곤을 일정수준 완화시키는데는 기여할 수 있지만 이러한 소득원만으로는 노년기 여성노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전히 극복할 수 없다는 점에서(Burkhauser, Duncan, & Hauser, 1994) 노년기 이전 경제활동 참여를 통한 연금체계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 저소득 여성노인 지원체계 내실화

마지막으로, 빈곤 여성노인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연금제도가 가장 중요한 노후 소득보장제도로 자리잡고 있는 서구 국가의 경우에도 취약계층에 대한 국가의 기초보장 역할을 더욱 강화하거나 유지하고 있다는 점(김수완, 2007)을 고려할 때 빈곤 여성노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공적부조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미성숙단계에 있는 국민연금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여성노인의 빈곤 완화, 즉, 일정수준의 탈빈곤 및 소득보장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바(강성호·최옥금, 2010) 관련 정책의 활성화를 통해 여성노인의 최저생활을 보장해주어야 할 것이다.

사. 기초노령연금제도에 대한 실효성 강화

기초노령연금제도는 노인의 경제적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고 평가받고 있다. 생계가 어려운 노인들에게는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더욱 절실하다. 그러나 이 제도는 국민연금과 같은 타 연금제도나 일자리 창출 정책 등의 노인 근로활동과 관련될 때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노인의 현재 삶의 질에 대한 철저한 현황 조사가 필수적이다.

획일화된 제도는 노인의 빈부의 격차를 더욱 커지게 할 수 있으며 노인들의 최소한의 경제적 안전도 보장하지 못할 수도 있다. 따라서 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 일자리 정책들과의 연관성을 검토하여 중복되는 부분은 소득에 따른 차등지급 등을 통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 기초노령연금제도는 노인들의 경제력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보장제도이다. 노인의 삶의 질 확보를 위해서 노인계층에 따른 맞춤형 기초노령연금제도 개선을 통해 실효성을 확보해야 할 시점이다.

제2절 현행 공적 사회서비스 제도의 개선방안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수급권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 제도는 보험료 지불에 있어선 보편주의를 따르지만 지원혜택에 있어선 선별주의를 따르고 있어 이에 대한 불만을 표하는 노인들이 많다. 현재의 기준대

로 수급대상을 중증질환의 노인으로만 제한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를 넘어 노인요양보험제도가 추구하는 보편주의 개념을 벗어난 것이다. 또한 사회보험을 통해 노인요양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제도 도입의 목적이 희석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시설 등의 입소 중증질환노인 뿐만 아니라 재가노인 상대의 서비스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선 중증 노인에게 한정되는 현 시스템에서 급여대상자를 확대하도록 하는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조지현, 2008:318).

또한 수급대상에서 탈락한 노인들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매년 신청자 중 약 30%의 노인이 아무 지원도 받지 못하는 ‘등급 외’로 처리된다. 이런 노인들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등과 연계하거나 다른 비영리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서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2. 여성노인의 경제활동 지원방안

가. 노노(老老)케어 사업을 통한 여성노인의 사회참여 확대

노노케어 사업을 통해 노인복지 서비스와 노인 일자리를 같은 지역에서 동시에 제공하는 것도 노인의 복지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해당 사업의 복지사에 대한 직무 교육과 사후평가를 실시하여, 복지사들이 개별 노인들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러한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을 일회성의 단기 사업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미국의 노인봉사단 사업과 같이 지속적이며 안정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이러한 서비스는 처음에는 노인돌봄 서비스에만 작업이 한정될 수 있지만, 향후에는 지역사회 아동돌봄 등으로 확대될 수 있다. 이러한 돌봄

서비스와 더불어 노인들에게 직업교육과 훈련을 제공하여 타인을 돕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며, 성취감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여성 노인 일자리 정책 홍보 및 지원

현재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인 공동작업장, 취업알선센터, 고령자 인재은행, 노인인력지원기관, 노인 일자리 박람회 등의 노인일자리 창출 정책에 대하여 본 조사결과 많은 노인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지만 특히 여성노인들의 인지도는 더욱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일 자리를 찾아서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노인들은 여러 가지 장애요인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중 하나가 취업정보의 부족이다.

노인 일자리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확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여성노인들에게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매우 중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노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보건소, 경로당, 주민자치센터, 반상회 등에 노인일자리 정책이나 사업에 관련한 책자를 제작하고 배포할 수도 있다. 이를 통해 노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장소에서 일자리관련 정보도 함께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여성노인의 경우 가족 내의 가사와 돌봄을 위해 노동시장에서 이탈하여 경력이 단절되는 경우가 많고, 이렇게 단절된 이후 재취업을 할 때에는 기존의 직업보다 낮은 수준에서 근무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즉 현재의 노인이 교육불평등 등의 기회불평등으로 인해 애초에 질 좋은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이 어려웠던 것에 반해, 향후의 여성노인빈곤은 가사노동 및 돌봄노동 등으로 인한 경제활동 이탈에 기인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향후 이를 방지하기 위해 경력단절을 최소화하고, 여성의 노동시장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한 직업훈련, 직종에 따른 직무훈련 등을 확대하고 내실화 하여 직업훈련이 ‘괜찮은 일자리(decent work)’에 진입하기 위한 실질적인 수단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 여성노인이 일자리를 통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 사업의 확대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여성들이 경력단절을 경험하게 되는 주된 원인이 가족 내 보호활동과 가사노동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돌봄의 사회화도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즉, 여성들은 가족주기와 관련하여 노동경력의 단절, 일-가정 양립과 관련된 갈등상황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자녀양육, 노인돌봄 등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는 사회적인 돌봄시스템 구축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김혜영외, 2005).

3. 여가 및 보건 생활 지원 방안

가. 경로당의 기능강화 여가 및 보건, 복지 서비스 프로그램의 다양화

여성노인은 교육형 여가활동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여가활동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동에 있어서 물리적, 심리적 어려움이 많은 것을 고려할 때, 진입에 심리적 문턱이 낮은 경로당 적극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특히 농촌의 경우 거주 노인 다수가 여성임을 고려할 때, 경로당의 기능강화는 이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따라서 경로당을 문화와 여가활동을 넘어 교육과 보건 복지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 장으로 활용하고, 그에 따른 서비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우선 여가와 문화활동 공간으로도 기능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문화관광부에서 문화복지 사업의 일환으로 소외지역 경로당을 방문하여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지만, 이는 일부 지역에 제한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향후 더 많은 지역으로 이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인근의 복지관과 연계하여 경로당의 여가 프로그램 및 복지 서비스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행복경로당사업 등이 그 예가 될 것이다. 이 서비스를 시작할 때에는 모든 경로당에 대해 일률적으로 이러한 기능을 부여하기보다는 복지서비스에 대한 지리적 접근성이 낮고 경로당 사용 인원이 지속적으로 많은 곳을 중심으로 시범적으로 시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프로그램은 교육, 학습, 건강관리, 운동, 여가 등 다방면으로 구성하고, 해당 이후 경로당의 노인들이 선호하는 1-2개의 프로그램을 지자체 및 인근 복지관이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높일 수도 있을 것이다. 또 자원봉사자들의 지원을 받아 활동을 전개할 수도 있다.

도시 지역 경로당의 경우 노 인간 네트워크를 활성화할 수 있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 지역 연대가 약하기 때문에, 노인들의 경우 소외되고 고립될 수 있다. 따라서 경로당을 중심으로 노 인간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장을 열어준다면, 독거노인 등의 소외 문제에 있어서 일정정도 긍정적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경로당에서의 직업교육이 이뤄진다면 노인 일자리와의 연계도 가능해질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경로당 교육 프로그램에 돌봄 교육이 활성화된다면 그것은 노노케어의 일자리사업과 연계되어 노인 일자리 활성화에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농촌 지역 경로당의 복지기능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농한기 농촌 경로당에서 지역 노인들을 위해 건강관리 및 이동 보건소 서비스를 통해 이들의 건강을 점검해주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농촌지역 노인들 다수는

고령임에도 텃밭 가꾸기에서부터 농사일까지 농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농촌노인들은 보건소 및 의료기관 접근성이 떨어지고 건강관리도 잘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연구들에서 농촌 경로당에 건강관리 기구 및 물리치료 시설 설치에 대한 요구가 높았기에, 이들 시설을 통해 노인들의 보건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더불어 농촌 경로당에서 생활에 필요한 복지 서비스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도, 도시 노인에 비해 정보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는 농촌 노인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나. 노인전문상담센터 확대를 통한 고충 상담

독거노인과 같이 외로움과 소외감을 느끼는 여성노인을 위하여 노인전문 상담전화가 확대되어야 한다. 노인 접근성이 높은 전화상담 서비스를 강화하고 확대하는 것은 보인복지관 확대보다 예산 측면에서 훨씬 효율적이고, 정보 홍보 측면에서 더 용이할 것이다.

또 상담전화를 통해 노인들은 다양한 생활정보를 제공받고 또 긴급 상황에서는 도움을 구할 수 있다. 최근 정부차원에서는 노인관련 복지제도와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고, 노인들은 기초노령연금을 비롯하여 정부의 복지서비스가 절실하게 필요한데도 정작 당사자들이 관련 정보를 몰라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복지서비스 정보 사각지대에 위치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 홍보가 필요하다.

4. 주거 생활 지원 방안

가. 여성노인친화형 주거개조 지원

노인 1인 가구의 대부분이 법률적으로 지정하고 있는 시설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개조를 위한 지원을 받은 노인 가구가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즉, 노인들이 실질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주거 개조비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재원조달을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지원항목에도 개조비용을 포함하거나, 역모기지제도 내에 주택개조지원비를 포함시키는 방법을 강구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노인들이 소득이 적다는 점을 감안하여 노인편의시설을 갖춘 주택개조비용을 융자해주고 매월 분할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노인친화형 주택은 단순한 주택시설만을 개조하는 것이 아니라 수혜대상이 되는 노인가구가 처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야하므로 가칭 ‘지역별 노인주택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지역에 기반을 둔 기관이나 조직이 의료·보험·보건·복지·건축 등의 전문가 혹은 관련 자원들과의 네트워킹을 통하여 주택개조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조사대상노인의 91.4%가 고령자를 위한 주거비 보조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주거개조를 위한 지원비는 대부분의 노인들이 그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는 부분이다. 고령자를 위한 주거비 보조, 고령자를 위한 영구 임대주택 제공, 장기 전세주택, 주택담보모기지론 중에서 노인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고령자를 위한 주거비 보조였다. 남성에 비해 여성이 그리고 연령이 높아지거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대도시보다는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일수록 주거비 보조를 원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그러나 현재 주거개조 지원의 경우 자가주택자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이 필요한 대다수의 경우 혜택에서 밀려나 있는 상황이다. 시설 등의 입소 역시 이제까지의 생활환경을 버려야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주저되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노인들을 위해 노인공동가정을 지역별로 활성화해서 주거지원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에게까지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

나. 저소득층 노인가구에 대한 주거비 지원

주거빈곤상태에 있는 저소득층 노인가구에 대한 실질적인 주거비 보조가 이루어지기 위해 (1) 기초생활수급대상인 노인가구가 임대료를 체납하였을 경우 입주자가 지불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임대료를 일정부분 보조해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며, (2) 일정소득 이하의 노인 단독가구에 일정 부분의 월세를 국고에서 보조해주는 방법을 강구해볼 수 있다. (3) 마지막으로 일정한 소득수준 이하의 고령자로 보증인이 없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임대료 지불을 보증해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는 주택 소유주가 갖는 불안감을 줄여주고, 주택 임차인에게는 안정된 주거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

- 강병창·박병현(2010). 중·고령 여성가구주의 연령특성별 빈곤 및 저소득에 미치는 영향연구.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24, pp.1~29.
- 강성호·최옥금(2010). 기초노령연금의 탈빈곤 효과 및 계층별 소득보장 효과 분석. 한국사회정책. 17(2), pp.43~71.
- 강현정(2011). 노년기 사회적 배제의 실태 및 예측요인.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1(9), pp.323~334.
- 국민연금공단(2013). 2012년 국민연금 통계연보.
- 국민연금공단(2013). 국민연금 공표통계.
- 김경아(2008). 국내 노년층의 빈곤실태와 공적연금의 빈곤완화 효과에 관한 실증연구. 산업경제연구. 21(4), pp.1503~1523.
- 김교성(2002). 소득이전의 빈곤완화 및 빈곤이행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48, pp.113~149.
- 김문길 외(2012). 빈곤통계연보. 보건사회연구원.
- 김미혜(1998). 한국여성노인의 빈곤현황 및 대책에 관한 소고. 정진영교수퇴임기념논총 한국 사회사업의 쟁점과 과제. 서울: 서울여자대학교 사회사업학과.
- 김성숙(2012). 여성가구주 가계유형별 빈곤가구 특성 연구. 젠더와 문화. 5(1), pp.71~103.
- 김수영·이강훈(2009). 이전소득의 독거노인가구 빈곤경감 효과 비교. 한국노년학. 29(4), pp.1559~1575.
- 김수완(2007). 고령화 시대의 노후소득보장체계 재편 전략과 한국의 선택-국가, 시장, 가족의 축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35(단일호), pp.441~467.
- 김수완(2010). 복지국가의 여성가구주 노인 빈곤에 관한 비교연구. 사회보장연구. 26(2), pp.285~316.

- 김수정(2008). 복지국가적 관점에서 본 여성가구주의 빈곤. 보건사회연구 28(2), pp.33~52.
- 김영란(2012). 고령화 사회에서 여성빈곤화 대책: 여성의 사회적 시간표 변화와 빈곤. 젠더리뷰. pp.27~36.
- 김진욱(2004). 한국 소득이전 제도의 소득불평등 및 빈곤 감소 효과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20, pp.171~195.
- 김희경·이현주·박순미(2010). 여성독거노인의 삶의 질 영향요인. 한국노년학.
- 김희삼(2008). 사적소득이전과 노후소득보장. 한국개발연구. 30(1): pp.74~130.
- 김희삼(2011). 기초노령연금의 노인빈곤 감소효과. 연금포럼. 43, pp.10~18.
- 남정림(1992). 국민연금제도와 여성의 노후 빈곤. 여성문제연구. 20(단일호), pp.61~81.
- 모지환·함철호(2009). 노인빈곤 영향요인에 관한 다층분석. 사회연구. 18(2), pp.175~194.
- 박미정(2010). 국민기초생활수급 여성독거노인의 일상생활 연구. 보건사회연구. 30(1), pp.62~91.
- 배성우·손지아·박순미(2008). 빈곤노인가구의 특성과 빈곤탈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노인복지연구. 42, pp.291~318.
- 배성우·손지아·박순미(2008). 빈곤노인가구의 특성과 빈곤탈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노인복지연구. 42(단일호), pp.291~317.
- 보건복지부·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2011).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발전방안.
-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2011). 독거노인 지원서비스 평가모형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 보건복지부(2012). 독거노인 종합지원대책.
- 보건복지부(2013). 2012년 기초노령연금.
- 보건복지부(2013). 201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 보건복지부(2013). 2013년 의료급여사업안내.
- 보험연구원(2012). 2012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보험연구원 조사보고서.
- 석상훈(2010). 기초노령연금의 노인빈곤 감소효과 분석. 노인복지연구. 50, pp.335~352.

- 석상훈(2010). 인구구조의 고령화와 소비격차. 한국노년학. 30(4), pp.1225~1237.
- 석상훈(2012). 노인빈곤의 실태와 결정요인 분석. 재정학연구. 5(3), pp.99~124.
- 석재은·김용하·김태완(2003). 여성의 빈곤실태 분석과 탈빈곤 정책과제 개발.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석재은(2010). 이중차이모델에 의한 공적연금제도의 영향 분석. 사회보장연구. 26(3), pp.73~98.
- 석재은(2010). 공적연금 및 기초노령연금의 빈곤감소 효과 및 효율성: 서울시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37(3), pp.193~214.
- 석재은(2012). 한국의 연금개혁과 젠더레짐의 궤적: 젠더통합 전략을 통한 젠더 평등을 향하여. 한국여성학. 28(3), pp.95~144.
- 석재은(2013). 한국 공적연금의 세대 간 이전의 공평성과 연금개혁 방안: 기초연금 개혁안을 중심으로. 사회정책연합 학술대회 발표자료집. 2013. 10.11.
- 석재은·임정기(2007). 여성노인과 남성노인의 소득수준 격차 및 소득원 차이와 결정요인. 한국노년학. 27(1), pp.1~22.
- 송미영(2008). 한국 여성노인의 빈곤: 성인지적 사회적 배제 관점에서. 한국노년학연구. 17, pp.49~72.
- 안기덕(2012). 국민기초생활수급 여성독거노인의 생애사 연구: 사회적 배제와 행위주체성을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 여유진 외(2012). 현세대 노인의 빈곤실태 및 소득보장방안 연구. 보건사회연구원.
- 여유진·김미곤·김태완·양시현·최현수(2005). 빈곤과 불평등의 동향 및 요인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여유진·김미곤·권문일·최옥금·최준영(2012). 현세대 노인의 빈곤 실태 및 소득보장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원시연(2011). 여성 노인의 빈곤과 정책과제. 입법정책. 5(2), pp.7~31.
- 윤홍식·김혜영·이은주(2005). 절대 및 차상위 빈곤선을 통해본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지위 결정에 관한 연구: 저소득 여성가구주 가구를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21(3), pp.263~293.

- 이미진, 이용우(2008). 사별과 여성노인의 경제적 상태에 대한 종단적 연구. 사회보장연구. 24(3), pp.117~143.
- 이소정(2009). 노인가구의 소비불평등 분석. 사회복지연구. 40(1), 235~260.
- 이현주, 안기덕(2013). 쪽방에 거주하는 여성 독거노인의 삶에 관한 연구. 보건사회연구. 33(2), pp.33~62.
- 장미혜 외(2012). 여아와 여성이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방안(Ⅳ): 여성노인의 안전실태와 정책적 대응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정경희(2011). 독거노인의 생활실태 및 정책과제. 보건복지 issue&focus, 72호.
- 정경희 외(2005). 현 노령층의 소득보장 강화방안 마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경희 외(2012). 2011년 노인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
- 정경희(1997). 여성노인의 삶의 질 현황과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통권 13, pp.45~5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경희·오영화·석재은·도세록·김찬우·이윤경·김희경(2005). 2004년도 전국 노인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조병은(1996). 한국여성노인문제에 대한 이론적 고찰. 여성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조지현(2008).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현재와 미래. 경영법률. 18(4), pp.293~325.
- 지은정(2011). 선진자본주의국가 공적연금의 노인 빈곤완화 효과: 이중차분접근. 사회복지연구. 42(4), pp.263~293.
- 최옥금(2007). 노인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패널자료를 활용한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59(1), pp.5~25.
- 최인희, 김영란, 염지혜(2012). 100세 시대 대비 여성노인의 가족돌봄과 지원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최현수(2006). 노인과 빈곤 I. 한구도시개발연구소 편. 한국사회의 신빈곤. 한울 아카데미.
- 최현수·류연규(2003). 연구논문: 우리나라의 노인빈곤 동향 및 빈곤구성에 대한 연구. 한국노년학. 23(3), pp.143~160.
- 최희경(2005). 빈곤 여성 노인의 생애와 빈곤 형성 분석. 노인복지연구. 27, pp.147~174.

- 홍경준(2002). 공적 이전과 사적 이전의 빈곤 감소 효과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50. pp.61~85.
- 홍백의(2005). 우리나라 노인 빈곤의 원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7(4), pp.275~290.
- Brady, D. (2004). Reconsidering the Divergence Between Elderly, Child, and Overall Poverty. *Research on Aging*. 26(5), pp.487~510.
- Burkhauser, R. V and Duncan, G. J and Hauser, R. (1994). Sharing prosperity across the age distribution: A comparison of the United States and Germany in the 1980s. *The Gerontologist*. 34(2), pp.150~160.
- Hoden, K C and H. D. Kuo. (1996). Complex Marital Histories and Economic Well-Being. The Continuing Legacy of Divorce and Widowhood as the HRS Cohort Approaches Retirement. *The Gerontologist*. 36, pp.383~401.
- Khandker, S. R and Koolwal G. B and Samad, H. A. (2010). *Handbook on impact evaluation: Qualitative Methods and Practices*. The World Bank. Washington, D, C.
- Knight. Tess A. Ricciardelli. Lina. (2003). Successful Aging: Perceptions of adults aged between 70 and 101 years.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56(3), pp.223~245.
- Myles, J. and Quadagno, J. (2002). Political theories of the welfare state. *Social service review*. 76(1), pp.34~57.
- Offe, C. (1997). *Varieties of transition: the East European and East German experience*. MIT Press.
- Pearce, D. (1978). *The Feminization of Poverty: Women. Work*.

- Sainsbury, D. (1993). Dual welfare and sex segregation of access to social benefits: Income maintenance policies in the UK, the US, and Netherlands and Sweden. *Journal of Social Policy*. 22(1), pp.69~98.
- Smeeding, T. M. and Sandstrom, S. (2004). *Poverty and income maintenance in old age: A cross-national view of low income older women*. Center for Retirement Research.
- Warehrer, K. and S. Crystal. (1995). The impact of coresidence on econmic well-being of elderly Widows. *Journal of Gerontology; Social Sciences*. 50(4), pp.250~258.

부 록 <<

부록에서는 2011년 노인실태조사의 경제상태 변수를 중심으로 여성노인의 경제상황을 분석한 결과를 제시한다.

1. 노인실태조사 분석개요

노인실태조사는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정책을 개발하고 향후 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정책개발에 필요한 자료생산을 위해 3년 마다 실시되고 있다. 노인실태조사에는 노인의 일반적 특성, 노인의 소득 및 직업실태, 건강상태 및 사회활동, 노인의 가족 및 사회적 관계 관계 등에 관한 포괄적인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2011년 조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만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패널조사¹¹⁾가 실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2011년 노인실태조사의 경제상태 변수를 중심으로 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에 포함된 변수는 노인의 경제상황 중 주관적 생활 수준, 생활비 부담자, 소득원별 보유, 경제활동을 중심으로 투입하였고, 경제적 상황 및 성별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분석, χ^2 검증,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여성노인 내부 집단별 차이는 교육 수준, 배우자 유무, 최장기간 종사한 일의 종사상 지위, 가구연소득 5분위에 따라 경제상황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고, 집단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χ^2 검증,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분석에는 횡단면 가중치를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11) 2004년(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년(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에는 횡단연구조사로 시행되었다.

〈부표 1〉 노인실태조사 측정변인

구분	변수명	변수 설명
경제상태	주관적 생활수준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자신의 생활수준
	생활비 부담자	주된 생활비 부담자
	본인 근로소득 수입유무 및 소득액	작년(2010년) 수입원: 본인 근로소득
	본인 사업소득 수입유무 및 소득액	작년(2010년) 수입원: 본인 사업소득
	본인 재산소득 수입유무 및 소득액	작년(2010년) 수입원: 본인 재산소득
	본인 사적 이전소득 수입유무 및 소득액	작년(2010년) 수입원: 본인 사적 이전소득
	본인 공적연금 수입유무 및 소득액	작년(2010년) 수입원: 본인 공적연금 수입
	본인 개인연금 수입유무 및 소득액	작년(2010년) 수입원: 본인 개인연금 수입
	국민기초생활자 여부	국민기초생활자 여부
경제활동	현재 취업여부	현재 수입이 되는 일 종사여부
	최장기 직업 종사상 지위	최장기 종사 직업의 종사상 지위

2. 주요 분석결과

가. 노인의 경제상황에 대한 성별차이

먼저 노인의 경제상황에 대한 성별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구 소득의 소득원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남성노인의 소득이 여성노인이 비해 많고, 소득구성의 경우 여성노인이 남성노인에 비해 사적이전 소득의 비율이 높은 것이 특징적이다.

〈부표 2〉 성별 가구소득의 소득원별 유무

(단위: %, 명)

특성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 소득	사적이전 소득	공적이전 소득	기타소득	(명)
전체	39.0	30.4	36.5	96.1	87.4	18.1	(10,674)
남자	41.0	34.1	42.3	95.9	86.7	20.3	(4,606)
여자	37.4	27.5	32.1	96.2	88.0	16.4	(6,069)

자료: 2011 노인실태조사

〈부표 3〉 성별 가구 총소득 및 소득항목별 금액 및 구성 비율

(단위: 만원, %)

특성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 소득	사적이전 소득	공적이전 소득	기타소득	총년수입
전체 ¹⁾	774.3	390.2	215.9	339.6	409.9	31.8	2,161.8
남자	792.9	412.0	283.8	335.7	483.1	34.4	2,341.9
여자	760.2	373.7	164.5	342.5	354.4	29.9	2,025.2

〈구성비〉

전체	23.5	14.4	8.7	26.5	25.2	1.7	100.0
남자	23.9	16.1	10.3	22.8	25.2	1.8	100.0
여자	23.3	13.1	7.4	29.4	25.2	1.6	100.0

주: 1) 전체응답자(대리응답자 포함) 10,674을 대상으로 함.

자료: 정경희 외(2011), p.241~242.

생활비 주부담자의 경우에는 성별차이가 보다 명확히 드러나는데, 남성노인의 경우 ‘본인 스스로’가 생활비 주부담자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여성노인의 경우 ‘(손)자녀 및 그 배우자’라는 응답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부표 4〉 성별 생활비 주부담자

(단위: %, 명)

특성	본인 스스로	배우자	(손)자녀 및 그 배우자	정부 및 사회단체	기타 ²⁾	계(명)
전체 ¹⁾	34.7	17.5	39.5	7.7	0.6	100.0(10,674)
남자	57.6	8.2	27.5	6.2	0.5	100.0(4,605)
여자	17.4	24.6	48.6	8.8	0.6	100.0(6,070)

주: 1) 전체응답자(대리응답자 포함) 10,674을 대상으로 함.

2) 전체응답자 10,674 중 무응답 10명을 제외함.

자료: 정경희 외(2011), p.243.

공적 이전 소득에서도 성별 차이가 나타나는데, 여성노인의 경우 사회 보험인 ‘공적연금’이 전체 소득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남성에 비해 크게 낮은 반면,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나 기초노령연금 등 무기여 방식에 의한 급여는 남성에 비해 수급 비율이 높다.

〈부표 5〉 성별 노인본인소득의 소득원별 소유율

(단위: %, 명)

특성	근로 소득	사업 소득	재산 소득	사적 이전 소득	공적이전 소득				기타 수입	기타 소득	(명)
					공적 연금	기타 급여	기초 노령 연금	기초 보장			
전체 ¹⁾	13.6	16.8	27.5	95.3	25.3	8.9	63.9	6.1	0.7	10.7	(10,674)
남자	17.5	29.0	37.9	94.8	41.9	14.6	56.5	4.1	1.0	17.7	(4,604)
여자	10.6	7.6	19.7	95.7	12.7	4.5	69.5	7.6	0.6	5.5	(6,069)

주: 1) 전체응답자(대리응답자 포함) 10,674을 대상으로 함.

자료: 정경희 외(2011), p.247.

〈부표 6〉 성별 연간 총수입, 소득항목별 구성 금액 및 비율

(단위: 만원, %)

특성	근로 소득	사업 소득	재산 소득	사적 이전 소득	공적 이전 소득	기타 수입	기타소득	총수입
전체 ¹⁾	86.5	154.0	131.4	207.4	252.9	3.7	13.6	849.6
남자	150.6	299.2	232.1	168.6	390.4	6.0	24.1	1271.1
여자	37.9	43.8	55.0	236.9	148.5	2.0	5.7	529.9
〈구성비〉								
전체 ¹⁾	7.4	9.5	9.0	39.8	32.5	0.3	1.4	100.0
남자	10.3	17.0	12.7	23.7	33.9	0.4	2.0	100.0
여자	5.2	3.8	6.3	52.1	31.5	0.2	0.9	100.0

주: 1) 전체응답자(대리응답자 포함) 10,674을 대상으로 함.

2) 전체응답자 10,674 중 무응답 10명을 제외함.

자료: 정경희 외(2011), p.249~250.

〈부표 7〉 성별 기초생활보호대상 여부

(단위: %, 명)

특성	기초생활보호대상 ¹⁾			계(명)
	국민기초생활보호대 상자	의료급여만	그 외	
전체	6.2	1.0	92.9	100.0(10,674)
남자	4.3	0.8	94.9	100.0(4,605)
여자	7.6	1.1	91.3	100.0(6,069)

주: 1) 전체응답자(대리응답자 포함) 10,674명 중 무응답 110명을 제외한 10,564명을 대상으로 함.
자료: 2011 노인실태조사

2. 여성노인의 내부 집단별 차이

다음에는 여성노인의 내부 집단별 차이에 대해 살펴본다. 생활비 부담 주체에 대해 살펴본 결과,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배우자’ 또는 ‘본인 스스로’가 생활비를 부담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난 반면, 교육수준이 낮을 경우 (손)자녀 및 그 배우자로부터 생활비를 받는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유배우 여성노인에 비해 무배우 여성노인이 ‘(손)자녀 및 그 배우자’ 또는 ‘본인 스스로’ 생활비를 부담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조사되었다. 최장기간 종사한 일의 종사상 지위에 따라서는 무급가족종사자는 ‘(손)자녀 및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가 주된 생활비의 부담자라는 응답이 높게 조사되었다. 한편, 가구연소득 5분위별로 집단을 나누어 분석한 결과, 소득수준이 매우 낮거나(소득 1분위)와 매우 높은 경우(5분위) ‘(손)자녀 및 그 배우자’가 주된 생활비 부담자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나, 1분위의 경우 다음이 ‘기타’와 ‘본인 스스로’인 반면 5분위는 ‘배우자’로 나타났다.

〈부표 8〉 여성노인 집단별 생활비 부담자

(단위: %, 명)

구분	본인 스스로	배우자	(손)자녀 및 그 배우자	기타	합계(n)	$\chi^2(df)$
교육수준						
초졸 이하	17.0	21.8	51.4	9.7	100(5041)	156.48(6)***
중졸	16.7	36.9	38.6	7.8	100(510)	
고졸 이상	21.8	39.7	30.8	7.7	100(519)	
전체	17.4	24.6	48.6	9.4	100(6070)	
배우자 유무						
유배우	12.6	49.0	33.2	5.1	100(3026)	1944.01(3)***
무배우	22.2	0.4	63.9	13.6	100(3044)	
전체	17.4	24.6	48.6	9.4	100(6070)	
종사상 지위						
상용근로자	20.6	23.1	43.5	12.7	100(519)	569.98(9)***
자영업 및 고용주	30.2	9.5	50.1	10.1	100(1410)	
무급가족 종사자	10.3	36.6	47.7	5.4	100(1999)	
기타	19.7	15.1	49.1	16.0	100(1104)	
전체	19.0	22.9	48.3	9.8	100(5032)	
가구연소득 5분위						
1분위	20.2	7.1	52.3	20.4	100(1519)	888.93(12)***
2분위	23.2	23.6	42.1	11.1	100(1213)	
3분위	19.3	37.6	36.5	6.5	100(1060)	
4분위	15.5	35.3	46.6	2.6	100(1098)	
5분위	7.2	27.9	63.9	1.0	100(1110)	
전체	17.4	24.6	48.6	9.4	100(6072)	

주: *p<.05, **p<.01, ***p<.001

자료: 2011 노인실태조사

공적 연금 수입유무에서도 여성 내부 집단별 차이가 나타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최장기간 종사한 일의 지위가 상용근로자인 경우, 가구연소득이 높을수록 공적 연금 수입이 있다는 응답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부표 9〉 여성노인 집단별 본인 공적 연금 수입유무

(단위: %, 명)

구분	있음	없음	합계(n)	$\chi^2(df)$
교육수준				
초졸 이하	12.2	87.8	100(5040)	10.70(2)**
중졸	13.1	86.9	100(510)	
고졸 이상	17.2	82.8	100(518)	
전체	12.7	87.3	100(6068)	
배우자 유무				
유배우	8.3	91.7	100(3026)	107.39(1)***
무배우	17.1	82.9	100(3043)	
전체	12.7	87.3	100(6069)	
종사상 지위				
상용근로자	27.4	72.6	100(519)	120.02(3)***
자영업 및 고용주	16.0	84.0	100(1410)	
무급가족종사자	9.9	90.1	100(1999)	
기타	11.1	88.9	100(1104)	
전체	13.6	86.4	100(5032)	
가구연소득 5분위				
1분위	10.6	89.4	100(1590)	14.96(4)***
2분위	13.4	86.6	100(1213)	
3분위	11.5	88.5	100(1059)	
4분위	13.9	86.1	100(1097)	
5분위	15.0	85.0	100(1110)	
전체	12.7	87.3	100(6069)	

주: * $p < .05$, ** $p < .01$, *** $p < .001$
 자료: 2011 노인실태조사

공공부조의 경우, 교육수준이 낮은 여성노인이 높은 여성노인에 비해, 무배우 여성노인이 유배우 여성노인에 비해, 가구연소득이 낮을수록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입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부표 10〉 여성노인 집단별 본인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입유무

(단위: %, 명)

구분	있음	없음	합계(n)	$\chi^2(df)$
교육수준				
초졸 이하	8.1	91.9	100(5040)	10.41(2)**
중졸	6.3	93.7	100(510)	
고졸 이상	4.4	95.6	100(519)	
전체	7.6	92.4	100(6069)	
배우자 유무				
유배우	3.4	96.6	100(3026)	153.68(1)***
무배우	11.9	88.1	100(3044)	
전체	7.6	92.4	100(6070)	
종사상 지위				
상용근로자	9.6	90.4	100(519)	116.10(3)***
자영업 및 고용주	7.7	92.3	100(1410)	
무급가족종사자	4.0	96.0	100(1999)	
기타	14.8	85.2	100(1103)	
전체	8.0	92.0	100(5031)	
가구연소득 5분위				
1분위	18.0	82.0	100(1590)	405.44(4)***
2분위	9.5	90.5	100(1212)	
3분위	3.4	96.6	100(1059)	
4분위	1.5	98.5	100(1096)	
5분위	0.9	99.1	100(1111)	
전체	7.6	92.4	100(6068)	

주: * $p < .05$, ** $p < .01$, *** $p < .001$

자료: 2011 노인실태조사

부동산 자산 및 금융 자산 역시, 여성노인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부동산 자산 및 금융자산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부표 11〉 여성노인 집단별 부동산자산 및 금융자산 유무

(단위: %, 명)

구분	부동산자산			금융자산		
	있음	합계(n)	$\chi^2(df)$	있음	합계(n)	$\chi^2(df)$
교육수준						
초졸 이하	39.7	100(5040)	18.24 (2)***	72.1	100(5040)	11.03 (2)**
중졸	34.3	100(510)		75.3	100(510)	
고졸 이상	47.2	100(519)		78.4	100(519)	
전체	39.9	100(6069)		72.9	100(6069)	
배우자 유무						
유배우	20.2	100(3026)	980.49 (1)***	72.3	100(3026)	1.23(1)
무배우	59.6	100(3044)		73.6	100(3042)	
전체	39.9	100(6070)		72.9	100(6068)	
종사상 지위						
상용근로자	48.8	100(520)	230.62 (3)***	72.4	100(519)	19.84 (3)***
자영업/고용주	53.1	100(1410)		74.3	100(1411)	
무급가족종사자	28.7	100(2000)		75.8	100(1999)	
기타	44.6	100(1104)		68.6	100(1103)	
전체	41.1	100(5034)		73.5	100(5032)	
가구연소득 5분위						
1분위	56.6	100(1591)	287.30 (4)***	70.4	100(1591)	10.59 (4)*
2분위	40.4	100(1212)		75.3	100(1213)	
3분위	34.8	100(1059)		72.0	100(1059)	
4분위	31.3	100(1097)		73.2	100(1097)	
5분위	28.9	100(1111)		74.6	100(1111)	
전체	39.9	100(6070)		72.9	100(6071)	

주: * $p < .05$, ** $p < .01$, *** $p < .001$

자료: 2011 노인실태조사

이를 소득액으로 살펴보면, 교육수준이 높은 여성노인일수록, 최장기간 종사한 일의 종사상 지위가 상용근로자일수록 본인의 재산소득액이 높게 나타났다.

〈부표 12〉 여성노인 본인 소득액(세후):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단위: 만원)

구분	본인 근로소득 소득액	F(df)	본인 사업소득 소득액	F(df)	본인 재산소득 소득액	F(df)
교육수준						
초졸 이하	38.54	0.39 (2)	40.61	5.72 (2)**	40.18	86.95 (2)***
중졸	32.58		38.73		77.53	
고졸 이상	37.03		79.49		177.81	
전체	37.91		43.78		54.96	
종사상 지위						
상용근로자	53.95	64.38 (3)***	12.76	96.88 (3)***	93.08	15.23 (3)***
자영업 및 고용주	25.28		155.67		67.90	
무급가족종사자	26.37		16.66		34.28	
기타	100.72		4.95		37.03	
전체	45.22		52.64		50.35	
가구연소득 5분위						
1분위	23.65	18.24 (4)***	17.20	7.87 (4)***	17.97	33.77 (4)***
2분위	41.14		40.66		41.78	
3분위	67.51		49.58		44.18	
4분위	42.01		68.52		70.36	
5분위	22.52		55.26		117.68	
전체	37.91		43.78		54.96	

주: *p<.05, **p<.01, ***p<.001
자료: 2011 노인실태조사

교육수준이 낮은 여성노인일수록 본인의 공적 연금소득액이 낮게 나타난 반면, 본인의 기타 공적급여 소득액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표 13〉 여성노인 본인 소득액(세후): 사적 이전소득, 공적연금, 기타 공적급여

(단위: 만원)

구분	본인 사적 이전소득 소득액	F(df)	본인 공적연금 소득액	F(df)	본인 기타 공적급여 소득액	F(df)
교육수준						
초졸 이하	224.22	41.89 (2)***	31.61	81.47 (2)***	13.66	2.10(2)
중졸	260.63		45.01		5.76	
고졸 이상	336.77		169.98		6.33	
전체	236.90		44.56		12.37	
종사상 지위						
상용근로자	248.33	7.28 (3)***	206.77	104.66 (3)***	9.98	0.11(3)
자영업 및 고용주	256.86		31.59		12.56	
무급가족종사자	221.53		16.57		11.95	
기타	213.16		27.16		13.08	
전체	232.36		42.73		12.16	
가구연소득 5분위						
1분위	228.48	18.71 (4)***	16.19	20.61 (4)***	5.88	4.29 (4)**
2분위	261.50		27.35		8.45	
3분위	278.91		43.30		20.84	
4분위	232.70		54.51		11.89	
5분위	186.08		95.37		18.35	
전체	236.90		44.56		12.37	

주: *p<.05, **p<.01, ***p<.001

자료: 2011 노인실태조사

마지막으로, 여성노인의 교육수준, 가구연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기초노령연금 소득액과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액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표 14〉 여성노인 본인 소득액: 기초노령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개인연금

(단위: 만원)

구분	본인 기초노령연금 소득액	F(df)	본인 국민기초생활 보장급여 소득액	F(df)	본인 개인 연금 소득액	F(df)
교육수준						
초졸 이하	73.69	243.30 (2)***	24.86	4.32 (2)*	0.34	47.57 (2)***
중졸	46.95		21.21		0.18	
고졸 이상	33.78		13.13		9.95	
전체	68.03		23.55		1.15	
종사상 지위						
상용근로자	60.46	16.03 (3)***	33.24	33.44 (3)***	0.95	3.34 (3)*
자영업 및 고용주	72.78		24.21		1.85	
무급가족종사자	68.87		11.47		0.17	
기타	76.31		44.06		2.80	
전체	70.73		24.43		1.30	
가구연소득 5분위						
1분위	91.85	199.52 (4)***	54.17	90.49 (4)***	0.08	2.55 (4)*
2분위	73.53		32.03		0.94	
3분위	56.95		10.45		1.58	
4분위	54.45		4.04		0.94	
5분위	51.89		2.20		2.69	
전체	68.03		23.55		1.15	

주: *p<.05, **p<.01, ***p<.001

자료: 2011 노인실태조사

간행물회원제 안내

▶ 회원에 대한 특전

-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판매용 보고서는 물론 「보건복지포럼」, 「보건사회연구」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며 일반 서점에서 구입할 수 없는 비매용 간행물은 실비로 제공합니다.
- 가입기간 중 회비가 인상되는 경우라도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

▶ 회원종류

- 전체간행물회원 : 120,000원
- 보건분야 간행물회원 : 75,000원
- 사회분야 간행물회원 : 75,000원
- 정기간행물회원 : 35,000원

▶ 가입방법

- 홈페이지(www.kihasa.re.kr) - 발간자료 - 간행물구독안내

▶ 회비납부

- 홈페이지를 통해 신용카드 결제
- 온라인 입금 : 우리은행 019-219956-01-014 (예금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문의처

- (122-705)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3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담당자 (Tel: 02-380-8157)

KIHASA 도서 판매처

- | | |
|---|---|
| ▪ 한국경제서적(총판) 737-7498 | ▪ 교보문고(광화문점) 1544-1900 |
| ▪ 영풍문고(종로점) 399-5600 | ▪ 서울문고(종로점) 2198-2307 |
| ▪ Yes24 http://www.yes24.com | ▪ 알라딘 http://www.aladdin.co.kr |

발간번호	보고서명	연구책임자
연구 2013-01	근거중심보건정책에 필요한 연구근거 현황 및 활용	김남순
연구 2013-02	국민건강증진기금사업의 운영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김혜련
연구 2013-03	의료서비스산업의 경쟁구조 및 경영효율성에 관한 연구	김대중
연구 2013-04	보건의료서비스 분야의 소비자 위상과 권리	윤강재
연구 2013-05	식품분야 규제정책의 변화와 향후 식품안전 관리강화를 위한 규제합리화	정기혜
연구 2013-06	화장품 및 의약품에 대한 소비자 중심적 연구	김정선
연구 2013-07	보건의료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	박은자
연구 2013-08	진료비지출 요인분석 및 거시적 관리방안	신현웅
연구 2013-09	의약품 정책의 의사의 처방에 미친 영향 연구	박설비아
연구 2013-10	한국의 건강불평등 지표와 정책과제	김동진
연구 2013-11	한국 의료의 질 평가와 정책과제 I: 한국 의료의 질 보고서 설계	강희정
연구 2013-12	국민연금기금운용 중장기 정책수립	원종욱
연구 2013-13	소득분배 악화의 산업구조적 원인과 대응 방안	강신욱
연구 2013-14	소득계층별 순조세부담의 분포에 관한 연구	남상호
연구 2013-15	저소득층 현금 및 현물서비스 복지지출의 사회경제적 영향분석	김태완
연구 2013-16	기회의 불평등 측정에 관한 연구: 성장배경을 중심으로	김문길
연구 2013-17	2013년 반곤통계연보	임완섭/노대명
연구 2013-18	고용-복지 연계정책의 국제비교 연구: 한중일의 최근 정책변화를 중심으로	노대명
연구 2013-19	근로 및 사회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분석	이현주
연구 2013-20	한국복지패널 연계 질적 연구(3차): 취약계층의 삶을 중심으로	김미곤
연구 2013-21	사회서비스 수요·공급의 지역단위 분석 연구	박세경
연구 2013-22	사회복지영역의 평가제도 분석 및 개선방안	정홍원
연구 2013-23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방안: 발달장애인을 중심으로	김성희
연구 2013-24	장애인지원서비스의 질과 공급특성 분석 연구	박수지
연구 2013-25	복지재정 DB구축과 지표 분석	박인화
연구 2013-26	중앙과 지방의 사회복지재정 형평화 연구: 재정분담체계 재구조화를 중심으로	고재이
연구 2013-27	사회보장 중장기 재정추계 모형개발을 위한 연구	신화연
연구 2013-28	사회보장 재원조달에서의 세대 간 형평성 제고방안 연구	유근춘
연구 2013-29	의료기관의 개인정보 보호현황과 대책	정영철
연구 2013-30	우리나라 아동빈곤의 특성	정은희
연구 2013-31-01	한중일 인구동향과 국가 인구전략	이삼식
연구 2013-31-02	인구예측모형 국제비교 연구	이삼식
연구 2013-31-03	자녀 양육 지원 정책 평가와 개선 방안	신윤정
연구 2013-31-04	보육서비스 공급 적정성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김은정
연구 2013-31-05	아동보호체계 연계성 제고방안	김미숙
연구 2013-31-06	여성고용 활성화 방안 연구	여유진
연구 2013-31-07	출산·보육 통계생산 및 관리효율화 연구	도세록

발간번호	보고서명	연구책임자
연구 2013-31-08	가구 가족의 변동과 정책적 대응방안 연구	김유경
연구 2013-31-09	저출산 고령화 대응 인구 자질 향상 방안: 고령 임신부의 출산 실태와 정책 과제	이소영
연구 2013-31-10	저출산고령사회에서의 일차의료기관 모형개발	황나미
연구 2013-31-11	저출산고령사회 동태적분석을 위한 지역 추적조사: 사례지역을 중심으로	오영희
연구 2013-31-12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한국 가족주의에 대한 진단과 정책적 함의	외부위탁
연구 2013-31-13	남북한 통합 시 적정인구 연구	이삼식
연구 2013-31-14	중노년층의 삶의 질과 정책과제	정경희
연구 2013-31-15	고령화 대응 노인복지서비스 수요전망과 공급체계 개편연구	이윤경
연구 2013-31-16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관점에서의 공적연금제도 개편 방안	윤석명
연구 2013-31-17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질 관리체계 개선방안	선우덕
연구 2013-31-18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역할정립방안연구: 연계방안을 중심으로	김진수
연구 2013-31-19	효과적 만성질환 관리방안 연구	정영호
연구 2013-31-20	인구고령화가 소비구조 및 산업생산에 미치는 영향 연구	외부위탁
연구 2013-31-21	여성노인의 노후빈곤 현황 및 대응정책	외부위탁
연구 2013-31-22	농촌 인구구조변화에 대응한 농촌 경제활성화 방안 연구	외부위탁
연구 2013-31-23	평생교육관점에서 바라본 노년교육의 현황과 정책과제	이윤경
연구 2013-32-1	지방자치단체의 건강영향평가 및 지식포털운영	서미경
연구 2013-32-2	건강영향평가TWC성과평가 및 건강행태위험요인의 사회경제적 격차감소를 위한 전략평가	최은진
연구 2013-33	아시아국가의 사회정책 비교연구: 건강보장	홍석표
연구 2013-34	취약위기가족 및 다문화가족의 예방맞춤형 복지체계 구축 및 통합사례관리 연구(4년차)	정은희
연구 2013-35	2013년 친서민정책으로서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전략III: 사회서비스산업-제3섹터-고용창출 연계 모델	이철선
연구 2013-36	2013년 보건복지통계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오미애
연구 2013-37	인터넷 건강정보 게이트웨이시스템 구축 및 운영: 빅 데이터 활용방안을 중심으로	송태민
연구 2013-38	2013년 사회정신건강 연구센터 운영: 한국사회의 갈등 및 병리현상의 발생현황과 원인분석 연구	이상영
연구 2013-39	2013년 지방자치단체 복지정책 평가센터 운영	김승권
연구 2013-40-1	2013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이현주
연구 2013-40-2	2013년 한국복지패널 심층분석 보고서: 신규 표본가구 통합DB(KOWEPS Combined)을 중심으로	최현수
연구 2013-41	2011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 보고서(II): 만성질환관리, 일반의약품이용, 임신출산, 부가조사	최정수
협동 2013-1	비영리법인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3년차)	오영호
협동 2013-2-1	가임기 임신 전 출산간강 관리지원 방안 연구(총괄)	이상림
협동 2013-2-2	임신 전 출산간강 관리 실태 및 지원 방안	이상림
협동 2013-2-3	고령 임신부의 산전	김동식